

20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용자를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역사적 기록 확보를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1967년 「농업기본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경영·가격·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정책 및 농업동향을 내용으로 하여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농업기본법」이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연차보고서는 1999년부터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동향 및 정책을 포함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농업·농촌을 포함하여 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동향·정책이 추가된 연차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1편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2편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3편 2012년 수산업 동향 ▲4편 2012년 수산업 정책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 3편에서는 2012년 농어업·농어촌 경제동향, 국내·국제 농식품 수급동향 등의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를 제시하고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2편, 4편은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수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배경 및 개요, 추진 내용 및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을 담았습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농어업 분야도 선진국입니다. 그만큼 농업의 가치를 중시하고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가 이러한 농어업의 국내외 환경과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농어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정책·통계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제1편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3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3
2. 농경지	4
제2절 농가경제	6
1. 소득 동향	6
2. 가계지출 동향	10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11
4. 농가자산 동향	11
5. 농가부채 동향	12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12
7. 주·부업별 지표	13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14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15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15
11. 지역별 주요지표	16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16
1. 개 황	16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7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20
1. 개 황	20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1
3. 농림어업 부가가치	23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24
1. 식량 수급동향	24
2. 원예·특용작물	26

3. 축산물과 사료작물	32
--------------	----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37
2. 식품 수요현황	41
3. 식품산업 동향	48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53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58

제3장 국제곡물 수급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60
2. 국제곡물 가격동향	63

제2절 주요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66
2. 주요국가 통상협력	78

제2편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농가 경영혁신·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1절 농가 소득 증대	95
1.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추진	95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97
3.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	99
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102

목 차

제2절 농가 경영 안정 104

- 1. 농지은행 활성화 104
- 2.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108
- 3. 재해농가 지원 확충 111
-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112
- 5. 농어업부문 세제지원 114
- 6.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제도개선 118
- 7.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119
- 8.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120
- 9. 농기계임대 활성화 122

제3절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24

-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24
- 2. 농어업법인 활성화 127
- 3. 농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129
- 4.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132
- 5. 귀농·귀촌 지원대책 정비 134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36

- 1.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136
- 2.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138
- 3.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140
-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42
-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146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49

- 1. 공공비축제도 운영 149
- 2. 비축수입농산물 관리 152
- 3. 논 소득기반 다양화 154
- 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156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1절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농식품 R&D 혁신 158

- 1.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158
- 2.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161
- 3.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164
- 4. 농림축산식품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166
- 5. 종자산업 육성 171
- 6. 곤충산업 육성 174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176

-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176
-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180
-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185
- 4. 농지제도 개선 187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189

- 1. WTO-DDA 협상대응 189
- 2. 한·미 FTA 협상 193
- 3. 한·터키 FTA 협상 195
- 4. 한·콜롬비아 FTA 협상 196
- 5. 한·중 FTA 협상 198
- 6. 한·인니 CEPA 200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202

- 1.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202
- 2.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205
- 3. OECD 활동 208
- 4.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활동 212
- 5. 양자·지역·다자간 국제농업장관회의 216
- 6. G20 농업장관회의 217
- 7. AMAF+3 회의 (ASEAN + 한·중·일 농림장관회의) 219

목 차

제6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222

- 1. 농산물·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222
- 2. 농식품 안전성검사 확대 225
-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대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226
- 4.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관리 228
- 5.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230
- 6.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 사업 232
- 7. 축산물 이력제 추진 234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236

- 1. 가축질병 방역 강화 236
-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강화 238
- 3.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241
- 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42

제3절 친환경농업 육성 245

- 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245
- 2. 친환경비료 지원 247
- 3. 친환경농업직불제 249
- 4.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251
-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253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256

-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256
- 2.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258
- 3. 전통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260
- 4.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 264
-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66

- 6. 식생활 교육 추진 268
- 7.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272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274

-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274
-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279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283

- 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283
- 2. 농어촌영향평가 운용 287
- 3. 농어촌 재능기부 활성화 288
- 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90
- 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93
- 6.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295
- 7.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 확대 297
- 8. 농지연금 활성화 299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302

- 1. 농어촌 종합개발 302
-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07
- 3. 농어촌 뉴타운 조성 309
- 4.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 311
- 5.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313
- 6. 향토자원 발굴 등 6차산업화 추진 316
- 7. 농공단지 조성사업 319
- 8.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321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325

-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25
- 2. 밭 기반 정비사업 326
-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27
- 4.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329

목 차

제3편

2012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341
1. 어가인구	341
2. 어업 총생산	343
3. 어선 등록 현황	344
4. 이용어장	346
5. 어업 경영체	350
제2절 어가 경제	355
1. 어가소득	355
2. 어가 가계지출	356
3. 어가지산	356
4. 어가부채	357

제2장 국내·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358
1. 생산동향	358
2. 연근해어업	359
3. 양식어업	365
4. 내수면어업	366
5. 원양어업	367
제2절 국내 수산물 수출·수입	368
1. 수출	368
2. 수입	371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375

1. 수 급	375
2. 소 비	375
3. 가 격	376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377
1. 어 황	377
2. 자원동향	379
3.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380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385
1. 세계 수산물 생산	385
2. 세계 수산물 교역	387

제4편

2012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 론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399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399
2. 유어산업 육성(자원관리과)	404
3. 내수면 산업 육성	407
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409
5. 수산물 수출 진흥	413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415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415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416
3.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정상화	418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목 차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421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421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423
3.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425
4.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427

제2절 어업질서 확립	429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429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431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432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434

제4장 어가경영안정·소득증대

제1절 어가 소득 증대	436
1. 직접피해보전제도	436
2.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440
3. 수산직불제 도입	443

제2절 어가경영안정 지원	444
1. 어업보험 내실화	444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447
3.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448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454
1. 어업후계인력 육성	454
2.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456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457

제2절 살기 좋은 어촌 개발	459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459
2. 어촌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461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463
4. 어항시설 확충	465

5. 어촌·어항 관광개발	468
6.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470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473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473
2. 수출·수입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475
3. 수출·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476
4. 친환경양식 생산	478
5. 양식어장 환경 개선	479

제2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481
1.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481
2.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483
3. 민간 가격안정사업	484
4.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485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제1절 국제협상 강화	488
1. WTO-DDA 수산 분야 협상대응	488
2. FTA 수산 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490
3.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492
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493
5. 한·일 어업협정	497
6. 한·중 어업협정	500
7. 한·러 어업협정	504
8.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507

제2절 해외 수산자원 개발	510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510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512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515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516

표 목 차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4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26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5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27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5	〈표 1-2-5〉 품목별 채소류 생산동향	27
〈표 1-1-4〉 휴경면적	6	〈표 1-2-6〉 과실류 수급동향	28
〈표 1-1-5〉 농가소득	6	〈표 1-2-7〉 화훼산업 현황	29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7	〈표 1-2-8〉 특용작물 수급동향	30
〈표 1-1-7〉 농업소득	7	〈표 1-2-9〉 버섯류 수급동향	31
〈표 1-1-8〉 농업총수입	8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31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8	〈표 1-2-11〉 인삼류 생산동향	32
〈표 1-1-10〉 농업경영비	9	〈표 1-2-12〉 쇠고기 수급동향	33
〈표 1-1-11〉 농외소득	9	〈표 1-2-13〉 사료 수급 추이	35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10	〈표 1-2-14〉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36
〈표 1-1-13〉 가계비 지출	10	〈표 1-2-15〉 초지조성 실적	37
〈표 1-1-14〉 가처분소득 / 잉여금	11	〈표 1-2-16〉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 (도시가구)	38
〈표 1-1-15〉 농가자산	11	〈표 1-2-17〉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11년도 도시가구평균)	39
〈표 1-1-16〉 농가부채	12	〈표 1-2-18〉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40
〈표 1-1-17〉 2012년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13	〈표 1-2-1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41
〈표 1-1-18〉 2012년 주·부업별 지표	14	〈표 1-2-20〉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43
〈표 1-1-19〉 2012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14	〈표 1-2-21〉 연도별 자급률 추이	45
〈표 1-1-20〉 2012년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15	〈표 1-2-22〉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 공급량 비교	46
〈표 1-1-21〉 2012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15	〈표 1-2-23〉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 비교	47
〈표 1-1-22〉 2012년 지역별 주요지표	16	〈표 1-2-24〉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48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17	〈표 1-2-25〉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11)	49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8	〈표 1-2-26〉 규모별 추이	50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	〈표 1-2-27〉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50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21	〈표 1-2-28〉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51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21	〈표 1-2-29〉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11)	52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22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23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24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25		

표 목 차

〈표 1-2-30〉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53	〈표 2-2-11〉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116
〈표 1-2-31〉 농식품 수출실적	54	〈표 2-2-12〉 어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117
〈표 1-2-32〉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55	〈표 2-2-13〉 어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117
〈표 1-2-33〉 농식품 수입실적	56	〈표 2-2-14〉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121
〈표 1-2-34〉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57	〈표 2-2-15〉 2012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125
〈표 1-2-35〉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58	〈표 2-2-16〉 농어업법인 현황	128
〈표 1-2-36〉 대북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59	〈표 2-2-17〉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133
〈표 1-2-37〉 대북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59	〈표 2-3-1〉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실적	141
〈표 1-3-1〉 세계 주요 곡물 수급동향(USDA '13. 9)	62	〈표 2-3-2〉 2012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147
〈표 1-3-2〉 USDA 고시 국제곡물가격 동향	65	〈표 2-3-3〉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150
〈표 1-3-3〉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67	〈표 2-3-4〉 정부비축미 목표 및 매입물량	151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67	〈표 2-3-5〉 국가별 쌀 약정 현황	151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67	〈표 2-3-6〉 농산물 수입비축사업 내역	153
〈표 1-3-6〉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	70	〈표 2-3-7〉 시도별, 품목별 타작물재배 약정현황	155
〈표 1-3-7〉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72	〈표 2-3-8〉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157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	75	〈표 2-4-1〉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159
〈표 1-3-9〉 한·미 간 농림축수산식품 교역 동향	79	〈표 2-4-2〉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162
〈표 1-3-10〉 주요 수출 품목	79	〈표 2-4-3〉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	167
〈표 1-3-11〉 주요 수입 품목	80	〈표 2-4-4〉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172
〈표 1-3-12〉 농림축수산식품 수출입 실적	83	〈표 2-4-5〉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173
〈표 1-3-13〉 대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림축산식품(2012)	83	〈표 2-4-6〉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174
〈표 2-2-1〉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102	〈표 2-4-7〉 농식품투자조합 결성('10~'12) 현황	183
〈표 2-2-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105	〈표 2-4-8〉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12년 말 기준)	185
〈표 2-2-3〉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한 농지임대 실적	106	〈표 2-4-9〉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실적	186
〈표 2-2-4〉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107	〈표 2-5-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204
〈표 2-2-5〉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 실적	107	〈표 2-5-2〉 2012년도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207
〈표 2-2-6〉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109		
〈표 2-2-7〉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113		
〈표 2-2-8〉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115		
〈표 2-2-9〉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115		
〈표 2-2-10〉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116		

표 목 차

〈표 2-6-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227	시도별 예산 내역	306
〈표 2-6-2〉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추진 현황	240	〈표 2-8-1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308
〈표 2-6-3〉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	247	〈표 2-8-16〉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규모	309
〈표 2-6-4〉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248	〈표 2-8-17〉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국고 보조율	310
〈표 2-6-5〉 유기질비료 지원조건(국고, 2013)	248	〈표 2-8-18〉 2012년 색깔 있는 마을 선정 현황	312
〈표 2-6-6〉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250	〈표 2-8-19〉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317
〈표 2-6-7〉 친환경축산직불제 지급단가	254	〈표 2-8-2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실적	318
〈표 2-6-8〉 친환경 축산물 인증현황	254	〈표 2-8-21〉 부처별 지원 현황	319
〈표 2-7-1〉 6대 분야 18대 핵심기술	257	〈표 2-8-22〉 ICT융복합 사업유형별 주요 내용과 사례	322
〈표 2-7-2〉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 내용	269	〈표 2-8-23〉 대구형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326
〈표 2-7-3〉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276	〈표 2-8-24〉 발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327
〈표 2-7-4〉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276	〈표 2-8-2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328
〈표 2-7-5〉 29개 수출 전략품목	277	〈표 2-8-2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329
〈표 2-8-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	284	〈표 2-8-2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331
〈표 2-8-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284	〈표 2-8-28〉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 현황	331
〈표 2-8-3〉 2012년 농어촌 재능기부 공모사업 추진현황	289	〈표 2-8-29〉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333
〈표 2-8-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291	〈표 2-8-3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333
〈표 2-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292	〈표 2-8-31〉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334
〈표 2-8-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292	〈표 2-8-32〉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334
〈표 2-8-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294	〈표 2-8-33〉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 중 지구 개발유형	335
〈표 2-8-8〉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297	〈표 2-8-3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337
〈표 2-8-9〉 농업인 안전보험 추진실적	299	〈표 2-8-35〉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338
〈표 2-8-10〉 농지연금 추진실적	300	〈표 3-1-1〉 어가호수와 인구	341
〈표 2-8-1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303	〈표 3-1-2〉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342
〈표 2-8-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	304	〈표 3-1-3〉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342
〈표 2-8-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305	〈표 3-1-4〉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343
〈표 2-8-14〉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표 3-1-5〉 어업 생산량 현황	343

표 목 차

〈표 3-1-6〉 어업 생산액 현황	344	〈표 3-2-13〉 품목별 수입 현황	372
〈표 3-1-7〉 어업 총생산(부가가치) 현황	344	〈표 3-2-14〉 국가별 수입 현황	373
〈표 3-1-8〉 어선 등록 현황	345	〈표 3-2-15〉 어종별 수입 현황	374
〈표 3-1-9〉 선질별 어선 등록 현황	345	〈표 3-2-16〉 수산물 수급 동향	375
〈표 3-1-10〉 등급별 어선 등록 현황	346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 현황	376
〈표 3-1-11〉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48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 현황	376
〈표 3-1-12〉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349	〈표 3-2-19〉 수산식품 소비자 물가 동향	376
〈표 3-1-13〉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351	〈표 3-2-20〉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 평가	379
〈표 3-1-14〉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352	〈표 3-2-21〉 우리나라 연안의 어장별, 연도별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분포	381
〈표 3-1-15〉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52	〈표 3-2-22〉 우리나라 연안의 어장별, 연도별 해수의 유기오염 현황	381
〈표 3-1-16〉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353	〈표 3-2-23〉 2012년도 적조 특보 발령 현황 및 적조 생물수	383
〈표 3-1-17〉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53	〈표 3-2-24〉 동중국해·서해·남해 근해에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연도별 출현량개 체/10000m ²)	384
〈표 3-1-18〉 원양업체 및 조업척수	354	〈표 3-2-25〉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386
〈표 3-1-19〉 어가소득	355	〈표 3-2-26〉 세계 수산물 수출 추이	388
〈표 3-1-20〉 어업소득	355	〈표 3-2-27〉 세계 수산물 수입 추이	389
〈표 3-1-21〉 어업외 소득	356	〈표 4-2-1〉 2012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401
〈표 3-1-22〉 가계지출	356	〈표 4-2-2〉 바다숲 추진 현황 및 계획	402
〈표 3-1-23〉 어가지산	357	〈표 4-2-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403
〈표 3-1-24〉 어가부채	357	〈표 4-2-4〉 국내 낚시 인구 현황	405
〈표 3-2-1〉 어업별 생산 현황	359	〈표 4-2-5〉 낚시 행위에 의한 조획량(추정)	405
〈표 3-2-2〉 부류별 생산 현황	359	〈표 4-2-6〉 2012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411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	360	〈표 4-2-7〉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출하 실적	411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 현황	364	〈표 4-2-8〉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2012년 말 기준)	412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 현황	365	〈표 4-2-9〉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현황(2012년)	415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 현황	366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 현황	367		
〈표 3-2-8〉 수산물 수출 현황	368		
〈표 3-2-9〉 품목별 수출 현황	369		
〈표 3-2-10〉 국가별 수출 현황	370		
〈표 3-2-11〉 주요 어종별 수출 현황	371		
〈표 3-2-12〉 수산물 수입 현황	372		

표 목 차

〈표 4-2-10〉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416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462
〈표 4-2-11〉 2012년까지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 현황	418	〈표 4-5-6〉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463
〈표 4-2-12〉 일선수협 순자본비율 및 이익잉여금 현황	419	〈표 4-5-7〉 2011~2012년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현황	464
〈표 4-3-1〉 감척 필요 어선 척수	423	〈표 4-5-8〉 어항 지정 현황	466
〈표 4-3-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424	〈표 4-5-9〉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466
〈표 4-3-3〉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429	〈표 4-5-10〉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 현황	467
〈표 4-3-4〉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 어업 단속 현황	430	〈표 4-5-11〉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467
〈표 4-3-5〉 2012년도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 선정 현황	433	〈표 4-5-12〉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468
〈표 4-3-6〉 어선사고 원인별 현황	435	〈표 4-5-13〉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469
〈표 4-3-7〉 어선사고 종류별 현황	435	〈표 4-5-14〉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69
〈표 4-4-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개편 내용	438	〈표 4-5-15〉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71
〈표 4-4-2〉 폐업지원제 개편 내용	439	〈표 4-5-16〉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71
〈표 4-4-3〉 연도별 어업별 생산액 동향	440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계획)	471
〈표 4-4-4〉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 현황	441	〈표 4-6-1〉 양식장 HACCP 등록 현황	474
〈표 4-4-5〉 2012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442	〈표 4-6-2〉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현황 (2012년 기준)	474
〈표 4-4-6〉 직불제(순직불제) 사업별 현황	443	〈표 4-6-3〉 2012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484
〈표 4-4-7〉 어선원 보험 가입 현황	445	〈표 4-7-1〉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 현황	496
〈표 4-4-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448	〈표 4-7-2〉 2012년 한·일 EEF 입어실적 비교(총괄)	499
〈표 4-4-9〉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12년 기준)	450	〈표 4-7-3〉 2012년 한·일 EEF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499
〈표 4-5-1〉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455	〈표 4-7-4〉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499
〈표 4-5-2〉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요	460	〈표 4-7-5〉 일본어선의 우리 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500
〈표 4-5-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별 성과(2012년)	461	〈표 4-7-6〉 한·중·일 어업협정 개요	501
〈표 4-5-4〉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462	〈표 4-7-7〉 양국 간 수산협력약정 체결 현황	503
		〈표 4-7-8〉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505
		〈표 4-7-9〉 남북 수산협력사업 주요 추진 경과	509
		〈표 4-7-10〉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514

그림 목 차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5	〈그림 2-8-1〉	301
〈그림 1-3-1〉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변천 동향	76	〈그림 2-8-2〉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향	323
〈그림 2-3-1〉 양곡관리 시스템	150	〈그림 3-2-1〉 2012년도 5~11월의 해파리 출현상황	385
〈그림 2-4-1〉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181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 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408
〈그림 2-5-1〉 FAO 의사결정기구 (Governing Bodies) 개요	213	〈그림 4-2-2〉 대천천(보령)과 덕천강(산청)의 어도 설치 현장	409
〈그림 2-6-1〉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기여도	224	〈그림 4-3-1〉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423
〈그림 2-6-2〉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체계	229	〈그림 4-3-2〉 분쟁조정 절차	427
〈그림 2-7-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목표, 추진전략	270	〈그림 4-6-1〉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후 조감도	482
〈그림 2-7-2〉 2012 녹색 식생활 실태조사 주요 결과	272	〈그림 4-6-2〉 생산자 중심의 신(新)유통체계	482
〈그림 2-7-3〉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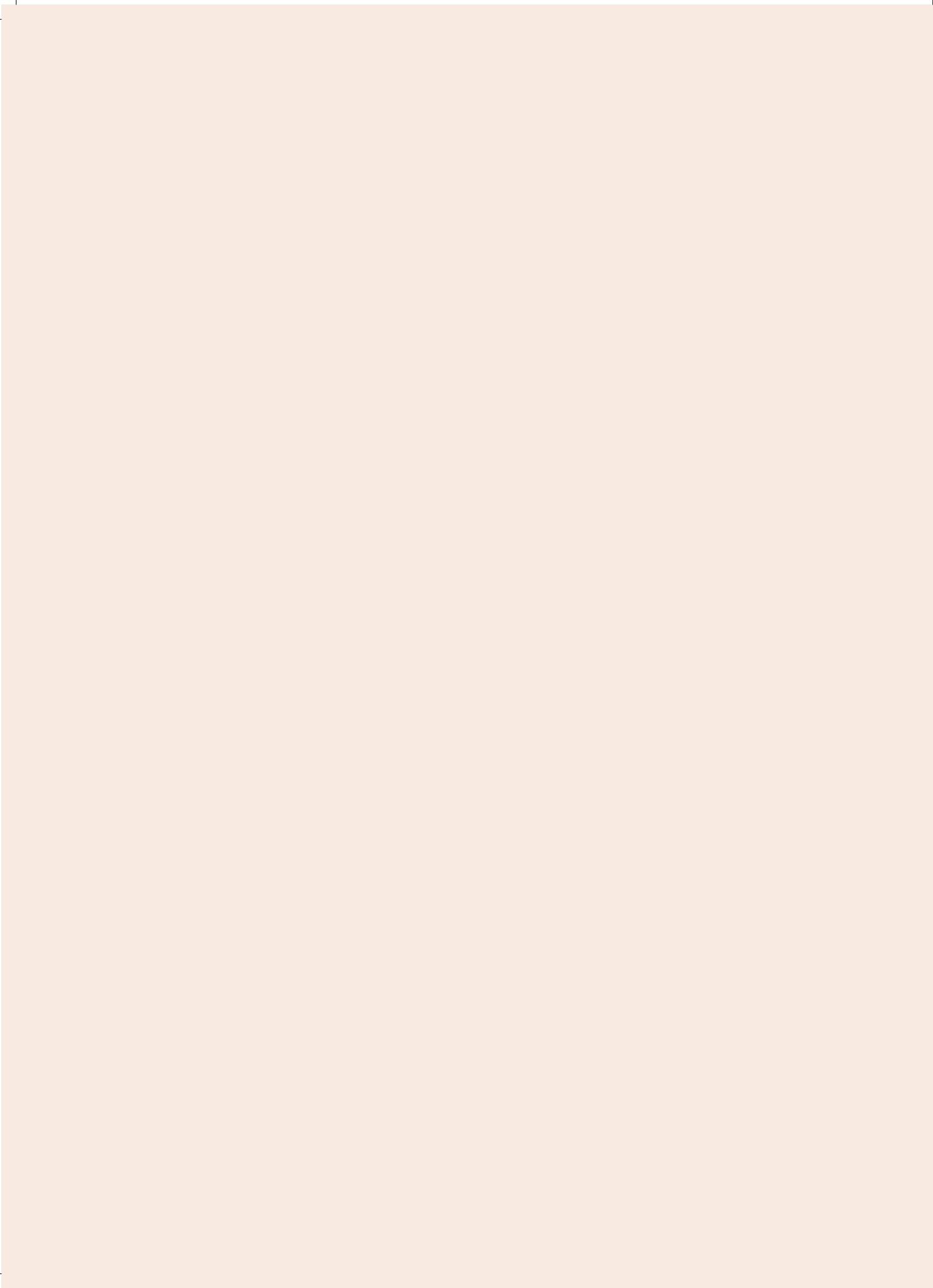
제1편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3장 국제곡물 수급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권영욱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12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151천가구로 전년의 1,163천가구보다 12천가구(1.0%)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2,912천명으로 전년의 2,962천명보다 50천명(1.7%)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54.3%인 625천가구로 전년의 630천가구(54.2%)보다 가구수는 5천가구가 감소하고 비중은 0.1%p 증가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 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45.7%인 526천가구로 전년의 533천가구(45.8%)보다 7천가구가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50,004천명) 중에서 농가인구(2,912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2012년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은 5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35.6%로 2011년 33.7%보다 1.9%p 증가하였다(전국 고령화율 2011년 : 11.4% → 2012년 : 11.8%).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424천명(48.9%), 여자가 1,488천명(51.1%)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연 도	단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호	1,383	1,273	1,177	1,163	1,151	△12	△1.0
전 업 농 가 (비중)		천호 (%)	902 (65.2)	796 (62.5)	627 (53.3)	630 (54.2)	625 (54.3)	△5	△0.8
겸 업 농 가 (비중)		천호 (%)	481 (34.8)	477 (37.5)	550 (46.7)	533 (45.8)	526 (45.7)	△7	△1.4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031 (8.6)	3,434 (7.1)	3,063 (6.2)	2,962 (6.0)	2,912 (5.8)	△50	△1.7
호당농가인구		명	2.91	2.70	2.60	2.55	2.55	0.05	△1.9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		%	32.7	43.2	46.4	48.6	51.3	-	-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		%	21.7	29.1	31.8	33.7	35.6	-	-
성 별 농 가 인 구	남자 (구성비)	천명 (%)	1,971 (48.9)	1,677 (48.8)	1,501 (49.0)	1,456 (49.2)	1,424 (48.9)	△45	△3.0
	여자 (구성비)	천명 (%)	2,060 (51.1)	1,757 (51.2)	1,562 (51.0)	1,506 (50.8)	1,488 (51.1)	△5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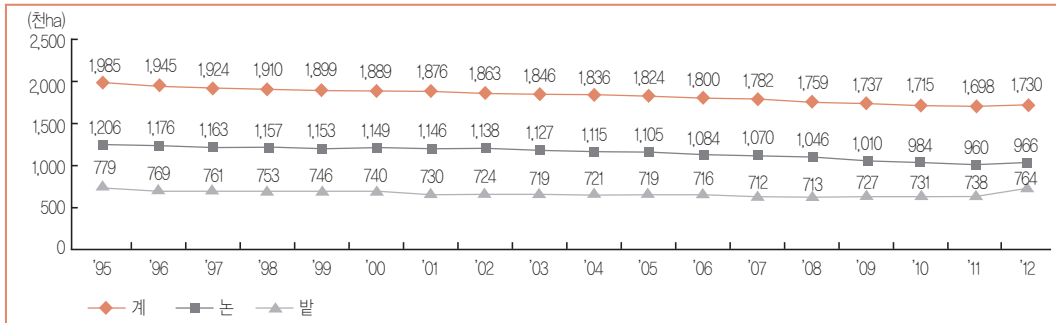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1, 2012년은 농업조사결과, 2000, 2005, 2010년은 농업총조사 결과임

2.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 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2년 말 경지면적은 조사방법 변경(현지 표본조사에서 원격탐사 이용)에 따라 전년보다 32천ha 증가한 1,730천ha로, 이 가운데 논 면적은 966천ha로 전년에 비하여 6천ha 증가하였으며, 밭 면적은 764천ha로 26천ha가 증가하였다.

2012년의 경지이용면적은 1,767천ha로 전년보다 30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4.7%에서 104.1%로 낮아졌다. 경지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050천ha로 전년보다 4천ha 감소, 채소는 217천ha로 10천ha 감소, 과수는 152천ha로 2천ha 감소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45.1천ha로 전년보다 9.5천ha 감소하였고, 전체 경지면적 중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5%p 감소한 2.7%로 나타났다.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구분 연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간	간척	기타	계	건물건축	공공시설	기타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2005	1.7	1.0	0.4	0.3	13.3	5.2	3.5	4.6	△11.6
2006	4.5	4.2	0.0	0.4	28.1	9.8	6.3	12.0	△23.6
2007	4.3	3.4	0.6	0.4	23.2	10.2	4.1	8.9	△18.9
2008	5.6	4.6	0.4	0.5	28.4	9.8	5.2	13.4	△22.8
2009	26.7	23.0	2.7	1.0	48.7	15.2	13.9	19.6	△22.0
2010	9.5	7.9	0.4	1.2	31.0	8.4	9.3	13.3	△21.5
2011	6.3	5.2	0.4	0.7	23.5	7.9	5.6	10.0	△17.3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2년은 조사방법 변경(현지 표본조사→원격탐사 이용 조사)으로 증감사유별 조사 제외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분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경지이용면적		2,197	2,098	1,921	1,820	1,797	1,767	△30	△1.6
식량작물		1,346	1,318	1,234	1,093	1,054	1,050	△4	△0.4
	(미곡)	(1,056)	(1,072)	(980)	(892)	(854)	(849)	(△5)	(△0.5)
	(맥류)	(90)	(68)	(61)	(51)	(42)	(31)	(△11)	(△27.2)
경제작물		851	780	689	641	743	717	△26	△3.5
	(채소)	(322)	(296)	(240)	(206)	(227)	(217)	(△10)	(△4.4)
	(과수)	(172)	(169)	(150)	(156)	(154)	(152)	(△2)	(△1.3)
	(기타) ¹⁾	(357)	(315)	(299)	(279)	(362)	(348)	(△14)	(△3.9)
경지면적		1,985	1,889	1,824	1,715	1,698	1,630	32	1.8
경지이용률(%)		108.1	110.5	104.7	104.8	104.7	104.1		
	(논)	(104.1)	(106.3)	(102.9)	(106.2)	(105.6)	(105.1)		
	(밭)	(114.7)	(116.9)	(107.3)	(102.7)	(103.6)	(102.7)		

주 : 1) 특·약용작물, 병발,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4〉 휴경면적

(단위 : 천ha)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휴경면적	64.6	16.8	44.2	50.5	54.6	45.1	△9.5	△17.4
· 논	33.5	4.3	24.1	20.1	22.4	15.2	△7.2	△32.1
· 밭	31.1	12.5	20.1	30.4	32.2	29.9	△2.3	△7.1
휴경률(%)	3.2	0.9	2.4	2.9	3.2	2.7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제2절 농가경제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권영욱

1. 소득 동향

◆ 농가소득

2012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1,031천원으로서 전년(30,148천원)에 비해 2.9%(883천원) 증가하였다. 농업소득은 4.3%, 농외소득은 4.9%, 이전소득은 3.0%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9.6% 감소하였다.

〈표 1-1-5〉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농가소득 ¹⁾	21,803	30,503	30,814	32,121	30,148	31,031	883	2.9
□ 경상소득	21,803	25,777	27,307	28,654	27,155	28,326	1,171	4.3
· 농업소득	10,469	11,815	9,698	10,098	8,753	9,127	374	4.3
· 농외소득	6,931	9,884	12,128	12,946	12,949	13,585	636	4.9
· 이전소득	4,403	4,078	5,481	5,610	5,453	5,614	161	3.0
□ 비경상소득 ²⁾	-	4,725	3,507	3,467	2,993	2,705	△288	△9.6

주 :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 : 우발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29.4%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0.4%p 증가하였다.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9	2010	2011	2012
농가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경 상 소 득	84.9	84.5	88.7	89.2	90.1	91.3
• 농업소득	41.6	38.7	31.5	31.4	29.0	29.4
• 농 외 소득	32.9	32.4	39.4	40.3	43.0	43.8
• 이 전 소득	10.4	13.4	17.8	17.5	18.1	18.1
□ 비경상소득	15.2	15.5	11.4	10.8	9.9	8.7
〈 일 본 〉	24.8	24.6	22.8	26.2	25.8	-
• 농업소득						

주 : 1)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 일본은 20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 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

◆ 농업소득

2012년 농업총수입이 4.3%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도 4.3%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9,127천원으로 전년(8,753천원)에 비해 4.3%(374천원) 증가하였다.

〈표 1-1-7〉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소득 (농업소득률)	10,469 (65.4)	11,815 (44.6)	9,697 (36.4)	10,098 (37.1)	8,753 (33.1)	9,128 (33.1)	375	4.3
• 농업총수입	16,012	26,496	26,621	27,221	26,457	27,589	1,132	4.3
• 농업경영비	5,543	14,681	16,924	17,123	17,704	18,461	757	4.3

주 :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은 27,589천원으로 전년(26,457천원)에 비해 4.3%(1,132천원) 증가하였다. 축산과 채소는 각각 17.6%, 9.8% 증가하고, 미곡과 과수는 각각 0.2%, 2.1% 감소하였다.

〈표 1-1-8〉 농업총수입

(단위: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총수입	16,012	26,496	26,102	26,621	27,221	26,457	27,589	1,132	4.3
• 미곡수입	5,450	7,264	7,296	6,522	5,368	6,254	6,243	△11	△0.2
• 축산수입	3,981	6,386	5,145	6,972	5,892	4,335	5,099	764	17.6
• 채소수입	3,386	6,388	6,817	6,198	7,251	7,675	8,427	752	9.8
• 과수수입	1,542	2,945	3,192	3,355	4,147	3,762	3,683	△79	△2.1
• 기타수입 ¹⁾	1,653	3,513	3,652	3,574	4,563	4,431	4,137	△294	△6.6

주: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 구조를 보면 채소(30.5%), 미곡(22.6%), 축산(18.5%) 및 과수수입(13.3%), 기타(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미곡수입	34.0	27.4	24.5	19.7	23.6	22.6
• 축산수입	24.9	24.1	26.2	21.6	16.4	18.5
• 채소수입	21.1	24.1	23.3	26.6	29.0	30.5
• 과수수입	9.6	11.1	12.6	15.2	14.2	13.3
• 기타수입	10.4	13.3	13.4	16.9	16.8	15.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경영비는 18,461천원으로 전년(17,704천원)에 비해 4.3%(757천원) 증가하였다. 양축비는 전년 수준이나, 수선 및 농구비, 노무비, 비료·농약비, 임차료는 각각 0.6%, 9.5%, 7.1%, 9.1% 증가하였다.

〈표 1-1-10〉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경영비		5,543	14,681	16,924	17,123	17,704	18,461	757	4.3
· 수선및농구비		807	318	327	372	330	332	2	0.6
· 노무비		441	913	843	897	857	938	81	9.5
· 양축비		1,261	2,747	3,676	3,125	3,345	3,344	△1	△0.0
· 비료·농약비		695	1,624	2,078	2,117	1,961	2,100	139	7.1
· 임차료		1,070	1,096	905	912	985	1,075	90	9.1
· 기타비용 ¹⁾		1,269	7,983	9,095	9,700	10,226	10,672	446	4.4

주 : 1) 감가상각비, 종묘비, 기타,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영농집비용, 보험료 및 수수료, 기타판매 및 관리비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농업외소득

2012년 농업외소득은 13,585천원으로 전년(12,949천원)에 비해 4.9%(636천원) 증가하였다. 겸업소득은 8.6%, 사업외소득은 3.5% 증가하였다.

* 겸업소득은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 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사업외소득은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 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표 1-1-11〉 농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농외소득		6,931	9,884	12,128	12,946	12,949	13,585	636	4.9
· 겸업소득		1,527 (22.0)	2,531 (25.6)	3,296 (27.2)	3,467 (26.8)	3,653 (28.2)	3,966 (29.2)	313	8.6
· 사업외소득		5,404 (78.0)	7,353 (74.4)	8,832 (72.8)	9,480 (73.2)	9,296 (71.8)	9,619 (70.8)	323	3.5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2012년 이전소득은 2.9%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9.6% 감소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128천원(1.5%) 감소한 8,319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403	8,803	8,988	9,077	8,447	8,319	△128	△1.5
· 이 전 소 득		-	4,078	5,481	5,610	5,454	5,614	160	2.9
· 비 경 상 소 득		-	4,725	3,507	3,467	2,993	2,705	△288	△9.6

주 :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 가계지출 동향

2012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7,490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22,315천원으로 전년(22,156천원)에 비해 0.7%(159천원) 증가하고, 비소비지출은 5,176천원으로 전년(5,750천원)에 비해 10.0%(574천원) 감소하였다.

〈표 1-1-13〉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가	계	14,782	26,649	26,574	27,672	27,906	27,490	△416	△1.5
· 소 비 지 출		14,782	19,378	20,017	21,264	22,156	22,315	159	0.7
· 비 소 비 지 출 ¹⁾		-	7,271	6,557	6,408	5,750	5,176	△574	△10.0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44.3	36.5	36.5	31.4	33.2	-	-
평균 소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²⁾)		68.3	83.4	82.5	82.7	90.8	86.3	-	-

주 :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 - 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25,855천원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3,540천원으로 전년(2,242천원)에 비해 57.9%(1,298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소비지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4〉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 처분가능소득 ¹⁾		21,629	23,232	24,257	25,712	24,398	25,855	1,457	6.0
• 소비지출 (분가지출)		14,782 (548)	19,378 -	20,017 -	21,264 -	22,156 -	22,315 -	159	0.7
• 잉여금 ²⁾		6,299	3,854	4,240	4,449	2,242	3,540	1,298	57.9

주 :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4. 농가자산 동향

2012년 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407,872천원으로 전년(387,180천원)에 비해 5.3%(20,692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자산과 예·저금 및 미처분 농산물 등 유동자산이 각각 4.9%, 6.9%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5〉 농가자산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농가자산		158,171	298,178	358,029	372,476	387,179	407,872	20,693	5.3
고정자산 ¹⁾		134,334 (84.9)	238,399 (80.0)	289,539 (80.9)	289,435 (77.7)	295,637 (76.4)	310,016 (76.0)	14,379	4.9
유동자산 ²⁾		23,837 (15.1)	59,779 (20.0)	68,490 (19.1)	83,041 (22.3)	91,542 (23.6)	97,856 (24.0)	6,314	6.9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5.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12년 말 현재 가구당 27,262천원으로 전년(26,035천원)에 비해 4.7%(1,227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가계용 및 겸업용 부채 등 농업용 이외 부채가 1.0% 감소하였으나, 농업용 부채는 10.4%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당좌자산)은 29.6%로 전년(30.3%)에 비해 0.7%p 개선되었다.

〈표 1-1-16〉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부 채 (A)		9,163	27,210	26,268	27,210	26,035	27,262	1,227	4.7
• 농업용 부채 (구성비)		6,351 (69.3)	16,315 (60.0)	13,150 (50.1)	12,930 (47.5)	11,892 (45.7)	13,123 (48.1)	1,231	10.4
• 농업용이외부채 ¹⁾ (구성비)		2,812 (30.7)	10,895 (40.0)	13,118 (49.9)	14,280 (52.5)	14,143 (54.3)	14,139 (51.9)	△141	△1.0
당 좌 자 산 (B)		19,739	54,354	63,493	77,668	85,848	92,215	6,367	7.4
단기상환능력 ²⁾ [(A/B) × 100]		46.4	50.1	41.4	35.0	30.3	29.6	-	-

주 : 1) 농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6. 전업농가 · 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전 · 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9,54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 소득의 60.8% 수준이었다.

〈표 1-1-17〉 2012년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 가 소 득	31,031	24,065	34,440	39,546	77.6	111.0	127.4
가 계 지 출	27,490	21,853	28,374	35,233	79.5	103.2	128.2
자 산	407,872	388,176	414,337	433,390	95.2	101.6	106.3
부 채 (부채 / 자산)	27,262 (6.7)	23,129 (6.0)	32,244 (7.8)	30,971 (7.1)	84.8 -	118.3 -	113.6 -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자산이 가장 많은 '제2종 겸업농가'의 자산은 433,390천원으로 평균자산보다 6.3% 많고, 부채는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은 32,244천원으로 나타났다.

7. 주·부업별 지표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41,463천원으로 자급농가(30,512천원)의 1.4배 수준이고, 전문농가의 자산은 537,94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농가는(267,841천원) 전문농가의 49.8%에 지나지 않았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3ha 이상 경지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8.4%로 가장 높았다.

※ 주·부업농가 기준

- 주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원 이상
-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18〉 2012년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소 득	31,031	41,463	15,035	38,041	30,512
가 계 지 출	27,490	31,084	16,914	34,953	27,804
자 산	407,872	537,945	267,841	463,876	296,601
부 채 (부채 / 자산)	27,262 (6.7)	45,046 (8.4)	8,579 (3.2)	33,981 (7.3)	13,701 (4.6)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6,660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과수농가가 32,261천원으로 나타났다. 논벼농가의 소득은 19,609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1,031원)의 63.2%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화훼농가의 자산이 748,68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농가(690,911천원), 과수농가(428,245천원) 순서였다.

부채/자산비율은 특작농가가 21.6%로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논벼농가는 3.5%로 가장 낮았다.

〈표 1-1-19〉 2012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논 벼	과 수	채 소	특 작	화 훼	전 직 ¹⁾	축 산
농 가 소 득	31,031	19,609	32,261	26,922	24,064	32,231	16,374	46,660
가 계 지 출	27,490	20,424	26,308	23,100	27,576	47,956	17,592	31,046
자 산	407,872	383,842	428,245	343,705	375,859	748,682	216,088	690,911
부 채 (부채 / 자산)	27,262 (6.7)	13,495 (3.5)	23,952 (5.6)	19,582 (5.7)	81,199 (21.6)	52,985 (7.1)	10,089 (4.7)	102,770 (14.9)

주 : 1)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7.0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6천만원 이상인 반면, 2.0ha 미만은 3천만원대 이하로 나타났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자산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0〉 2012년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구 분	평 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 7.0	7.0~ 10.0	10.0ha 이상
농가소득	31,031	28,106	26,143	28,838	30,327	32,011	41,080	44,374	60,514	54,436
가계지출	27,490	26,766	24,542	24,284	26,613	28,494	34,170	37,171	43,696	37,176
자 산	407,872	303,201	340,989	391,009	404,230	463,320	589,477	564,583	969,128	875,200
부 채 (부채/자산)	27,262 (6.7)	18,670 (6.2)	20,007 (5.9)	20,710 (5.3)	26,854 (6.6)	26,101 (5.6)	38,616 (6.6)	54,571 (9.7)	158,865 (16.4)	68,762 (7.9)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40대 연령층의 소득이 47,932천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21,98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50대가 5억3천만원, 60대가 4억4천만원, 40대가 4억4천만원 순이다. 농가부채는 50대가 60,099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40대가 39,725천원, 30대가 37,254천원이나 70세 이상은 11,364천원으로 경영주 연령 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21〉 2012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구 분	평 균	39세 이하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농가소득	31,031	37,174	47,932	46,528	33,603	21,986
가계지출	27,490	36,679	39,892	41,387	29,410	19,829
자 산	407,872	364,751	442,983	535,759	444,307	333,328
부 채 (부채 / 자산)	27,262 (6.7)	37,254 (10.2)	39,725 (9.0)	60,099 (11.2)	30,830 (6.9)	11,364 (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11. 지역별 주요지표

제주지역 농가가 가구당 3천9백만원 수준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경기도 3천8백만원, 충남이 3천3백만원, 경북이 3천2백만원, 강원이 3천1백만원 내외이며, 전북, 전남,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산은 토지가격이 높은 경기지역이 7억2천만원대로 월등히 높고, 부채는 경기(48,931천원), 제주(35,591천원)지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22〉 2012년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소득	31,031	38,132	30,693	29,992	33,217	26,226	26,229	31,739	27,748	39,167
가계지출	27,490	36,606	27,237	27,367	26,869	24,130	23,228	24,067	27,748	33,561
자 산	407,872	724,467	399,945	339,345	418,054	326,228	257,518	318,842	333,679	520,572
부 채 (부채/자산)	27,262 (6.7)	48,931 (6.8)	29,263 (7.3)	23,418 (6.9)	19,575 (4.7)	25,367 (7.8)	18,532 (7.2)	21,831 (6.8)	26,546 (8.0)	35,591 (6.8)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권영욱

1. 개황

201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5로 전년에 비해 9.9%p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도 106.1로 전년 대비 2.6%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7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가교역조건이 100 이상인 것은 농가채산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10년=100)

구분 \ 연도	2005	2009	2010	2011	2012
농가판매가격지수(①)	92.5	93.4	100.0	107.6	117.5
농가구입가격지수(②)	81.8	98.5	100.0	103.5	106.1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113.1	94.8	100.0	104.0	110.7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1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5로 청과물(24.8% ↑), 과실(63.7% ↑), 곡물(6.4% ↑)은 전년에 비해 올랐으나, 축산물(15.5% ↓)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9.2%p 상승하였다.

❖ 곡 물

2012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8로 전년에 비해 6.4% 상승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미곡(6.8%), 맥류(10.5%), 서류(12.5%) 등은 전년보다 상승하고, 두류/잡곡(△1.0%)은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 청과물

2012년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9.0으로 전년 대비 24.8% 상승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5.1% 상승하였는데 품목별로 보면 배추 등 엽채류(0.9%), 조미채소(11.7%), 과채류(3.6%)는 상승하였으나, 근채류는 29.9% 하락하였다.

과실류는 사과(57.0%), 배(15.2%), 복숭아(3.8%), 포도(10.2%)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63.7% 상승하였다.

❖ 축산물

2012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1.5로 육우(17.4%)는 상승하였으나, 한우 암소(12.4%), 한우 수컷(3.4%), 한우 송아지 수컷(39.2%), 돼지(27.5%) 등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5.5% 하락하였다.

◆ 기타 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1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3으로서 전년 대비 5.6%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참깨(2.8%), 들깨(5.8%), 땅콩(30.3%), 표고버섯(7.2%) 등 특용작물은 전년 에 비해 6.5% 상승하고, 국화(3.4%), 양란(11.2%) 등 화훼류는 2.0% 상승하였다.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10년=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 대비 등락률	
		2005	2010	2011	2012	2011	2012
총 지 수	1,000	92.5	100.0	107.6	117.5	7.6	9.2
곡 물	280.8	101.5	100.0	113.5	120.8	13.5	6.4
미 곡	234.9	110.7	100.0	111.6	119.2	11.6	6.8
맥 류	5.5	118.1	100.0	97.3	107.5	△2.7	10.5
두 류 / 잡 곡	24.0	69.7	100.0	134.7	133.3	34.7	△1.0
서 류	16.4	68.7	100.0	114.7	129.0	14.7	12.5
청 과 물	407.0	88.5	100.0	111.4	139.0	11.4	24.8
채 소	269.1	81.7	100.0	111.8	117.5	11.8	5.1
(엽 채 류)	43.6	109.5	100.0	98.0	98.9	△2.0	0.9
(근 채 류)	9.6	53.7	100.0	156.3	109.5	56.3	△29.9
(조 미 채)	114.4	67.9	100.0	114.8	128.2	14.8	11.7
(과 채 류)	101.6	97.2	100.0	110.1	114.1	10.1	3.6
과 실	137.9	106.3	100.0	110.6	181.1	10.6	63.7
축 산 물	251.7	93.0	100.0	96.4	81.5	△3.6	△15.5
가 축	184.1	96.0	100.0	89.7	72.9	△10.3	△18.7
유 란	67.6	87.4	100.0	115.0	105.2	15	△8.5
기 타 농 산 물	60.4	75.4	100.0	101.6	107.3	1.6	5.6
특 용 작 물	42.1	100.0	100.0	103.2	109.9	3.2	6.5
화 훼	15.4	46.3	100.0	99.9	101.9	△0.1	2.0
부 산 물	3.0	109.6	100.0	87.8	97.9	△12.2	11.5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2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6.1로 가계용품(0.9%), 농업용품(4.6%), 농촌임료금(6.4%)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2.5% 상승하였다.

❖ 가계용품

2012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5.5로 식료품(3.2%), 의류 및 신발(5.0%), 보건(1.0%), 교통(4.0%) 등이 올라 전년보다 0.9% 상승하였다.

❖ 농업용품

2012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6.0으로 종자(25.0%), 비료(32.8%), 농약(18.6%) 등이 올랐으나, 가축(28.9%), 영농자재(2.2%) 등이 하락하여 전년보다 4.6% 상승하였다.

❖ 농촌임료금

2012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14.2로 전년보다 6.4%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노동임금은 6.4%, 농기계임차료는 5.9% 상승하였다. 🌐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0년=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 대비 등락률	
		2005	2010	2011	2012	2011	2012
총 지 수	1,000	81.8	100.0	103.5	106.1	3.5	2.5
가 계 용 품	576.0	85.0	100.0	104.6	105.5	4.6	0.9
농 업 용 품	377.5	73.8	100.0	101.3	106.0	1.3	4.6
종 자	29.9	93.9	100.0	103.3	129.1	3.3	25.0
비 료	39.0	46.7	100.0	73.4	97.5	-26.6	32.8
농 약	29.9	80.1	100.0	98.0	116.2	-2	18.6
농 기 구	64.0	83.3	100.0	105.4	110.9	5.4	5.2
영 농 광 열	26.7	82.9	100.0	124.4	132.8	24.4	6.8
가 축	51.3	121.5	100.0	80.2	57.0	-19.8	-28.9
사 료	125.0	60.2	100.0	110.7	112.1	10.7	1.3
영 농 자 재	11.7	80.7	100.0	114.8	112.3	14.8	-2.2
농 촌 임 료 금	47.1	84.9	100.0	107.3	114.2	7.3	6.4
농업노동임금	44.9	79.8	100.0	107.3	114.2	7.3	6.4
농기계임차료	2.2	91.0	100.0	106.3	112.6	6.3	5.9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권영욱

1. 개 황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12년 호당 노동시간은 1,034시간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54,609천원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50ha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영 농 시 간	1,376	1,253	1,487	1,103	1,091	1,034	△57	△5.2
농 업 자 본 액	21,323	31,425	49,721	53,323	54,976	54,609	△367	△0.7
호당경지면적	1.32	1.37	1.43	1.46	1.46	1.50	-	-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6,591원으로 전년 14,876원보다 11.5% 증가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1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78시간으로 전년보다 6.0% 감소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도 4,126천원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하였다.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구분 \ 연도	단 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 ¹⁾	원/시간	9,387	11,778	12,297	15,698	14,876	16,591	1,715	11.5
토지생산성 ²⁾	천원/10a	954	1,051	1,141	1,273	1,229	1,296	67	5.5
자본생산성 ³⁾	원/원	0.61	0.47	0.36	0.32	0.30	0.31	0.01	3.3
노동집약도 ⁴⁾	시간/10a	102	89	93	81	83	78	△5	△6.0
자본집약도 ⁵⁾	천원/10a	1,575	2,237	3,138	3,920	4,162	4,126	△36	△0.9

주 :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서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012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713천원으로 전년 628천원보다 13.5% 증가하였으며, 마늘은 2,811천원으로 전년 2,295천원보다 22.5% 증가, 양파는 1,826천원으로 전년 1,509천원보다 21.0%

증가하였고, 고추 또한 3,049천원으로 전년 2,063천원보다 47.8% 증가하였다.

2012년 10a당 경영비는 마늘이 1,452천원으로 가장 많고, 양파가 1,092천원, 고추 1,034천원, 논벼가 410천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10a당 소득을 보면 고추가 3,288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마늘 2,659천원, 양파 2,401천원, 논벼 57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논 벼	조수입(A)	737	1,041	879	822	968	989	21	2.2
	생산비(B)	412	538	588	614	628	713	85	13.5
	경영비(C)	198	280	334	388	398	410	12	3.0
	순수익(A-B)	325	503	292	208	340	276	△64	△18.8
	소 득(A-C)	539	761	546	434	570	578	8	1.4
마 늘	조수입(A)	2,001	1,427	2,007	4,268	4,562	4,111	△451	△9.9
	생산비(B)	1,067	1,226	1,423	1,811	2,295	2,811	516	22.5
	경영비(C)	582	683	798	1,091	1,510	1,452	△58	△3.8
	순수익(A-B)	934	201	584	2,457	2,267	1,300	△967	△42.7
	소 득(A-C)	1,420	744	1,209	3,177	3,053	2,659	△394	△12.9
양 파	조수입(A)	1,178	1,519	1,908	3,244	2,908	3,493	585	20.1
	생산비(B)	733	921	1,048	1,422	1,509	1,826	317	21.0
	경영비(C)	414	485	610	936	1,007	1,092	85	8.4
	순수익(A-B)	445	598	860	1,822	1,400	1,667	267	19.1
	소 득(A-C)	764	1,034	1,298	2,308	1,902	2,401	499	26.2
고 추	조수입(A)	1,613	1,837	2,209	2,452	4,217	4,322	105	2.5
	생산비(B)	937	1,127	1,497	1,908	2,063	3,049	986	47.8
	경영비(C)	347	428	638	929	994	1,034	40	4.0
	순수익(A-B)	676	711	712	544	2,155	1,273	△882	△40.9
	소 득(A-C)	1,266	1,410	1,572	1,523	3,224	3,288	64	2.0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3. 농림어업 부가가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김태우

2012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5년 연쇄(기준)가격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27조 6,870 억원 수준이다. 이 중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0% 증가, 어업은 2.4% 감소하였다.

농업 부가가치 중 재배업은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고, 축산업은 13.6% 증가하였다. 재배업 부가가치 감소는 종자, 비료, 임금 등의 투입비용 상승에 따른 것이며, 축산업 부가가치 증가는 주요 축종인 한육우, 돼지의 생산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어업 부가가치는 원양어업 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일반 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의 생산액 감소로 인하여 2.4% 감소하였다¹⁾.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단위 : 10억원, %, 2005년 연쇄가격)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p
농림어업		26,240	27,294	28,827	29,759	28,444	27,857	27,687
실질 증감률	농림어업	1.5	4.0	5.6	3.2	△4.4	△2.1	△0.6
	재배업	△0.6	1.2	5.0	2.1	△7.5	△2.0	△3.3
	축산업	3.4	9.1	10.6	4.8	7.8	△4.2	13.6
	임업	7.7	11.0	2.8	15.4	3.3	0.7	△7.6
	어업	11.3	12.7	1.9	2.2	△6.5	△1.7	△2.4
	농림어업 서비스	△3.2	△1.1	3.5	7.3	△3.1	3.4	1.6

자료 : 한국은행

1) 농림어업부문 생산액은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13'을 참고하였음.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 수급 동향

■ 식량정책과 서기관 노영호

◆ 식량 공급

2012 양곡년도 전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4,748천톤(정곡)으로 2011 양곡년도 4,839천톤보다 91천톤 감소하였다. 이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체 식량작물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쌀이 전년 4,295천톤에 비해 71천톤 감소한 4,224천톤 생산되었으며, 보리, 밀, 옥수수, 서류, 기타곡물도 전년보다 다소 적은 57천톤, 37천톤, 74천톤, 202천톤, 25천톤이 생산되었다. 반면 콩의 경우는 전년 105천톤에 비해 24천톤 증가한 129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단위 : 천톤)

양곡년도	합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09	5,488	4,843	149	19	93	133	224	27
2010	5,510	4,916	81	39	77	139	232	26
2011	4,839	4,295	75	44	74	105	220	26
2012	4,748	4,224	57	37	74	129	202	2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 식량 수요

소비량은 20,154천톤으로 전년 19,882천톤에 비해 272천톤 증가하였다. 식량용은 전년 대비 204천톤 감소하여 10,495천톤이 소비되었고, 사료용은 전년 대비 476천톤 증가하여 9,659천톤이 소비되었다. 사료용 작물 중 밀, 콩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식량의 연말재고는 1,938천톤으로 전년 2,156천톤에 비해 218천톤이 감소하였다. 이는 태풍 등으로 인해 전체 식량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2012년도 전체 곡물자급률은 23.6%로 2011년 24.3%보다 0.7p% 감소되었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45.3%로 2011년 45.3%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료용 작물의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11년 126.7kg보다 1.9kg 감소한 124.8kg으로 나타났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71.2kg에서 1.4kg 줄어든 69.8kg으로 나타났으며, 밀, 기타곡물은 전년도보다 각각 1.1kg, 0.5kg 줄어들어 33.9kg, 3.8kg으로 나타난 반면, 보리, 옥수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1.3kg, 3.7kg으로 나타났고, 콩, 서류는 전년도보다 각각 1.0kg, 0.1kg이 늘어난 8.8kg, 3.5kg으로 나타났다.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단위: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이 월	2,676	2,509	2,904	3,019	2,031	2,706	2,189	1,975	2,650	2,404	2,841	2,156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720	5,315	5,031	5,470	5,510	4,839	4,748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3,860	13,852	13,769	12,822	14,808	14,356	15,188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19,779	19,382	18,125	18,538	19,946	19,882	20,154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10,892	10,487	9,721	9,623	10,205	10,699	10,495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8,887	8,895	8,404	8,915	9,741	9,183	9,659
연말재고	2,179	2,280	3,657	3,119	2,625	2,507	1,975	2,650	2,404	2,835	2,156	1,938
자급률(%)	56.0	48.4	43.1	29.1	29.7	29.4	27.2	27.8	29.6	27.6	24.3	23.6
(사료용 제외)	(69.6)	(71.6)	(70.3)	(55.7)	(55.6)	(54.0)	(51.6)	(51.8)	(56.2)	(54.0)	(45.3)	(45.3)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3.3	137.5	131.9	127.3	125.4	125.6	126.7	124.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6	134.4	78.8	1.2	33.3	4.6	8.9	3.5	4.12
2007	131.9	76.9	1.1	33.7	4.5	8.5	3.3	3.9
2008	127.3	75.8	1.1	30.9	4.5	7.6	3.5	3.9
2009	125.4	74.0	1.2	31.4	4.0	7.6	3.4	3.8
2010	125.8	72.8	1.3	31.0	4.6	8.5	3.5	4.1
2011	126.7	71.2	1.3	35.0	3.7	7.8	3.4	4.3
2012	124.8	69.8	1.3	33.9	3.7	8.8	3.5	3.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2. 원예 · 특용작물

◆ 채소류

원예산업과 사무관 송재원

2012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2% 감소한 252.2천ha였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11.1% 감소한 8,662천톤이었다.

봄무 · 배추 재배면적은 13.4천ha로 전년에 비해 44.4% 감소하고 생산량도 작황이 좋았던 지난해에 비해 45.9% 감소한 587천톤이었다. 고랭지 무 · 배추는 재배면적이 8.0천ha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275천톤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하였다. 가을무 · 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5.3% 감소한 20.2천ha였고, 생산량은 31.2% 감소한 1,798천톤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46천ha로 전년보다 6.9%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전년 77천톤보다 35.0% 증가한 104천톤이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8천ha로 전년보다 16.7% 증가하였고, 14.9% 증가한 339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8.7% 감소한 21천ha가 재배되었고, 생산량은 21.3% 감소한 1,196천톤이었다.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천톤)

구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0,193	10,730	10,224	10,753	10,557	9,235
	내수	8,677	10,611	11,461	10,104	10,658	10,155	10,658	10,450	9,139	10,672	9,717
	수출	20	59	41	89	72	69	95	107	96	82	129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0,193	10,730	10,224	10,753	10,557	9,235	10,754	9,846
	생산	8,677	10,586	11,282	9,605	9,994	9,394	9,935	9,889	8,391	9,747	8,662
	수입	20	84	220	588	736	830	818	668	854	1,007	1,184
1인당소비량(kg)		132.6	160.6	165.9	145.5	153.8	149.9	154.2	148.9	132.2	150.6	-

주: 1인당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표 1-2-5〉 품목별 채소류 생산동향

(단위: ha, 천톤)

구분	연도	2011			2012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엽근채소	배추	35,513	7,549	2,681	30,540	7,045	2,151
	무	23,068	5,362	1,237	21,821	5,224	1,140
	상추	4,691	2,490	117	4,252	2,633	112
	양배추	6,767	5,445	368	5,867	5,163	303
	당근	2,849	3,289	94	2,214	2,881	64
양념채소	고추	42,574	181	77	45,459	229	104
	마늘	24,035	1,227	295	28,278	1,199	339
	양파	22,976	6,616	1,520	20,965	5,703	1,19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 과실류

▮ 원예경영과 농업사무관 김기주

과수 총 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은 159.7천ha로 전년 161.2천ha에 비해 1.5천ha가 감소하였다. 과종별로는 사과 433ha, 배 728ha, 포도 264ha, 감귤 62ha, 단감 909ha가 감소하였으나, 복숭아는 540ha가 증가하였다.

2012년 과실 생산량은 2,374천톤으로 전년의 2,458천톤에 비해 3.4%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주요 과실품목의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배 생산량이 173천톤으로 전년의 291천톤보다 40.6% 감소함으로써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 그 원인으로는 타 과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데다,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적은 매실 등 다른 과수재배로 전환하여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3.5% 감소하였으며, 8월 말~9월 볼라벤 등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심하여 전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인당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61.8kg이었다.

과실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과실 크기가 작은 것보다 큰 과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과실류 수출은 주로 배, 단감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12년 전년 대비 수출량은 줄어든 반면 수출액은 75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 70백만달러 대비 7.1% 증가하였다. 특히 배 수출은 2011년 47백만달러에서 2012년 50백만달러로 6.4% 증가하였다.

〈표 1-2-6〉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천톤)

구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요	내 수	1,790	2,473	2,747	3,029	3,294	3,182	3,299	3,051	3,104	3,090
	수 출	13	11	20	36	31	39	51	40	32	30
공급	생 산	1,766	2,300	2,429	2,593	2,750	2,698	2,881	2,489	2,459	2,374
	수 입	37	184	338	472	575	523	469	602	677	746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8	62.6	67.9	65.5	67.7	62.4	62.4	61.8

자료 : 농림수산물부 원예경영과

❖ 화훼류

▮ 원예경영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2012년 기준으로 화훼류는 전국 9,450호에서 총 7,567억원을 생산·판매하여 2011년 10,054호에서 8,215억원을 생산·판매한 실적에 비하면 각각 28%, 14% 감소되었다. 이는 유가 고공행진,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화훼류 생산 농가의 경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재배

면적은 2011년 6,833ha에서 6% 감소한 6,429ha 수준이다.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 또한 2011년도 15,482원보다 7% 하락한 14,835원으로, 여전히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화훼류 수출액은 2011년까지 시설현대화, 증개축 등 규모화 지원,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지열, 목재펠릿 등)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의 경우는 수출 주 상대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화훼류 수출액이 2011년 90,596천달러보다 7% 감소한 83,960천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화훼류 수입금액은 2011년 44,427천달러보다 8% 증가한 47,852천달러였다.

〈표 1-2-7〉 화훼산업 현황

연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배농가 (호)	8,945	12,509	13,080	12,859	12,021	11,588	10,685	10,347	10,054	9,450
재배면적 (ha)	3,674	5,343	6,047	7,950	7,509	7,073	6,639	6,829	6,833	6,429
생산액 (억원)	2,628	5,090	6,650	10,105	9,237	8,969	8,640	8,510	8,215	7,567
수출액 (천달러)	1,443	6,363	28,888	52,142	58,089	76,222	77,179	103,067	90,596	83,960
수입액 (천달러)	5,907	26,738	19,472	28,845	40,974	42,757	38,107	44,744	44,427	47,85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특용작물

▮ 원예산업과 사무관 황신구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생산량은 2011년 대비 2.51% 증가한 9.8천톤, 2012년 자급률은 11.0% 수준이다.

* 생산량 : ('97)33천톤 → ('00)32 → ('05)23.5 → ('10)12.7 → ('11)9.5 → ('12)9.8

참깨 수입은 연간 70천~80천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으로 도입되어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 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2년 생산량은 2011년 대비 8.52% 감소한 9.9천톤이며, 자급률은 25.1% 수준이다.

* 생산량 : ('98)14천톤 → ('00)9 → ('05)6.6 → ('10)13.9 → ('11)10.8 → ('12)9.9

〈표 1-2-8〉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참깨							땅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수요	계	57.8	88.9	101.6	100.6	93.4	96.3	96.0	44.2	29.7	42.9	40.8	43.6	43.3	40.2
	당년소비	56.8	86.3	94.6	90.7	86.9	90.2	88.7	40.1	25.1	41.0	39.9	43.1	42.6	39.5
	수출	0.4	-	-	-	-	-	-	-	2.3	0.4	-	-	-	-
	차년이월	0.6	2.6	7.0	9.9	6.5	6.1	7.3	4.1	2.3	1.5	0.9	0.5	0.7	0.7
공급	계	57.8	88.9	101.6	100.6	93.4	93.1	96.3	44.2	29.7	42.9	40.8	43.6	40.1	39.3
	전년이월	4.7	19.0	7.5	13.1	5.1	7.0	4.8	8.1	3.3	2.7	1.1	1.0	0.4	0.5
	생산	38.1	27.9	24.1	20.9	12.7	9.5	9.8	28.7	16.8	12.4	8.3	13.9	10.8	9.9
	수입	15.0	42.0	70.0	66.6	75.6	76.6	81.7	7.4	9.6	27.8	31.4	28.7	28.9	28.9
자급률 (%)		67	32	30	23	14	14	11.0	72	67	30	21	32	32	25.1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관실

버섯 생산량은 소득 향상과 식품의 고급화에 따라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농산 버섯 생산량은 2011년 대비 4.9% 증가한 173.4천톤이며,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버섯 등 4품목 생산량이 164.4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4.8%를 차지한다.

* 생산량 : ('97)114천톤 → ('00)117 → ('05)162 → ('10)174 → ('11)165 → ('12)173

〈표 1-2-9〉 버섯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수요	계	58.4	103.3	126.8	174.2	190.2	184.4	191.4
	당년 소비	55.4	103.2	126.6	173.7	169.0	166.2	176.8
	수출	3.0	0.1	0.2	0.5	21.2	18.2	14.6
	차년 이월	-	-	-	-	-	-	-
공급	계	58.4	103.3	126.8	174.2	190.2	184.4	191.4
	전년 이월	-	-	-	-	-	-	-
	생산	55.3	95.8	117.6	162.1	173.6	165.3	173.4
	수입	3.1	7.5	9.2	12.1	13.8	19.4	18.0
자급률(%)		100	93	93	93	103	99.5	98.1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수출은 팽이, 새송이버섯의 생산기술 향상으로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수출액은 2011년 대비 12.4% 감소한 33,501천달러이다.

* 수출액 : ('00)5,562달러 → ('08)23,185 → ('09)33,038 → ('10)38,886 → ('11) 38,112 → ('12) 33,501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단위 : 천달러)

구분 \ 연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액(천달러)	5,562	8,633	23,185	33,038	38,886	38,112	33,501
팽이	62	3,448	11,259	21,276	26,296	22,591	16,863
새송이	-	3,455	7,298	9,667	11,267	13,671	12,483
느타리	23	693	1,347	224	311	351	746
기타	5,477	1,037	3,281	1,871	1,012	1,499	3,409

자료 :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관실

◆ 인삼류

▮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정락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품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수출상품이다. 우리나라의 인삼 가공기술은 해외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매우 뛰어나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1996년 홍삼 전매제 폐지 이후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경작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식재면적이 감소하여, 2012년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8.1% 감소한 16,174ha이다.

인삼 재배농가 수는 2011년 23,578호, 2012년 23,795호로 전체 농가 수의 2% 수준이지만, 인삼 수출액은 2012년 151백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11〉 인삼류 생산동향

(단위 : ha, 톤, 호 백만달러)

구분 \ 연도	1990	1995	1996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배면적	12,184	9,375	8,940	12,445	14,153	17,831	19,408	19,702	19,010	17,601	16,174
생산량	13,889	11,971	10,147	13,664	14,561	21,818	24,613	27,460	26,944	26,737	26,057
농가수	36,404	23,172	23,304	23,011	15,793	19,850	24,298	23,285	23,857	23,578	23,795
수출액	165	140	113	79	82	92	97	109	124	189	15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인삼통계자료집 2012년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축산물

▮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

◆ 쇠고기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 말에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

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도 소비량은 전년보다 3.9% 감소한 486천톤이었다.

2012년도 소비량 중 국내산은 234천톤으로 8.4%가 증가한 반면, 수입산은 252천톤으로 전년보다 12.4% 감소하였다. 한편 2012년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9.7kg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하였다.

〈표 1-2-12〉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천톤)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소비량	317	330	369	365	396	431	505	486
국 내 산	152	158	171	173	198	186	216	234
수 입 산	164	172	198	191	198	245	289	252
1인당 소비량(kg)	6.7	6.8	7.6	7.5	8.1	8.8	10.2	9.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지 소값은 2003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04년 5월 350만원(큰수소 기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산지 소값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5년 533만원, 2006년 565만원, 2007년 537만원대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여파로 2008년 8월 505만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08.7) 및 쇠고기이력제 전면 시행('09.6), 한우산업발전대책('08.12) 추진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어 2009년 616만원, 2010년에 595만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사육두수 과잉 등에 의해 2010년 10월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되어 현재('13.9)까지 지속되고 있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 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6년 202만두, 2008년 243만두, 2010년 292만두, 2011년에는 295만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 사육두수는 306만두로 전년보다 3.7%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 수는 2008년 12월 181천호, 2009년 12월 175천호, 2010년 12월 172천호, 2012년 12월 147천호로 전년(163천호) 대비 9.8%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8년 12월 13.4두, 2009년 12월 15.1두, 2010년 12월 17.0두, 2011년 12월 18.1두에서 2012년 12월 20.8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 규모화는 산지 소값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12년 총 소비량은 2011년 946천톤보다 1.5% 증가한 960천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11년 19.0kg에서 2012년 19.2kg으로 비슷하게 소비되었다. 한편 돼지 사육두수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을 극복하여 2011년 12월 8,171천두에서 2012년 12월에는 9,916천두로 21.4% 증가하였고, 2012년 12월 모돈 수는 962천두로 2011년 12월 903천두보다 6.5% 증가하였다.

사육가구 수는 2011년 12월 6.4천 가구에서 2012년 12월 6.0천두 가구로 6.3%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11년 12월 1,287두에서 2012년 12월 1,642두로 증가하였다.

산지 돼지가격도 2011년 연간 평균가격이 490천원/110kg이었으나 2012년은 335천원/110kg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구제역에서 회복하여 사육 마릿수가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 닭고기

닭고기의 2012년 총 소비량은 2011년 566천톤보다 2.2% 증가한 579천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10.7kg, 2011년 11.4kg, 2012년 11.6kg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8.7% 감소하여 연평균 1,698원/kg이었으며, 2012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76백만마리였다.

전체 사육가구 수는 2012년 12월에 1.6천호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48,459마리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1,167호로 규모화·전업화가 가속되고 있다.

❖ 계란

계란의 2012년 총 소비량은 607천톤으로 2011년보다 5.4%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4.3% 증가한 12.1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130원/10개(특란기준)이었다.

❖ 우유

2012년 원유 총 생산량은 2,111천톤으로 2011년 1,889천톤 대비 11.7%(222천톤) 증가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 포함)은 3,452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11년 3,596천톤보다 4.0% 감소하였고, 시유 소비량은 2012년 1,685천톤으로 2011년보다 3.7%(61천톤) 증가하였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67.2kg으로 2011년 70.7kg보다 5.0% 감소하였으며, 음용유 소비량은 33.6kg으로 전년 32.6kg보다 1.0kg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출산, 대체음료 개발 등으로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의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도 국산원유 2,111천톤 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 양은 1,915천톤(백색시유 1,406, 가공시유 172, 기타 유제품 337)으로서 전년도 투입량 1,823천톤에 비해 5.0% 증가하였으며, 잉여량(분유가공량)은 전년 66천톤에 비해 198% 증가한 196천톤 수준이었다.

우유 자급률은 구제역 피해 회복을 위한 생산증량 정책 시행으로 전년에 비해 9.1% 증가한 62.8%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생산비 산출기준 변경 등에 따른 자가노동비·가축상각비 증가 및 부산물 수입 감소로 전년 718원/ℓ 보다 9.3% 높아진 784원/ℓ 으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12년 12월 420천두로 지난해 404천두보다 4.1% 증가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도 2011년 12월 6,068호에서 2012년 12월 6,007호로 1.0% 감소되었다.

낙농업의 전업화 및 구제역 피해 농가의 젖소 입식확대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12년 12월 69.9두로 전년 동월 66.5두보다 5.1% 증가하였다.

❖ 사료작물

▮ 축산경영과 사무관 서정호 · 홍기성

2012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6,845천톤으로 전년(24,960천톤)보다 7.6% 증가하였으며, 이 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21,182천톤, 조사료가 5,663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8,640천톤으로 전년(16,815천톤)보다 10.9% 증가하였다.

〈표 1-2-13〉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1995	2000	2006	2009	2010	2011 (A)	2012 (B)	증감률 (B/A)
합 계	23,302	19,289	21,271	24,547	25,157	24,960	26,845	7.6
농 후 사 료	15,700	15,897	17,049	19,344	20,124	19,383	21,182	9.3
배 합 사 료	14,856	15,105	15,693	16,665	17,710	16,815	18,640	10.9
농 가 자 급 사 료	844	792	1,356	2,679	2,414	2,568	2,542	△1.0
조 사 료	7,602	3,392	4,222	5,203	5,033	5,577	5,663	1.5
사료작물 및 목초류	2,498	992	1,326	2,101	1,870	2,454	2,503	2.0
산야초, 볏짚 등	5,265	2,400	2,896	3,102	3,163	3,123	3,160	1.2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이며,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종별로는 한육우용 7.3%, 양돈용 26.8%, 젖소용 7.8%, 양계용 1.6%, 기타 6.4%로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FMD 영향으로 인해 감소되었던 돼지 등의 사육 마릿수가 FMD 발생 이전의 사육두수를 회복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2년 배합사료 가격은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1년 대비 5.3% 인상되었다.


〈표 1-2-14〉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6	2009	2010	2011 (A)	2012 (B)	증감률 (B/A)
합 계	10,518	14,856	15,105	15,693	16,665	17,710	16,815	18,640	10.9
양 계 용	3,274	3,766	3,867	4,267	4,463	4,658	4,748	4,823	1.6
양 돈 용	3,551	4,725	5,215	5,175	5,332	5,535	4,482	5,685	26.8
젖 소 용	1,790	2,905	1,892	1,539	1,311	1,292	1,240	1,337	7.8
한 육 우 용	1,667	3,680	3,340	3,574	4,310	4,761	4,792	5,143	7.3
기 타	236	589	792	1,138	1,249	1,464	1,553	1,652	6.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자급도를 높이고,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의 기반인 초지면적은 2012년 현재 38천ha로 266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고,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어려운 반면, 레저·관광산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 제외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표 1-2-15〉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분 \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0	2011 (A)	2012 (B)	증감률 (B/A)
관 리 면 적	51,870	46,546	42,114	40,057	39,371	38,953	37,675	△3.3
목 초 생 산 량	364	343	294	280	273	273	266	△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2005~2011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2.9%로 같은 기간 소비 지출액 증가율 3.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식품류별로는 빵 및 떡류(8.8%), 당류 및 과자(5.7%), 육류 및 육류가공품(5.5%)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2.3%), 외식비(2.2%)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2011년 4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9.2%), 채소 및 채소가공품(5.9%), 곡류 및 곡류가공품(5.8%)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유지류(0.4%), 해조 및 해조가공품(0.7%), 기타식품(1.6%)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1-2-16〉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도시가구)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및 곡물 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채소 및 채소 가공품	해조 및 해조 가공품	당류 및 과자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차, 음료, 주류	외식비
2005	1,925.6	546.6 (100)	39.2 (7.2)	12.9 (2.4)	43.5 (8.0)	32.1 (5.9)	24.8 (4.5)	2.3 (0.4)	32.2 (5.9)	31.8 (5.8)	6.2 (1.1)	17.6 (3.2)	11.6 (2.1)	7.7 (1.4)	21.8 (4.0)	262.7 (48.1)
2006	1997.4	551.8 (100)	36.5 (6.6)	13.7 (2.5)	44.9 (8.1)	33.3 (6.0)	24.0 (4.3)	2.4 (0.4)	33.8 (6.1)	32.8 (5.9)	6.3 (1.1)	16.4 (3.0)	11.7 (2.1)	8.5 (1.5)	22.6 (4.1)	264.9 (48.0)
2007	2072.6	565.0 (100)	35.5 (6.3)	14.9 (2.6)	46.1 (8.2)	34.0 (6.0)	23.8 (4.2)	2.3 (0.4)	34.1 (6.0)	33.9 (6.0)	6.5 (1.2)	16.7 (3.0)	10.2 (1.8)	8.8 (1.6)	22.7 (4.0)	275.3 (48.7)
2008	2179.6	605.3 (100)	39.2 (6.5)	17.5 (2.9)	50.5 (8.3)	35.3 (5.8)	27.0 (4.5)	2.8 (0.5)	36.4 (6.0)	33.4 (5.5)	6.9 (1.1)	18.7 (3.1)	10.9 (1.8)	9.4 (1.6)	24.8 (4.1)	292.8 (48.4)
2009	2179.9	589.7 (100)	37.2 (6.3)	18.5 (3.1)	52.4 (8.9)	34.2 (5.8)	28.7 (4.9)	2.9 (0.5)	36.1 (6.1)	32.0 (5.4)	3.9 (0.7)	19.8 (3.4)	10.9 (1.8)	8.9 (1.5)	24.4 (4.1)	280.0 (47.5)
2010	2,312.5	619.6 (100)	34.5 (5.6)	20.3 (3.3)	56.0 (9.0)	34.9 (5.6)	29.3 (4.7)	2.8 (0.5)	38.5 (6.2)	39.2 (6.3)	4.1 (0.7)	22.0 (3.6)	10.9 (1.8)	9.9 (1.6)	26.3 (4.2)	290.9 (47.0)
2011	2404.3	650.5 (100)	37.7 (5.8)	21.4 (3.3)	60.1 (9.2)	36.9 (5.7)	30.3 (4.7)	2.8 (0.4)	40.7 (6.3)	38.3 (5.9)	4.4 (0.7)	24.5 (3.8)	14.7 (2.3)	10.1 (1.6)	28.6 (4.4)	300.2 (46.1)
2005 ~2011	3.8	2.9	-0.7	8.8	5.5	2.3	3.4	3.3	3.9	3.1	-5.8	5.7	4.1	4.7	4.6	2.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11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소득계층(3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빵 및 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유제품 및 알, 기타식품, 당류 및 과자, 차·음료·주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정도가 작은 품목은 채소 및 채소가공품, 곡물 및 곡물가공품 등이다. 조미식품은 소득 증가에 따라 오히려 지출액이 감소하였다.

〈표 1-2-17〉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2011년도 도시가구평균)

(단위: 천원)

구 분	1·2분위		3분위		4·5분위	
소 비 지 출	1,584	(67.3)	2,353	(100)	3,249	(138.1)
식 료 품	470	(72.1)	652	(100)	830	(127.2)
곡류 및 곡류가공품	35	(96.8)	36	(100)	41	(111.6)
빵 및 떡 류	15	(69.3)	21	(100)	28	(130.5)
육류 및 육류가공품	46	(77.0)	60	(100)	75	(125.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3	(94.3)	35	(100)	42	(121.3)
유 제 품 및 알	23	(72.5)	31	(100)	38	(120.4)
유 지 류	3	(91.6)	3	(100)	3	(114.4)
과일 및 과일가공품	30	(73.4)	40	(100)	52	(129.0)
채소 및 채소가공품	36	(97.4)	37	(100)	41	(109.9)
해조 및 해조가공품	4	(87.8)	4	(100)	5	(116.6)
당 류 및 과 자	18	(70.1)	26	(100)	30	(114.7)
조 미 식 품	15	(112.7)	13	(100)	15	(110.6)
기 타 식 품	8	(71.3)	11	(100)	13	(118.5)
차 · 음료 · 주 류	22	(74.4)	30	(100)	35	(116.5)
외 식 비	184	(60.4)	305	(100)	414	(136.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는 대체로 감소 추세이며, 지방과 비타민C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2,045kcal, 단백질 73.6g, 지방 44.2g, 철 14.6mg, 비타민C 105.7m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8〉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구분 연도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	1.2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2	1.3	21.6	81.2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2	1.2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4	1.1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3	1.1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	1.2	17.1	98.2
2007	1,810	65.4	37.7	462	12.9	711	1.2	1.1	14.7	92.8
2008	1,838	65.8	38.8	476	12.9	721	1.2	1.1	14.9	96.3
2009	1,883	67.6	40.5	492	13.4	766	1.3	1.2	15.4	100.2
2010	2,051	74.0	44.8	530	14.6	806	1.4	1.3	17.0	106.0
2011	2,045	73.6	44.2	518	14.6	815	1.4	1.3	17.0	105.7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2.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10년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72.9%로 매우 낮았다. 철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다. 단백질(163.4%), 철(139.9%), 비타민A(126.5%), 티아민(126.4%), 나이아신(120.0%), 비타민C(112.8%)는 섭취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99.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1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 연도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에너지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87.5	89.0	91.1	99.2	99.1
단백질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142.9	143.8	148.9	163.0	163.4
칼슘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63.4	65.4	67.4	74.0	72.9
철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119.8	119.4	123.7	139.4	139.9
비타민A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108.4	110.9	118.7	123.7	126.5
티아민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114.4	113.1	117.5	128.1	126.4
리보플라빈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82.5	87.0	94.9	103.3	103.1
나이아신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102.6	104.1	108.6	119.6	120.0
비타민C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99.3	103.3	108.5	114.7	112.8

주 :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2.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 비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당질 61.1%, 단백질 13.9%, 지방 24.9%로 나타났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식품 수요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10년 곡류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되었으나, 수입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채소류와 과일류는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입량도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서류는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육

류는 구제역의 여파로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어패류는 국내 생산량 한계 및 수요 증가, 수입자유화 영향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해조류는 양식 작황 양호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쌀 생산량이 621천톤 감소하여, 수입량과 이입량이 각각 20천톤, 516천톤 증가하였으나, 1인당 식용공급량은 81.46kg에서 80.60kg으로 0.86kg 감소하였다. 밀 생산량은 8천톤 증가하였으나, 수입량과 이입량이 각각 전년 대비 72천톤, 28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33.33kg에서 31.97kg으로 감소하였다.

감자는 2011년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2.8%나 증가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4천톤 정도 증가하고, 수입량은 19.6천톤이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8.92kg에서 9.26kg으로 0.34kg 증가하였다. 고구마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0% 감소하고,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21.2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전년 대비 4.92kg에서 4.56kg으로 0.36kg 감소하였다.

채소류는 무, 배추, 파 등의 생산량 증가에 의해 전체 생산량이 1,331.1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132.16kg에서 150.56kg으로 18.4kg 증가하였다. 배추는 전년도의 가격 강세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6.3% 증가하여 생산량이 898천톤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배추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26.5kg에서 36.9kg으로 전년 대비 10.4kg(39.2%)이나 증가하였다. 무는 2011년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하여 생산량은 197천톤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은 13.8kg에서 16.5kg으로 2.7kg(19.6%) 증가하였다. 파는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65천톤 증가하였으며, 식용공급량은 6.0kg에서 7.5kg으로 1.5kg 증가하였다.

〈표 1-2-20〉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10(확정)	2011(잠정)	증가율(%)
곡 류	145.10	148.9	△2.62
쌀	81.46	80.60	▽1.06
보 리	1.34	1.33	▽0.75
밀	33.33	31.97	▽4.08
옥 수 수	26.37	31.37	△18.96
기 타	2.60	3.63	△39.62
서 류	13.84	13.83	▽0.07
감 자	8.92	9.26	△3.81
고 구 마	4.92	4.56	▽7.32
설 탕 류	22.72	22.75	△0.13
두 류	10.40	11.31	△8.75
콩	8.44	9.18	△8.77
팥	0.61	0.6	▽1.64
기 타	1.35	1.53	△13.33
견 과 류	1.51	1.52	△0.66
종 실 류	0.71	0.85	△19.72
참 깨	0.35	0.38	△8.57
기 타	0.36	0.47	△30.56
채 소 류	132.16	150.56	△13.92
과 실 류	44.17	44.66	△1.11
육 류	43.54	44.21	△1.54
쇠 고 기	8.44	9.83	△16.47
돼 지 고 기	18.45	18.28	▽0.92
닭 고 기	8.26	8.88	△7.51
부 산 물	8.39	7.22	▽13.95
계 란 류	9.88	9.75	▽1.32
우 유 류	56.99	59.15	△3.79
우 유	56.15	57.94	△3.19
어 패 류	36.55	37.81	△3.45
어 류	22.67	22.62	▽0.22
패 류	13.88	15.2	△9.51
해 조 류	14.68	15.73	△7.15
유 지 류	13.88	14.73	△6.12
식 물 성	13.47	14.43	△7.13
동 물 성	0.42	0.30	▽28.57
주 류	74.47	80.67	△8.3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식품수급표」, 2012.

과실은 기상악화로 사과, 배, 단감, 포도 등 대부분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수입량 증가로 1인당 식용공급량은 0.5kg 증가하였다. 사과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개화기 동해 피해와 성장기 잦은 강우로 인한 병해 발생으로 대과생산이 저조하여 생산량은 81천톤 감소하였다. 배는 폐원 및 타 품목 전환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잦은 강우에 따른 병해와 태풍으로 인한 낙과가 발생하여 생산량이 약 17천톤 감소하였다. 귤은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해거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66천톤 증가하였다.

쇠고기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생산량이 30.2천톤 증가하고, 수입량도 44.3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8.44kg에서 9.83kg으로 1.39kg 증가하였다. 돼지는 구제역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5.5kg이나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190.9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18.45kg에서 18.28kg으로 0.17kg 정도 감소하였다. 닭고기는 구제역의 반사효과와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에 따른 가공수요 등의 증가로 양계농가의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 생산량이 31천톤, 수입량이 25.1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8.26kg에서 8.88kg으로 증가하였다.

어류는 2011년도 생산량이 전년 대비 52.5천톤 증가하였으나, 수입량과 수출량이 각각 362.1천톤, 188.2천톤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은 22.7kg에서 22.6kg으로 전년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패류는 생산이 27.0천톤 증가하고 수입량도 97.8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13.9kg에서 15.2kg으로 1.3kg 증가하였다. 해조류는 양식작황 호조로 생산이 92.3천톤 증가하고, 수입도 29.7kg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14.7kg에서 15.7kg으로 1.0kg 증가하였다.

식물성 유지는 생산량과 수입량이 각각 1.1천톤, 55.3천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13.5kg에서 14.4kg으로 0.9kg이 증가하였다. 동물성 유지는 어유의 생산이 전년 대비 5.7천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입량도 0.3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0.42kg에서 0.30kg으로 0.12kg 감소하였다.

◆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곡류 자급률은 1990~2011년 43.8%에서 23.1%, 채소류는 98.9%에서 90.4%, 과실류는 102.5%에서 78.5%, 육류는 92.9%에서 68.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2.8%에서 53.4%, 어패류는 121.7%에서 70.5%, 유지류는 8.0%에서 1.8%로 하락하였다.

〈표 1-2-21〉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영 자급	칼로리	62.6	50.6	50.6	45.4	44.9	44.1	48.3	49.8
단백질	67.8		57.2	52.8	47.0	46.3	46.5	49.4	49.5	47.6	41.9
지방	30.3		26.8	21.4	18.1	17.6	17.7	22.6	21.4	20.4	17.8
물기 자급	곡류	43.8	30.0	30.8	29.4	27.8	27.4	28.4	30.2	28.1	23.1
	쌀	108.3	91.1	102.9	96.0	95.3	98.3	94.4	101.1	104.5	83.0
	두류	24.5	11.7	8.2	10.7	14.2	11.6	9.3	10.7	11.0	7.6
	채소류	98.9	99.2	97.7	94.5	92.2	90.4	91.0	93.7	90.1	90.4
	과실류	102.5	93.2	88.7	85.6	82.7	83.5	84.8	87.0	81.0	78.5
	육류	92.9	89.2	83.9	81.6	78.4	78.2	78.6	77.5	78.6	68.8
	쇠고기	53.6	50.8	53.2	48.1	47.8	46.4	47.6	42.2	43.2	42.8
	돼지고기	100.3	96.6	91.6	83.7	77.4	75.8	76.5	78.9	81.0	61.4
	닭고기	100.0	98.1	79.9	84.3	82.6	87.7	86.4	87.1	83.4	80.6
	계란류	100.0	99.9	100.0	99.3	99.4	99.4	99.7	99.8	99.7	99.5
	우유류	92.8	93.3	81.2	72.8	72.4	70.8	72.3	70.5	66.3	53.4
	어패류	121.7	100.4	87.7	60.0	64.0	72.3	72.4	72.8	68.1	70.5
	유지류	8.0	4.8	3.2	2.8	1.9	1.7	3.3	2.4	2.6	1.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식품수급표」, 2012.

칼로리 자급률²⁾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11년 40.2% 수준으로 1970년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11년 41.9%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11년 17.8% 수준이다.

2) 1990년부터 「식품수급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 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 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의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조식품 기준)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58.5kg), 채소류(168.9kg), 어패류(77.4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두류(13.5kg), 과실류(56.6kg), 육류(47.4kg), 우유류(59.2kg) 등은 비교적 적다.

곡류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158.5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며,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 1년당 공급량은 13.6kg으로 대부분의 국가보다 적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2011년에 168.9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47.4kg으로 일본, 파키스탄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와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계란류(11.3kg), 우유류(59.2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77.4kg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1-2-22〉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 공급량 비교

(단위 : kg)

국가·연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구분	2011	2005	2005	2005	2005	2005
곡 류	158.5	173.4	91.1	177.2	137.7	153.7
서 류	12.8	38.4	21.4	57.4	74.1	13.8
설 탕 류	14.1	119.3	24.6	173.9	205.7	224.7
두 류	13.5	73.7	26.1	86.9	63.5	54.4
채 소 류	168.9	130.7	113.2	125.5	133.6	29.6
과 실 류	56.6	58.4	138.6	122.8	135.1	31.0
육 류	47.4	34.8	78.2	93.7	77.3	15.0
계 란 류	11.3	18.7	18.0	14.8	11.8	2.1
어 패 류	77.4	64.8	31.0	23.4	14.3	1.8
우 유 류	59.2	75.5	21.5	256.5	308.0	151.4
유 지 류	0.3	0.5	24.0	1.4	2.6	0.9

-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3)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4)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식품수급표」, 2012.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6%씩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하여 2001년엔 3,000kcal에서 2011년도에는 2,929kcal로 감소하여 연평균 0.2%씩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 데 기인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11년 현재 에너지원의 55.8%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6.7%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유럽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3〉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 비교

구분 \ 국가·연도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파키스탄
	2011	2005	2005	2005	2005	2005
에너지(kcal)	2,929	2,837	2,955	3,690	3,584	2,422
전분질(%)	55.8	65.4	41.2	57.1	48.6	64.8
설탕(%)	8.2	7.6	9.0	8.0	10.9	13.0
동물성(%)	16.7	20.5	21.4	27.7	32.0	17.8
유지류(%)	12.4	0.4	19.6	0.9	1.8	0.9
기타(%)	6.9	6.0	8.9	6.4	6.7	3.5
1인당GNI(달러)	22,489	38,950	16,067	43,560	34,870	690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2)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3)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과 한국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식품수급표」, 2012.

3. 식품산업 동향

■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임영조

◆ 식품제조업

2011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는 4,360개로 2000년(3,431개)보다 27.1%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77천명으로 2000년(158천명)보다 11.4%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11년 70.2조원으로 2000년 34.0조원 대비 106.5% 증가하였다.

2011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161억원으로 2000년 99억원보다 62.6%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4억원으로 2000년(0.95억원) 대비 43.2%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2011년 34.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4〉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구분 \ 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체수(A)	3,431	4,057	4,257	4,061	4,169	4,261	4,360
종사자수(B)	158	157	163	161	167	171	177
출하액(C)	34,071	44,381	48,149	55,212	60,771	65,725	70,208
업체당 출하액(C/A)	9,931	10,939	11,311	13,596	14,557	14,955	16,103
1인당 부가가치	95.3	113.1	119.5	128.3	130.6	132.4	136.2
부가가치율	44.2	40.0	40.4	37.4	35.9	35.6	34.3

주: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종사자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출하액×10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18.4조원(전체 식품제조업의 28.1%), 사업체수 1,476개(36.6%)로 전체 식품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11년 음료 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248개(5.8%), 출하액 7.9조원(12.0%) 수준을 보였다.

2011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806개),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633개),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431개),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 제조업(281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

리업(10.5조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8.3조원),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6.2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4.8%가 경기(1,084개)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충남(414개, 9.5%)지역에 사업체가 많이 있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7.1조원), 충남(8.8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인천 342.4억원, 최저:전남 73.3억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5〉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11)

(단위: 개,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비중(%)
식품 제조업	4,269	169,297	65,446,171	100.0
식료품 제조업	4,021	156,210	57,595,780	88.0
-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	633	29,246	10,480,158	16.0
-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806	24,566	4,484,808	6.9
-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431	13,540	2,257,072	3.4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59	2,228	2,505,155	3.8
-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8,629	6,197,184	9.5
-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 제조업	281	7,734	4,973,680	7.6
- 기타 식품제조업	1,476	62,964	18,372,036	28.1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29	7,303	8,325,687	12.7
음료 제조업	248	13,087	7,850,391	12.0
- 알콜 음료 제조업	97	6,513	3,922,259	6.0
- 비알콜 음료, 얼음 제조업	151	6,574	3,928,132	6.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2011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80.7%이고 2000년 이후 79.5%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56개소 → 2011년: 44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80.7%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41.1%, 출하액 비중은 28.6%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 준다.

2011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출하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17.3%이고,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78.9%,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3.7%에 그쳤다.

〈표 1-2-26〉 규모별 추이

(단위: 개, %)

구분 \ 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업체수	3,431	4,507	4,257	4,061	4,169	4,269	4,360
종사자규모별							
- 50인 미만	79.5	82.4	82.6	81.5	81.0	81.3	80.7
- 50~300인	18.9	16.6	16.4	17.5	18.0	17.8	18.3
- 300인 이상	1.6	1.0	0.9	1.0	1.0	0.9	1.0
출하액규모별							
- 10억원 미만	39.1	26.7	26.9	22.9	19.4	19.2	17.3
- 10억~100억원	45.6	55.9	55.1	56.6	57.9	57.7	58.2
- 100억~1,000억원	13.1	15.2	15.6	17.3	19.2	19.7	20.7
- 1,000억원 이상	2.1	2.2	2.3	3.2	3.5	3.4	3.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 외식산업

▮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정찬민

2011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607천개로 지난 10년간 50만개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683천명으로 2002년 1,586천명보다 6.11%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73.5조원으로 2002년 40.5조원에 비해 81.4%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11년 121.1백만원으로 2002년 68.0백만원에 비해 78%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11년 43.6백만원으로 2002년 25.5백만원에 비해 70.9% 증가하였다.

〈표 1-2-27〉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천원/m²)

구분 \ 연도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체수(A)	596	531.9	546.5	577.3	577.0	580.5	586.2	607.2
종사자수(B)	1,586	1,445	1,450	1,567	1,578	1,601	1,609	1,683
매출액(C)	40,491	46,253	50,892	56,365	64,712	69,865	67,566	73,507
- 업체당 매출액(C/A)	68.0	87.0	93.1	97.6	112.2	123.5	115.2	121.1
- 1인당 매출액(C/B)	25.5	32.0	35.1	36.0	41.0	43.6	41.9	43.6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10), 통계청 도소매업조사('09, '11)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289천개, 매출액은 33.8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서양식, 일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식당 사업체수는 2010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4.9% 증가하여 업체당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8〉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단위: 개, 10억원, 백만원/개소)

업종	구분	2010			2011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매출액 (B/A)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매출액 (B/A)
음식점 및 주점업		586,297	67,566	115.2	607,180	73,507	121.0
□ 음식점업		425,856	55,527	130.4	439,794	59,637	135.6
	• 일반 음식점업	317,908	39,913	125.6	327,093	42,372	129.5
	- 한식	281,551	32,284	114.7	289,218	33,891	117.1
	- 중식	21,071	2,569	121.9	21,458	3,008	140.1
	- 일식	6,259	1,754	280.2	6,707	1,972	294.0
	- 서양식	7,997	3,052	381.6	8,533	3,209	376.0
	- 기타 외국식	1,030	255	247.6	1,177	290	246.3
	• 기관구내식당업	4,647	3,568	767.8	5,578	3,697	662.7
	• 출장 및 이동음식업	449	132	293.0	459	109	237.4
	• 기타 음식점업	102,852	11,914	115.8	106,664	13,457	126.1
	- 제과점업	13,883	3,461	249.3	14,632	3,785	258.6
	- 피자,햄버거,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12,774	3,050	238.8	13,678	3,273	239.2
	- 치킨 전문점	27,782	2,013	72.4	29,095	2,395	82.3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4,447	2,372	53.4	44,912	2,870	63.9
	- 그외 기타 음식점업	3,966	1,019	256.9	4,347	1,133	260.6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60,441	12,039	75.0	167,386	13,869	82.8
	• 주점업	129,640	9,535	73.5	131,137	10,960	83.5
	• 비알콜 음료점업	30,801	2,504	81.3	36,249	2,909	80.2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10), 도소매업조사(*11)

지역별로는 경기(121천개)와 서울(113천개)지역에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중 38.5%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1.67억원), 경기(1.32억원), 인천(1.20억원), 대전(1.25억원), 광주(1.30억원) 등 대다수 지역이 1억원 이상이고, 경북·강원(0.81억원), 충북(0.86억원)지역이 9천만원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2-29〉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11)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당매출액	1인당매출액
전국	607	100.0	1,683	73,507	121	43
서울	113	18.6	382	18,826	167	49
부산	46	7.6	126	5,206	113	41
대구	31	5.1	79	3,135	101	40
인천	28	4.6	78	3,367	120	43
광주	16	2.6	45	2,082	130	46
대전	17	2.8	49	2,121	125	43
울산	15	2.5	40	1,710	114	43
경기	121	19.9	356	15,981	132	45
강원	28	4.6	63	2,272	81	36
충북	22	3.6	51	1,901	86	37
충남	27	4.5	67	2,907	108	43
전북	21	3.5	55	2,362	112	43
전남	24	4.0	57	2,369	99	42
경북	40	6.6	90	3,246	81	36
경남	48	7.9	117	4,898	102	42
제주	10	1.6	28	1,124	112	40

2011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90.5%이며,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2% 수준이다. 2011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64.3%로 2010년 72.9%에 비해 8.6%p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34.6%로 2010년 26.0%에 비해 8.6%p 증가하였다. 🌐

〈표 1-2-30〉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업체수	531.9	546.5	550.8	577.0	580.5	586.2	607.2
종사자규모별							
- 5인 미만	89.6	90.4	89.9	89.8	89.6	91.3	90.5
- 5~10인	8.5	7.9	8.2	8.2	8.4	6.5	7.3
- 10인 이상	2.0	1.8	1.9	1.9	2.5	2.1	2.2
매출액규모별							
- 100백만원 미만	79.1	75.0	71.3	70.5	66.7	72.9	64.3
- 100백만원~1,000백만원	20.4	24.3	27.9	28.5	32.1	26.0	34.6
- 1,000백만원 이상	0.5	0.7	0.7	1.0	1.20	1.1	1.1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10), 도소매업조사(~'09, '11)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수출진흥팀 사무관 정미영

◆ 수출동향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8,006.1백만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어 국가 전체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가운데 이루어낸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식품은 2011년 대비 6.3% 증가한 1,079.4백만달러, 가공식품은 4.5% 증가한 4,565.4백만달러, 수산식품은 2.3% 증가한 2,361.3백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모든 분야

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간 1억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비스킷이 추가되어 13품목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켈런·참치와 김·라면은 각각 6억달러와 2억달러를 최초로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신선식품은 파프리카(34.8% 증가)와 홍콩, 필리핀, 태국 등 신규수요가 증가한 단감(36.5%), 딸기(17.8%)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위생 관련 사건으로 일본 내 수요가 감소한 김치(1.9%)와 중화권 재고가 증가한 인삼(△20.3%) 등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가공식품은 일본 대지진 이후 중화권에서 선호도가 향상된 조제분유(57.5%)가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2011년 급성장했던 막걸리(△30.0%)는 일본 주류시장 트렌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수산식품은 최초로 6억달러를 돌파한 참치(53.3%)와 한·미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에 힘입어 2억달러를 돌파한 김(43.1%)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1-2-31〉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천톤,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11		2012		증감률 (B/A)
		2010	물량	금액(A)	물량	
농림수산물	5,880.0	3,479.4	7,691.3	3,914.4	8,006.1	4.1
농식품	4,081.8	2,792.7	5,383.5	3,206.0	5,644.8	4.9
(신선농식품)	(873.9)	(331.2)	(1,015.2)	(355.3)	(1,079.4)	(6.3)
(가공농식품)	(3,207.9)	(2,461.5)	(4,368.3)	(2,850.7)	(4,565.4)	(4.5)
농산물	3,721.7	2,541.2	4,940.8	2,337.8	4,785.0	△3.2
축산물	146.1	64.2	176.3	95.5	395.1	124.1
임산물	214.0	187.3	266.4	772.7	464.7	74.5
수산물	1,798.2	686.7	2,307.8	708.4	2,361.3	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ASEAN(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EU(15.6%), 미국(10.7%) 등 FTA 체결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해까지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중국(△7.4), 홍콩(△2.7), 대만(△2.8) 등 중화권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미국과 EU의 수출 증가는 FTA 체결로 주력 품목인 김, 라면, 음료 등에 대한 관세 철폐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ASEAN의 경우는 한류의 영향으로 라면, 음료, 김 등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화권은 주력 품목인 인삼의 재고 증가로

인한 수출 감소가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 5.9%(11개국)를 차지했던 1억달러 이상 수출 국가는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등이 추가된 총 14개국으로 전체 수출대상국(194개국) 대비 7.2%로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국 대비 주요국 수출비중은 84.4%로 전년(85.3%) 대비 감소하였으며, 최대 수출 국가인 일본의 시장 점유율도 전년(30.9%) 대비 1.1% 감소(29.8%)하여 점진적인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가별 상위 수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일 본 : 참치(전년 대비 34.3%), 소주(10.3), 제3맥주(4.8), 파프리카(35.2), 김치(△2.6)
- 중 국 : 설탕(2.8), 커피조제품(6.9), 라면(8.0), 어란(13.5), 조제분유(63.9), 인삼(△29.4)
- 미 국 : 김(32.6), 음료(49.1), 담배(32.6), 배(10.4), 라면(7.8), 오징어(27.0)
- 러시아 : 커피조제품(8.4), 마요네즈(△9.8), 음료(33.6), 담배(△47.3), 라면(52.3)
- 홍콩 : 설탕(△19.9), 맥주(7.6), 인삼(△31.7), 담배(△49.8), 라면(274.9), 딸기(22.9)
- 대 만 : 인삼(△41.0), 배(7.0), 담배(127.6), 커피조제품(16.4), 김(46.5), 라면(17.1)
- ASEAN : 참치(50.5), 담배(57.4), 커피조제품(△3.3), 김(98.8), 라면(42.8), 음료(87.8)
- E U : 참치(88.5), 라면(5.2), 음료(20.3), 새송이버섯(14.6), 오징어(48.5), 김(49.8)

〈표 1-2-32〉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11(A)		2012(B)		증감률(B/A)		점유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3,479.4	7,691.3	3,914.4	8,006.1	12.5	4.1	100.0
일	본	1,074.4	2,374.2	955.0	2,389.0	△11.1	0.6	29.8
중	국	694.7	1,380.0	857.8	1,278.5	23.5	△7.4	16.0
미	국	194.3	599.8	218.0	664.0	12.2	10.7	8.3
러	시	118.3	242.7	134.5	259.0	13.6	6.7	3.2
홍	콩	200.8	305.5	193.9	297.2	△3.4	△2.7	3.7
대	만	99.8	261.0	262.7	253.8	163.2	△2.8	3.2
A	S E A N	527.0	1,031.9	627.5	1,192.8	19.1	15.6	14.9
E	U	144.2	362.9	154.4	419.6	7.1	15.6	5.2
기	타	425.9	1,133.3	510.6	1,252.2	19.9	10.5	15.6

◆ 수입동향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33,42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과실류는 한·미 FTA 체결의 영향으로 오렌지, 버찌, 레몬, 크렌베리 등의 미국 수입이 전년 대비 35.5%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여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412.4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곡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0.4% 감소한 4,755.5백만달러였고, 채소류는 배추, 마늘 등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839.0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축산물은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지속적인 모돈 증식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국내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과 미국 등지의 광우병 발생 여파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4,720.5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임산물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6,009.5백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수산물은 일본 원전사고 여파로 일본산 수입이 전년 대비 31.1%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여 전년 대비 5.1% 감소한 3,975.3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표 1-2-33〉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11(A)		2012(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47,529.4	33,184.0	51,365.8	33,422.4	8.1	0.7
곡	류	13,345.5	4,772.9	14,499.1	4,755.5	8.6	△0.4
박	류	4,957.2	1,410.5	5,446.7	1,598.7	9.9	13.4
과	실 류	923.2	1,213.2	1,009.9	1,412.4	9.4	16.4
채	소 류	1,006.8	855.5	991.3	839.0	△1.5	△1.9
두	류	1,244.2	766.6	1,228.6	814.0	△1.3	6.2
주	류	350.9	684.8	384.7	726.7	9.6	6.1
커	피 류	130.8	718.9	115.4	598.5	△11.8	△16.8
연	초 류	56.9	341.1	68.5	369.6	20.3	8.4
화	훼 류	11.8	44.4	12.8	47.9	8.3	7.7
인	삼 류	0.1	3.5	0.1	3.1	△4.9	△10.9
육류(포유가축)		873.5	3,289.0	707.1	2,645.5	△19.1	△19.6
어	류	871.2	2,229.0	814.4	2,049.9	△6.5	△8.0
갑	각 류	109.7	630.5	107.3	672.0	△2.2	6.6
기	타	23,647.6	16,224.1	25,979.9	16,889.5	9.9	4.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은 가뭄 및 기상 악화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와 광우병 발생 여파에 따른 곡류 및 육류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한 6,710.6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중국은 인구 증가에 따른 중국 내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곡물 수출이 감소하여 쌀·호밀·보리 등 중국으로부터의 곡류 수입이 전년 대비 63.6% 감소하는 등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산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0.9% 증가하여 5,296.6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호주는 밀, 보리, 옥수수 수입이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2.4% 증가한 2,887.2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표 1-2-34〉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11(A)		2012(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47,529.4	33,184.0	51,365.8	33,422.4	8.1	0.7
미	국	11,717.8	7,706.2	10,026.5	6,710.6	△14.4	△12.9
중	국	7,400.6	5,249.7	6,987.9	5,296.6	△5.6	0.9
호	주	5,568.7	2,820.1	6,608.8	2,887.2	18.7	2.4
캐	나	2,799.0	1,709.5	1,675.2	1,182.7	△40.1	△30.8
브	라	1,956.9	1,618.8	3,824.1	2,225.8	95.4	37.5
뉴	질	2,497.3	1,061.3	2,419.2	936.8	△3.1	△11.7
러	시	841.1	914.0	886.7	893.2	5.4	△2.3
A	S	7,011.2	4,455.8	8,025.8	4,747.6	14.5	6.5
E	U	1,270.7	2,771.9	1,841.5	2,982.4	44.9	7.6
기	타	6,466.1	4,876.7	9,070.2	5,559.5	40.3	1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농업통상과 노승환

◆ 농식품 교역규모

2010년 5월 24일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하에서도 2012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의 생산성 증가에 따라 전년 17억 1,385만달러 대비 15.0% 증가한 19억 7,11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농식품 교역실적도 3,86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 규모 17억 1,385만달러의 2.0%를 차지하였다.

〈표 1-2-35〉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연도	연도별 교역실적		
		2011	2012	증감률(%)
전체		1,713.9	1,971.1	15.0
농림수산물		33.1	38.6	16.7

자료 : 통일부 2013 통일백서

◆ 농식품 교역동향

◆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11년 농식품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31.4백만달러로서 전년도 27.5백만달러보다 14.4% 증가하였고, 반입은 7.2백만달러로 전년도 5.6백만달러보다 28.1% 증가하였다.

◆ 주요 품목별 반출입실적

◆ 반출실적

농식품 반출 총 품목 수는 100여개로, 이 중 농축산물은 쌀, 빵, 소시지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섬유판 등이며, 수산물은 미역, 툇 등으로 나타났다. 반출실적은 31.4백만달러로 전년도보다 14.4% 증가하였다.


〈표 1-2-36〉 대북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톤, 천달러)

구분	연도	2011(A)		2012(B)		증감률(B/A,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물	합계	19,605	27,466	14,799	31,419	-4,806	14.4
	쌀	19	28	38	75	19	-32.1
	감자	1	1	0.4	1	-0.6	-
	밀가루	6,693	3,179	1,733	765	-4,960	-75.9
	마늘	0.1	0	-	-	-0.1	-
	대두유	162	153	112	192	-50	25.5
	곡류가공품	1,193	3,366	232	730	-961	-78.3
	빵	1,710	6,101	2,208	7,991	498	31.0
	면류	999	2,271	1,279	3,935	280	73.3
	기타농산가공품	1,897	4,091	2,643	5,659	746	38.3
	축산물	133	642	301	1,893	168	194.5
	임산물	217	318	517	541	300	70.1
	수산물	3,725	2,167	3,254	1,858	-471	-14.3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 현황(2012년 12월)

◆ 반입실적

농식품 반입 총 품목은 22개 품목이며, 이 중 농산물은 참깨, 밤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및 기타 목재류, 수산물은 미역, 톳 등이다. 반입실적은 7.2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하였다. 

〈표 1-2-37〉 대북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톤, 천달러)

구분	연도	2011(A)		2012(B)		증감률(B/A,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물	합계	3,838	5,607	3,930	7,184	92	28.1
	참깨	453	813	444	1,501	-9	84.6
	들깨	164	277	186	536	22	93.5
	고추	52	87	27	118	-25	-48.1
	밤	488	1,563	375	1,200	-113	-23.2
	참기름	78	188	118	483	40	156.9
	기타유지가공품	146	245	111	246	-35	0.4
	합판	0.02	0	0.5	2	0.48	-
	기타목재류	0.1	1	21	94	20.9	9,300
	톳	26	445	6	108	-20	-75.7
	미역	2,233	1,818	1,835	1,679	-398	-7.6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 현황(2012년 12월)

제3장 국제곡물 수급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조경규

◆ 개요

2012/13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23억 1,360만톤) 대비 2.7% 감소한 22억 5,200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소비량도 전년(23억 770만톤)보다 0.7% 감소한 22억 9,120만톤이며, 기말재고량은 전년(4억 6,900만톤)보다 8.3% 감소한 4억 2,990만톤으로 추정된다.

◆ 쌀

2012/13년도 쌀 생산량은 2011/12년보다 0.7% 증가한 4억 6,900만톤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억 6,870만톤으로 추정된다.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억 520만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4%p 낮은 22.4%로 추정된다.

◆ 밀

2012/13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6.0% 감소한 6억 5,520만톤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6억 8,070만톤 수준이다. 기말재고량은 1억 7,390만톤으로 전년보다 12.7% 감소하여, 기말재고율은 3.1%p 감소한 25.5% 수준으로 추정된다.

◆ 옥수수

2012/1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8억 6,010만톤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8억 6,930만톤 수준이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7.0% 감소한 1억 2,260만톤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9%p 감소한 14.1%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대두(콩)

2012/13년도 세계 콩 생산량은 2억 6,750만톤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량도 전년 2억 5,690만톤보다 100만톤 늘어난 2억 5,790만톤 수준이다. 기말재고량은 6,150만톤으로 전년의 5,490만톤과 비교하여 12.0%나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2.5%p 증가한 23.9%로 추정된다.

〈표 1-3-1〉 세계 주요 곡물 수급동향(USDA, '13. 9)

(단위 : 백만톤)

구 분	'11/'12	'12/'13 (추정)	'13/'14(전망)		변동률(% , 8월기준)		
			'13. 8	'13. 9	전년대비	전월대비	
전 체 곡 물	생산량	2,313.6	2,252.0	2,428.9	2,431.2	8.0	0.1
	공급량	2,776.7	2,721.0	2,859.4	2,861.0	5.1	0.1
	소비량	2,307.7	2,291.2	2,397.3	2,394.0	4.5	-0.1
	교역량	343.6	299.2	326.8	326.8	9.2	0.0
	기말재고량	469.0	429.9	462.1	467.1	8.7	1.1
	기말재고율(%)	20.3	18.8	19.3	19.5	0.7%p	0.2%p
쌀	생산량	465.8	469.0	477.9	476.8	1.7	-0.2
	공급량	564.6	573.8	582.7	581.9	1.4	-0.1
	소비량	459.7	468.7	475.3	474.6	1.3	-0.2
	교역량	39.1	38.3	39.0	39.1	2.1	0.4
	기말재고량	104.8	105.2	107.5	107.4	2.1	-0.1
	기말재고율(%)	22.8	22.4	22.6	22.6	0.2%p	0.0%p
밀	생산량	697.2	655.2	705.4	708.9	8.2	0.5
	공급량	896.1	854.5	879.8	882.7	3.3	0.3
	소비량	696.8	680.7	706.8	706.5	3.8	0.0
	교역량	157.8	138.3	154.0	154.5	11.7	0.3
	기말재고량	199.3	173.9	173.0	176.3	1.4	1.9
	기말재고율(%)	28.6	25.5	24.5	25.0	-0.6%p	0.5%p
옥 수 수	생산량	884.4	860.1	957.2	956.7	11.2	0.0
	공급량	1,012.6	991.9	1,080.3	1,079.3	8.8	-0.1
	소비량	880.8	869.3	930.1	927.8	6.7	-0.2
	교역량	117.0	94.3	104.0	102.7	8.9	-1.2
	기말재고량	131.8	122.6	150.2	151.4	23.5	0.8
	기말재고율(%)	15.0	14.1	16.1	16.3	2.2%p	0.2%p
콩	생산량	239.2	267.5	281.7	281.7	5.3	0.0
	공급량	310.9	322.4	343.9	343.2	6.5	-0.2
	소비량	256.9	257.9	268.7	268.9	4.3	-0.6
	교역량	92.3	97.7	107.4	107.3	9.8	-0.1
	기말재고량	54.9	61.5	72.3	71.5	16.2	-1.0
	기말재고율(%)	21.4	23.9	26.9	26.6	2.7%p	-0.1%p

※ USDA,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조경규

❖ FAO 식량가격지수 동향

FAO 식량가격지수는 2008년 6월 애그플레이션 당시에 224.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2월 237.9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201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밀, 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인이다.

한편 FAO 곡물가격지수는 2008년 6월 274.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3월에 기록한 216.1이 최고치였고, 이후 점차 하락하여 12월 210.9를 기록하여 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 쌀값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값은 2010년 11월부터 급등하여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827달러/톤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11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2월에는 763달러/톤을 기록하였다. 중립종의 2012년 평균가격은 746달러/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2010년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011년 2월에 538달러/톤을 기록하였다가 5월에는 498달러/톤으로 하락했으나, 6월 이후 다시 급등하여 11월에는 629달러/톤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평균 576달러/톤에 거래되었다.

❖ 밀값 동향(경질밀 기준)

국제 밀값은 2010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12월 305달러/톤을 기록하며, 6월의 176달러/톤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2011년에 들어와서 밀값은 6월까지 300달러/톤 이상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되어 12월 246달러/톤으로 마무리하였다. 2012년 평균 밀값은 287달러/톤으로 2011년 평균가격 298달러/톤에 비해 4.0% 낮게 형성되었다.

❖ 옥수수값 동향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0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2월 가격이 233달러/톤으로 6월의 137달러/톤에 비해 무려 70%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1년 4월에는 296달러/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였으며, 이후 완만히 하락하여 12월에는 239달러/톤을 기록하였다. 2012년 평균 옥수수 가격은 272달러/톤으로 2011년의 267달러에 비해 1.9%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원인은 미국 곡창지대 가뭄이었다.

❖ 콩값 동향

콩 가격은 2010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12월에 484달러/톤으로 6월 349달러/톤에 비해 39%나 상승하였다. 2011년 1월에는 513달러/톤으로 2008년 7월의 553달러/톤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1년 8월까지 계속 500달러/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420달러/톤을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곡창지대 가뭄으로 2012년 평균 콩값은 537달러/톤으로 2011년 485달러/톤에 비해 10.7%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12년 국제곡물가

주요 곡물 생산지역의 가뭄으로 2012년 6월말부터 곡물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여 9월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 점차 하락하면서 2012년말에는 곡물시장이 안정되었다. ④

〈표 1-3-2〉 USDA 고시 국제곡물가격 동향

(단위 : US달러/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쌀 (중립)	2007	551	551	551	551	551	536	529	535	576	584	584	557	
	2008	590	595	595	758	926	963	1,036	1,061	1,119	1,113	1,102	1,102	913
	2009	1,102	1,075	1,123	1,208	1,202	1,150	1,067	948	895	849	816	794	1,019
	2010	772	772	732	728	719	739	728	675	705	750	811	827	747
	2011	827	827	827	827	827	827	827	800	816	816	763	720	809
	2012	772	772	744	728	736	739	744	755	750	741	739	728	746
	2013	705	705	705	705	691	661	661	661	661				684
쌀 (장립)	2007	320	323	327	324	325	331	335	334	332	336	349	368	334
	2008	384	474	615	929	949	789	756	709	701	634	574	543	671
	2009	598	615	615	572	547	592	602	553	544	513	550	605	576
	2010	596	576	538	502	478	463	465	472	494	501	534	550	514
	2011	534	538	509	500	498	531	557	576	614	615	629	608	559
	2012	557	552	563	554	614	612	587	579	579	571	573	569	576
	2013	575	575	573	571	558	536	519	493	465				541
대 두	2007	258	278	279	271	285	303	314	310	350	358	391	423	318
	2008	464	508	500	483	491	552	553	470	432	339	331	319	454
	2009	365	341	332	374	419	445	388	392	342	355	372	379	375
	2010	361	345	349	358	351	349	367	376	391	427	462	484	385
	2011	513	512	500	501	499	500	500	501	492	446	430	420	485
	2012	443	462	497	529	521	522	602	618	616	566	532	535	537
	2013	521	536	531	518	529	560	527	478	512				524
밀	2007	179	181	179	178	177	206	224	244	310	318	300	350	237
	2008	350	409	424	345	305	326	311	313	281	222	209	208	309
	2009	226	209	211	211	235	233	205	190	176	186	198	197	206
	2010	193	183	181	181	184	176	215	260	274	268	271	305	224
	2011	324	343	315	336	333	301	278	299	290	262	253	246	298
	2012	253	255	254	238	241	248	320	325	336	330	331	318	287
	2013	302	285	275	273	278	265	257	258	257				272
옥 수 수	2007	154	162	160	142	147	150	130	130	141	141	150	170	148
	2008	192	203	218	234	237	275	254	216	215	162	147	145	208
	2009	154	142	150	152	166	162	129	129	128	146	154	158	148
	2010	152	143	145	139	145	137	149	161	193	215	217	233	169
	2011	250	272	270	296	285	284	263	281	273	249	247	239	267
	2012	248	252	255	250	237	237	299	316	301	295	291	284	272
	2013	281	278	282	255	256	261	208	190	186				244

주 : 1) 쌀(중립종) : 미국산(California medium grain milled No.1) 내수용 공장출고가(bulk),

2) 쌀(장립종) : 태국산(100% B) FOB, (USDA 예측가) /

3) 대두 · 밀(HRW) · 옥수수 : 선물거래가('13.9.20까지 평균가)

자료 : USDA Rice Outlook('13.9.16), USDA ERS('13.9.12)

제2절 주요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미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섭

◆ 농업경제동향

미국은 세계 유수의 농업국으로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밀이나 면화의 생산량도 많다. 축산 분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생산이 왕성하다. 2010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액 144,471억달러 중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1,734억달러이다.

미국의 농경지 규모는 전체 토지면적(98,315만ha)의 41.8%인 41,120만ha가 농용지이며, 이 중 17,050만ha가 경지로, 270만ha는 영년생작물용지로, 23,800만ha는 방목지 등으로 이용된다. 2012년 미국 농무부(USDA)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호수는 220만호로 2011년 대비 0.53% 감소하였고,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2010년 57.1세로 2002년 55.3세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2002년 대비 75세 이상의 농장주는 20% 증가, 25세 이하 농장주는 30% 감소하였다. 농가당 평균 농지규모는 2012년 170ha로 2002년 176ha보다 감소하였다. 농업인구는 2007년 센서스 결과 3,337,450명으로 2002년 3,115,172명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농장 중 연 매출액 25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농장 비중이 10%(약 22만개)이며, 이들이 총 생산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연 매출액 1만달러 이하 소규모 농장은 60%(약 126만개)로, 전체 생산량의 2% 정도를 차지하며 대부분 취미농 형태이다.

2010년 가족농 전체 평균소득은 83천달러이며, 이 중 농업소득은 13%(11천달러 내외)를 차지하고 농업외소득(off-farm income)이 77%로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1만달러 이하 매출 소규모 농장의 농업순소득은 미미한 반면, 25만달러 이상 매출 대규모 농장의 농업소득은 20만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농외소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농산물로는 밀, 옥수수, 콩,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가 있다.

〈표 1-3-3〉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 만톤)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밀	5,724	4,922	5,582	6,802	6,031
옥수수	28,226	26,750	33,118	30,714	33,301
콩	8,350	8,700	7,286	8,075	9,142
우유	8,025	8,246	8,419	8,616	8,586
쇠고기	1,120	1,186	1,198	1,184	1,189
돼지고기	938	955	995	1,060	1,044
닭고기	1,604	1,622	1,663	1,700	1,633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며, 옥수수, 콩, 밀, 면화의 수출액은 세계 1위, 돼지고기, 닭고기는 2위이다. 특히 옥수수는 전 세계 수출액의 5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FAO, 2008).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수출	수출액(억달러)	점유율(%)	수입	수입액(억달러)	점유율(%)
캐나다	162	14.0	캐나다	179	22.6
멕시코	156	12.5	E U	158	19.9
일본	131	11.3	멕시코	108	13.6
중국	112	9.7	중국	34	4.3
E U	107	9.3	인도네시아	27	3.4
총액	1,155	100	총액	793	1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수출	수출액(억달러)	점유율(%)	수입	수입액(억달러)	점유율(%)
콩	155	13.1	음료	55	6.8
옥수수	139	11.8	와인	46	5.7
밀	113	9.6	원재료	38	4.7
면화	48	4.1	커피원두	38	4.7
조정식료품	48	4.1	맥주(보리)	37	4.6
총액	1,179	100	총액	804	1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농업법(Farm Bill)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2008년 정책사업은 2008년 농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은 2008년 5월 14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15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2008년 6월 18일 정식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작물연도) 5년간 소요예산은 2002년 농업법보다 370억달러 증가한 총 3,050억달러가 배정되었다.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1862년 미국 농무부(USDA) 창설 이후 가족농 중심의 소득보전과 가격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격지지는 직불제 형태로 생산조정과 재고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법은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Policy + Program)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규모를 명시, 규범법과 집행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1965년 농업법 이후 4~5년 주기로 개정·보완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이 2012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미 의회가 2008년 농업법을 2013년 9월 30일까지 연장 조치한 바 있으며, 2013 농업법 제정 논의를 위해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2011년 8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 중이나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삭감 규모에 대한 양원 간 합의에 실패해 신 농업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 식품 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NAIS(동물개체식별시스템) 검역 강화,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한편 2011년 1월 4일 미국 내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미 FDA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및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 생산·수확·포장 및 보관 기준, 식품 우수제조 공정 및 위해분석 기반 예방적 관리, 제3자 실사기관 인증, 해외공급업자 검증프로그램 등 관련 하위규정들을 입법절차 중에 있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 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여가와 복지 욕구의 충족 및 종합적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 허용보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미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 지향성이 강한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 FTA 정책 추진 등으로 강화하였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농업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 네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 정부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 정책방향 즉, ①농산물 수출 증대 ②바이오연료 및 재생가능연료 생산 촉진 ③지역 농업생산과 지역 소비의 연계 ④미국 농촌에 초고속 통신망(broadband) 설치 ⑤야외 여가 시설에 투자 ⑥생태계 시장(ecosystem markets)의 활용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 중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경은

◆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2009년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61.9%(2008년 54.3%)인 830,037천명이며, 2011년 경지면적은 국토 960,000천ha의 약 11.4%인 109,999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0.61ha로 한국의 1.46ha보다 오히려 적다. 2010년 농산물 수입액은 332.46억달러로 2009년 253.52억달러 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액 158.69억달러보다 2.09배가량 많다. 농촌가구 1인당 순수입(2010년 기준)은 5,919위안으로, 전년도(5,153위안)에 비하여 14.96% 증가하였다.

〈표 1-3-6〉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 농가인구(2009) - 총인구 대비	천명 %	830,037 61.9	• 농촌가구 1인당 순수입 • 농촌가구 1인당 가계비	위안/인 위안/인	6,977 5,221
• 농가호수(2005) - 총가구수(2011)	천호 천호	252,225 371,977	• 농림어업 취업자('11) - 총 취업자 대비	천명 %	3,595 0.47
• GDP(2010)	억위안	401,202	• 농산물 수출('10)	억달러	158.69
• 경지면적(2010) - 국토 대비	천ha %	121,719 12.7	• 농산물 수입('10)	억달러	332.46

자료 : 1) 농림수산물주요통계(2013)
2)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 농업정책동향

중국 정부(국무원과 공산당)는 2004년부터 매년 주요 국정방향과 과제를 담은 중앙1호문건의 주제로 줄곧 삼농(三農 :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채택해 왔다. 2012년 중앙1호문건의 주제 역시 삼농이다. 연속 9년 동안 삼농이 중국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가 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참으로 중대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농업과학기술혁신 추진을 가속화하여 농산물 공급보장능력을 증강시키기로 하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열쇠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전제하고, 농업과학기술은 국가식량안보 확보의 바탕이고 자연환경 제약을 돌파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며 현대농업 건설의 결정적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제 장애를 돌파하고 농업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이를 발전시켜 농업생산 증대·농민소득 제고 및 농촌번영 실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12년 농업·농촌업무의 총체적 요구는 공업화·도시화 및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강농(強農)·혜농(惠農)·부농(富農)정책의 강도를 가일층 강화시켜 농업 생산을 쟁취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농촌사회의 화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문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투자 강도와 업무 역량을 확대하여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식량성장 책임제와 장바구니프로젝트(채담자공정) 실시를 강화하고 삼농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농업·농촌에 대한 국가고정자산투자 강화, 농업과학기술투자 증가, 농촌금융서비스 수준 제고 및 농촌토지정책의 안정과 완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농업 건설을 지원한다. 농업과학기술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체제를 완비하여 여건을 개선, 종자산업 과학기술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농업과학기술 보급능력을 향상시켜 농업사회화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기층 공익적 농업기술보급서비스를 강화하고, 과학연구교육기구로 하여금 농업기술서비스를 적극 전개하도록 유도하며, 신형 농업사회화서비스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과학기술교육훈련 강화로 신형 농업·농촌 인재풀을 전면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업교육 발전을 진흥시키고,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을 가속화하며, 농촌실용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 훈련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설비와 장비 여건 개선으로 농업발전의 물자기반을 구축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농지수리 건설을 견지하고, 고표준농지 건설을 강화하며, 농업기계화를 가속화하고 생태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시장유통효율 제고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실히 보장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방식을 혁신하며, 농산물 시장조정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사회 안정의 핵심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삼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모를 까닭이 없는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농민소득을 빠르게 증대시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농업세를 전면 폐지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조를 강화하는 것 등은 농민소득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조치이다. 그 결과 농촌 주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으나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노무비와 농자재 등 주요 농업생산요소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제고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의 전면적인 시행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농업과학기술혁신이란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종자산업 발전 및 생산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 결국 중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후진타오 주석 정책노선의 대표적 슬로건인 과학발전관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삼농정책 시행의 궁극적 목표는 화해사회 실현으로 귀결된다.

◆ 일본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경은

◆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12년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4.6%(2010년 5.1%)인 5,865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 37,796천ha의 약 12.1%(2010년 12.1%)인 4,549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81ha로 한국의 1.46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농산물 수입액은 54,418억엔으로 2011년 55,841억엔 대비 감소하였고, 수출액 2,680억엔보다 20.8배가량 많다. 일본의 식량자급률(2011년 기준)은 열량 기준으로 39%이며, 생산액 기준 69%이다. 이 중 쌀의 자급률은 96%이다.

〈표 1-3-7〉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 농가인구 - 총인구 대비	천명 %	5,865 4.6	• 농가 총소득 - 농가소득	천엔 천엔	4,633 2,808
• 농가호수(2010) - 총 가구 대비	천호 %	2,528 4.8	• 농림어업 취업자 - 총 취업자 대비	천명 %	2,400 3.8
• GDP(2011) - 농업 총생산액	억엔 억엔	4,706,232 46,025	• 농산물 수출(2011)	억엔	2,680
• 경지면적(2011) - 호당 (2011)	천ha ha	4,550 2.32	• 농산물 수입(2011)	억엔	54,418

자료 : 1) 농림수산물통계 주요통계(2013)

2) 일본 농림수산물통계(2011). *맥류 4종

◆ 농업정책동향

농림수산성은 2012년 신규 취농 및 농지 집적,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 추진을 새로운 지원책으로

설정하여 지난해 10월에 각의에서 결정한 「식과 농림어업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행동 계획」에서 제시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의 실정에 근거한 제도의 설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규 취농자의 증가·정착을 위해 1명당 연간 150만엔의 '청년 취농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취농 전 연수기간을 포함해 청년 신규 취농자를 최장 7년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의 중심적인 경영업체 등에 농지를 집적하기 위한 '호별 소득보상 경영 안정 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지역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농업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에 주력하였다.

농림수산성은 2012년도 6차산업화를 실시하는 사업체에 출자하는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펀드를 300억엔의 원자금으로 설치하여 6차산업의 시장규모를 5년 후에 3조엔, 10년 후에 10조엔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동 펀드가 사업자금을 출자하거나, 사업체의 재무 체질을 강화하여 용자를 받기 쉽도록 추진하고 있다.

❖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연숙

❖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12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서 1인당 GDP 12,268십억유로(2011), 인구 502,577천명(2011), 면적 4,411천km²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171,603천ha(2011), 농업 분야 취업자 수는 11,935천명(2011)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 총 생산액은 3,922억유로(2011) 정도이다. 2011년 농산물 생산액은 채소 및 과일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유 13.9%, 곡물류 14.7%, 돼지고기 9.1%, 신선채소 8.7%, 쇠고기 8.1%, 가금육 7.1%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의 비중(2011)을 보면 프랑스(18.4%), 독일(13.3%), 이탈리아(10.5%), 스페인(10.5%), 영국(6.9%), 네덜란드(6.5%), 폴란드(5.8%), 루마니아(4.6%), 그리스(2.8%), 덴마크(2.7%), 벨기에(1.9%), 오스트리아(1.8%), 포르투갈(1.6%), 헝가리(2.0%), 아일랜드(1.7%), 스웨덴(1.5%), 체코(1.1%), 불가리아(1.1%), 핀란드(1.2%), 리투아니아(0.7%), 슬로바키아(0.6%),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3%),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

타(0.0%)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11)은 5.3%이다. 국가별로는 몰타(2.8%), 독일(1.6%), 벨기에(1.4%), 영국(1.3%)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루마니아(32.6%), 불가리아(19.9%), 폴란드(12.7%), 그리스(11.6%) 등은 높은 편이다.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11)은 룩셈부르크(0.2%), 영국(0.6%), 슬로바키아(0.8%), 스웨덴(0.4%), 체코(0.9%)는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5.9%), 그리스(2.5%), 스페인(2.0%), 사이프러스(1.8%) 등의 국가도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2011)은 수출이 6.9%(총 15,316억유로 중 1,052억유로)이며, 수입은 5.8%(총 16,856억유로 중 983억유로)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4,617백만유로), 러시아(10,571백만유로), 스위스(6,539백만유로), 중국(4,872백만유로), 일본(4,755백만유로) 순이고, 주요 수출품목은 주류 및 음료, 낙농품, 달걀 및 벌꿀, 육류, 밀가루 또는 전분제조품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3,871백만유로), 미국(8,239백만유로), 아르헨티나(6,304백만유로), 스위스(3,831백만유로) 등이며, 과실 및 견과류, 식품가공 부산물, 유지종자류, 커피·차 및 향신료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EU의 역외 농산물 무역은 2007년 이후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 2010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출처: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2)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

국 가 (27개국)	경지면적 (천ha)	농장수 ¹⁾ (천개)	농장당 경지면적 (ha)	농업분야고용		농업 생산액 (백만 유로)	농업 부가가치 (백만 유로)	GDP 대비 (%)	농산물 무역			가계비중 식품비 (%)
				취업자 (천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역 수지 (백만 유로)	
	2011	2010	2010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0
EU_27	171,603	11,757	14.6	11,935	5.3	392,205	154,289	1.2	6.7	6.6	-10,471	16.5
벨기에	1,358	42	32.3	64	1.4	7,607	2,032	0.5	8.6	9.2	2,891	17.4
불가리아	4,476	357	12.5	677	19.9	4,349	1,624	4.2	9.7	16.6	1,093	-
체코	3,484	23	151.5	152	3.0	4,384	1,417	0.9	6.0	4.2	-1,609	23.1
덴마크	2,647	41	64.6	73	2.6	10,575	2,793	1.2	12.4	18.0	5,978	14.8
독일	16,704	298	56.1	658	1.6	52,289	15,265	0.6	8.0	5.8	-10,778	14.6
에스토니아	941	19	49.5	26	4.4	811	310	1.9	9.2	7.4	-282	28.9
아일랜드	4,991	140	35.7	83	4.6	6,628	1,737	1.1	13.4	15.6	7,702	15.4
그리스	3,478	717	4.9	513	11.6	10,926	5,292	2.5	13.6	17.5	-1,987	19.9
스페인	23,753	967	24.6	755	4.1	41,375	21,402	2.0	9.2	14.1	6,151	17.1
프랑스	27,837	507	54.9	753	2.8	72,224	28,832	1.4	8.2	13.6	15,767	16.6
이탈리아	12,856	1,616	8.0	965	3.9	47,508	25,161	1.6	9.2	8.1	-6,589	17.2
사이프러스	118	38	3.1	18	4.6	706	325	1.8	14.7	17.5	-689	16.6
라트비아	1,796	83	21.6	75	8.8	1,078	255	1.3	14.1	14.8	-252	26.7
리투아니아	2,743	200	13.7	116	8.5	2,586	901	2.9	11.4	15.4	493	-
룩셈부르크	131	2	65.5	-	-	352	95	0.2	8.7	6.1	-884	17.1
헝가리	4,686	534	8.8	291	7.2	7,760	2,926	2.9	6.2	9.0	2,708	24.0
몰타	11	12	0.9	5	2.8	129	58	0.9	10.4	3.0	-375	18.4
네덜란드	1,872	71	26.4	226	2.6	25,433	8,030	1.3	11.0	15.2	25,565	14.9
오스트리아	2,878	149	19.3	202	4.9	7,154	2,969	1.0	7.5	7.5	-813	13.5
폴란드	14,447	1,499	9.6	2,036	12.7	22,570	8,692	2.4	8.0	10.5	2,242	26.4
포르투갈	3,668	304	12.1	520	10.7	6,298	2,152	1.3	13.0	9.6	-3,419	19.6
루마니아	13,306	3,724	3.6	2,962	32.6	18,048	8,023	5.9	8.2	9.0	-422	-
슬로베니아	483	74	6.5	79	8.4	1,232	487	1.3	8.9	5.5	-890	19.7
슬로바키아	1,896	24	79.0	71	3.2	2,295	534	0.8	6.7	5.2	-892	22.3
핀란드	2,291	63	36.4	114	4.6	4,633	1,462	0.8	7.3	3.9	-2,197	17.4
스웨덴	3,066	70	43.8	92	2.0	5,789	1,556	0.4	7.4	3.2	-5,090	15.8
영국	15,686	183	85.7	408	1.3	27,017	9,956	0.6	9.2	5.9	-22,952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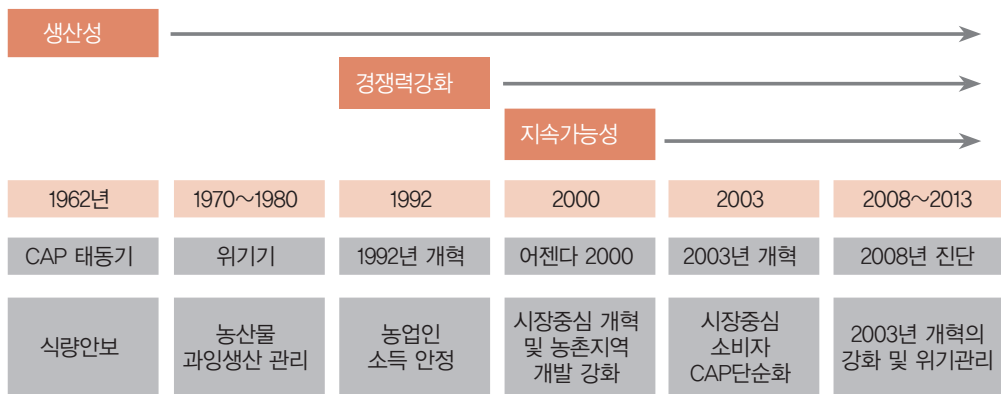
주 : 1) 농장수(agricultural holdings) :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관리단위로 농지, 건물, 산림 등을 포함
 자료 :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2

❖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 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영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 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절한 소비자 가격 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2003년 7월(MTR) 및 2008년 건전성 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 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 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그림 1-3-1〉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변천 동향



공동농업정책은 5~6년간 지속되며, 2007~2013년 CAP 종료에 따라 2014년 EU 중기예산 편성을 기점으로 새로운 CAP 채택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는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표하였다(12.10.21). 차기 CAP 개혁안은 직불제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성·환경성 강화,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 공동농업정책의 효율성·투명성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2012년 12월 말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공동 결정 시, 2013년 중 이행법령을 제정하고, 2014년 1월 1일 새로운 CAP 개혁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 2014년 EU CAP 개혁 법률안 주요 골자

정책 방향	주요 내용
① 고용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소득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직불금의 형평성, 목표지향성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 Basic Payment Scheme*을 도입하여 농가 간, 지역 간, 회원국 간 분배의 형평성 제고 * 실제 활동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액 체감기준(연간 15만유로) 및 상한액 설정(30만유로)
②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격변동성 확대 문제 대응을 위해, 현행 공적 개입과 민간 보유 지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 모든 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시장관리정책 도입으로 광범위한 시장교란 위기 시 EU 집행위의 시장개입 허용 - 농산물 관련 보험과 뮤추얼 펀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③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녹색' 직불금 도입(greening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가 직불금의 30%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을 최적화 사용토록 하는 부대조건* 부여 * 재배작물 다양화, 영구적 초지 유지, 생태학적 목적의 경지면적(7%) 유보 등
④ 연구 및 혁신 관련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연구/혁신 예산 증액 및 농업계와 과학계 간의 파트너십으로 연구결과의 농촌현장 활용도 제고
⑤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식품 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분야의 거래 교섭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 및 분야 간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 현재 EU의 유일한 쿼터제도인 설탕 쿼터제도를 2015.9.30 이후 폐지기로 함 - 학교 급식(과일 및 우유 지원) 제도 확산
⑥ 농업/환경정책의 지역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지역별 차원의 농업/환경정책 활성화 추진*에 우선순위 부여 * 생태계 보존/회복,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⑦ 젊은 농업인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이하 농업인에 대해, 창업 초기 5년간 Basic Payment를 25% 추가 지원 (단, 회원국별 중소농에 한함)
⑧ 농촌의 고용과 기업 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rter kit'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신설 및 LEADER 프로그램의 지역활동그룹의 역할 더욱 강화 * 농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7만유로까지 지원
⑨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막화 방지 및 비옥한 영토 보존을 위해, 자연조건 불리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지원액 증액* * 현행 회원국 예산의 5% 범위 내 · 이를 위해 EU의 회원국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및 기존 농촌지역개발정책 차원의 예산 이외에 추가예산 지원
⑩ CAP 단순화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CAP 집행과정 단순화 · 예를 들어, 환경보존 의무 등 cross-compliance 의무이행 항목 감소 - Small Farmers Scheme 제도 도입으로 중소농 지원책 단순화 · 2014.10.15 까지 동 제도수혜 신청 중소농에 대해서 500~1000유로의 직불금을 연간 지급, Cross-compliance 의무경감 및 녹색 직불금 의무 면제 등 - 경영이양 중소농의 농지 매대 활성화로 농업 구조조정 촉진

2. 주요국가 통상협력

◆ 미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섭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입국으로 2012년에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견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식품에 걸쳐 약 67억달러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미 수출은 김, 배, 조제품 등이 6.6억달러 수준으로 2011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농식품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농식품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 농식품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 문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 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2007년 4월 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미국을 소해면상뇌증(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시작하여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을 맺고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 등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통제 강화와 유전자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 의무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산 감귤의 수출 재개, 삼계탕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간의 농식품 통상현안은 한·미 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 점검회의 및 한·미 동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 및 수의검역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9〉 한·미 간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2/2011(%)
수 출	합 계		518.8	599.8	664.0	10.7
	- 농산물		348.2	394.3	429.8	9.0
	- 축산물		15.6	14.0	26.9	92.5
	- 임산물		12.8	10.7	16.4	53.9
	- 수산물		142.2	180.9	190.9	5.6
수 입	합계		5,959.7	7,706.2	6,710.6	△12.9
	- 농산물		4,333.3	5,245.4	4,330.2	△17.5
	- 축산물		926.7	1,686.0	1,410.6	△16.3
	- 임산물		573.5	619.4	792.4	27.9
	- 수산물		126.2	155.3	177.4	14.3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0〉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2010			2011			2012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겔 련	1.2	31.3	김	4.5	38.7	김	4.5	51.3
배	10.2	25.4	음 료	41.9	33.8	음 료	61.8	50.3
음 료	31.6	25.1	겔 련	1.5	29.4	겔 련	2.1	39.0
김	3.7	23.5	배	8.2	23.8	배	8.1	26.3
라 면	6.2	19.8	굴	3.6	21.4	라 면	6.3	22.1
굴	3.3	17.4	라 면	6.4	20.5	오징어	9.4	20.1
비스킷	3.8	16.3	비스킷	4.1	19.7	비스킷	3.8	18.6
오징어	6.0	11.6	오징어	4.8	15.8	젤라틴	1.7	17.7
곡류조제품	2.7	10.8	곡류조제품	3.1	12.1	곡류조제품	3.4	13.0
국 수	5.1	10.1	국 수	6.0	11.6	국 수	6.6	12.3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1〉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2010			2011			2012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옥 수 수	7,282.0	1,684.1	옥 수 수	6,024.1	1,936.7	옥 수 수	2,836.2	931.0
쇠 고 기	92.6	421.6	쇠 고 기	128.4	653.0	밀	2,400.8	764.5
밀	1,430.7	376.7	돼 지 고 기	164.7	509.9	쇠 고 기	105.8	522.5
대 두	733.8	355.8	밀	1,281.1	507.0	돼 지 고 기	131.3	391.3
혼합조제식료품	15.0	229.6	혼합조제식료품	98.3	437.2	혼합조제식료품	16.3	333.0
펠 프	296.4	223.1	면	106.4	402.4	대 두	496.4	310.3
사료용근채류	718.6	195.8	대 두	556.3	326.0	사료용근채류	847.3	284.5
돼 지 고 기	81.9	184.0	펠 프	293.9	232.9	오 렌 지	176.5	241.0
대 두 박	385.6	167.6	사료용근채류	776.3	229.9	판 지	815.1	201.5
침엽수원목	530.8	156.4	오 렌 지	141.2	178.4	펠 프	248.3	174.0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 중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경은

한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12년 기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중국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2년 양국 간 농식품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1,279백만달러를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5,294백만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전체 산업 분야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농식품의 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 폐지 및 세율 인하, 수입입찰제도 개선, 중국산 과일 수입문제 등 경제·통상 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

화하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국 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농수산물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002년 제7차 회의 시 한·중 농수산물협력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11월 '김치 기생충알 파동'이 한·중 간 통상 마찰로 촉발되면서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약'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 간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5차 회의가 2011년 11월 중국 옌타이에서 개최되었다. 본 협의회를 통해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품, 농식품의 검사검역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경은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2,389백만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 8,006백만달러의 29.8%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9월 제8차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여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 44차 회의를 2011년 11월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5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14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 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캐나다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섭

캐나다산 농림축산수산물식품은 2012년 약 12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펄프·원목·돼지고기·밀·유채유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림축산수산물식품은 라면·음료·아이스크림·비스킷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12년 약 0.8억달러에 그쳐 양국 간 농림축산수산물식품 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캐나다와는 한·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측은 2003년 5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 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 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한 바 있다. 캐나다 측은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8월 31일 분쟁패널이 구성되는 등 WTO 분쟁절차가 진행되었다. 2011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를 이루었고, 같은 해 12월 국회심의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WTO 분쟁절차는 양자 간 합의에 따라 2012년 6월 공식 종료되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블루베리의 수입 허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제정된 북미식물검역보호기구(NAPPO) 지역위생기준을 통해 캐나다에 출입 또는 수출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아시

아매미나방(AGM) 무감염 증명 규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 식물검역인증원을 통해 아시아메미나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 가고 있다.

〈표 1-3-12〉 농림축수산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수 출 (A)	합 계	44.5	52.6	62.6
농 산 물		31.8	35.8	43.4	54.5
축 산 물		0.7	0.9	1.4	2.1
임 산 물		0.2	0.6	0.6	1.5
수 산 물		11.8	15.4	17.2	25.0
수 입 (B)	합 계	749.1	1,062.8	1,709.5	1,182.7
	농 산 물	157.5	303.2	728.0	336.5
	축 산 물	151.7	153.3	288.4	207.3
	임 산 물	392.9	553.4	625.4	575.9
	수 산 물	47.0	52.9	67.7	63.0
무역수지(A-B)		-704.6	-1,010.2	-1,646.9	-1,099.6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3〉 대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림축산식품(2012)

(단위: 천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1	혼합조제식료품	7,438	펄 프	330,752
2	라 면	4,934	침업수원목	144,405
3	기 타 음 료	4,269	돼 지 고 기	141,241
4	인 스텐 트 면	2,830	밀	123,331
5	아 이 스 크 림	2,648	유 채 유	77,576
6	비 스 킷	2,509	침업수제재목	72,893
7	기타동물성생산물	1,915	보 리	27,237
8	감	1,897	혼합조제식료품	26,135
9	곡 류 조 제 품	1,826	기타동물성유지	18,324
10	새 송 이 버 섯	1,803	유 장	16,450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연숙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 간 농림축수산물 교역은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EU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이 약 4.2억달러('12)로 세계 4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은 29.8억달러('12)로 미국, 중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이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한국과 EU 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위생 및 검역문제가 양측 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현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EU 회원국산 동물·동물성산물 및 식물·식물성산물의 수입문제이다. 이들 현안은 주로 한국과 EU 개별 회원국의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해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이미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도 개별 회원국과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수산 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 간 농업 통상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으나,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동식물 검역 관련 통상현안 문제는 FTA 협정하에 설치된 SPS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U 측의 관심사항인 EU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EU 측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확보 및 다른 국가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사례를 들어 EU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위험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측은 EU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EU 측이 요청하는 육류 수출작업장 일괄 승인(pre-listing) 방식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요청시 해당 국가의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다른 작업장의 위생 관리 평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국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관련, EU 측은 동등성을 인정하여 EU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우리 측이 인정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는 바, 우리 측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및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와의 검역현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틀 안에서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양자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의 동구권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 분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및 식품안전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기술 및 경험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어 EU의 주력품목인 치즈 등 낙농품 위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남미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최수아

중남미 국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농작물 및 가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 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오렌지·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블루베리·쇠고기, 멕시코의 페르시안라임 및 가금육, 페루의 포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및 쇠고기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 농산물의 경우 UR 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 외교적 측면과 농업 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유도를 위한 여러 국가들 간의 농업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6년 2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1차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2차 농업협력위원회는 2008년 8월에 서울에서, 3차는 2010년 11월 브라질에서, 4차는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한 정보 및 전문가 교환, 공동 연구 등 농업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경은·온누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ASEAN 등 동남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 미작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열대과일·축산물 등 농산물 수입 허용, 검역협정 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수입관리 제도의 이해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SPS 규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검역시스템을 소개하고, 참가국 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및 축산물안전관리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입허용절차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남아공 등과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 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2편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농가 경영혁신·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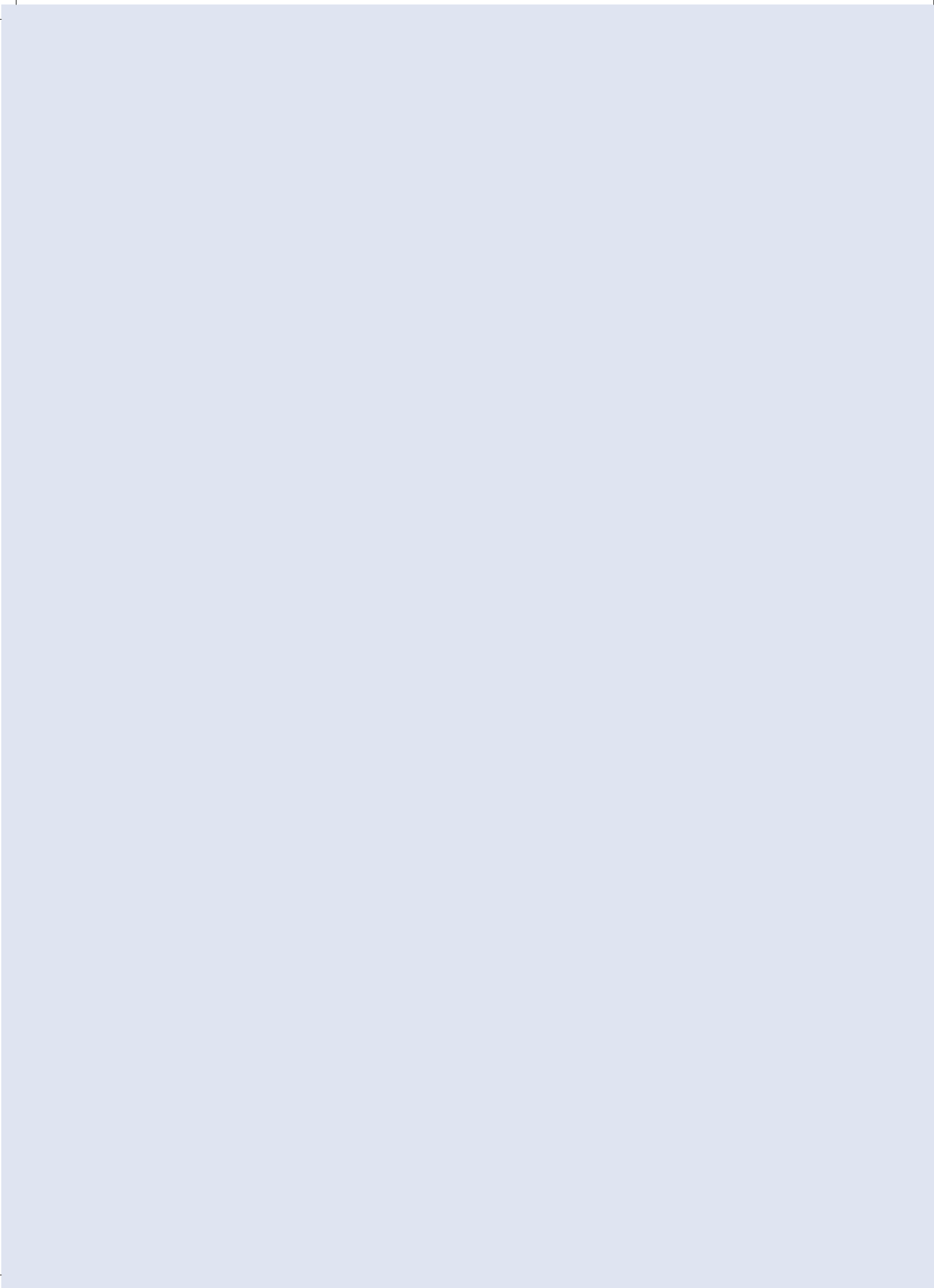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제6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제1장 총론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고은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위기,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개방경제 추세의 확대는 농어업 분야 경쟁력 제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귀농·귀촌, 농어촌 관광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지역 활성화, 위험관리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 추진된 정부의 주요 농정시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농림어업 성장과 농어가 경영안정

2004년 이후 정체되어 왔던 농림업생산액이 이명박 정부 초기 39.6조원에서 2012년에는 46.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한국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는 농어업을 1차산업만이 아닌 2차, 3차산업을 결합한 6차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한편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농어가의 소득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복지 지원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어가의 재해 대비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12개 추가하고(11:50개→12:62), 대상 재해도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화재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밭농업·수산직불제를 신규 도입하고(보리, 밀 등 19개 주요 밭작물), 지원 목적별로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건불리, 경관보전 직불금 등 기존 직불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를 도입하였다.

◆ 지속적인 농·수협 개혁 추진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협 개혁을 통해 농협이 농산물 유통·판매 등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차례의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경제·금융) 체제로 전환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하였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조세·보험 특례 조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수협 경영을 정상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의 부실수협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농어업 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2011년 수립한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11.9)’의 시행 첫해인 2012년에도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식품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식품산업은 매년 가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분야별로 식품가공 및 외식산업 활성화, 한식 세계화 등 식품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고 다양한 수출전략을 전개하여 국내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한식업체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농식품 수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9억달러였던 농수산물 수출액이 2012년에는 80억달러로 4.1%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R&D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Golden seed project’를 지속 추진하였고, 3월부터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과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 등 저탄소 농식품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을 마련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활력 창출

정부는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행

계획(2010~2014년)’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였고,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력 유인을 촉진하였으며, 농어촌 일자리 발굴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을 단위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어촌산업박람회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8.30~9.2).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광사업등급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테마공원 8개소 조성을 완료하는 등 농어촌 관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한편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범국민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추진한 결과 2012년에 2만 8천명(11월 8일 기준)의 재능기부 신청자가 활동 중이다.

◆ 식량자금을 제고 및 해외농어업 개발·협력

정부는 국제곡물가 상승이 농어가 경영 부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8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매취방식에서 수탁방식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논 이용 다양화, 겨울철 유희농지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 식량도입체계 등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쌀 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을 통해 해외농업투자·협력을 활성화하고 곡물확보 능력을 증대시켰다. 조업권 등 수산자원 확보능력을 확대하고 어장관리해역 지정 등 어장관리제도를 정비하였으며(11월 어장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도국의 식량·산림 문제 해결 및 국내 농식품 관련 기술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 합리적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수산자원의 조성·관리 내실화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의 과학적 조사·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며(12월), 바다식목일 정착을 위한 세부지원 규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수산자원 방류, 바다숲(11까지:1,087ha→1,927)·바다목장 5개소 추가 조성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넙치, 전복, 참다랑어 등 10대 전략 품목을 중

심으로 양식시설 현대화, 양식어장 신규 개발, R&D 지원을 강화하여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식품 안전관리

GAP(농산물 우수관리)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집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GAP제도를 활성화하였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이력제를 확대하고 인증제를 통폐합하는 등 인증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가축질병방역 긴급행동지침을 전면 개선하고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평시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

한·미 FTA를 우리 농림수산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아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1월에는 한·미 FTA 비준에 앞서 2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수립하였다. 추가대책에는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발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직불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와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규제개혁 가속화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여 농어촌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유통구조 개선, 어업제도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였다. 특히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통해 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였다.

제2장 농가 경영혁신·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1절 농가 소득 증대

1.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추진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세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WTO-DDA 협상 논의, 한·미 FTA와 한·EU FTA 타결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요인이 증가하여 농가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현행 직불금이 쌀에 집중(87.1%, '11년 순 직불제 예산 대비)되어 품목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가의 당해년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직전 5개년의 농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농업소득)보다 감소할 경우 그 격차의 일정비율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해 주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여야 간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발농업직불제가 신규 도입되고 FTA피해보전직불제가 확대 시행되며, 당초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추진여건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7년 6월 한·미 FTA로 인한 피해의 국내 보전대책으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을 발표한 이래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여 농가별 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년 10월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준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0년 제1차 도상연습에 이어 2011년에는 제2차 도상연습, 2012년 제3차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대상은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득변동 폭이 큰 35개 품목으로 하였으며, 2차 도상연습의 쌀, 콩, 고추, 겉보리, 쌀보리, 사과, 한우 등 20개 품목에서 15개 품목(맥주보리, 옥수수, 고구마, 수박, 고랭지 배추, 양배추, 복숭아, 참깨 등)을 추가하여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사업대상 지역은 25개 시·군의 48개 읍·면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현장점검 결과 대상 품목과 재배면적이 적합한 10,269 농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생산비가 반영된 소득 외에도 농가수취가격과 평균 도매시장가격이 각각 반영된 두 가지 조수입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상연습 결과 발동기준 90%, 보전비율 85% 적용 시 표준소득 기준의 경우 전체 대상농가 10,269호의 6.4%에 해당하는 653호에 평균 7,538천원, 49억원 지급. 조수입 I (농가수취가격) 기준 시 140호(1.4%)에 1,395천원, 조수입 II (도매시장가격) 기준 시 174호(1.7%)에 2,80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한우(비육우)를 비롯하여 가을배추, 한우(번식우), 육우 등 7개 품목에 지급되었으나, 전체 직불금이 축산농가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발동기준 90%, 보전수준 85% 적용 시 축산농가에 직불금의 95%가 지급되었고, 한우 비육우의 농가당 평균 수급액도 9,407천원으로 타 품목에 비해 최대 65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 시 소득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2008년도에 「농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시행 근거를 마련(08.6.22. 발효)하였고, 2009년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영정보의 등록 및 확인, 자금 지원 등의 제한 등 세부조항을 마련하였다(09.10.2. 시행).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등록사업을 시작하여 인적정보, 농지지번, 경지면적, 재배품목 또는 사육두수 등 총 60개 항목에 대해 2012년 말 현재 149만 농가의 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농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가소득신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농업인의 의식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3년에 걸친 도상연습 결과 현행 쌀·밭 직불제에 비해 대상 농가 수 및 농가당 수급액이 감소하여 식량재배농가의 소득안정효과는 미흡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2012년 소득안정직불의 발동기준을 100%로 적용해도 수혜농가는 143천호로 쌀·밭 직불 수혜농가(1,028천호)의 14%에 불과하다. 직불금 분배의 공정성 측면을 보면 2012년 축산품목에 93%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2010년 과수에 100% 직불금이 집중되는 등 품목별 직불금 편중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현행 직불제에 비해 지급대상 축소, 소득안정효과 약화 및 직불금 집중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의 취지와 농가 경영안정대책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존 직불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격변동이 큰 품목의 농가 경영안정제도가 미비한 현 농가소득안정체계에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 검토를 통해, 가격위험에 처한 농산물의 가격안정체계와 농가의 소득안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 검토를 위해 부내 정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KREI, 보험개발원, 농협손해보험 등으로 이루어진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2월까지 농업수입보장보험 상품설계 등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상연습을 시행하여,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최준태)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수 2,912천명 중 65세 이상이 약 3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농가 1,151천호 중 65.2%의 경지규모는 1.0ha 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령농의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여건하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토록 하는 대신 일정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만원(연간 30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 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부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으며,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 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렇듯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 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고령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사업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어 일부 예산이 불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고령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 사업 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지방지 118회 광고 게재, 안내문 21만장, 리플릿 16만장 배포, 정책홍보 만화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에는 2011년에 이어 양수대상자 범위를 후계농업경영인까지 확대하였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경영이양 농업인 97,6천명에게 직불금 3,418억

원(1인당 연간 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70.6천ha를 전업농 등 67.6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업인에게 ha당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3년에는 사업신청 가능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의향 조사,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농업인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선범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5년 이전에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 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

용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2004년에 일시 시행한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농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농가의 소득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쌀값 하락 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여 통합 시행(2005년 7월 1일)하였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 1월) 산지 평균 쌀값이 쌀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로 인한 쌀값지지와 쌀 농가 소득에 기여한 직접소득효과, 2003년 농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쌀 80kg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에 대하여 벼 재배 여부나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 597천원)을 매년 말에 지급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 간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2008년 하반기에 실제 농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일부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부당수령사건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개선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면서 그동안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쌀 직불금 신규진입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다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그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만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부재지주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람에게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급상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부당수령한 사람만 등록 제한하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부당수령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체계를 강화하였다. 우선 쌀 직불금 등록신청 기관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쌀 직불금 등록신청자들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부재지주들의 부당수령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쌀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신청면적을 최대 30일간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당하게 신청한 자 또는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부당하게 등록 또는 수령한 자와 허위로 경작사실을 증명해 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10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당 등록자 또는 수령자는 종전에 3년간 등록제한하던 것을 5년간 등록제한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종전 행정안전부의 쌀 직불금 농촌행정전산시스템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받아 새로운

AgriX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도 또는 시·군 간 중복 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자료와 일괄 대조하여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소지를 시스템적으로 방지 하도록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2012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80kg당 173,779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80kg당 지급액이 변동직불금은 0원, 고정직불금은 11,509원으로 80kg 당 총 11,509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목표가격(170,083원/80kg) 대비 108.9%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였다.

〈표 2-2-1〉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구 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고정+변동 (억원)
2012년산	791	866	6,101	719	747	-	6,101
2011년산	812	875	6,174	740	754	-	6,174
2010년산	838	883	6,223	781	789	7,501	13,729
2009년산	866	891	6,328	815	809	5,945	12,330
2008년산	1,097	1,013	7,118	-	-	-	7,118
2007년산	1,077	1,018	7,120	1,020	933	2,792	9,912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쌀소득직불제 특별조사와 제도개선이 2009년에 마무리되었고, 이후 개선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쌀직불제도는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로써 쌀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농업인의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 시 제도개선과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최춘태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1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의 면적은 9,014천ha로 전 국토의 90.0%에 달하지만 농어촌 거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18.0%에 불과한 실정이다. 걱정만 농어촌 인구의 확보 없이는 농어촌지역 정주에 필요한 기초서비스 공급은 물론,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창출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저하는 많은 농어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영농여건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4~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에 경지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직불금은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법정리에 연접하는 읍·면에 실거주하며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직불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의 활력 증진, 마을 공동방역 등 공익적 기능 증진, 농용지 보전활동, 지역마케팅 활동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 139개 시·군(1,4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제2기('12~'1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법정리를 재선정한 결과 3,137개에서 3,550개(전국 읍·면 지역 15,238개 법정리 중 23.3%)로 조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지방비 부담을 30%에서 20%로 경감하였고 414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00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지급단가가 변동 없이 유지되어 그동안 꾸준히 지급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는 밭 50만원/ha('09, 40만원),

초지 25만원/ha('09, 2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각각 25%씩 인상하였다.

2012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원면적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형편이 열악한 점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고, 향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운용 등 농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농가 경영 안정

1. 농지은행 활성화

농지와 사무관 박홍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지법」 개정('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12.29.)을 통해 「농지은행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이후 2009년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사업에 추가하였고, 2010년 농지매입비 축사업, 2011년 농지연금사업 시행 등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로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에 장기저리의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인 간

의 농지교환·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1,430ha 1,267억원, 농지임대차 1,268ha 340억원, 농지교환·분합 13ha 14억원 등 총 2,711ha 1,621억원을 3,31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조 6,645억원을 지원하여 164,367ha의 농지를 규모화·집단화시켰다.

〈표 2-2-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합 계	1990~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면 적	164,367	135,649	7,855	5,863	5,220	4,282	2,787	2,711
금 액	66,645	52,179	3,400	3,204	2,512	2,118	1,611	1,62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특히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013년까지 6ha 규모의 쌀 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쌀 전업농을 선정하여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37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 전업농 수는 1995년 14천호에서 2012년 70천호로 늘어나고,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012년 5.6ha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 쌀전업농 호당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10) 5.2 → (’11) 5.4 → (’12) 5.6

이는 2012년 쌀 재배농가의 평균 경영규모 1.17ha의 4.8배 규모이다. 또한 2012년 쌀 전업농의 벼 재배면적(393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849천ha)의 46.3%로서, 쌀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과 낮은 임차료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기간 내 해지 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12년에는 16,638농가에 10,059ha를 임대하여 호당 평균 경영규모 0.6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2-2-3〉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한 농지임대 실적

(단위: ha)

구 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가수	99,312	219	6,613	7,997	9,737	27,237	14,948	15,923	16,638
면 적	35,504	110	3,372	4,277	5,162	15,956	8,118	10,837	10,05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우선적으로 매입해 갈 수 있도록 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들이 부채를 갚고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으며, 경매 시 정상가격의 60~70% 수준에 해당하는 저가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4~19%)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 이내)의 납부로 농가부담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경영회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11:2,400억원 → '12:2,600억원)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연령제한 상한을 완화(만 70세 이하 → 만 75세 이하)하였다.

〈표 2-2-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 분	합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가수	4,887	183	444	490	635	1,148	978	1,009
면 적	6,498	311	629	696	878	1,369	1,313	1,302
금 액	11,670	422	953	1,195	1,700	2,400	2,400	2,6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촌고령화 심화,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 이농·전업(轉業)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 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농업인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농지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농지를 시가로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고령 은퇴 및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매입 비축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주어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해 주는 등 농업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715ha를 매입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입한 농지 1,921ha 중 1,828ha를 2,222농가(농가당 0.8ha)에 임대해 주었다.

〈표 2-2-5〉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 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매 입				임 대			
	합 계	2010	2011	2012	합 계	2010	2011	2012
면 적	1,921	495	711	715	1,828	492	709	627
금 액	3,922	750	1,573	1,599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지규모화사업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 동안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농업인,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수수료율 인하,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지원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에 대한 농업인, 국회 등의 문제제기 및 환매대금 일시 완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재해보험팀 사무관 양운식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같은 거대재해 및 폭염·가뭄·홍수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상황으로 지난 '루사(2002)', '매미(2003)' 태풍으로 255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볼라벤·덴빈', '산바'와 같은 연이은 태풍과 호우·강풍·대설 등 22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2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기상재해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이자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파대·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 수준이 미약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의 거대재해 위험(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180% 초과)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

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2-2-6〉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상품목		6	7 (뽕은감 추가)	10 (밤, 참다래, 자두 추가)	15 (콩, 감자, 고추, 양파, 수박 추가)	20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추가)	25 (대추,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추가)	30 (풋고추, 호박, 국화, 시설장미, 복분자 추가)	35 (파프리카, 멜론(시설), 인삼, 오디, 차 추가)
가 입 실 적	가입농가(호)	26,328	27,419	29,145	32,538	45,882	52,738	67,653	74,983
	가입면적(ha)	20,301	21,466	23,661	26,037	48,331	53,452	86,604	108,373
	가입률 (%)	23.4	24.0	22.7	28.5	12.5	13.0	15.0	13.6
지 원 규 모	순보험료(%)	61.2	58.4	55.6	52.8	50	50	50	50
	운영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34,749	36,108	32,305	30,258	32,134	44,929	58,081	78,873
지 급 보 험 금	지급농가(호)	5,877	5,174	7,198	3,382	8,681	14,343	19,611	46,337
	보 험 금	23,871	21,112	61,464	24,932	66,176	90,330	13,263	490,978
	손 해 율 (%)	43.5	36.6	110.4	45.0	105.8	104.6	119.4	357.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손해보험(주)

◆ 추진 내용 및 성과

◆ 대상품목 확대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대상품목의 경우 2001년 사과·배 2개에서 2012년 현재 35개로 매년 품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사업 초기 과수작물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보험대상을 벼·콩·고추 등 식량·채소작물 등 전 농작물로 다양화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 2012년 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대추,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인삼, 오디, 녹차

* 전국단위 본 사업 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 대상재해 확대

대상재해의 경우도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2007년 이후부터 개발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벼 품목의 경우에는 병충해의 일부(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와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는 기존 특정위험방식에서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보험 가입률 제고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74,983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11년 86,604ha에서 108,373ha로 늘어 가입률 13.6%(사과·배·감귤·단감·뽕은감 과수 5개 품목 가입률 48.5%)를 달성하였다. 특히 사과·배의 경우 전국 대상 면적의 77% 이상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과·배를 제외한 감귤·포도·복숭아 등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20% 이내에 머무는 등 아직까지도 재해보험이 품목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 작물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2012년까지 134천 농가에 9,9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대상재해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 가입률 및 규모 면에 있어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2017년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50개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로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보험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전국사업으로 확대할 계획

이며, 현재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 중인 과수 5개 품목(사과·배·단감·뽕은감·감귤)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재해농가 지원 확충

▮ 재해보험팀 사무관 정병석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은 자연과 밀접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야이다. 실제로 매년 많은 농업인이 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재해를 피하기 위한 여러 예방사업 및 예방책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이러한 재해농가의 영농재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 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는 우박, 강풍, 집중호우, 태풍 불라벤·덴빈·산바 등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332,505ha, 하우스 1,962ha, 축사 125동, 인삼재배시설 14ha 등의 피해를 입어 약 9,714억원(보조 8,820, 융자 645, 자담 249)을 지원하였다.

전례 없는 연이은 태풍 불라벤·덴빈·산바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가뭄·우박·강풍·홍수 등으로 인한 낙과피해 및 벼 백수피해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생계지원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고, 복구비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였다. 백수피해의 경우 피해농가를 위해 백수비 등외품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가 매입하였고, 조사료 활용 시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업인은 1년 또는 다년간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금전적 피해와 함께 삶의 의지가 꺾이는 등 정신적 피해도 크게 받는다. 재해복구비는 손실액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아니며, 복구비 또한 현실단가의 60% 수준으로 다소 부족하나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재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복구를 이뤄지게 하였다.

또한 지원기준 단가가 없거나 현실보다 적은 지원 단가에 대해서는 매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 단가 신설 및 인상을 통해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지원 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년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규모 피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농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 재해보험팀 사무관 양운식

◆ 추진 배경 및 개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 태풍,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보험가입건수 및 보험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대상품목 확대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대상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2011년에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16개 축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2012년에도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속 지원하였고, 보장범위 확대, 대농업인 보험가입 홍보 강화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전년 54.5% 대비 16.9%p 늘어난 71.4%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대상품목과 전국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2년에는 자연재해·화재·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69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한편 보험 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축종별로 돼지, 가금은 높은 반면 소는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재해 및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7〉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7.2	6.9	7.1	8.3	8.1	7.8	6.7	6.1	7.6
돼 지	48.2	57.2	66.7	63.2	65.0	77.0	74.8	82.7	85.1
말	2.1	4.9	6.7	7.2	7.9	8.6	6.3	5.2	4.9
가 금	24.0	37.0	39.3	43.1	45.2	46.9	51.6	54.8	73.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손해보험(주), LG손해보험(주)

5. 농어업부문 세제지원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문지민

◆ 추진 배경 및 개요

조세제도는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업 분야에 다양한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여 농어업 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능별 예산분류기준(16개 부문)에 따라 조세감면 실적을 분류했을 때, 농림수산 분야의 지원 실적이 전체(185,722억)의 28.0%(52,032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조세지원 실적이 높은 편이며, 직접적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어업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업인 관련 조세경감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취득·등록세) 등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직접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전담 임대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이자소득세 감면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이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에 대한 감면도 다양하며,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준비금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간접세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에는 농협조합원 예·적금 증서, 용자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 밖에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이 행해지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어업 부문의 조세감면 항목(국세 39개, 지방세 21개) 중 조세감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주요 항목으로는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이 있다.

이들 감면 항목에 대한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8〉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주요 항목	• 면세유	농업	11,208	11,353	9,646	10,403	
		어업	7,321	7,005	6,459	6,393	
		계	18,529	18,358	16,105	16,796	
	•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업	12,108	11,675	11,213	11,870	
		어업	405	404	394	397	
		계	12,513	12,079	11,607	12,267	
	•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농업	1,129	1,014	1,299	1,431	
		어업	155	154	153	153	
		계	1,284	1,168	1,452	1,584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18,779	17,134	12,375	10,911
	• 농지 대토시 양도세 면제			1,791	2,036	955	766
	•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2,578	2,516	2,458	2,322

석유류 면세는 1972년에 어업 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농기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3월부터이다. 2012년 말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기계 42개 기종, 임업기계 10개 기종, 어업 부문 13개 부문이고,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9〉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단위: 천ℓ, 억원)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공급물량 (천 ℓ)	농업		1,898	1,923	1,807	1,761
	어업		1,098	1,103	973	949
	소계		2,996	3,026	2,780	2,710
공급액 (억 원)	농업		14,110	16,410	19,344	20,147
	어업		6,541	7,743	8,896	9,198
	소계		20,651	24,153	28,240	29,345
감면세액 (억 원)	농업		11,208	11,353	9,646	10,403
	어업		7,321	7,005	6,459	6,393
	소계		18,529	18,358	16,105	16,796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현행 적용 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농기계 32종, 사료, 축산기자재 39종, 임업용 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3종, 어업용 37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 농업용 필름 등 45종, 어업용 25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2-10〉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비	료	1,800	1,548	1,481	1,664
농	약	1,310	1,250	1,258	1,339
농	기	958	1,019	1,004	890
사	료	7,300	7,500	7,350	7,830
축	산	740	358	120	147
기	자				
재	재				
계		12,108	11,675	11,213	11,870

〈표 2-2-11〉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후환급적용자재	연간환급세액				
	2008	2009	2010	2011	2012
농	238	237	250	276	308
업	185	209	196	225	295
용	341	336	350	400	371
필	13	16	15	21	13
름	38	42	41	45	40
농	27	24	20	20	26
업	2	5	4	5	6
용	36	53	51	64	57
포	30	36	39	42	52
장	-	2	1	1	2
상	14	23	26	38	53
자	33	146	21	162	208
자					
재					
기	957	1,129	1,014	1,299	1,431
타					
계					

〈표 2-2-12〉 어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어업용 사료	95	103	91	90
로 프	62	62	53	53
어선(20톤 미만)	53	34	46	45
선외내연기관	29	40	41	45
어망	28	28	29	29
양식용약품	28	25	25	25
기타	110	112	109	110
계	405	404	394	397

〈표 2-2-13〉 어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후환급적용자재	연간환급세액				
	2008	2009	2010	2011	2012
어상자	41	45	39	36	36
어업용발전기	16	16	15	14	14
차광망	13	13	14	14	14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	25	25	24	21	21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8	8	8	10	10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4	14	15	17	16
기타	31	34	39	41	42
계	148	155	154	153	153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국제 유가·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FTA의 확대에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율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6.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제도개선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유재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3년 시범사업 이후, 2004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 요건 관련 농업용 부채 기준을 '1,500만원(특별재난지역은 700만원)'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대폭 완화하였고, 농업용 원자재의 원가상승(또는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요건은 기존 '20% 이상'에서 '15%'로 완화하였다. 경영평가 시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출지원을 보다 용이케 하였으며, 대출실시 이후에는 농협은행(또는 일선 조합)이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간이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의 회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지원 활성화를 위해 연계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 자체 지침(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제한 요건을 자산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에서 '300% 초과'로 완화하였고, 대출 취급 우수 조합과 경영회생 사례를 발굴하여 일선 조합에 배포해 대출 취급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2012년 151농가에 196억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되는 등,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00농가에 4,620억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통해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은 기존 대출금을 장기저리자금(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으로 대환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2012년은 35억원)해 주었다.

향후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조건 완화, 농업인·일선조합·지자체 대상 홍보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7.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유재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부채 규모는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상업농화가 진전되면서 시설투자 증가, 경영비 상승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 이후 정체상태이며, 농가 자산의 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인 부채 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 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고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중 이차보전대상 자금인 2001·2004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2006·2009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에 대해 808억원을 이차보전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당 평균 70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없는 농가(전체 농가 수의 41.8%)를 감안할 때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6.8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 3.5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 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들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재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유통체계 개편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8.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 식량산업과 사무관 이범섭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어업용 면세유류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과 관리체계 개선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공급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농어업인의 생존과 직결

되는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고유가 현상과 자원고갈 문제의 대두, 한·미 FTA,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농업용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등 42개 기종, 어업용의 경우 어업용 선박 및 시설 등이 해당되며, 대상유종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이다.

농림어업용 면세유류는 현행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내역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각각 529원, 375원,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270만kl(농업용 176만kl, 어업용 94만kl)로 2011년 280만kl와 비슷하며, 2012년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도 1조 6,796억원(농업용 1조 403억원, 어업용 6,393억원)으로 2011년 1조 7,800억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표 2-2-14〉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단위: 만kl, 억원)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사 용 량	농 업 용		192	192	181	176
	어 업 용		110	110	99	94
감면세액	농 업 용		11,353	11,353	11,174	10,403
	어 업 용		6,816	7,005	6,626	6,393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농업과 어선어업을 촉진하여 신선채소의 연중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해 국내 물가안정과 국민가계 부담의 완충역할을 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수혜자는 농어업인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기계 및 어선을 가진 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도 시민은 농수산물을 보다 싸게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취약한 농어업의 경영 안정화, 환경보호 측면, 도로 비주행 등의 이유로 자국의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세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효과는 면세유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근절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킴으로써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가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사용량을 전량 공급하고,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에 소요되는 유류는 충분히 공급하되 부정유통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방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9. 농기계임대 활성화

▮ 식량산업과 서기관 김철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0년 이후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대체하고 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을 늘려 나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후한 소형 농기계를 대체하면서 중대형 농기계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농업인의 부채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에 따른 농기계의 이용 효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발작물 농기계의 경우 영세한 영농규모, 짧은 사용기간, 발농업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기계화율이 50%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거나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농업이 영농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던 것을 2000년대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부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농협이 신용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농가부채 탕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논농업 중심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영농관리센터를 두 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국고 150억원을 지원하여 총 250개소를 설치하였고, 2012년 농기계 이용률은 9.6일/대로 전국 평균 작업일수 1.5일 대비 6배 높은 성과를 거두어 농기계 이용률 및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의 경우 2012년 전국 지역농협 861개 중 692개소(80.4%)가 참여하였고, 영세·고령농의 농작업 대행면적은 196천ha로 전체 비면적의 22.6%를 달성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업인에 대한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12년부터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고추·마늘 등 규모화된 밭작물단지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까지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5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신규 임대용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령·영세농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해 지역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직영농협을 확대할 것이며, 그 범위도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⑤

제3절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강효주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된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1981년도부터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만 45세 미만의 청장년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에는 경영·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영농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 및 생산·유통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후계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경영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잠재농업인력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농산업인턴제를,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인턴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 말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던 인턴사업을 통합하여 농산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외농업인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령, 영농·영어 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등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2년에는 총 1,564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되었다. 이 중 남성이 1,337명(85.4%), 여성이 227명(14.5%)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83명(24.5%), 30대가 617명(39.5%), 40대가 564명(36.1%)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312명, 경북 266명, 전남 217명, 경기 216명, 경남 144, 충남 141명 순이다.

〈표 2-2-15〉 2012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명,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564	216	74	94	141	312	217	266	144	48	52
(%)	13.8	4.7	6.2	9.0	20.0	13.9	17.0	9.2	3.1	3.3

2010년까지는 창업융자금의 신청 및 융자금 대출이 확보한 예산의 50%에 못 미쳤으나, 융자금을 선정 당해 연도에 최소 4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40% 이상 사용한 자에 한해 3년 동안 분할하여 잔여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융자금 대출을 확보예산의 95%까지 지원하였다.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 중 창업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영농기반 확보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2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327명을 선정,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경영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선진기술 및 국제 감각 습득 지원을 위해 국내외 연수과정을 시범 실시하여, 경영교육 1,362

명, 품목전문교육 14명, 국내외 연수 145명을 교육하였다.

◆ 농산업인턴제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는 만 15세에서 44세 사이의 미취업자 또는 농고·농대 휴·재학생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 자격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며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도농가는 최대 2인까지 인턴 채용이 가능하며, 인턴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50%를 8개월간 지원한다. 2012년에는 기존 18세 이상인턴 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원예작물 및 축산물 분야에서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인턴이 조기창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잔여기간 선도농가에 기업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산업 고용창출을 유도하였다.

◆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 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인턴 1인당 63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30명에게 지원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조 9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134천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확보되었으며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영농정착 실적평가를 토대로 성장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업법인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 각종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농어업법인이 경영상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법인 육성 및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등의 근거규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와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부실·허위법인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이 기업적 경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9년,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종전 75%에서 90%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0% 이상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한도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농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시장·군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 및 조직변경 근거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 및 경영효율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 말 기준, 농어업법인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면 농업법인 수는 12,981개로 전년 대비 19.5% 증가, 어업법인 수는 932개로 6.2% 증가하였고, 농업법인 종사자 수는 79.9천명, 어업법인 종사자 수는 5.7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2-2-16〉 농어업법인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ha)

구분	2010	2011	증감률	구분	2010	2011	증감률
농업법인 수	10,867	12,981	19.5	어업법인 수	823	932	13.2
종사자 수	66,889	79,937	19.2	종사자 수	4,885	5,669	16.0
판매액	144,101	170,985	18.7	판매액	9,576		
법인당 경지면적	10.5	11.3	7.6	법인당 양식장면적	4.1	5.4	31.7

자료: 통계청,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보고서

또한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6.8명, 상시종사자 4인 이하 규모 법인은 전체의 63.5% 수준이며, 사업유형은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은 32.4%, 유통판매는 25.7%, 가공판매는 18.6%로 나타났다. 판매액도 법인당 판매액은 18.0억원,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40.2%, 농업생산수입 23.8%, 가공업 24.7% 수준이며, 재정상태의 경우 법인당 자산은 12.8억원, 부채는 7.9억원 이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62.1%로 나타났다.

어업법인의 경우도 법인당 종사자 수 6.5명, 상시근로자 4인 이하 63.9%이며, 사업유형과 판매액에서는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은 44.7%, 법인당 판매액은 13.3억원, 어업생산수입은 전체 판매액 중 19.5%를 차지하였다. 재정 상태는 법인당 자산 11.5억원, 부채 7.6억원, 자본대비 부채비율 195.2%로 전년(195.9) 대비 0.7%p 감소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지속적인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농어업법인이 증가하는 동시에 경영 지표도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법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경영,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에 대한 비용절감의 추진 및 농식품 모태펀드 등 창업·투자유치 활성화와 세제지원, 농어업법인에 대한 전문화된 경영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업법인의 운영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업법인에 대한 정책자료 축적을 통한 합리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법인의 원활한 기업상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주식 등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어업법인이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농어업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등 농어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3. 농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안치홍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등으로 급변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습 위주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전국 대표실습장, 지역품목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교육장을 확충하고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품목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 및 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전면 경쟁체계를 도입한 공모방식으로 기관과 과정을 선정하는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외연수 운영 전문기관을 점검하고 농정방향에 부합되는 국외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자생적 학습조직을 도입하는 등 교육방식을 다변화하였으며, 기획공모를 확대하는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교육을 강화했다. 예비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농업계 학교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특성화농고 및 농대 산업연계교육과정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전국대표실습장 9개소와 지역품목실습장 67개소를 지정·운영하여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및

귀농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고,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그린낙농실습교육장 등 구축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전국 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20개 캠퍼스에서 88개 과정의 교육을 2년 동안 40학점 이수하는 교육체제로 품목별 전문기술을 습득, 생산성 증대 및 경영능력 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1~3월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기에 농업교육과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개경쟁방식을 지속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교육운영주체를 발굴·지원하여 우수과정 선정 및 성과 중심 농업교육 기반 확충으로 농정에 부합하도록 창업·경영, 농촌개발, 리더십·거버넌스, 녹색성장·친환경농업, 품목전문, 소비자·청소년 분야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48개 기관 72개 과정을 선정하여 전문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이주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여성농업을 연계, 1:1 맞춤형 농업인교육을 통하여 우수 여성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귀촌 희망자(도시민)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이해도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21개 기관 2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12개 기관에서 18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국외 시장개척을 선도하였다.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고·농대의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농고 10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학교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 전환을 위하여 74개 농고를 대상으로 농고비전스쿨, 농산업 Job Map 프로젝트, 전국FFK전진대회, 농고 멘토링, 우수학생 국외연수 등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전국 10개 농과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습(WPL 포함) 및 견학교육, 농업경영체 장·단기 인턴십, 농업인 성공사례 특강, 창·취업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프로그램, 영농 Job Map,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창업교육, 전공능력 향상교육, 선진지 국외연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

공모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4개 교육 유형 및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자체평가·강의 평가/모니터링·서면평가·현장평가 등 4단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선정에 반영하였다. 장기교육과정인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과정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과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교육운영 성과 측정에 활용하였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AgriEDU)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정보노출 취약점 개선, 기능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조치 및 서비스 안정화, 최적 시스템 운영 환경을 위한 성능을 개선하였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발굴·활용하고자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문제 개발, 역량평가 및 현장심사 평가지표 개발, 지정시험 시행 등 새로 도입된 지정제도의 체계적·안정적 정착기반을 구축하였다. 또 농업교육 전후에 농업인 역량(능력표준)을 점검하고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생들 자신의 역량수준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집중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였다.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 교육체계 개편 계획 수립을 통해 범농업계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교육훈련은 농업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을 운영하여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관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교육비의 30%를 교육생 자부담 원칙으로 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농업·농촌교육공모, 기획과제공모, 자생적 학습조직 운영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농업계학교 역량 강화 교육 지원방식 개선을 통하여 농정현안 및 중장기 농정수요에 대응하고, 농업교육체계를 개편하여 범농업계 교육의 전문성 확대 및 체계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교육생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농축산물 유입, 친환경농산물 선호 등 소비 성향의 변화, 농업의 6차산업화 등 농업환경이 변하면서 농업경영체의 생산능력에 더불어 사업다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영능력의 향상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기술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업체와 컨설턴트를 통한 농업 분야 컨설팅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인증받은 농업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기술 또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획일적인 관 주도의 기술지도와 달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능력을 혁신하는 한편,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0년부터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여 컨설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컨설팅 성과에 대한 저해요소와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턴트, 컨설팅업체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강화하고, 컨설턴트, 컨설팅업체당 사업량 제한, 컨설팅 수행 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평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경과 후 인증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점검 실시 및 사업수행 상황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 및 컨설팅 질의 향상을 유도하였다.

또한 생산기술 위주의 농어가 컨설팅을 축소하고 법인 및 조직경영체 중심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조직경영체 우수 컨설팅 사례를 발굴하여 타 경영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농업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색깔 있는 마을 사업에 선정될 경우

컨설팅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컨설팅 주체(지방 자치단체, 컨설팅업체, 경영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 활성화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 컨설팅 수행 단계별 점검평가

2011년에 농어업경영컨설팅을 받은 934개 경영체(개별경영체 778개, 법인 및 조직경영체 156개)에 대한 컨설팅 수행 단계별 점검 및 평가를 실시·완료하는 한편, 2012년에 컨설팅을 받은 653(개별경영체 528개, 법인 및 조직경영체 125개)개 경영체에 대해 중간점검을 시행하였다. 2011년도 경영체 중 수행계획이 불량한 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통해 개선하였다.

◆ 컨설팅 후 농가소득 증가

2011년에 선정되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컨설팅 대상 농업경영체 934개 중 10%를 샘플링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 고객관계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업소득 증가율이 25.6%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 2-2-17〉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분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량(개소)	220	1,000	1,009	1,080	1,250	1,448	994	934	653
사업비(백만원)	1,710	8,000	8,640	8,640	9,750	11,200	10,080	9,916	5,375
국고	671	4,000	4,400	4,400	5,000	5,600	5,040	3,111	1,7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법인·조직경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2012년 평가점검단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전후 매출액은 23.2%, 순이익은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노력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역량진단지표 개발 및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경영체의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5. 귀농·귀촌 지원대책 정비

■ 경영인력과 사무관 안중락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대비하여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 등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2009년 4월 발표하고 그간의 귀농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농업과 농촌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에서 창업자금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통하여 조기퇴직, 은퇴 등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 농식품산업 차원에서는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관점에선 주민 확보는 물론, 문화, 관광·서비스 분야의 활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교육 실시,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농업·농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적인 농업창업, 정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운영 내실화

귀농·귀촌인이 관심 단계부터 실행, 정착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73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과정도 도시민, 직장인 등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주말반, 야간반, 장단기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특히 천안연암대, 여주농전 등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단계별(관심, 준비, 실행 등), 직업별, 지역별 특

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기능 강화


기존에 농협에 설치하여 운용 중이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통합 확대 개편(www.returnfarm.com, 1544-8572)하였다. 이를 통해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의 One-stop 제공 서비스를 확충하게 되었다.

◆ 농업창업 및 주거마련 자금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에게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는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착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농업 신규 인력 유입,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귀농·귀촌교육 확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One-stop 정보 제공, 귀농·귀촌박람회 개최를 통한 정보·상담 등 정부 정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유통정책과 서기관 변상문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 (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주체도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유통조직이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 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 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공동계산액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통합마케팅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자 사업자금융자 지원을 통해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등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10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31개소) 및 전문조직(282개소) 등을 선정하였다. 2011년부터는 시장개방 및 소비시장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개별경영체 위주의 육성 정책에서 통합경영체 위주의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여 통합마케팅조직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44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2005년에 최초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공모를 통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산지유통활성화자금(대출기간 3년, 이자율 1%)과 무이자 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 공동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대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을 실시해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상대평가를 통해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의 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정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2011년부터는 통합경영체 위주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좀 더 강화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 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 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 단계·분야별로 특화해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 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계 개선안을 마련(10.7)하여 장기정체 조직의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유인을 제고하였다. 또 합병·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7)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기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조직 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중단된 조직이 자력으로 등급승급을 못할 경우, 상위등급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조직에 원물 공급)시켜 상위등급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유통조직의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점 유통비가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유통정책과 서기관 변상문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1식품·1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2년엔 46만명에 83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1식품·1외식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정산소를 갖추어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는 1조 1,146억원으로 성장하여 농수산 분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소비자·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물가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On-line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통합 관문홈페이지(싱싱장터, www.esingsing.co.kr)를 구축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B2C 거래를 증대하였으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장터가 로컬푸드 차원에서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산지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정례 장터 개설을 확대하여 도농 간 교류 확대 및 지역 생산물의 소비촉진,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3.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안유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로 개장되었다. 지난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산지유통센터의 등장과 출하자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종합유통센터의 등장, 저온저장 및 콜드시스템 발달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유희공간 및 물류시설 부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신속한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물류와 유통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경매 부조리,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 효율화)을 개선하기 위해 농안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표 2-3-1〉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실적

(단위: 천톤, 억원)

구분 \ 연도	2003	2005	2007	2009	2011
물 량	6,256	6,628	6,993	7,142	7,095
금 액	75,852	85,203	93,230	104,091	116,224

주: 거래실적: 공영도매시장(33개소) + 일반법정도매시장(13) + 민영도매시장(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추진 내용 및 성과

◆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고품질·신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물류·경매장 구조개선, 저온화시스템,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공영도매시장(33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유통물량 과다로 시설이 부족한 3개소(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광주각화시장)를 선정하여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2009년에서 2018년(10년간)까지 연면적 547,0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전오정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면적 42,933㎡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천안도매시장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연면적 30,356㎡ 3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광주각화시장의 경우 당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사업기간 영업손해를 이유로 시설현대화를 적극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 운영 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관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7년도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전자거래 시행, 유통주체 간 거래규제 완화, 도매시장기능 복합화, 도매시장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2009년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제도와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중인 농수산물은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견본거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으로 판정되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경매제도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및 비상장품목 거래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2월 농안법을 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성장 가능성, 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유통시설 과부족 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이루어지며, 서울가락, 대전오정 도매시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유통 효율화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동등하게 규정,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촉진을 위해 대금정산조직 신설, 경매절차를 생략하고 직접적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 포전매매 서면계약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농안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개선을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정삼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0년 가을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는 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평년에 비해 최고 3.5배 까지 올리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세계 유수의 언론사인 TIME지는 2010년 10월 7일자 기사(Cabbage Crisis : South Korea Runs Out of Kimchi)를 통해 김치 중주국인 한국에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부족이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를 야기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배추값 폭등을 계기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락하는 것을 막고 유통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채소류에 중점에 둔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마련('11.1)하고 2012년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도 2011년에 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재배 및 비축 확대, 농협의 역할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직거래 확대, 공정거래제도 정착 등 5개 분야에서 유통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계약재배 및 비축 확대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품목별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결정한다. 계약재배³⁾는 주로 농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물량 과부족 시 정부의 출하조절명령(시장출하 또는 산지폐기)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010년에는 생산량의 8%에 대해 계약재배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를 12%까지 확대하였고 2015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약재배의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사업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먼저 농업인이 선호하는 포전거래 방식을 계약재배에 도입하였고, 계약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농협중앙회가 영농작업단을 운영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확작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급격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상시비축을 추진하였다. 고추, 마늘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량의 3%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에 추가하여 소비량의 2% 정도를 국내산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또한 연중 4기작(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을 하는 배추에 대해서는 작기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급부족 예상 시 미리 수매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을 추진하였다.

3)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고랭지감자 등에 대해 실시

◆ 농산물 유통에서 농협의 역할 강화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1994년부터 논의해 왔던 농업계의 숙원인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금번 농협법 개정에 따르면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계로 전환(12.3.2 시행)하고,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농협의 주요 책무로 삼도록 하였다. 산지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앙회 경제지주가 책임지고 판매한다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의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일례로 작년 고랭지배추의 경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일반 도매시장 경로보다 33%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농협은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수집하고, 농협 도매유통회사는 전국단위 물류센터⁴⁾를 활용하여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수발주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협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다. 이러한 농협 직거래 체계를 활용하여 현재 생산량의 10% 내외에 불과한 계통출하 물량을 2020년 50%까지 확대하여 농협을 농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농업 선진국과 같이 산지(產地)가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될수록 도매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소매시장이 중계 기구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농협을 비롯한 산지가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도매시장⁵⁾이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례로 채소를 보면 전체 생산량의 40% 내외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생산량 중 자가 소비, 감모 등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물량을 생산량의 82% 정도로 가정한다면 절반 가까이의 채소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집하·분산·중계라는 유통의 순기능 외에 경매라는 일일(一日) 수요공급량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불합리한 측면도 크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농안법을 개정하여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시행하였다. 현재는 도매시장 상장 시 정가·수의매매는 전자거래⁶⁾나 견본거래⁷⁾ 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여 출

4)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제주)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계획. 수도권(안성)은 2013년 6월, 기타 4개소는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

5) 현재 우리나라에는 50개의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121개의 도매법인과 55개의 시장도매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6) 거래할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매매방법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제도(2007년 도입)

7) 일정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농수산물의 견본(보관 농수산물 일부)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제도(2009년 도입)

하자가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 분야 B2B 시장 개척

산지 조직화·규모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으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는 2009년 1월 문을 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를 들 수 있다. 사이버거래소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농수산물 분야 기업 간 상거래(B2B) 시장을 개척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009년 10월 B2B 시범거래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1,755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하였다. 특히 2010년 9월부터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수산물 분야 B2B 시장 확대와 학교급식의 투명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2011년에도 6,250억원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2012년에는 11,1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 농산물 공정거래제도의 정착으로 공생발전 추구

유통개선 대책의 마지막 분야는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제도 정착이다. 1990년대 후반에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래 대형유통업체의 시장교섭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산지 조직들이 불공정거래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농수산물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기 유통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의 감액이나 반품 시 그 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저가납품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1년 5월에는 '대규모 소매업체의 불공정거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산지에 배포하였다. 2012년에는 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계약체결부터 이행까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 단계별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2년 11월 산지가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 소비자단체들이 산지를 방문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사례 및 거래 관행을 조사하여 평가·발표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1년 1월부터 진행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급안정

인프라 구축, 계약재배 및 비축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효과와 사이버거래소의 B2B 확대 및 온·오프라인의 직거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기존의 유통구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 새로운 대안 유통경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 유통정책과 서기관 안형덕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동 센터를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7일 동법 제5조 제3항에 농업관측사업의 지원근거가 규정되었다(2007년 1월 3일 공포).

이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분석하여,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농업관측정보는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영농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유통·가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종합적인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산물 거래와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1999년 9개 품목으로 출발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인 관측수요 증대에 따라 관측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2012년 현재 총 34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로 채소 10개, 과일 6개, 과채 7개, 축산 6개, 곡물 2개, 국제곡물 3개 품목 등이다.

생산·유통정보와 함께 소비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별로 연 4회 실시하던 소비자패널(1,000명) 조사를 2008년부터는 16회 실시하고, 패널 수를 1,300명으로 확대하였다. 쌀 POS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 정보를 관측보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 반영을 위해 미국, 칠레, 일본, 중국 총 4개국에 36명의 모니터 요원을 두고 주재국의 생산, 유통,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해 집중적인 분석을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교역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에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2005년 9월부터 중

국 도매시장의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국 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를 갱신하여 곡물류 품목 추가 및 관련 중국통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2009년 12월 또다시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를 갱신하여 2012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업관측센터는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가의 생산, 유통, 수출 동향뿐만 아니라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정책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관측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정보 관측기능을 강화하였다.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가공·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부터 농축산물 정보가공시스템을 보강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주요 청과물의 계절별 생산·공급 모형을 보완해 왔다. 또 미국 미주리대학 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공동연구로 개별 품목의 품목별 수급모형(KREI-COMO)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제곡물 모형(World GEM LOCS)을 개발하여 곡물류, 유지류, 축산물 등 14개 품목에 대한 수급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한편 농업관측의 고도화 및 정밀화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⁸⁾, 주산지 정보를 그래픽 위주의 지리 정보와 연동하여 현행 텍스트 방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측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2-3-2〉 2012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부류별	해당 품목현황	발표시기	
		발표시기	일
양념채소류(4개)	고추, 마늘, 양파, 파(대파, 쪽파)	3 ~ 12월	1일
엽근채소류(5개)	배추, 무, 당근, 양배추, 감자	3 ~ 12월	1일
버섯 관측	양송이, 느타리	9 ~ 12월	1일
과일류 (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5 ~ 12월	10일
과채류 (7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풋고추	3 ~ 11월	"
축산물 (6개)	한육우, 젓소, 산란계, 오리	2, 5, 8, 11월	25일
	육계, 돼지	2 ~ 12월	"
곡물류 (2개)	쌀, 콩	1, 5, 8, 11월 쌀 속보 9, 10월	15일
국제곡물(3개)	옥수수, 대두, 밀	3 ~ 12월	30일

8)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도매가격 및 산지가격 정보(2006), 수출입정보(2007), 저장정보(2008) 등을 연차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매일 수집·분석된 관측정보는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및 지역자문회의와 품목팀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관측보(월보·분기보)에 담아 발간하고 있다. 관측보는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지역모니터, 생산자 단체, 도매시장, 농업전문지, 인터넷, 농업관측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고 있다. 2012년에는 주산지 속보 25회를 포함하여 총 63회의 관측보를 제공하였다. 관측정보 제공면에서 기존의 소극적인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관측정보 서비스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e-농업관측'을 작성하여 매일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측의 주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월 4,500여명에게 농업관측알림(휴대폰 SMS)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연초(1월 말)에는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관련 단체, 학계, 관련 유통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주관·개최하는 농업전망대회는 한국농업부문 최대 행사로 명실상부한 위상이 정립되었다. 2012년 2월 개최된 15번째 대회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등 2,0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대주제하에 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품목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집중 토론회를 가졌다.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수요자평가 조사결과 농업관측정보 피제공자 이용률이 90.0%로 나타났다.(2011년 : 85.5%)


2009년 시범으로 실시한 '소비관측'을 더욱 확대하여 2010년부터 소비관측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매월 소비의향지수, 분기별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결과 등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농업관측정보는 단기 시장유통물량 조절에 초점을 두어 생산 단계 규모조절 기능이 미흡하였다. 기존 관측의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기 작형의 생산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3~6개월 전에 미리 수급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중기선행관측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양파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 1월부터 양파, 배추, 무, 대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마늘, 고추, 오이, 호박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에 대해 중기선행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관측 대상품목은 2010년 31개에서 2012년에 국제곡물가격 상승 및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측품목 3개(대두, 밀, 옥수수)를 추가하여 총 34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기후변화가 심한 6~9월에 고랭지배추·무의 작황, 생산, 출하동향을 선제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관측기동반'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던 관측 품목별 표본을 재배농가의 변화, 재배면적 및 작형 변화, 주산지 이동 등

모집단이 변화됨에 따라 2010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에 새롭게 재설계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관측사업은 정확한 관측정보를 토대로 농산물 수급에 대한 상황분석·계획수립·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현장분석과 관측조사·분석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비해 국제곡물관측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 공공비축제도 운영

▮ 식량정책과 서기관 노영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쌀이 부족한 1990년대까지는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육성, 생산기반 조성 등 증산 위주의 쌀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 보장(쌀의 고가 매입), 서민생활 안정(쌀의 저가 판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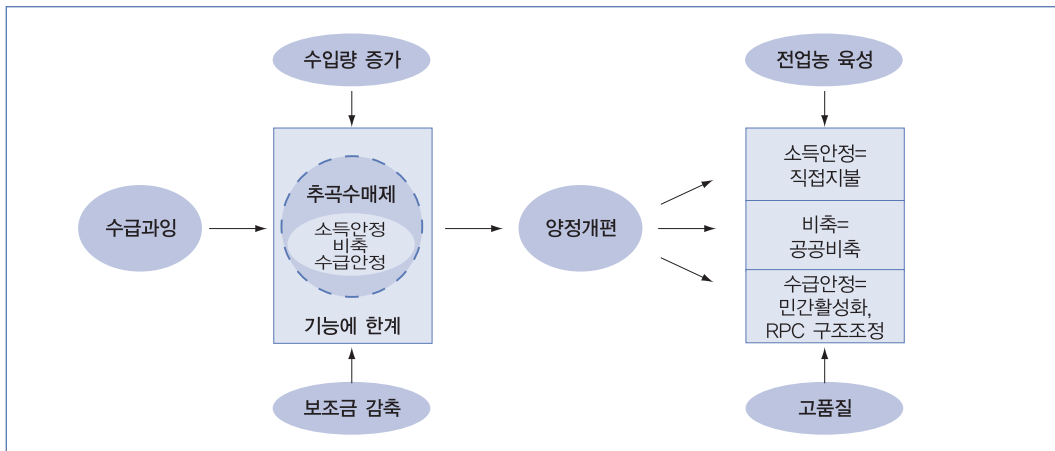
WTO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추곡수매제도는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으로 국내 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2004년도에는 생산량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 기능과 물량흡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값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문제는 재정지원(직불금)으로 보전한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표 2-3-3〉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구 분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매입 목적	① 농가소득안정 ② 쌀수급조절 ③ 안보용 비축	① 안보용 비축
매입 물량	○ 국회동의	○ 국무회의 의결(3년 주기 결정)
매입 가격	○ 행정가격(생산비 감안)	○ 시장가격(통계청 조사가격)

〈그림 2-3-1〉 양곡관리 시스템



그에 따라 현행 쌀 정책은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한 소득안정, 시가 매입·판매방식의 공공비축제 운영, 민간유통 기능 활성화와 쌀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품질 고급화·브랜드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 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비축물량은 FAO 권고량(연간 소비량의 17%)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비축물량의 1/2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표 2-3-4〉 양곡년도말 공공비축미곡 재고량 목표 및 매입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05~'07) : 864천톤('05년 576천톤, '06년 504, '07년 432) • 2차('08~'10) : 720천톤('08년 400천톤, '09년 370, '10년 340) • 3차('11~'13) : 720천톤('11년 340천톤, '12년 370, '13년 370)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출하물량 흡수를 위해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민간유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 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ASEAN+3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ASEAN+3 국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국에서 비축해 둔 쌀을 재해가 발생한 나라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 9월에는 제4차 협정문이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협정문이 최종 타결되어 제11차 AMAF+3 농림장관회의('11.10.7, 인도네시아)에서 협정문이 승인되었고, 2012년 6월 12일 협정발효 요건이 성립되어 2012년 7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표 2-3-5〉 국가별 쌀 약정 현황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합 계
약 정 물 량 (천 톤)	150	300	250	87	787
출연기금분담액(천달러)	1,000	1,000	1,000	1,002	4,002
운영비용기부금(5년간)	75	75	75	74	299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2 양곡년도 쌀 생산량이 4,224천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공공비축제를 포함한 쌀 수급정책

을 통해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식량 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라 곡물의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공비축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식량 수급 여건 속에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특히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DDA/WTO 등 양곡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비축제 도입은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쌀의 유통과 수급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능케 하였다.

향후에도 공공비축제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적정 재고(약 72만 톤)를 확보할 뿐 아니라, ①국내 소비량이 많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수입산과 차별화된 시장이 존재하여 식량안보상 필요하고 ②수급·가격 변동성이 커서 비축을 통한 대응여력 확충이 필요하거나 ③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정책상 필요한 밀·콩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비축수입농산물 관리

■ 식량정책과 사무관 조경규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입농산물 비축관리를 통해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입·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잇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작황의 부진과 유가 급등에 따른 바이오 연료 수요 증대로 국제곡물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산물 가격도 작황부진으로 오름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비축수입농산물 관리는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급불안, 식량위기 대응과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산물 가격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관리는 역할과 중요성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1976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78년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설치하여 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계획에 따라 국영무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변동 추이에 대하여 FAO, OECD, 시카고 선물거래소, 미국 농무부의 등의 국제식량 수급전망, 국가별 농업통계를 기초로 국제 곡물가격을 예측하여 비축수매를 추진하고 있고, 2009년 2월부터는 국제곡물정보관측기구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운영하여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최소비용으로 농산물을 적기 구입·비축하고 있다.

2012년에는 콩 283천톤, 팥 29천톤을 수입하였고, 콩 45천톤(2개월 사용분) 정도를 상시 비축하고 있다.

〈표 2-3-6〉 농산물 수입비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톤, 달러/톤)

구 분 (품목)	2011			2012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콩	211,399	279,718	708	244,038	282,724	768
팥	35,421	26,000	1,231	32,501	28,500	1,014

수입농산물 비축사업은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비축수입농산물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국제적으로 기초적인 종자산업부터 농산물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대외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의 식량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 비축관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곡물시장은 2008. 2009년을 정점으로 한발, 흉수,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은 감소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신흥국의 수요 증가

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와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곡물가는 상승하고 수급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늘어나는 소비에 비해 생산 증가요인은 많지 않은 상황과 곡물가격 급등주기가 과거 10년에서 최근 3년으로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국제곡물가 급등 시 혼란 우려가 크며, 수출국의 수출금지 등 식량의 무기화 추세에 이어 식량자원의 투기화 경향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비축규모는 FAO권고(유통재고)를 기준으로 국내 연간소비량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비축방법도 단순 현물매입과 계약재배를 통해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식량안보 확보와 국내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해외곡물 조달체계와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식량조달기반을 확보하고, 국내 농산물 산업의 상황에 적절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 논 소득기반 다양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윤승우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8~2009년 연속적인 풍작,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확대 도입 등에 따라 쌀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쌀값의 하락과 함께 정부의 재고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에도 종자개량, 재배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쌀의 공급 과잉이 구조화되었다.

한편 콩, 조사료 등은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면서 곡물자급률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쌀의 공급 과잉구조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이외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논에 타작물재배 시범)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 논에 타작물재배사업은 2011년에 벼를 재배한 논에 벼 이외에 콩, 조사료, 가공용벼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0a당 300천원(가공용벼 220)을 지원하였다. 총 7,744ha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군에서 논 7,465ha에 타작물재배를 약정하였다.

〈표 2-3-7〉 시도별, 품목별 타작물재배 약정현황

(단위: ha)

시도	목표면적(A)	약정면적	이행면적(B)	비율(B/A)
합계	7,744	7,857	7,465	96.4
경기	377	377	356	94.4
강원	239	239	219	91.6
충북	448	448	424	94.6
충남	1,654	1,675	1,572	95.0
전북	1,322	1,322	1,293	97.8
전남	1,600	1,686	1,614	100.9
경북	1,176	1,176	1,106	94.0
경남	824	824	784	95.1
기타	104	110	97	93.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2012년

이 사업을 통해 5천여ha에 타작물을 재배하여 약 2.5만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였으며, 국내 생산이 부족한 콩, 조사료 등의 생산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논 타작물재배 시범사업과 연계한 논콩 재배단지, 농촌관광테마파크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업경영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등의 모범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였고, 콩·조사료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었으며, 가공용벼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쌀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업추진 후 수확기 쌀값은 2010년 137,416원/80kg, 2011년 166,068원/80kg, 2012년 173,692/80kg으로 상승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그동안 쌀 과잉 재고 보관관리 비용과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등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쌀 생산이 기상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논을 시설재배 등으로 이용하는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쌀 수급상황에 따라 생산조정의 목표와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대부분의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품질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쌀 브랜드 수가 1,629개나 되는 환경 속에서 쌀 유통이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구매자 중심으로 급히 이전됨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균일한 품질의 동일브랜드 쌀 대량 공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런 여건에서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생산 및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는 RPC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7년부터 규모화된 RPC 중심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7년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 및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들녘별쌀경영체 및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19년까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RPC를

지원해 오고 있다.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사업은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간 일정규모 이상 원료벼를 취급하는 규모화된 RPC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42개소를 육성하였다. 2013년에도 고품질 쌀 브랜드를 3개소 지원하여 국고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자금 40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과 농가에 대한 교육, 브랜드쌀의 홍보, RPC 시설 및 운영 컨설팅에 필요한 자금 2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지원해 주고 있다.

〈표 2-3-8〉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소, 개)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량 (누계)	8 (8)	8 (16)	9 (25)	8 (33)	5 (38)	4 (42)
전국 쌀브랜드 수	-	1,721	1,650	1,677	1,629	1,622

◆ 평가 및 향후 계획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사업을 통해 건조·저장·가공 등 일괄처리가 가능해져 비용절감(△34%), 미질향상, 유통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수확기에 집중 출하되는 물량 흡수를 통한 국내 쌀값 안정 및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등 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논에서 수확한 벼를 RPC에 입고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됨으로써 농가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계약재배 RPC가 점차 늘어나 고품질 쌀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특히 품질 면에서는 브랜드사업 대상 RPC의 완전립 비율이 증가('06:89.9% → '10:94.7%〈4.8P%↑〉)되고 단백질 함량이 감소('06:6.9% → '10:5.8%〈1.1P%↓〉)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향후 사업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RPC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정된 RPC가 여건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단가를 현실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④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1절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농식품 R&D 혁신

1.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 기후변화대응과 사무관 조혜윤

◆ 추진 배경 및 개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가뭄, 폭염 등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후협약 체결 및 글로벌 차원의 대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다보스 포럼, APEC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지구온난화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1911~2010년) 평균기온이 1.8℃ 상승하여 세계 평균 상승치(0.75℃)를 2배 이상 상회하고, 집중호우, 폭설 등 이상 기상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후에 취약한 농림어업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어업 환경의 변화는 재배지의 변화, 기상재해 및 병충해 등의 증가에 따른 농어업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수급 불안정 및 식량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 하락, 물가변동 확대, 식량안보 위협 등 사회·경

제적으로도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전 부문에 걸쳐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09.2.16)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10.4.14 시행)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우리 부는 녹색성장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요인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0년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 이용·관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등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및 50개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저투입·고효율 농식품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4-1〉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비고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② 녹색기술·장비보급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24개 세부과제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 이용·관리	④ 농산어촌 활력 증진 ⑤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대 ⑥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16개 세부과제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⑦ 친환경 농산업 기반육성 ⑧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⑨ 녹색생활 실천 확산	10개 세부과제

또한 2011년 5월에는 농식품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중 최초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는 기본계

획을 토대로 '농림수산물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11~'2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식품·유통 6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에는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를 위해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 탄소상쇄 시범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도입·추진하였다.

2012년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 감축활동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목표관리제 대상기업(25개사)의 감축목표치(24천tCO₂) 대비 54천tCO₂를 초과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고, 기업별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및 에너지 절감형 공정개선 등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역량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농업 탄소상쇄 방법론을 6건 개발하였고,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5건의 시범사업(녹색마을, 지열냉난방, 폐열회수, 목재펠릿, 녹비재배 활용)을 등록하였다. 2012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1년간 감축활동을 통해 4,263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검·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3년 10천원/톤에 정부 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제품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인 농산물 작성지침을 개발(공통 작성지침 및 8품목의 개별 작성지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1년차 시범사업을 통해 최초로 7품목의 저탄소 농산물을 검증하였으며, 이 중 5품목(쌀, 배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은 전시 판매행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2012년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1회 전국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도시농업 기술·정보 교류 확산을 도모하였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학교·민간 교육기관·지자체 등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전략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였다. 녹색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바다숲 조성을 추진하여 황폐화된 우리 바닷속 생태계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여 바다 가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을 유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2년 6월에는 지속적인 식량생산과 농업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제 연구 협력체인 '농업 온실가스 국제연구 연맹(GRA)' 제2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그간 진행해 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체감도 높은 녹색성장 정책 홍보를 추진하였다. 국민 참여형 '싱그린, 생그린 체험단'을 모집하여 우수 성과사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그 외에 각종 정책 우수 사례를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양방향·실천 지향형 홍보를 실시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5년차인 2012년에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등 녹색농업 기반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3년에는 정부 협업체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온난화 대응품종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분야 과제도 대폭 발굴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 계층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2.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 원예경영과 사무관 방문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8년도 이후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 중동지역 정정불안, 부존자원의 한계 인식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 국가별로 무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10% 수준이며,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이후면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유가·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에 분야의 유류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면세유 중 67%를 사용하는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표 2-4-2〉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단위: 천TOE)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총에너지소비량	75,107	121,962	149,852	170,854	182,066	183,912
농림어업	1,813(2.4%)	3,224(2.6)	4,069(2.7)	3,385(2.0)	3,035(1.7)	2,409(1.3)
- 석유제품	1,687(3.7%)	2,934(3.5)	3,600(3.9)	2,755(2.9)	2,244(2.3)	1,377(1.7)
- 전력	125(1.5%)	290(2.1)	456(2.2)	603(2.1)	786(2.3)	769(2.3)

주: 1) ()안은 국가총소비량 대비 비중, 2010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10년도는 어업 제외
2) TOE: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물리적 단위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목재펠릿난방기 및 지열난방시설을 보급·지원하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해 유류의존도를 70%까지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회수장치, 고효율난방기 등의 시설장비를 시설원예농가에 보급·지원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난방시설 등의 설비를, 2012년에는 공기열난방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에너

지 절감자재·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농업용 화석에너지(특히 면세유) 사용 절감과 시설원에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 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회수장치, 고효율난방기,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등 난방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급했다. 2011년에는 사업비 188억원(국고보조 기준)을 투자하여 1,594ha에, 2012년에는 187억원(국고보조 기준)을 투자하여 1008ha에 에너지 절감시설·장비를 지원하였다.

◆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농업 분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용 면세유의 67%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률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면적을 2020년까지 가온면적의 30% 수준인 4,453ha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열사업은 2011년에 1,004억원을 투자하여 60ha에, 2012년에는 744억원을 투자하여 84ha를, 목재펠릿난방기는 2011년에 63억원 1756ha에 대하여, 2012년에 67억원 129ha에 대하여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 시설원예에너지 다변화 추진

2010년에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에너지 절감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 사업의 시설현대화 분야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면세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계측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설원예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을 축산 분야까지 확대한 바 있고, 지원세부사업도 2012년에 공기열냉난방시설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 절감시설·자재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돼 있는 상황이나 화석에너지의 유한성과 심화되는 기후변화 등에 대

응하여 농어업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 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농어업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지중저수열방식의 냉난방설비 도입 등 다양한 에너지 시설·기자재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 방역관리과 사무관 김정주

◆ 추진 배경 및 개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토양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하는 데 필요한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11년 801억원에서 2012년 693억원으로 감액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비 : ('08) 664 → ('09) 754 → ('10) 791 → ('11) 801 → ('12) 693

또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여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을 2011년 77만톤에서 0톤으로 제로화를 달성하는 한편, 자원화율도 2011년 87.6%에서 88.7%로 끌어올렸다. 더불어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가 더 이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개정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 위주의 법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으나, 가축분뇨를 오수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9)」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2007.11)」을 제정하였다.

동 법령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액비부숙기간(6개월 → 4), 액비살포 의무면적(돼지 : 640㎡ → 260) 및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100m) 등을 완화시키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0.11.8)하였다. 또한 액비의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액비살포 가능지역에 골프장·시험림을 포함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1.7.28)하였다.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5억원 이내에서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 조직체에 대하여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1991년부터 2012년까지 14,762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액비저장조 1,000기를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15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밀집 사육지역, 중규모(1~3천두) 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직체에 대하여 1일 100톤 처리 기준으로 30/45억원 이내에
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5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07)5개소 → ('08)19 → ('09)39 → ('10)56 → ('11)68 → ('12)88

❖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및 기술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하
여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악취제어·관리기술,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작물별·계
절별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IT를 이용한 개별농가 및 국
가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
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
고,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비료성분, 부속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
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실태 등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
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특히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평가결과 3년 연속 '하' 등급을 받으면 모든 정책
지원을 제외하여, 불량 액비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액비저장조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슬러지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저장조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예정이며,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 농림축산식품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정책과 서기관 이경일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농업은 FTA 확대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농식품 분야의 최근 환경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농림축산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화 및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급속한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2009년에는 농림수산물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 종합계획에 따른 2012년 시행계획은 방향성 있는 농식품 R&D를 추진하고자 기후변화 및 가축질병 대응 등 현안대응 R&D에 1,067억원을 투자하며, 기후변화 대응, 생명산업 육성, 한식 세계화 등 미래 주요 이슈대응에 1,848억원을 투자하고, 식량안보 및 유전자원 보존 확보 등 국가 주도의 기반연구에 1,625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08~'12) 농림식품 전체예산(농진청·산림청 포함)은 연평균 3.4% 증가한 반면, R&D 예산은 연평균 8.7%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을 수립하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목표로 국정목표·농정목표와 R&D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등 농림식품 R&D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농업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표 2-4-3〉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농식품부·양청 R&D예산(A)	5,709	6,257	6,699	7,463	7,983	8.7
국 가 연 구 개 발 비 (B)	110,784	123,437	137,014	148,902	160,244	9.7
농식품부·양청 총지출(C)	142,756	151,434	155,040	159,584	163,454	3.4
A/B(%)	5.1	5.1	4.9	5.0	5.0	-
A/C(%)	4.0	4.1	4.3	4.7	4.9	-

◆ 추진 내용 및 성과

◆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2년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물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의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인 종합계획에 기초하되, FTA 확대·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농식품 분야의 최근 환경변화를 적극 고려한 2012년 농식품 R&D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R&D 투자의 우선분야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2011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결과 2010~2011년 기 투자된 7대 산업별 투자총액(9,864억원)은 종합계획 수립 당시 목표한 전체 투자계획 금액('10~'14, 3조 8,804억원)의 25.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향후 점진적인 투자 확대를 목표로 금액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역할 확대

농림식품 분야 R&D의 효율적인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2009년에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 3기 위원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제4기('12.7.22~'13.7.21)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4기 농과 위에서는 전문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2012년 R&D 단위사업 및 기술 분야 평가계획, 농림수산물 분야 줄기세포 R&D 투자전략,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상황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R&D 추진사업의 평가를 통해 농식품 관련 정책 및 R&D 종합계획과 연계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등 농림식품 R&D사업의 투자개선 방향 제시, 연구 분야별 차별화 및 연계성 확보 등 전주기적 R&D사업의 시너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장기 정책 심의 등 심의기능 이외에 농과위 주최로 Green & Life Technology 포럼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 및 타 분야 전문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기획조정전문위원회, 생산기반전문위원회, 종자·생명전문위원회, 안전·유통전문위원회, 녹색자원환경전문위원회 등 5개 농과위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는 각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R&D 기획에 참여 가능한 유능하고 적극적인 전문가를 발굴하여 신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미래유망 및 현장수요 부합형 신규 사업 발굴·기획

농림축산식품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술수요·정책수요 및 산업동향을 반영하여 우리 부 주관인 'Golden Product Project(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와 범부처 사업인

‘농림수산물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등 신규 R&D사업을 기획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로 제출하였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통해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부처 공동기획을 통하여 추진한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극복기술개발사업’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부처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녹색인증제도 시행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부처의 통합고시를 마련하여 녹색인증제를 시행(2010년 4월)하고 있다.

또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표(2010년 8월)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인증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을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2010년 4월)하였고, 동 평가기관을 통한 2012년도 농림수산물 분야 녹색인증·확인 건수는 총 44건으로 녹색기술 34건, 녹색사업 1건, 녹색전문기업 9건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녹색인증제 시행 이후 인증수요 부족 등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이 발생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2회에 걸쳐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2012년 5월, 12월)을 실시하여 인증대상 확대, 기술수준 구체화, 평가절차 간소화, 수수료 완화, 성과조사체계 개선, 녹색전문기업 매출 규모 공증인 확대 등을 도모하였으며,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인증제로 한 번 더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년도 녹색인증·확인 목표는 전년 대비 약 10% 높은 48건으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및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타 부처와 차별화된 서비스(농업종합자금 융자사업, 체계화된 홍보시스템 등)를 제공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물 R&D 공동기획단 운영

농식품 R&D 추진체계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대내외적으로 연구·개발

중복성, 투자의 비효율성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청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농식품부·농진청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지정공모과제 기획 시 주제별로 농진청 소속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2012년도 공동기획을 통해 기획된 과제는 28개(총 143억원)이며, 향후 농정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R&D 공동 기획 추진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 DB 운영·관리의 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던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2010년 기존 NTIS 표준관리항목에 농림수산식품 분야만의 특화정보를 포함하는 농림수산식품 R&D 통합 DB를 구축하였다.

통합 DB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관의 연계서버로부터 구축된 통합 DB로 R&D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으며, 한국식품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등의 R&D 정보도 별도 수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법적·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담당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의 농식품 R&D 통합 DB 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통합 DB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기존의 사업 내용·공고·실적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성 검토서비스, 농식품 R&D 통계분석 서비스, 국내외 농식품 정책·기술 동향자료, 조사·분석 자료 등 농식품 R&D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제공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 동향 파악이 쉬워지므로 민간 차원의 연구계획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R&D를 총괄 조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 융합기능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 R&D 연구 방향설정을 추진하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기획기능, 농림수산식품 R&D 지원기능을 추진하고 있다. 농과위 포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G< 포럼 및 합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발전

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단체·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발전에 대하여 논의할 장(場)을 마련하고, 구제역·AI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정확한 과학적 논거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농림식품 기술 사업화 촉진방안」을 수립하는 등 목표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우수 기술 실용화 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활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5. 종자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상준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의 종자업체가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확대(10ha, 270억원 → 54ha, 656억원)를 위하여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첨단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 3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내에 ‘GSP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 상세기획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현황조사·분석 및 품목별 세부 연구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해 2월에 5개 분야 사업단장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는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를 개시하였다.

또한 기존 종자산업법에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종자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과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고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한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12.6 제·개정)하고 있다.

국내 종자업 등록 업체 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 1,073개이다.

〈표 2-4-4〉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연도 \ 구분	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뽕	기타
2006	736	18	163	235	110	115	26	69
2007	813	25	182	249	126	123	26	82
2008	871	33	189	257	139	126	28	99
2009	819	37	173	250	121	110	30	98
2010	966	35	197	283	152	130	30	139
2011	932	39	185	300	139	112	30	127
2012	1,073	39	202	328	160	118	33	193

한편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신품종 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 유전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명자원통합 DB를 2014년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정책효과와는 별도로 종자수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12년 12월 말 기준 종자수출액은 45백만달러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였다. 다만 수출종자 품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 보호제도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출원 건수가 세계 8위 수준일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4,277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5〉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2012.12.31. 현재)

구분 작물	국내						외국				총계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화훼류	1,363	294	93	468	493	15	1,092	32	1,060		2,455	326	1,153	468	493	15
식량작물	707	19	26	54	554	54	3	1	2		710	20	28	54	554	54
채소류	670	21	501	41	83	24	5	0	5		675	21	506	41	83	24
과수류	193	80	20	16	74	3	2	1	1		195	81	21	16	74	3
특용작물	148	4	13	16	111	4	1	0	1		149	4	14	16	111	4
버섯류	72	15	8	28	19	2	3	2	1		75	17	9	28	19	2
사료작물	18	0	0	0	18	0	0	0	0		18	0	0	0	18	0
계	3,171	433	661	623	1,352	102	1,106	36	1,070	0	4,277	469	1,731	623	1,352	102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유 중인 농업유전자원은 346천점(2013년 현재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작물이 5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육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및 분양을 일부 실시 중에 있으나, 2014년까지 '농수산생명자원 통합 DB' 구축을 완료하여 농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검색부터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 곤충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정재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충, 그리고 학습·애완·관광상품용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 곤충의 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곤충이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표 2-4-6〉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단위: 억원)

활용 분야	대상 곤충 종류	시장 규모(추정)	
		2009	2015
학 습 · 애 완 곤 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종	400	540
화 분 매 개 곤 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880
천 적 곤 충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	230	300
지 역 행 사 곤 충	나비류, 반딧불이	400	560
사 료 용, 의 약 용	동애등애, 풍뎅이유충, 거미 등	-	700
합 계		1,570	2,9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10년.

◆ 추진 내용 및 성과

◆ 「2012년도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12월에 '2009년 1,570억원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1~2015)」에 대한 「2012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곤충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총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원산, 경북은 화분매개, 경남은 식·약·사료용 소재를 특화할 계획이다. 각 센터에서는 특화 분야 연구 및 상품화, 농가 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

◆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의 식약용 원료 사용을 위한 약리성 및 안전성 연구개발’, ‘곤충유래 고기능성 항생펩타이드를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 ‘곤충자원을 이용한 가축 사료화 이용시설 및 제품개발’ 등과 같이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다양한 곤충자원의 확보와 유전적 특성평가를 통해 곤충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으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수집·보존 및 표본 자료 DB 구축, 곤충의 가치 평가 및 유용곤충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 관련 대학·연구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곤충산업 육성 교육과정을 농업연수원과 농촌진흥청의 교육기관에 개설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및 사육매뉴얼 발간

곤충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곤충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정확한 곤충산업 실태를 파악하여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곤충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전망하고 홍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곤충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곤충사육매뉴얼을 제작하여 곤충생산농가에 보급하였다.


◆ 제3회 생명산업대전 개최를 통해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2012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생명산업

대전' 행사를 통해 '기존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산업'이 '곤충 등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 제시와 산업화의 발전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무궁무진한 미개발 유용 곤충자원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인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기존 시장이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위주로 편중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등 곤충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확대가 필요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단백질공급원으로서 사료곤충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곤충사료화에 대한 기획 연구를 실시하고 곤충자원을 이용한 사료소재로 산업화의 길을 개척하여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곤충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화의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강혜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신용 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 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업금융지주)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이 2011년 3월에 공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그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09.6.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 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09. 12)하여, 국회에 제출('09.12.16)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공청회(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2.22)을 개최하고,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 4.14, 4.19, 4.22, 12.6, '11.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드디어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농협중앙회, 금융위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홍보(OBS, 한국경제, KTV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 국회의원 개별 방문 설명(이낙연 위원장 외 다수 실시), 조합장·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병행하던 농협중앙회를 지도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을 정부에서 지원하

도록 하였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과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분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토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현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 중앙회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11.3.31)하여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농협 사업구조개편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서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 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탁하였다. 동 농협법시행령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6일 공포되었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11.3.31 공포) 부칙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정부는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1년 9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요청한 6조원 중 4조원을 반영하였고, 지원형식은 3조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2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이차보전 4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 지원방안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국회에도 보고되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분야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8월까지 추진하였다. 동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중앙회는 2012년 9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2~2020

년까지 4.96조원의 경제사업 신규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동일자로 지주회사에 완전 이관되었고, 경제사업은 농협법(부칙 제6조)에 따라 2017년까지 경제지주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구조 개편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에서 이어 즉시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농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사업구조 개편 관련 홍보 계획을 수립, 언론 기고, 방송 인터뷰 및 기자단 설명회 등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협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은 판매농협 실현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출발점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이 당초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과정을 점검·평가해 나갈 것이며, 효율적인 사업이관과 사업이관 후 중앙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제도 정비 등을 실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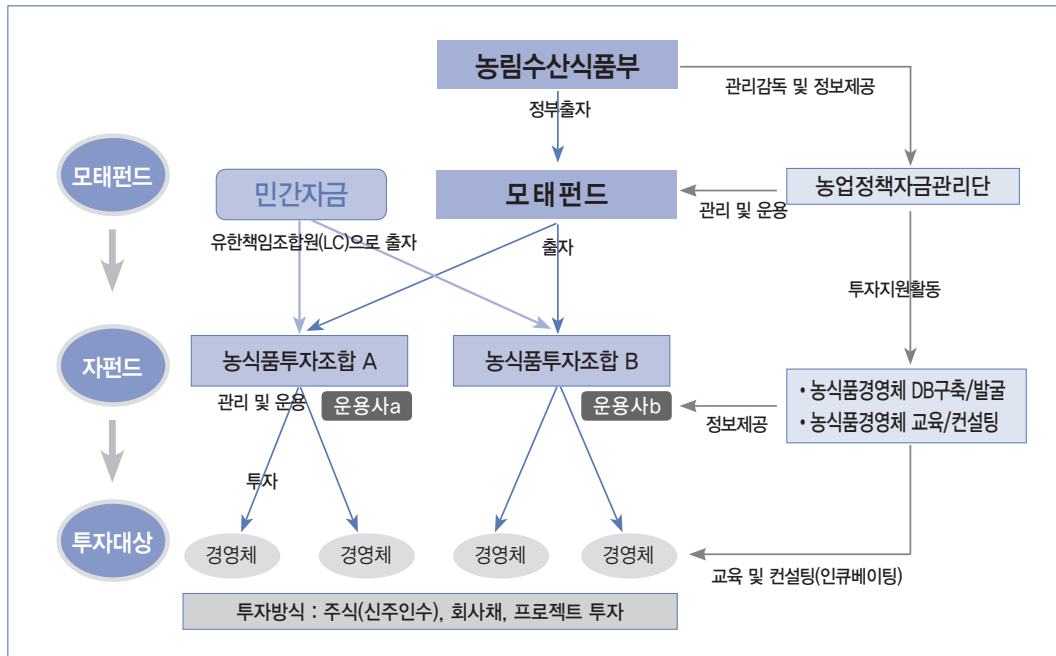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유재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전통적 농어업 금융인 투융자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도입된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에 펀드 결성·운용의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개시하여 펀드운동을 본격화하였다. 그동안 농식품 분야의 투자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하여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 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는 민간과의 매칭펀딩으로 결성된 농식품투자펀드(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함으로써 투융자 등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식품 분야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시장개방,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과 열악한 농식품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 펀드와는 차별화된 운용전략이 필요하여 투자관리 외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교육·지도 및 경영컨설팅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그림 2-4-1〉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0년 9월, 597.3억원으로 농식품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이 결성되었으며 2011년, 2012년에 정부에서 각 500억원씩을 추가 출자하여 누적규모 1,597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627억원을 출자하여 총 18개(농림수산식품일반 1, 농림축산업 5개, 식품산업 5개, 수산업 3, 프로젝트 4)의 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을 결성하였다. 농식품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은 자조합의 총 결성규모는 3,300억원으로 이 중 1,673억원을 민간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 등에 대한 투자는 연차별 의무투자비율(2년 40%, 3년 60%, 4년 80%)에 따라 이루어지며 2012년 말 기준 691.7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편 농식품모태펀드의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근거법률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농식품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세제 관련법상의 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으로 우수 투자사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및 지역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투자처 발굴 및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투자지원 활동을 강화하였다.

〈표 2-4-7〉 농식품투자조합 결성('10~'12)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연도	펀드형태	투자분야	운영사	정부출자 비율	결성금액			결성월
					정부	민간	계	
2010년 (5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일반	그린부산창업투자	45%	90	110	200	'11.3
		농림축산업	아주B투자	50%	100	100	200	'11.3
		식품산업	미시간벤처캐피탈	40%	100	150	250	'11.3
		수산업	캐피탈원	50%	100	100	200	'11.7
	사모투자 전문회사	프로젝트사업	현대증권/동양(공동)	50%	157	163	320	'11.3
2010년 소계					547	623	1,170	
2011년 (6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축산업 (2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50%	100	100	200	'11.6
			아시아인베스트	50%	100	100	200	'11.7
		수산업	유니창업투자	50%	80	80	160	'11.12
		식품산업 (2개)	나우아이비캐피탈	40%	80	120	200	'11.7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50%	80	90	170	'11.11
		프로젝트사업	미래에셋벤처투자	50%	100	100	200	'11.7
2011년 소계					540	590	1,130	
2012년 (7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축산업 (2개)	에이케이지인베스트	50%	80	80	160	'12.12
			미래에셋벤처투자	50%	80	80	160	'12.9
		수산업	엘앤에스벤처캐피탈	50%	80	80	160	'12.7
		식품산업 (2개)	나우아이비캐피탈	50%	80	80	160	'12.7
			산은캐피탈	50%	80	80	160	'12.7
		프로젝트사업 (2개)	유큐아이파트너스	70%	70	30	100	'12.7
이앤인베스트먼트	70%		70	30	100	'12.7		
2012년 소계					540	460	1,000	
총계(2012년 말)					1,627	1,673	3,300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농식품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7개의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 결성할 방침(농림축산식품일반 3, 수산업 1, 프로젝트 3)이며, 2013년 말까지 농식품모태펀드는 자조합 총 결성액 기준 4,200억원(정부 2,137, 민간 2,063)의 25개 펀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펀드운영이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할 경우 정책혜택이 대규모 경영체 등 일부 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영체에 펀드결성액의 전액을 투자하는 특수목적 펀드('12 : 2개, 200억원 규모, '13 : 2개, 200억원 규모 예정)를 결성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에 결성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1년차(20%) 투자의무비율을 신설하고 조기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및 벌칙조항을 수립하여 투자의무비율 조기달성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다른 산업에 비하여 열악한 농식품 분야 투자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 심사역을 대상으로 농식품경영체 특성, 심사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기술이나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체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 경영진단, 투자연계 등을 포함하는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사업('12, 10개 경영체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을 상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수의 농식품투자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결성된 조합의 농식품경영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와 투자유치 경영체 간의 정보교류 확대 및 농식품경영체 투자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식품모태펀드가 단순히 민간 분야의 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의 선진투자 및 경영기법 및 책임경영 등의 노하우를 농어업에 접목하여 농식품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 투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서영주 · 허창각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 분야의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농업 분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지원됨에 따라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로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여 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농업 분야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4-8〉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12년 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농 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시중은행
정 부 자 금	농특회계	16,376	13,355	3,021	-	-	-
	재특회계	14,298	14,298	-	-	-	-
	소 계(a)	30,674	27,653	3,021	-	-	-
	농안기금	29,755	21,187	-	8,568	-	-
	농지기금	35,676	11	-	-	35,665	-
	축발기금	12,801	11,193	-	-	-	1,608
	FTA기금	5,475	3,648	-	4	1,823	-
	소 계(b)	83,707	36,039	0	8,572	37,488	1,608
	계(A=a+b)	114,381	63,692	3,021	8,572	37,488	1,608
차관자금(B)		45	45	-	-	-	-
민간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98,590	95,683	2,178	-	-	729
	부채대책	24,153	23,816	337	-	-	-
	계(C)	122,743	119,499	2,515	-	-	729
합계(A+B+C)		237,169	183,236	5,536	8,572	37,488	2,337

자료출처: 농협 대출: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산림조합 대출: 산림조합중앙회, 농안기금 중 유통공사 대출액: 유통정책과(유통공사 수정), 농지기금: 농지과(농어촌공사 수정), 축발기금 중 시중은행 대출액: 축산정책과, FTA 기금 중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대출액: 농업정책과, 이차보전 시중은행 대출액: 농업금융정책과

❖ 추진 내용 및 성과

❖ 정책자금 시중은행 취급 확대

2004년 8월부터 촉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촉발기금의 모든 용자사업과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용자사업 중 농기계구입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2008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과 농기계사후관리자금 및 신규 후계농 및 창업농·후계농추가지원자금을, 2010년에는 농촌주택정비사업, 재해복구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자금 관리체계 확립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 용자금의 관리 및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2005년 4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008년 1월에는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자금을 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6월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2010년 6월부터는 모태펀드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종합자금제도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 풀(Pool)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2-4-9〉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종합자금	10,298	12,049	11,380	13,371	13,345	15,182
농축산경영자금	29,201	28,023	27,566	26,632	24,280	23,199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경영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을 확대(2005년 4,000억원→2006년 5,780억원→2007년 7,357억원→2008년 6,952억원→2009년 9,095억원→2010년 1,200억원)하는 한편, 농·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 인상(0.2%→0.3%) 및 일선조합의 신규 출연, 위탁보증수수료 인하(15%→10%), 부분보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운용배수가 안정화(2006년 96.0배→2007년 23.8배→2008년 14.6배→2009년 6.6배→2010년 4.3배→2011년 4.9배→2012년 3.9배)되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신규 보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도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책자금 취급을 시중은행에 개방하였음에도 기준금리의 차이, 회계검사 의무화, 대손보전 제외 등으로 인해 취급 확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규모에 상응한 적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경영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고, 규모가 큰 농가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소요경영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요경비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소액 대출에 대하여도 심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 자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를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검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4. 농지제도 개선

▮ 농지와 사무관 김동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상속 및 이농 등에 따른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으로 임차농지와 임차농업인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한 임차농권익보호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각계에서 제기하여 농지임대차 관련 농지법 규정을 개정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각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농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12.7.17), 시행(12.7.18)되었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 농지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이 되도록 법정(法定)하여 농지임차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임차인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임차기간·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개정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자의 불편을 경감하였으며,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대리경작자 지정제도를 보완하였고, 농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제도도 보완하였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어업인 주택을 포함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던 것을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주민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향후 계획

임차농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현실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정비하는 동시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1. WTO-DDA 협상대응

■ 농업통상과 사무관 박은엽

◆ 추진 배경 및 개요

WTO는 UR 협상 결과에 따라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 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지속적 개혁 및 자유화를 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 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을 출범시켰다. 동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하도록 일정을 정하였다.

시한 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내지 5월 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에 실패하는 등 중간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에 관한 공동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무역 원활화 등 일부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04년 들어 협상 진전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2004년 말로 예정되었던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는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각료회의 직전까지 핵심쟁점들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으나, 각료회의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데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각료선언문에 따라 2006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말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향후 협상일정을 정하였으며, 그간 EU와 미국, 수출국들 간에 입장 대립이 극심했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하였다.

2006년 들어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주요국 및 주요 그룹 간 입장 차가 매우 커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2006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2006년 7월에 개최된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DDA 협상의 교착상황에 대한 우려를 같이하였으나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DDA 협상의 일시중단을 선언하고 협상 재개 시까지 각국이 입장을 재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별로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미 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를 통해 DDA 협상 전반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는 본격적 협상의 재개라기보다 주요국 간 탐색 및 주요 그룹 내 기술적 협의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7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 주요국 각료들이 DDA 협상의 본격적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는 DDA 세부원칙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었고, 농업 분야에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2007년 7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논의는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7월 이후 하반기 DDA 협상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그룹 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 협상(30여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2월에 팔코너 의장이 세부원칙 수정안을 배포하였고, 5월에 2차, 7월에 3차 수정안이 배

포되어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수준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차 수정안이 배포된 7월에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세부원칙이 타결될 전망도 보였으나,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 대립으로 결국 세부원칙 타결에 실패하였다. 팔코너 의장은 7월 각료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12월에 4차 수정안을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으나, 미국 등 주요국들이 국내 일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8년도 DDA 협상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였으며, 4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DDA 협상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 초 인도에서 개최된 비공식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주요국들이 하반기 DDA 협상 진행과 2010년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에 합의하였고,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통상장관들이 2010년 초 협상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협상이 활기를 띠어 농업협상그룹 의장 주재로 이행계획서 작성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민감품목, TRQ 신설, 관세상한, 관세단순화, SSM(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등에 대해 각국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10년 12월에서 2011년 4월까지 실무급 및 고위급 회의를 통해 잔여쟁점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2011년 4월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세부원칙 수정안 회람 대신 농업의장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

2011년 5월부터 다시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 구성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수출국과 수입국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2011년 12월 제8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장기간에 걸친 DDA 협상 타결의 실패가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위협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 타결책으로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1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지속, DDA 협상의 교착, 지

역무역협정의 확산 등 대내외적 도전 속에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도하 각료선언 47항의 조기수확, 복수국 간 합의방식 등 새로운 접근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기수확에 포함될 의제로는 최빈개도국(LDC) 이슈, 무역 원활화, 비관세장벽 등이 거론되었으며, 복수국 간 합의방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다자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유보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괄타결과 FIT(Full participation, Inclusiveness, Transparency) 원칙을 강조하였다. 제8차 각료회의는 최근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DDA 협상을 포기하지 말고 합의 가능한 분야를 우선 진전시키는 등 새로운 진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되면서 2012년부터 농업 협상, 무역 원활화 협상, 서비스 협상 등의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농업협상 분야에서는 2012년 9월 G20그룹의 'TRQ 관리이행 제안'에 이어 2012년 11월 G33 그룹의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허용보조 확대 제안'이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농업협상그룹회의 의장은 G33그룹의 식량안보 제안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 회원국에 자국의 공공비축제도 및 국내식량구호 관련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무역 원활화 협상 분야에서는 통합협정문안을 작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업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2012년 12월 브라질, 호주 및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제안한 '부패성 상품의 통관 절차 원활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 협상 분야는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인 복수국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그 타결책의 하나로 합의 가능한 국가들만 참여하여 타결을 도모하고 향후 전체 회원국이 모두 협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진적 방안의 하나로서, 201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22개 국가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있다. 동 협상은 협상시한은 정하지 않되 가급적 조기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 9월에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취임할 예정이며, 2013년 12월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타결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인다. 특히 제9

차 WTO 각료회의는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방향이 일괄타결에서 부분타결로 전환된 후 처음 맞이하는 각료회의로서 타결 의지가 높다.

또한 DDA의 신뢰 회복 및 다자통상체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부 분야에서라도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전 WTO 회원국에 걸쳐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협상 타결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간 10년 넘게 DDA가 타결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와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이해 대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사무총장의 리더십과 주요국들의 입장 변화가 타결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TA 등 양자 간 무역협상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교역문제 해결 등에 있어 WTO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WTO 농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이행점검 기능이 강화되고 일반 통상이슈(보호무역주의 대응, 비관세장벽, 자유무역협정 정의해석 등)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 협상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주무관 이경미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 후 그해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 분야 고위급 협상이 있었고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 협상이 개최되어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비준이 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2010년 12월 추가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동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타결된 협상의 비준 동의안을 2011년 6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국회 비준절차 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토의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2011년 11월 22일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 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하에서 협

상이 이루어졌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 후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양국 간 확인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FTA가 실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안을 2007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절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의통위는 한·미 FTA 찬반 양측 전문가들과 통의통위 위원들이 참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2008년 2월 15일 개최하였다.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농어촌 지원 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FTA농어촌지원 대책특위’를 출범(2008년 2월 19일)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미 간 쇠고기 협상, 미국의 비준현황,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국회 비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의 통과, 7월 3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08년 10월 8일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비준이 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 11월 30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12월 3일 추가협상을 타결하였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돼지고기 냉동목살에 대한 양허기간을 2년 연장하여 양돈농가의 경쟁력 제고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2011년 6월 3일 외교통상부는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비준동의안을 묶어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추가협상으로 인해 협상의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상정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있었다. 이에 국회 및 정부에서는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회 여당, 야당 및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의 이익균형, 피해 분야의 대책 등 비준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한편 정부 측과 민간인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한 한·미 FTA 찬반 토론인 끝장토론을 통해 공개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과정 끝에 2011년 11월 22일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어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한·미 FTA 농산물 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측에 대해 양허 제외, 수입쿼터(현행 관세 유지), 계절관세,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였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FTA 대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3. 한·터키 FTA 협상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주무관 이경미

◆ 추진 배경 및 개요

터키는 유럽 인구 2위(7,37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이다. 터키의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과 시장잠재력을 고려하여 민간 공동연구('08.9~'09.5),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10.2)를 거쳐, 2010년 3월 한·터키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0년 3월 FTA 협상 개시 선언 후, 2011년 말까지 총 3차례의 공식협상과 1차례의 소규모 협상을 진행하였다. 2010년 4월 터키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는 협상운영을 위한 기본세칙(TOR) 합의 및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분야별 양측 입장을 교환하였고, 위생 및 검역 조항은 WTO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다는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진행된 2차례의 협상(2차: '10.7 서울, 3차: '11.3 앙카라)과정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수준과 유형에 대한 시각 차이를 확인하였다. 2011년 3월 터키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 양측의 동등한 양허를 주장한 반면, 터키 측은 제조업·농수산업 등 산업 발전 차이에 따른 비대칭적 양허를 요구하는 등 FTA에 대한 접근방식 및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였다. 3차 협상까지 터키 측 무역역조현상 개선을 위한 농업 분야의 과도한 양허 요구 등으로 교착상태에 있었으나, 소규모 협상(2011년 11월) 등을 통해 협상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여 2012년 2월 23~24일 열린 회기간 회의에서 타결을 위한 양허구상안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7~10일 제4차 공식협상에서 최종 타결되었고, 2012년 11월 22일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어 2013년 상반기 중 발효 예정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터키와 농수산물 분야 교역액은 2012년 기준 68백만달러(수입 54백만달러, 수출 14백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교역액의 0.2%를 차지해 교역액이 많지 않고,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우리 측 주요 민감품목 대부분이 양허 제외되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도 잎담배, 올리브유, 헤이즐넛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 필수 품목들이어서 FTA가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상반기 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FTA 대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한·콜롬비아 FTA 협상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김규욱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에너지,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동연구('09.3~8)를 종료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09.10)를 거쳐

2009년 11월 18일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9년 12월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협의 및 분야별 양측 입장교환을 위한 한·콜롬비아 FTA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까지 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여 상품을 비롯한 각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양허안 교환 등 일부 분야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

상품 양허협상은 몇 차례 수정 양허안 교환이 있었으나 콜롬비아 측은 쇠고기, 낙농품, 열대과일, 화훼류 등 관심품목에 대해, 우리 측은 자동차 및 차 부품, 가전, 철강 등 공산품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관심품목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로 양허협상의 진전은 미미하였다.

아울러 농업 관련 협정문 분야에서도 콜롬비아 측은 농업섹션 별도 구성 주장 등 농업 분야의 이슈화에 큰 관심을 보인 반면, 우리는 농업 분야의 이슈화에 반대하고,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도입, 농업수출보조금 유지 등 농수산업의 민감성 확보와 더불어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 10월까지 4차례의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핵심협상 분야인 상품 양허협상에서 진전이 미흡함에 따라 동 분야 협상 진전을 위한 소규모 회의 개최, 수석대표 간 회의 등을 통해 5차 협상 이전까지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갔다.

2011년 10월 제5차 협상(서울)에서 양측은 협상의 조기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은 핵심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교환하여 최대 쟁점 분야인 상품 양허협상의 진전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양허안에서 우리 측은 자동차 등 8개 품목에 대해, 콜롬비아 측은 쇠고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양측의 기체결 FTA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였다.

콜롬비아 측의 핵심관심품목이 농산물 및 주요 민감 농산물에 집중됨에 따라 우리는 양허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주요 농수산물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커피 등 덜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탄력적 양허 입장을, 쇠고기, 낙농품 등 핵심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수적 양허 입장을 견지하였다.

2012년 4월 6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및 각 협상분과별로 대부분 합의하였고, 2012년 6월 7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 패키지를 마련하여 2012년 6월 2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현재 국회비준요청 준비 중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한·콜롬비아 FTA 농산물 협상은 커피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 파급 영향이 적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며,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하였다.

한·콜롬비아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영향이 예상되는 기타 절화류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산정 기반 마련을 위한 관세 세번 세분화, 증장기 투융자사업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5. 한·중 FTA 협상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서기관 김수일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중 FTA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대중국 수입/수출이 2007년 630/819억달러에서 2012년 808/1,343억달러로 증가하면서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대만, EU, ASEAN 등과의 경쟁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 전까지 47개국과 FTA를 체결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중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고,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한·중 FTA는 한·중 민간공동연구('05~'06)를 시작으로 산·관·학 공동연구('07~'10.5) 및 정부 간 사전실무협의('10.9~'12.5)에 이어 2012년 1월 한·중 정상회담 시 우리 측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을 오가며 4차례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분야 모델리티를 논의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한·중 FTA는 통상적인 FTA 협상과 달리 농수산업 등 민감 분야 보호를 위해 2단계로 구분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통상적인 FTA가 협상 시작과 함께 개별상품의 개방 수준, 서비스/투자 양허 및 구체적인 협정문 문안 논의를 개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규범 분야의 모델리티 또는 협상의 틀을 논한다. 먼저 상품 분야는 개별상품의 양허방식을 논하지 않고, 상품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한 후 각 품목군의 비중을 먼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및 민감 품목군은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민감 품목군은 양허 제외, 부분철폐 및 TRQ 등 민감 분야의 다양한 보호방식을 규정한다. 서비스/투자, 규범, 협력 등 나머지 분야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2단계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2단계 협상은 통상적인 FTA 협상과 같이 전면적인 협상으로 진행하며, 1단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상품의 양허, 서비스/투자 양허,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양허와 협정문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1차 협상(12.5, 중국 북경)에서는 협상원칙, 협상구조, 상품 모델리티 등을 수록한 협상은 영세칙을 확정하였고, 2차~4차 협상에서는 각 분야별 모델리티 작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품 분야는 각 품목군의 정의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을 각각 '10년 이내 관세철폐' 및 '10년 초과 관세철폐'로 정의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자유화율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국의 민감 공산품 분야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 측은 WTO 규정의 해석에 부합하는 수준(90% 이상)을 주장하여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투자 분야도 중국 측이 자국의 경쟁력 열위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측은 한·미 FTA와 같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여 입장이 대립하였다. 협력 및 규범 분야와 관련하여 수산업계가 중국의 IUU로 인한 어획물에 관세인하의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측은 IUU를 포함한 농수산협력 분야를 한·중 FTA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측은 농수산협력 분야의 논의를 요구할 경우 한·중 FTA 협상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여 가장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은 중국 측이 논의를 적극 요구하였으나, 중국 측이 농수산협력 분야의 논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측도 SPS 논의 불가 입장으로 대응하여 4차 협상까지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협상 개시 전에는 중국 측이 폭넓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협상 개시 이후 중국 측이 보여준 태도는 당초 우려와 달리 자국의 공산품 민감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것이어서 우리 농산물 민감성 반영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향후 대응방향은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자유화율은 높게 형성되더라도 농산물 개방은 농업 분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이다. 특히 초민감 품목군 내 농산물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감한 농산물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원산지는 중국이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어 우회수입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협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SPS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외래 질병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중 FTA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농수산물협정도 최종 협정문에 주요 관심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국내 대책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 및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농축산업의 체질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내 고급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을 고려하여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6. 한·인니 CEPA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김소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2.4억명),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ASEAN 국가 중 안정적인 경제 운영으로 주목해야 할 신흥국가이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접근성,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하고,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정치·경제 부문의 ASEAN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개시되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 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2012년 3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 7월과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두 차례 협상을 개최하여 양측은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에 합의하였다.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다룰 적절한 메커니즘을 협의하고, 필요 시 협정문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협상 원칙에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을 특별고려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시장접근 모델리티에서 양측은 3차 협상 이전에 상품양허(Request and Offer(R/O))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상품 관세 감축 및 철폐 기준세율은 2012년 7월 기준 한·ASEAN FTA 이행세율과 MFN 실행세율 중 낮은 것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허유형은 즉시, 3년, 5년, 7년, 10년 철폐 및 ST(특별취급)로 다양화하였다. 투자협상방식에서 인니 측은 우리 측이 제안한 R/O 방식에 난색을 표해 초안교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2년 12월 2차 협상에서 우리 측이 작성한 협정문 초안에 대해 인니 측에 설명하였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인니 측은 협력 및 능력배양 분야가 한·인도네시아 CEPA의 필수요소로서, 이를 통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조성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하여 향후 협상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협력 분야를 이슈화할 것을 예견케 하였다.

상품 분야에서 인니 측은 수입물량제한 금지 등 수입제한조치 금지 확인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니 측은 원산지 분야에서 한·ASEAN FTA 플러스 요소인 중간재규정, 세트조항, 기업 편의를 위한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등에도 관심을 표시하였다. 기타 우리 측이 마련한 협정문 초안에 대해 인니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향후 해당 분과에서 상세히 논의되기를 희망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한·인도네시아 CEPA를 추진함에 있어 상품양허 및 협정문 협상에서 우리 부는 농산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어, 농산물 개방 수준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한·ASEAN FTA 개방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2016년 관세가 0~5%로 감축되는 일반민감 품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농업협력 지원 및 투자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협상 타결 전까지 농산물의 양허는 기본적으로 기존 양허 입장을 토대로 하여, 주요 농산물의 양허 제외, 장기양허 등 농수산물의 예외적 취급 확보에 중점을 두어 협상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1.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 국제개발협력과 사무관 노상욱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국가 이미지 제고와 FTA/DD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2010년 11월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2010년 0.12%에서 2015년 0.25%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최근 들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새마을운동 등 농업·농촌 발전 경험과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해외농업개발 및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 관련 기술전수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아

및 빈곤 감축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 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 국민의 70~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이 주산업이며, 빈곤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 분야가 농업과 농촌개발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첫째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기여로 국가 이미지 제고, 둘째 아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FTA 협상 측면 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업·농촌개발 부문 국제협력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기아와 빈곤의 퇴치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농업협력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국제협력을 위하여 7억원가량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4억원에서 2010년 42억원, 2011년 100억원, 2012년 105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농식품부가 추진한 협력사업은 2006년 이래 크게 늘어났다. 사업 개수로는 11개('06), 13개('08), 17개('10)로 늘었고, 이후 신규 협력사업의 추가, 타당성조사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23개('11)로 늘어났으나, 2012년에는 18개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1년 수립한 '농림 분야 ODA발전방안'에 따라 단기성, 소규모인 일반협력사업을 지양하고,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규모화된 중장기 기획협력과 공동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대상 국가별로는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모잠비크를 필두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이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에는 아시아 9개 국가,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 등 15건의 기획협력사업에 81억원, '개도국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사업' 등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다자성양자 및 공동협력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5-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단위: 개)

연도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CIS	아프리카	다자/기타	계
2008	4	2	3	2		2	13
2009	4	1	7	1	1	1	15
2010	3	1	6		4	3	17
2011	2		11		7	3	23
2012	1		8		7	2	18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소속기관, 외청, 유관단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7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사업을 신규 지원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지원하였던 ‘DR콩고 천연계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수원국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무상 ODA 협의체인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 농업, 농촌 분야 ODA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고, 부처 간 정책연계와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마을운동 ODA 사업 세계화에 적극 참여하였다.

더불어 대내적으로 소속기관, 양청 및 산하기관(단체)이 참여하는 ‘글로벌농림수산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외교부(KOICA), 기획재정부(EDCF), 행안부(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재외공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업·농촌개발 분야 ODA의 중복 및 분절화를 방지 및 연계 추진함으로써, 원조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국가브랜드위원회 주관으로 정부부처 65개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 과제를 평가한 결과,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해외농업 개발, 농림수산식품산업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지원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소규모·단기성 협력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중장기 기획협력사업과 국제기구와

의 공동협력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관련 법·제도·조직 등을 체계화, 효율화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과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 및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여전히 지원규모가 작은 편으로, 아직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새마을운동 등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 발굴 단계부터 목표 지향적인 사업을 기획, 추진하며, ODA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 적극 운영하여 농림식품 분야 ODA 사업의 총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개도국의 식량안보, 빈곤 퇴치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등 농정정책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원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완료 사업에 대한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 국제개발협력과 사무관 이행우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1,400만~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하는 구조적인 곡물 수입국으로, 국내 경지면적이 2012년 기준 173만ha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으로는 식량자급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으로 곡물의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및 외교 등 측면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에 부족한 곡물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우선이지만,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돕는 데도 크게 힘을 보태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 및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지난 4년간(2009~2012년) 100억원을 집행하였고, 용자사업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및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972억원을 11개 국가에 진출한 31개 기업에 용자 지원하였다.

◆ 해외농업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해외농업개발은 2009년 추진 당시 해외농업 및 임산자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구 지식경제부) 소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부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시행(1.15)되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틀인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을 9월에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 보조사업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은 해외농업 진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농업투자여건 정보 제공과 민간기업의 관심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환경조사사업을 비롯, 해외농업개발 누리집(www.oads.or.kr)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용자지원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진출 기업 및 투자 증가 등의 해외농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5-2〉 2012년도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구분	추진실적	성과
• 해외농업 환경조사	- 정책조사 : 1997~2012 22개 국가 조사 - 맞춤형조사:2009~2012 27개 기업 지원	- OADS 정보제공 - 2012 보고서 배부 : 59기관 415부
• OADS운영	- 해외농업투자여건 정보 제공 - 해외농업개발사업 매뉴얼 제공 - 해외통신원 현지 농업정보 제공 - 국제곡물가격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회원수 : 2,515명(개인 2,292, 기업 223) - 해외농업 전문가 등록 : 244명 - 지원신청 온라인으로 효율성 제고
• 컨설팅	- 3개 기업 7개 분야 지원	- 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전문인력 양성교육	- 30명 국내교육 1주, 해외현지교육 2주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전문교육 수요가 많음
• 해외인턴	- 2012년 2명	-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기업채용)
• 해외통신원 운영	- 10개 국가 통신원 운영	- 현지 농업정보 제공
• 심포지엄/워크숍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해외농업개발 진출사례 및 추진현황 발표, 해외농업개발 발전방안 분임토의 실시

❖ 용자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용자사업은 민간기업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농장형) 및 건조·저장·가공(유통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용자조건은 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2012년에는 10개 기업에 300억원(농장형 8개 기업 28,450백만원, 유통형 2개 기업 1,550백만원)을 지원하여 30,611톤의 곡물을 확보(직접생산 6,872톤, 수집·유통 23,739톤)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2년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되고 추진 체제가 정비되었으며, 국내 반입이 대폭 확대('11: 796톤→'12: 10,539톤)되는 등 큰 계기가 마련된 해이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진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국내 반입을 대폭 확대하는 데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13년부터 주요 곡물(옥수수, 콩)의 수입관리제도를 개선하여 해외농업개발 생산물에 관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2014년부터는 국내 실수요자가 우리 기업이 확보

한 해외곡물 구매 시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국내 실수요기업과 해외농업개발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3. OECD 활동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은누리

◆ OECD 농업·농촌 및 식품 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무역 합동작업반회의, 농업환경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무역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 정도를 점검·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을 발간하고 있다.

◆ 최근 발간 주요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

◆ OECD 중기농업전망

OECD-FAO는 2005년 공동발간을 시작한 이래 2012년에는 ‘2012~2021 세계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2021)’을 내놓았다. 이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 증진 차원에서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적 평가를 담은 보고서로서, FAO의 품목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적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농업전망에서 개도국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농산물 가격은 2007년 말부터 2011년 초기까지 대체로 상승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7~2008년의 가격 급등 시기 이후, 2009~2010년 초반까지 농산물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2010년 중순부터 2011년 초반까지 다시 상승하였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농산물 수요증가율이 저하되고, 2011년 초반까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전망 초기('12~'13)의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으나 2011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향후 10년간 경제회복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2011년 대비 2021년 수요 증가가 높은 품목은 가금류(37.2%), 당류(32.5%), 식물성기름(32.1%), 낙농품(33.4%) 등이고, 이들 육류 및 낙농 수요 증대에 따라 유지류 및 조곡의 수요도 간접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 및 에너지 관련 투입요소비용의 상승 및 수자원 부족과 토지자원의 질적하락(land degradation)에 따른 제약으로 농업생산 증대속도는 1.7%p.a.로 저하될 전망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2.5%p.a.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곡물생산이 단수와 재배면적 증가율 저하로 생산증가율이 1.1%p.a.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곡물생산증가율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밀 생산은 2021년 생산의 5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통적인 선진국 생산지역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쌀 생산도 1.2%p.a.로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2~2011년 가격 대비 향후 2021년까지 농산물의 명목가격 및 실질가격은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들 주요 품목의 가격상승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른 수요는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및 생산제약에 따른 공급증가율의 저하 때문이다. 단, 전반적인 곡물생산증가율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밀과 쌀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1년 밀과 쌀의 실질가격은 2002~2011년 가격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 2012년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12년 OECD는 '2012년 회원국 및 신흥국 농업정책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2)'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하여 OECD 회원국의 구조적 다양성과 세계농업에서 신흥국가의 변화하는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2010~2011년 농업정책의 주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농업 지지정책의 수준, 구성, 변화 등을 평가하였다.

OECD 회원국들에서 생산자 지지는 2011년 약간 감소하여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1년 OECD 국가들에서 생산자에 대한 지지액은 생산자 지지 추정액(Produce Support Estimate: PSE) 기준으로 총 2524억달러(1815억유로)였다. 이는 농가 총수입의 19%에 해당되며, 2010년 20%, 2009년 23%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장기적으로 생산자 지지가 감소 추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회원국에서 지원 수준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별로도 지원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 터키, 일본, 이스라엘은 생산물에 기초한 지원(잠재적으로 가장 생산 왜곡적)의 비율이 80~90% 정도이고, 아일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44~68%를 차지한다. 이 생산에 기초한 지원은 대부분 국경보호, 국내가격조정, 그리고 보다 적은 단위 생산당 보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부분 회원국은 보호를 줄이면서 시장 왜곡적인 지원을 줄여 나가고 있다. 1995~1997년 국내가격이 국경가격의 세 배에 달했던 한국과 스위스는 2009~2011년의 경우 그 차이가 두 배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일본과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두 배 차이에서 오히려 국내가격이 약간 낮은 수준이 되었다.

현재의 생산자 지지는 생산과 무관한 직접지불이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주로 생산물에 기초한 지원에 의존해 온 한국과 일본도 생산 비연계 지불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들은 농업가격지지 감소로 혜택을 보고 있다. 스위스, 아일랜드, EU 등에서 소비자 지지의 감소 정도가 두드러졌다(소비자는 국제가격 이상으로 유통되는 국내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생산자 지원효과를 가짐). 2009~2011년 소비자가 전체 농산물 소비에서 생산자 지원을 위해 지불하는 추가적 비용(%CSE)이 한국과 노르웨이는 거의 절반에 다다랐으며, 일본은 43%, 스위스 1/3, 아일랜드 1/4에 해당했다.

OECD 전체에서 농업 지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다. 총 지지는 생산자 지지, 일반적 지지, 소비자 지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OECD 전체로 보면 %TSE가 1986~1988년 1.6%에서 1995~1997년 0.9%로 감소하고 있다. 비록 생산자 지지가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터키와 한국은 2009~2011년 2.7%, 2.2%로 여전히 OECD 평균과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농업·수산물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 관련 조직은 농업정책·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관련 협력 연구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2012년에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식품정책 설계, 시장과 정책 중기 전망, 농업무역 자유화라는 큰 틀에서 사업계획이 운영되고 있다.

사업계획은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 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석작업(무역자유화의 유익한 점, 국내정책의 무역왜곡 효과 등)을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 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개발 등 농업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3개 작업 분야(농정시장, 농업무역, 농업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정시장 분야에서는 회원국 및 신흥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산물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구조변화 분석, 농가위험관리, 농업 분야 민간자본 투자, 농식품 녹색성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제56차 농정시장작업반(12.3.7~8) 회의에서는 미국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밀가격 변동성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공개 결정하였으며, 식량안보의 개념 및 동향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였다.

제57차 농정시장작업반(12.5.29~31)에서는 「2012년 OECD 회원국 농정평가보고서」 및 「2012~2021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를 공개 결정하였고, 일반서비스추정치(GSSE) 개선을 위한 내용을 논의하고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58차 농정시장작업반(12.11.14~15)에서는 2013년 OECD 회원국과 신흥경제권의 농정평가보고서 및 2012~2013년 농업전망보고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식품체인에 대한 정책 영향을 측정하는 방안과 국제적 식량안보-식품과 농업시스템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농업무역 분야에서는 제67차 및 제68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에서 '식품수입 관련 규제의 설

계 및 이행-RTA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이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농산물 수출 제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진행상황을 설명하였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제32-4차 농업환경합동작업반 회의에서 녹색성장과 농업에 대한 정책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와 농업, 수자원과 농업에 대한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4.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활동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양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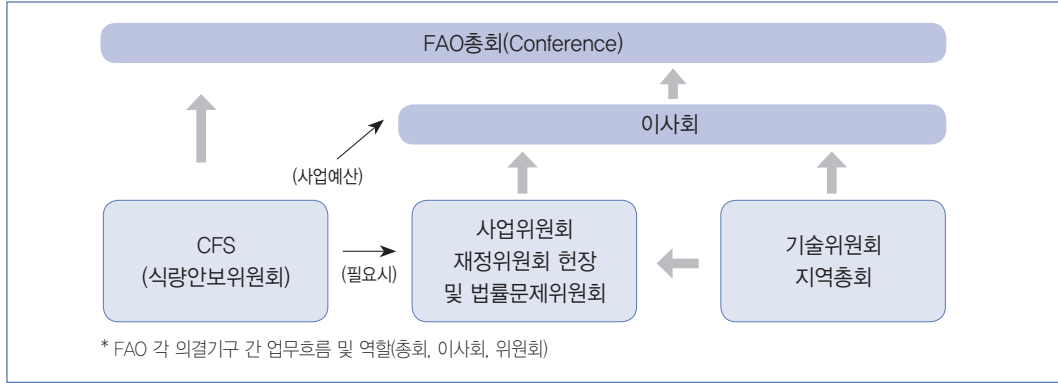
◆ FAO 개요

FAO는 세계 인류를 위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달성, 즉 인류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 영양상태 개선, 농업생산성 제고, 농촌인구의 삶의 질 개선 및 세계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개발 지원, 영양·식량·농림축수산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회원국의 농업정책 기획·개발에 필요한 자문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FAO는 1945년 10월 26일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설립 총회에서 「FAO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 14일 FAO 제2차 총회에서 유엔과의 제휴협정이 채택되고 유엔총회가 이를 인준함으로써 유엔 최초의 상설전문기구가 되었다. FAO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2012년 현재 191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 2개 준회원국(페로 제도, 토켈라우 제도)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는 총회, 이사회, 7개의 상임위원회(프로그램, 재정, 헌장 및 법률, 품목, 수산, 산림, 농업위원회),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및 5개의 지역총회(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근동, 남미·카리브, 유럽)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49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이사국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연속하여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2-5-1〉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 개요



총회(매 홀수연도)와 지역총회(매 짝수연도)는 2년마다 번갈아 개최되며,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한다. 총회는 정책 결정, 예산 승인,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가입 승인, 사무총장 및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 FAO 헌장 개정,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산하 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의 검토 등 중요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2012년 현재 총 3,811명의 인력이 FA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정규 직원은 2명으로 본부와 아태지역사무소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 정규분담금(정규예산, Net Appropriation)과 자발적기금(Extra-budgetary)으로 구분된다. 정규분담금은 회원국별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유엔의 국가별 분담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FAO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국별 정규분담금 비율에 따라 회원국이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2012~2013년 정규분담금 비율은 2.271%로, 191개 회원국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자발적기금은 정규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예산 지원, 현지프로그램, 기술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FAO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 절차의 효율성 제고, 직원 역량 제고, 본부 조직의 간소화 및 지역사무소 기능 강화, 대내외적 협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은 2004년 제127차 이사회에서 FAO 조직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 기관의 독립적인 FAO 운영 실태 평가(IEE : Independent External Evaluation)를 미국과 캐나다가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5~2007년 기간 중 IEE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개최된 제34차 총회에서 ‘성장을 동반한 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즉각행 동계획(IPA : Immediate Plan of Action)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제35차 특별총회에서

세부적인 개혁조치사항을 담은 즉각행동계획(IPA) 5개년 계획('09~'13)을 승인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는 FAO 아태지역총회(제31차 : 3.12~16), 2차례의 FAO 이사회(제144차 : 6.11~15, 제145차 : 12.3~7)가 개최되었다. 이 밖에도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산림위원회, 어업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제31차 FAO 아태지역총회 참석

제31차 FAO 아태지역총회는 2012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39개 FAO 아태지역 회원국,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내(域內) 농업상황, 2012~2013년 아태지역 사업예산 및 2014~2015년 우선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30차 아태지역총회 의장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을 통해 아태지역의 우선순위사업 선정 및 자원 배분 등 개혁활동의 경과를 보고하고, 아태지역의 식량안보 및 농업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FAO 개혁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개혁활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4~2015년 FAO 우선조치 분야로 ①식량영양안보 개선 및 빈곤 감축 ②농업생산성 제고 ③천연자원 관리 ④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자연재해 대응능력 제고 ⑤소농의 역량개발 및 강화 등 5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세계 기아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있는 아태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FAO 분권화(decentralization)정책과 관련, 회원국들은 FAO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하였고, 지역사무소 및 국가사무소 대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권한을 증대하여 보다 유연한 분권화 사무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다.

◆ FAO 이사회 참석

2012년에는 총 2차례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제144차:6.11~15, 제145차:12.3~7). 이사회에서는 식량안보·프로그램·재정·현장 및 법률 등 각 상임위원회, 농업·산림 등 기술위원회 및 지역총

회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144차 이사회에서는 예산 절감방안을 토대로 2012~2013년 사업예산안 추가 조정안을 승인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개최된 각 지역총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마련한 FAO 지역조직 개편방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제38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토지소유제도 등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제145차 이사회에서는 2014~2017년 중기계획과 2014~2015년 사업예산 작성의 기초가 되는 전략적 목표를 승인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마련된 2012~2013년 조직개편안도 승인하였다.

* FAO의 전략적 목표 : ① 기아, 식량불안 및 영양결핍 퇴치에 기여 ② 농촌 빈곤 감소 ③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림수산 분야 생산 증대 및 서비스 개선 ④ 국제·지역·국가 수준에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농식품시스템 마련 ⑤ 각종 위협 및 위기에 대한 세계 복원력 향상

❖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세계식량안보위원회는 2009년 개혁안 채택 이후 논의 의제와 참석자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식량안보와 관련된 중심적 논의기구로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39차 식량안보위원회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112개국 회원국을 비롯하여 104개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국제농업연구기구,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 민간 부문 협회 및 자선재단 등 식량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및 영양에 대한 국제적 전략 프레임워크(Global Strategic Framework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를 승인하였고, 만성적 식량 위기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향후 2년간('12.11~'14.10) 책임 있는 농업투자에 대한 원칙(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s)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동 회의 기간 중 개최된 식량가격 변동성에 대한 각료급회의에는 주최국인 프랑스를 포함한 총 22개국의 장관급이 참석하여 국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식량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수출제한 조치의 억제 등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FAO는 19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유엔기구로서, 세계 식량 및 농업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FA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식량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선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FAO 분담금 규모, 인구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FAO에서 근무할 우리나라의 적정 인원은 15~20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근무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 진출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기술협력 및 정책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을 확대함으로써, 남남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양자 · 지역 · 다자간 국제농업장관회의

◆ 한 · 중 · 일 농업장관회의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경은

국제적 식량가격 변동성 확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부문에서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같은 지역적 현안에 대해 인접국가 간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 · 중 · 일 농업장관회의의 개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8년 한 · 중 · 일 정상 3국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3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우리나라에서 중 · 일에 3국 농업장관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후 2011년 3국 장관회의 개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 · 중 · 일 3국은 2012년 3월 29일~30일 과장급 실무협의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4월 14일~15일 한국 제주도에서 제1차 한 · 중 · 일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한 · 중 · 일 협의결과를 토대로 ①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정책 및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AFSIS, APTERR, APIP에서 3국이 공조 ②구제역, AI 등 동식물질병 공동대응을 위해 '3국 공동방

역사무국' 개설을 검토 ③기후변화, 가뭄, 홍수 등에 대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연구 ④연구자 교류, 무역 촉진을 위한 경제파트너십, G20, FAO, APEC, ASEAN+3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 6개 의제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중·일 장관은 첫 번째 열린 이번 농업장관회의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3국 협력에 획기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일 장관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농업장관회의를 매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제2차 회의는 일본이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6. G20 농업장관회의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최수아

◆ 배경 및 개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대응공조를 위하여 출범한 G20은 2010년 서울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주요 어젠다로 다루게 되었다. 이 개발 어젠다의 일부로서 식량안보, 농산물 가격변동성 문제 등의 논의가 포함된 다년간행동계획(MYAP)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2011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1차 농산품의 가격변동성'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고, 특히 농산물 가격변동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G20 최초로 농업장관회의를 6월 22일~23일 양일간 개최하였다. G20 농업장관회의에는 G20 회원국 및 4개 초청국 등 24개국과 FAO, IFAD, WTO 등 10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식량가격 변동성에 대한 G20 차원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행동계획은 11월 3일~4일 개최된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어 2012년 의장국인 멕시코는 5월 17일~18일 열린 농업차관회의에서 칸 G20 선언문 농업 분야 이행점검과 '지속 가능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1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에서는 '농업과 식량 가격변동성에 관한 G20 행동계획' 선언문을 채택하여 농업문제에 대한 G20 차원의 협력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언문에 채택된

주요 내용은 첫째, 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이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농업투자과 연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 밀 연구 이니셔티브의 창설로 밀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 쌀 연구기관을 통해 쌀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시장정보와 투명성이다. FAO를 중심으로 농산물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을 창설하고, 이와 더불어 조기경보시스템(EWS), 신속대응포럼(RRF)을 연계 운영하기로 하였다. 셋째로 국제 정책공조 강화이다. FAO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농산물 교역 증진을 위한 DDA 협상의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부사항으로는 WFP의 인도적 목적의 식량구매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및 과도한 수출세 부과 금지를 합의하고, 바이오연료와 식량생산 및 공급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국제 공여기관을 통한 인도적 긴급 식량비축시스템 구축방안의 연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넷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변동성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도국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위협관리 수단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WFP 등 국제 공여기관을 통한 인도적 긴급 식량비축시스템 구축방안 타당성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로 농산물 파생 금융상품시장 규제 강화이다. 농산물 파생 금융상품시장의 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방안을 재무장관 채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김재수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참석하였고, 식량안보와 식량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발협력 다년간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이행과 G20 농업장관회의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1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농업차관회의에서는 'G20 농업차관보고서'와 G20 정상 선언문에 포함될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으며, 농업차관보고서는 '칸 G20 선언문 농업 분야 이행점검'과 '지속 가능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칸 G20 농업행동계획 이행점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국가가 행동계획의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G20 농업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멕시코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대부분 권고사항으로서 구체적 이행과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행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상길 제1차관은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농업 원조사업을 설명하고, G20 농업행동계획에서 G20 국가의 실천적 행동이 중요함과 농업 투자 원칙은 투자국과 유치국이 모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G20 농업장관회의는 농업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제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20 농업장관회의 등 G20 차원의 국제논의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G20 행동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신속대응포럼(RR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조, 통계자료 제공 및 전문가 파견을 적극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논의에 식량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속 대응할 방침이다.

7. AMAF+3 회의(ASEAN+한·중·일 농림장관회의)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신향원

❖ 배경 및 개요

ASEAN+3 농림장관회의(AMAF+3)는 기존의 ASEAN 농림장관회의에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을 참여시켜 ASEAN과 3국 간 농림식품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로서 앙가라(Angara) 필리핀 농업장관의 확대 제안(2000년 8월)을 한·중·일 3국이 수용함으로써 출범하였다.

2001년 10월 제1차 ASEAN+3 농림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 농림식품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하여 농림식품 분야 ASEAN+3 협력활동 추진 결과 및 협력의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협의체로서 농림식품 분야 협력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 회의라고 할 수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1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1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서 농림장관들은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과 ASEAN+3 협력사업계획(2007~2017)'에 따라 식량, 농업 및 산림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강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결정을 보완하

기 위하여 장관들은 식량안보 강화,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동물 건강과 질병 통제, 다분야 이슈의 6개 전략 분야로 구성된 'ASEAN+3 협력전략(APTCS) 틀'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ASEAN+3 비상 쌀 비축제(APTERR)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2012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12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서 농림장관들은 바이오에너지 및 식량안보에 관한 ASEAN+3 고위급회의를 2012년 10월 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APTERR 협정의 발효를 환영했으며, 지역 내 비상수요를 충족하며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APTERR 협정의 이행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ASEAN+3 비상 쌀 비축제는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로서 ASEAN 국가들과 한·중·일의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ASEAN+3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비축이나 정상적인 무역으로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축된 쌀을 지원하여 재난 발생국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회비준절차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ASEAN+3국이 총 78.7만톤의 쌀을 지원기로 약정(우리나라는 15만톤, 전체 물량의 약 19%)


또한 식량안보, 농업기술, 환경보호,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후변화 적응, 통계, 데이터 관리, 식물 다양성 보호, 식물검역 등 분야에서 한·중·일 3국과 ASEAN 사무국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기존 협력사업 활동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식물검역전문가 초청연수(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신선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향상사업(한국식품연구원),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제고(유엔식량농업기구) 등 5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농림식품 분야 발전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농림식품산업 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ASEAN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극심한 빈곤과 취약한 식량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 ASEAN+3 국가들 간 협력을 통해 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동남아 개도국의 농림수산 분야 역량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13차 ASEAN+3 농림장관회의는 2013년 9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PTERR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APTERR 운영규정, 사무국 재무관리 규정 및 절차 등 안건이 논의될 것이며, 한·중·일 3국이 추진 중인 ASEAN+3 차원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진전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제6장 농식품 안전성 · 품질관리 강화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1. 농산물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 소비정책과 사무관 김방연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4년도에 도입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문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소비 중 외식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외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2008년 7월부터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2010년 2월 4일 제정 · 공포하고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 법령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전국 62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적용하는 한편,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통신

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수입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소금과 막걸리를 포함한 주류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수산물 6품목을 신규 도입하고, 찌개용·탕용 배추김치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통 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을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김치류에 사용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및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와 갈치의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추가하였다. 한편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지속적인 방사성물질 검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남에 따라 명태, 고등어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 2012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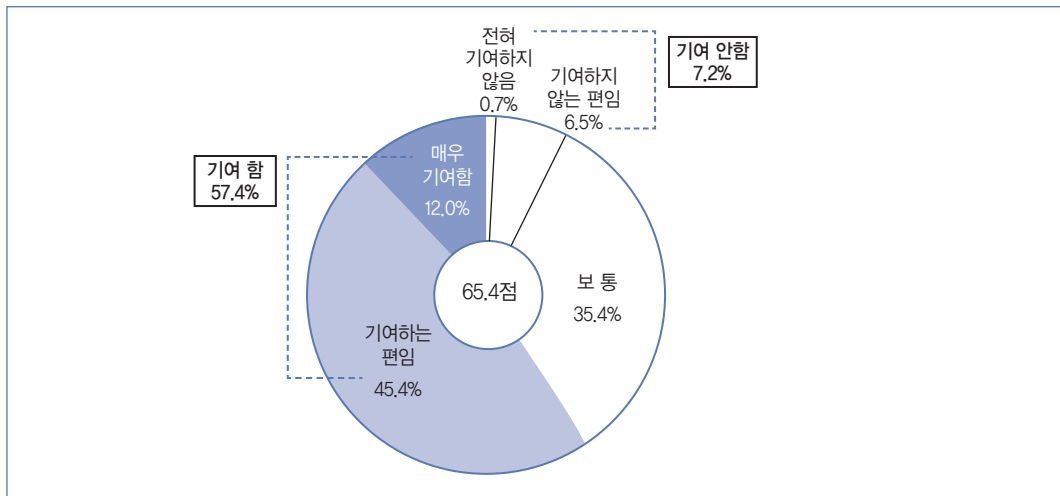
- 농수산물·가공품 : 868품목(국산농수산물 393, 국내가공품 295, 수입농산물·가공품 180)
- 음식점 : 16품목(소·돼지·닭·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납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 표시강화 : 가공품 중 김치류(고춧가루 표시)
음식점의 배추김치(고춧가루 표시) 및 살아 있는 수산물(제공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것)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언론매체 및 홍보책자와 전단지 등의 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00명을 활용하여 조직적·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사례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소속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원산지표시 감시·지도 강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지난 2012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먹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한다’는 응답이 57.4%(매우 기여: 12.0% + 기여하는 편: 45.4%), ‘보통’이라는 응답이 35.4%,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로, 원산지표시제의 기여도는 65.4점으로 나타나 원산지표시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림 2-6-1〉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기여도



자료: 현대리서치연구소,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2012.9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표시방법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유관기관과의 지도·단속 협조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농식품 안전성검사 확대

■ 소비정책과 사무관 하중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안전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초 안전성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판매되는 농산물,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는 농산물 279개 품목을 대상으로 79,753건 검사하여 계획(78,000건) 대비 2.2%를 초과 달성하였다. 유해물질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농산물은 잔류농약 62,609건, 중금속 6,924건, 병원성미생물 638건, 곰팡이 독소 1,050건, 방사선조사 및 핵종 1,517건,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40건, 이물(기생충란) 150건, 혼중제 150건을 조사하였고, 농지·용수·자재에 대해서도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4,247건 조사하였다. 2012년 안전성검사 결과 1,217건의 농산물이 부적합한(1.5%)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249건), 출하연기(335건), 용도전환(13), 관계기관 통보 등(613건)으로 조치하였다. 2012년 안전성검사 물량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률이 2011년 1.8%에서 2012년 1.5%로 향상되었다. 아울러 생산·저장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도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11,719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유해물질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분석능력이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14개소)·운영하였으며, 분석실(24개소)의 정도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에는 조사물량과 조사대상 분야를 84,000건(전년 계획 대비 8.3% 증가)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잔류조사(54품목, 17,790건)를 추진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검사기관 지정을 확대, 첨단 분석장비 확충 및 분석인력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늘어나는 안전성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농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부적합 필지와 농산물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토양복원사업과 유통 전 수매 폐기조치 등을 추진, 폐광산 주변 지역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대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 소비정책과 사무관 하종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농산물의 생산·유통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력등록 대상자는 농산물생산자, 유통자, 판매자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위생시설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용수·생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비용지원(국비 보조 100%),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 보조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인증기관은 신청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7, 권장 23)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9년에 대상 품목을 110개 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자 중 행사·노점상 등 단순판매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더불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확산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축·수산물의 이력추적 조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의 이력관리번호(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이력추적관리 성과는 <표 2-6-1>과 같다.

<표 2-6-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증기관(개소)		31	38	43	45	49	51
GAP관리시설(개소)		316	417	484	565	606	718
인증농가수(호)		16,796	25,158	28,562	34,421	37,146	40,200
인증면적(㎡)		24,754	36,322	40,081	46,701	46,701	55,000
생산계획량(톤)		331,421	419,842	434,047	509,931	642,165	691,000
농산물이력등록농가수		30,557	48,214	70,612	88,218	94,949	103,55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농업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GAP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들의 GAP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조직단위의 집단인증제 도입을 통한 GAP생산조직 육성, GAP인증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기준 개선 및 GAP인증 분석비용 지원 확대, GAP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GAP시설 지정 기준 개선, GAP위생시설 지원 확대, 군납·학교급식 등 GAP인증농산물 대량수요처 발굴을 통한 GAP인증농산물 소비 확대, 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GAP교육·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GAP활성화 대책’을 2011년에 수립하여 추진해 온 바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정부기관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GAP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소비자가 우려하는 농산물의 위해요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안)을 확정(10월)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GAP제도에서, 적합한 위해요소관리가 되는 경우 불필요한 GAP시설경유 및 시설확충 등의 규정 완화를 통해 비용이 적게 들고 농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GAP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가의 등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자의 고령화로 인한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경영체에 생산정보 대행입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향후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력관리농산물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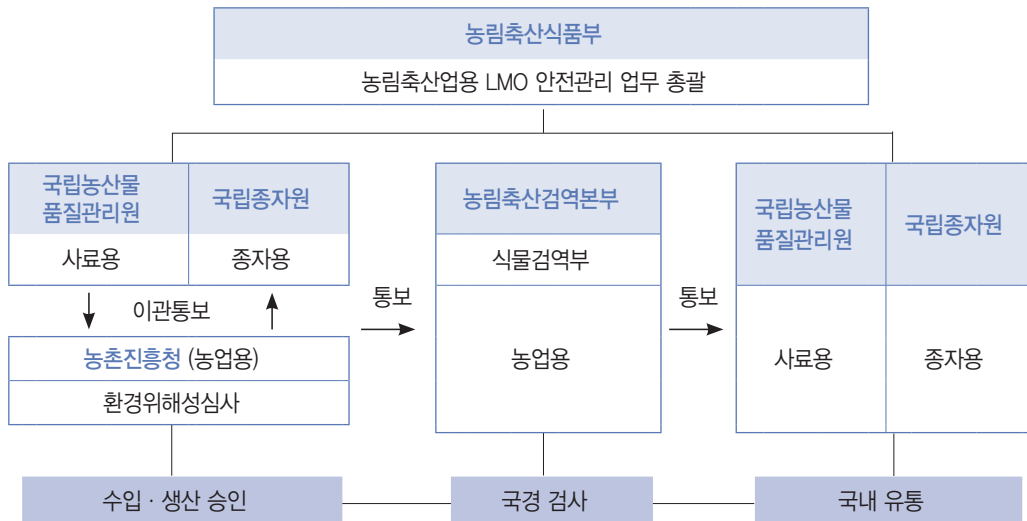
4.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관리

■ 검역정책과 행정사무관 최동철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8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수입 및 생산되는 모든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입·생산 및 국내 유통 단계에 이르기 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2-6-2〉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체계



❖ 추진 내용 및 성과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9개반 40명)하여 2013년 7~8월까지 하역지부터 최종 사료공장 주변까지 경로상에 위치한 지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취급관리기준 위반으로 1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LMO 취급관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취급관리자를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LMO 취급관리 유의사항, 위반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부주의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 철저한 취급관리를 당부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림축산업용 LMO의 안전관리는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농림축산업용 LMO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료용 LMO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항만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지점검과 이동 경로 및 사료공장 주변 등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과의 합동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013년에는 향후 5년간 적용할 ‘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LMO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 소비정책과 농업사무관 조민경

❖ 추진 배경 및 개요

식품의 이물질 검출사건과 신종 유해물질 등장, 국제교류 확대에 의한 해외 질병 및 병충해 유입 등으로 식품 관련 사고는 점차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민소득 증대와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과 관련한 위험정보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식품안전정보의 전달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에 걸쳐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및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2009년 8월 분리 운영되었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AGROS)과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FSIS)의 통합 사이트(www.foodsafety.go.kr)가 구축되어 농·축·수산물 분야의 안전 및 위험요소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추진 방향

일방적인 농식품 위험정보의 제공에서 대국민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정보까지 영역 확대에 서비

스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수요자 중심 맞춤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대국민 대표 농식품 안전정보 제공창구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으로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이용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농식품 안전 분야 특정 이슈를 소비자 관심과 눈높이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내외 정보수집 및 관리

국내 관련 기관 생성정보 및 관련 이슈를 실시간 수집체제로 강화하고, 해외 현지 정보제공자 운영을 확대하여 해외 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수집 정보에 대한 전문가 심의단을 운영하여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농식품안전 정보연계 및 대응체계 강화

농식품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정보대응 체계 강화로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회수조치 및 사고처리에 요구되는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 농식품 안전정보서비스 활용성 강화

수요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색기반 서비스'로의 개편 및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계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추진 성과

◆ 국내외 농식품 안전정보 제작 및 배포

자체 수집 및 외부기관 연계, 해외 정보제공자를 통해 총 4,609건의 국내외 농식품 안전·위험정보를 제공하였다. 관련 기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농식품안전 뉴스, 농식품안전 동향)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배포(총 145회)하였다.

◆ 정보관리 및 제공체계 강화

정보생산기관 담당자, 소비자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의 협의체인 정보관리협의회 및 실무진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총 9개 분야(화학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 동물질병 등)의 정보 심의단(13명)을 구성·운영하여 제공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농식품 안전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농식품 안전정보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키워드 홍보 및 정기 참여 이벤트(총 5회)를 운영하여 562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하였다.

◆ **농식품 안전정보서비스 고도화**

소비자웹과 전문가웹을 개발하여 각 수요에 맞는 정보를 분리·게시하는 등 정보수요자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후 식품안전 외 식생활, 품질 등에 대한 농식품 소비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관련 식품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의 수집, 생성, 평가 등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6.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 사업

■ 소비정책과 농업사무관 조민경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식품안전(zero risk, 무위험)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및 업계의 이해·수용수준에 대한 격차가 커서 상호 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각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농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긴급정보대응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추진 방향

농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이해수준 향상을 통한 신뢰도 제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쌍방향 의견교환에 따른 효율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

❖ 농식품 위험정보 교류활성화

소비자와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농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외 식품문제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 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체계

농·축·수산물 분야별로 분산된 위험관리 정보 및 대응체계를 정부 중심의 농식품안전 긴급대응 체계로 점점·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며, 소비정책과를 대표 창구로 효율적인 사전예방·긴급대응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추진 성과

❖ 이해그룹별 위험정보교류 활성화 사업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의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안전정보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기별 발생빈도가 높은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V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 긴급정보대응체계 구축

긴급상황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책을 위한 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식품 안전사고 등에 대한 긴급정보대응을 위한 국내외 조치 및 정책 동향을 수집·공유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후 생산 단계 식품안전정보 외 농식품 소비의 종합적 정보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개편하는 한편, 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7. 축산물 이력제 추진

▮ 방역총괄과 사무관 김정권

◆ 추진 배경 및 개요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 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며, 종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이력정보의 전산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가공판매 단계에서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 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지역축협 등 137개소를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 지원을 시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2009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 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통 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식육 유통업체 등의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소 사육현황을 조사하는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이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DNA 동일성검사 장비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이력정보 조회 방법 개발, 이력제 예산 및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였다.

2011년에는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산 귀표 개발을 완료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묶음번호에 대한 이력조회 기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이력제 대상 축종을 돼지로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 단계별 표준안 및 시범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에는 전국 16개 브랜드 경영체, 487농장, 13개소 도축장, 8개 가공장, 34개 판매업소가 참여하는 농장단위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돼지고기 이력시스템 구축 및 이력번호 표시기 개발·적용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돼지고기 이력제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쇠고기 이력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각종 이력업무 처리 속도 및 저장용량 개선, 농장식별번호 체계마련, RFID귀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현장업무 및 방역 효율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쇠고기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사육농가와 영세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이행수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고, 2014년 도입 예정인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이력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이력제 사육두수 검증조사 등을 실시하고, 식육유통업체,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돼지이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고, 돼지도체 이력번호표시기 설치 확대, 이력지원실 확대·운영, 이력시스템 보완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제도 세부시행 방안 보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1. 가축질병 방역 강화

▮ 방역총괄과 사무관 이동식·김준걸

❖ 추진 배경 및 개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미국·일본 등에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산되며,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질병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구제역 상시 예방접종 체계 전환에 따라 농가의 자율접종체계 확립 및 백신접종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백신접종 결정 이후 2011년 9월부터는 기존 O형 단일백신에서 예방 범위가 넓은 3종 혼합백신(O형+A형+Asia1형)을 100% 공급하고 있고, 지자체장을 포함한 농가별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담당농장을 방문하고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접종 상황을 점검하며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접종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접종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검사와 혈청검사를 확대·강화하여 백신 미실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점 관리하였다.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곧바로 '심각' 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장 등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고(Standstill), 이동제한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축산 관련 시설 및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며, 긴급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백신접종이 결정될 경우 결정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시군별로 농식품부 및 시도 관계자, 관내 군인경찰, 농축협 관계자, 가축위생방역본부 직원 등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가동된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은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및 작업장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소규모 농가 129천호에 대해서는 농협 소독 전담반이 연중 소독을 실시하는 체제로 개편하여 소독을 강화하였다.

농가 예찰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전화예찰요원 500여명을 채용하여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월 2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농가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관에 게 통보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1.7.25일)을 통해 해외여행 가축소유자, 고용인,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로 판매자 등 축산관계자는 공항만의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제역 유입경로별 차단 검역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선기내 음식물 지도·점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앞으로도 해외 유입질병 및 국내 상시발생 질병 등 가축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2014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및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축산차량등록제 도입 및 농장 출입차량(관계자)에 대한 소독 의무 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강화

■ 검역정책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2000년, 2002년, 2010년 구제역 발생과 2003년, 2006년, 2009년, 2010년 4차례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경험하였다. 또한 최근 여러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축산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축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 가축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 시 국가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경에서부터 철저한 검역조치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해 신고·소독조치 등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불법축산

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X-ray 검색활동을 통해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해외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대책의 일환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북아 등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발생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이들 가축질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한 휴대품 검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 견초에 대한 소독 및 실험실 검사,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 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신발 소독 실시, 외국인 연수생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 및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진다. 동물이 나 축산물을 수입하기 이전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수입허용 절차는 1단계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2단계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단계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단계 수입허용 여부 결정, 6단계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를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이 수입되면 계류시설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에 입고되어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 통관이 허용된다.

〈표 2-6-2〉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추진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동 물	수출	마리 군	6,721 1	217,523 12	6,956 -	33,241,930 -	7,488 -	45,734,947 -	8,488 -	76,857,815 -	9,013 -	25,741,746 -
		마리 군	7,377 -	1,175,977 150	7,186 1	1,318,808 100	8,320 2	1,216,782 70	10,029 -	3,541,885 -	9,633 -	1,446,715 -
	계	14,098 3	1,393,500 162	14,142 1	34,560,738 100	15,808 2	46,951,729 70	18,517 -	80,399,700 -	18,646 -	27,188,461 -	
축 산 물	수출	톤 천개	11,457 182	149,795 692	12,385 209	144,042 1,974	11,251 139	146,692 1,122	12,414 5	170,473 214	14,289 23	175,156 9
		톤 천개	127,596 318	2,048,973 663	128,761 367	1,937,033 717	144,450 464	2,125,598 2,823	161,165 458	2,545,147 970	156,705 414	2,506,157 1,161
	계	139,053 500	2,198,768 1,355	141,146 576	2,081,075 2,691	155,701 603	2,272,290 3,945	173,579 463	2,715,620 1,184	170,994 437	2,681,313 1,170	

◆ 평가 및 향후 계획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 대책을 철저히 추진한 결과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한 주기적인 공항·항만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검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주요 공항·항만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함께 '국경검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소독 등 검역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탐지견 투입과 X-ray 검색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외국 방문 시 축산농가 출입 자제 등에 대한 국경검역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위생정보에 대한 수집·검색을 강화하고, 법무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입위험분석절차 실시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및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대국 수출 단계에서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를 통한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도착 시 철저한 수입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및 축산물 검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 소비정책과 주무관 김승래

◆ 추진 배경 및 개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그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공포(12.22)하였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사육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내성률 감소를 위하여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하였으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를 마련(12.2)하여 2013년 8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육 단계 HACCP 적용으로 항생제의 사용 절감, 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사육 단계의 HACCP 적용이 대폭 확대(2011년 2,846개 농가→2012년 4,079개 농가)되었다.

도축 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립불능 상태의 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해면상뇌증(BSE) 우려를 감안하여 2009년 11월부터 부상 등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축을 제한하고, BSE 검사 후 사체는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

가공 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체 등에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HACCP 적용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축·가공 단계의 위생수준 제고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잔류물질 120천건, 미생물 100천건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과거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비용을 높여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 역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히 식용란의 유통·판매 주체에 대해 법적 영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고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도축장 위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에 관한 정책은 가축 사육 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From Farm-to-Table) 일관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심도를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 사육 단계부터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HACCP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생산 단계의 HACCP 적용 확대 및 최종 판매 단계까지의 HACCP 활성화 등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방역총괄과 사무관 나인지

❖ 추진 배경

EU와 OIE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2004년 EU헌법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 명문화가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발표하였다. 동물실험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EU에서는 개·고양이가 가죽제품의 수입이 2007년부터 금지되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은 2009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물복지 표시제 도입,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금지⁽¹²⁾ 및 돼지의 스톨 사육금지⁽¹³⁾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OIE에서는 2002년부터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운송, 도축, 살처분 등 11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항공·해상·육상·양식어류 운송, 동물·양식어류 도축, 동물·양식어류 살처분, 육우 생산시스템, 유기동물, 실험동물)을 제정하였으며, 육계 생산시스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소득 증대 및 독신 세대 증가 등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문화 미성숙 등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량과 동물학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험동물은 한 해 100여만마리가 사용되나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동물 실험결과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축산업은 규모화 등으로 선진화를 이루었으나 좁은 국토 여건 등으로 밀집 사육 등이 일반화되어 동물복지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의 금지, 동물의 도살방법, 벌칙 등이 대폭 강화·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2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동물등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물판매업 등록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 등 동물보호·복지 증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2011년에는 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확충하고 필요한 제도를 신설·정비하여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완료하였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 실정에 적합한 농장동물복지기준 및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동물복지형 사육방식 등을 축산농가에 도입·확산시키고,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을 증진시키며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법제화를 완료하였다. 2012년 3월에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기준을 제정·시행하여 2012년 12월까지 37개 산란계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하였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해 4개소(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 8.4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2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교육을 위해 교재 제작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 분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동물 관련 영업자, 축산농가, 일반인, 동물보호단체 회원, 공무원, 학계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동물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향후 계획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실효성 증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하여 돼지(13), 육계(14), 한육우 및 젖소(15)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시범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인·동물소유자·동물 관련 영업자·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의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3절 친환경농업 육성

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재학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과 조성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19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원하였다.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지구 사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 또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 10% 제고 및 농약·화학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방안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04.2)하여 농업환경 개선과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단지별 최소 600ha 규모로 조성되며, 2005년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하였고, 2006년 3개 지역(완주, 순천, 울진) 선정, 2007년에는 6개 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

부 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정책 추진의 세부 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기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단위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며 축산분뇨와 기타 농산부산물을 자원화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 2011년까지 1,048개소를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28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 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확충을 지원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단위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2%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2년에는 광역단지조성 신규 8개소와 2~3년 차 사업 14개소에 국고 241억원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축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또 농업환경 개선, 친환경농업 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확대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시·군 단위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600ha 이상)와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 이상)를 지정·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2년 말까지 42개소를 선정·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선정·지원

하는 등 총 사업비 6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12년 말까지 1,076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36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 중에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총 1,3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5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친환경비료 지원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상훈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료를 과다 사용하여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축·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6-3〉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

(단위 : kg/ha)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 국		257	340	311	267	233
미 국		117	124	121	104	108
캐 나 다		54	41	52	48	40
브 라 질		121	126	165	149	112
칠 레		334	357	399	457	438
호 주		48	40	41	34	29
일 본		323	309	326	259	219
중 국		370	392	434	415	432
영 국		271	252	252	207	238
프 랑 스		180	178	196	143	140

자료출처 : FAO

❖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는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 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다.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도 120만톤 420억원, 2007년 135만톤 473억원, 2008년 200만톤 1,160억원, 2009년 210만톤 1,218억원, 2010년 250만톤 1,450억원, 2011년 250만톤 1,250억원, 2012년 286만톤 1,434억원, 2013년 311만톤, 1,613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2-6-4〉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천톤, 억원)

구분 \ 연도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물량	3,300	1,200	1,350	2,000	2,100	2,500	2,500	2,858	3,110
금액	1,155	420	473	1,160	1,218	1,450	1,250	1,434	1,613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2010년까지 포대(20kg)당 단가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지원단가를 1~3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별 지원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작물에 적합한 유기질비료를 시비하도록 개선하였다.

〈표 2-6-5〉 유기질비료 지원조건(국고, 2013)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퇴비(원/20kg)	1,2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의무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맞춤형화학비료, 가축분퇴비 등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화학비료 가격 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 465천톤 600억원, 2011년 541천톤 298억원, 2012년 496천톤 198억원을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퇴비의 품질등급제 차등지원 등을 통한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강화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토양지력 증진, 농업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비료는 사용 결과 효과분석 및 신규 비종 설계 등으로 고농도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되, 2013년부터 국고 보조는 중단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를 대상으로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29천ha를 대상으로 501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를 대상으로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를 대상으로 345억원, 2010년에는 93천ha를 대상으로 376억원, 2011년에는 72천ha를 대상으로 30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논 27천ha, 밭 22천ha 등 총 49천ha를 대상으로 60천 농가에

29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6-6〉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억원, ha, 천호)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급액	208	287	345	376	305	294
면적	53,682	76,352	90,132	93,318	71,766	48,921
농가수	69	97	112	116	88	60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 경지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9.5%(164,289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 농산물생산량의 0.2%에서 2012년에는 9.6%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 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 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여부 통지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농약 및 유기재배 직불금 지급단가를 약 50% 수준 인상하였고, 유기재배에 한해 지급기간을 종전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연장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증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 및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4년 385kg/ha에서

2012년 267kg/ha로 큰 폭의 감소를 이루는 등 농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56천ha에 3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급면적이 2012년보다 17천ha 정도 감소한 이유는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감소분 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현행 5년)을 확대하고, 품목별 재배난이도를 고려하여 직불금을 차등지급하는 등의 직불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4.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하는 생산자 단체, 소비자단체(생협 등),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물류 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 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억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억원, 2008년 14억원, 2009년 21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3.6억원을 조성하였다. 2012년에는 13.5억원을 조성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 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08년 36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1년 310억원, 2012년에는 2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소비처 발굴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06~'10)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총 사업비 480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251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2012년 10월에 건립 완료하고 개장,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산지 중심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센터 건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수도권 등 대량소비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호남권(나주시)에 총 사업비 289

억원(국비 145억원, 지방비 14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38천㎡, 건축면적 14천㎡ 규모로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내 친환경농수산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 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 10월에 개장한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의 상거래 장소로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형성, 유통정보 제공, 안전성 관리, 대량수집과 분산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 방역총괄과 사무관 나인지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 제도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 발생 등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

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와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 도입 등 친환경축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축산정책 전환, 경종농가와외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2009년부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사업 목적은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소득 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업 주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지원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가이며, 지원대상 축종은 한육우·젓소·돼지·닭·오리 등 7개 축종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농가당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0백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6-7〉 친환경축산직불제 지급단가

(단위: 마리, L, 원/개)

구분	한우	젓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유 기	170,000	50/ℓ	16,000	10/개	200	400	20
무항생제	65,000	10/ℓ	6,000	1/개	60	120	2

주: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지급

2012년에는 예산 7,000백만원 중 760농가에 약 6,99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 이후 인증농가 수 및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친환경축산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표 2-6-8〉 친환경 축산물 인증현황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가 수(호)	763	2,904	4,477	6,345	6,787	9,701
출하량(톤)	13,562	148,286	309,546	404,196	500,762	569,637

*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직접지불제 시행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축종별로 35% 인상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지급기한을 유기농산물과 동일하게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급대상 축종을 현재 7종에서 산양메추리사슴을 추가할 예정이다.

2013년에는 10,02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정경석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 식품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well-being 및 LOHAS 강화, 고령화 대응, 세계화 및 지역화, 환경친화 추구, 기술 융합화 등 다양하고 복잡화되는 추세이다. 세계 유명 식품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다양화되는 식품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식품 개발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품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0~65%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위해인자를 추적하는 기술은 40%,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기술은 43%, 식품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측정하는 기술은 30% 수준으로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열위에 있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미흡한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의 확대를 통해 민간의 R&D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1년부터 6대 부문 18개 핵심기술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며, 중점 추진방향으로 글로벌 시장대응 수출 상품화를 위한 전통식품 상품화, 국내 기능성 강화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 확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식품 품질관리기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식품소재, 식품 기자재, 저탄소·신가공 기술 분야를 신규 지원하였다.

〈표 2-7-1〉 6대 분야 18대 핵심기술

6대 분야	핵심 기술
기능성강화 식품	①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②질병예방·건강증진용 식품개발 ③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전통 웰빙 식품	④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⑥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품질관리	⑦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⑧식품의 원산지 및 위·변조 판별기술 ⑨고효율/표준화 물류시스템기술 ⑩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식품 핵심소재	⑪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⑫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식품 기자재	⑬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⑭식품기계 개발기술 ⑮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저탄소·신가공	⑯저탄소 식품가공기술 ⑰고효율 식품가공기술 ⑱융복합 식품가공기술

2012년에는 총 171개 과제에 2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이전에 선정되어 연구 중인 109개 계속 과제에 180억원과 신규 과제로 62개 과제를 선정하여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정공모과제는 ‘소화율 향상 및 연하장애 개선을 위한 고령친화 식품 개발’, ‘가공공정 개선에 의한 나트륨 저감화’, ‘회복기 암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개발’, ‘장기 숙성 증류주 개발’ 등 16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39개 연구기관이 응모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15개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유응모과제는 연구기관에서 자유롭게 응모하는 과제로서 339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제품개발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와 기술 수준 향상,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47개 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연구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식품

산업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식품 R&D 정책방향을 주도하고 신시장 창출 및 식품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R&D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식품산업정책과 임영조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8년 2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 식품산업 진흥 부분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농어업의 문제를 식품을 매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푸드시스템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도모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목표이자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서, 식품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2011년에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의 개편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발표 등 농어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차산업인 농어업을 2·3차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광역클러스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농수산물 및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산업화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1년 말까지 총 67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019년까지 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사업단 선정 시부터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즉, 기존 품목별 클러스터사업에서 지역 특화품목을 광역화하고, 식품가공업과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을 2·3차 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사업 개시 전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충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산업은 IT·BT·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공·상 융합형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1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육성전략에 따라 농·공·상 융합형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동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지정완료하고 정책금융 지원 강화, R&D 투자 강화, 마케팅 지원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후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24% 증가하였다.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유형 및 지정현황 〉

- 공동출자형 : 농어업인과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 전략적제휴형 :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 농어업인경영형 :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 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

지정연도	업체 유형별 지정현황			
	전략적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공동출자형	계
2011	92	22	1	115
2012	135	49	1	185
계	227(76%)	71	2	300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7개 사업단 육성을 계기로 지역 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우수 사례를 양산하는 등 사업이 정착 중에 있다. 향후에는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 개시 전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성과 평가, 사업관리 강화 및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지역전략식품산업 우수 사례 〉

- 경북 감 클러스터사업단 : 감 부산물(상품성이 떨어진 감, 껍질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14건)을 통해 국내 유통(상록프라자 등 입점, 홈쇼핑) 및 수출(캐나다, 일본, 대만 등 3억 7천만원 수출)로 소득 증대
- * 사업단 매출 : ('09) 7억 → ('10) 16 → ('11) 42 (500% ↑)
- * 참여기업 매출 : (초년도) 60억 → ('11) 100 (67% ↑)
- * 사업단의 주주는 네이처팜, 청도반시연합회, 상주F&G영농법인 등으로 농어민 지분율이 97.3%

한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 및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융합형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우수 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융합형 중소기업이 농어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전통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황신구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산업의 규모⁹⁾는 약 4조 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식품산업 시장규모(133조원)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효식품의 경우에는 약 3조 1천원으로 전통 발효식품산업 규모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건강잡지 'Health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¹⁰⁾에 발효식품이 3개가 선정된 것에서 알

9) 2010년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중업원수 10인 이상)

10) 세계 5대 건강식품(2006년 11월 미 'Health' 선정) : 김치, 올리브오일(스페인), 요구르트(그리스), 렌즈콩식품(인도), 콩발효식품(일본)

수 있듯이 발효식품은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도 영양학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식의 우수성에 문화를 접목해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국내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농어가 소득향상과도 직결되는 산업이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김치·장류·전통주 등 전통 발효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식품의 소비형태는 기술과 경제여건 개선으로 품질 외에 편의성, 안전성, 건강기능성 등이 중요시되면서 유기식품(organic food),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 등 고부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건강·웰빙식품을 찾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은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통 발효식품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그동안 품질 개선·제품개발 등에 연구투자가 미흡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연구실적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발효기술 응용을 통한 다양한 고부가 전통 발효식품 개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 기반을 산업화·현대화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전통 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 개선·기능 규명·R&D 투자 확대 및 생산 시설 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보·마케팅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7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김치를 세계화하고 김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김치산업 진흥법을 2011년 7월 21일 제정하고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김치 R&D, 브랜드·홍보, 체험·교육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세계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2010년 1월 설립하고, 세계김치연구소 청사를 2012년 10월 완공하였다.

❖ 전통 발효식품의 시설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 확충

전통 발효식품업체 대부분이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생산시설을 신축·증축·증설·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연 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009년 92억원, 2010년 134억원, 2011년 6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전통 발효식품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548억원)되어 지원되었다. 전통 발효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는 제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업체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 명품화 지원

전통 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적인 정보·통계조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해외 장류요리경연대회 개최, 전문지 기획기사 연재, TV 다큐 제작 등을 통해 전통 발효식품의 영양학적·기능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와 함께 전시·체험·시식 행사 및 전통식품업체 소비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전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식품명인의 해외 선진지 연수, 연찬회 및 우수 제품 판촉전 실시, 농협 하나로마트 식품명인 전문 홍보·판매관 설치 등 식품명인 활성화 및 판매·유통망 구축 등 판로 확대도 추진하였다.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

2012년 1월 22일 김치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김치원료 조달의 수급 안정, 김치 안전성 확보, R&D 기반 확보, 수출 확대 및 김치문화 확산을 통한 소비 확대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2012년 12월 마련하였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가공식품 중 김치에 대한 자조금의 법적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고,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에 판로 확대,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자조금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었다. 2012년 자조금은 정부 지원금 5천만원, 김치업계 거출금 5천만원을 합해 총 1억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김치산업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원료 공동구매,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설계하였다.

❖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김치 등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 홍보, 마케팅, 체험 등의 다목적 기능과 관련 연구의 종합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전통식품 산업의 발전과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한 과학적 뒷받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유산균을 활용한 치매 예방, 항바이러스 등 고부가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등의 미래 지향적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할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연구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치 등 전통 발효식품의 전문적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화·세계화를 촉진할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 6월 세계김치연구소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지자체 공모를 거쳐 광주광역시로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입지를 선정하였다. 8월에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세계김치연구소 출범 준비를 거쳐 2010년 1월 1일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세계김치연구소 설립과 함께 청사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10월 준공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전통 발효식품 육성지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기반 현대화 및 품질 개선,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세계김치연구소의 설립은 김치의 세계화·명품화 및 전통적인 미생물 발효산업 현대화를 통해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치산업진흥법이 2012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김치원료의 안정적 공급, 김치의 안전성 확보, 김치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김치의 품질 향상과 세계화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으로 김치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이 점차 체계화될 것이다.

향후에는 세계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우리의 우수한 발효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전통식품 및 식품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품평회·전시회·시음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통 발효식품을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통식품산업의 체험·관광과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등 전통식품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4.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재경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1년 국내 술 시장은 출고가 기준 약 8조원 규모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는 전체 술 시장의 10%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위해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09.8.26. VIP보고)하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0.8.5. 시행)하여 우리 술 산업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진흥기반 조성,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품질 고급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술 품질인증제 확대

2010년 8월 5일 품질인증대상 품목(탁주, 약주, 청주, 과일주) 및 품질인증마크를 고시하였다. 2010년 10월에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품질인증에 대한 세부기준을 고시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로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12년에는 술 품질인증대상 품목에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를 추가하였다. 술 품질인증제는 생산자의 경우 공들여 만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 우리 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 개최

막걸리 등 우리 술의 시장 활성화 및 세계화를 촉진하고자 쌀 수확철과 연계하여 '막걸리의 날'(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 지정)을 지정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전국 규모의 전통주 페스티벌 개최,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 판촉전을 위해 「2012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를 2012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국민축제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우리 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려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자에게는 타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품질 고급화 및 상품성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술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간 산발적, 비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유사행사를 동일 시기, 장소에서 통합·연계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 술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다.

◆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 판촉전 실시

막걸리의 날에 전국의 양조장,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2012년산 햅쌀막걸리를 동시에 출시하는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전이 국내 제조업체, 중간 유통업체, 전국 유명 판매업체의 협조하에 추진되었다. 이는 당해년 햅쌀로 제조한 막걸리로 유통을 차별화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여 국내외 막걸리 붐(Boom)을 이어 나가고 우리 술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 ‘보졸레누보’ 출시 행사와 같은 콘셉트로 ‘막걸리의 날’ 이전에는 당해년 햅쌀막걸리 출시를 자제하고 ‘막걸리의 날’에 맞춰 동시 출시하는 판촉전이였다. 햅쌀막걸리 동시 출시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하고 햅쌀막걸리 표시 태그(Tag), 스티커 및 판매장 홍보포스터 등을 일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개최

‘2012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우리 술 대축제 장소인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우리 술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 브랜드를 선정·육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8개 주종별로 우수 제품 4점씩(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32점을 선발하였다. 각 시도 예비심사를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통하여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 후 입상한 제품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국내 유통업체, 해외바이어, 해외공관 등에 배포하고 국내 각종 행사 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 전통주 홍보 및 판매 행사 추진

막걸리 등 전통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막걸리의 국내외 홍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막걸리 UCC 공모전’을 개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막걸리 등 전통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문판매점을 선정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였고, 전통주 관련 홍보관을 지원하여 전통주 및 막걸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10년 제정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위임하였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술 품질인증제품과 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전통주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생의 신뢰를 쌓으며,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가 기대된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품질인증제도 등을 통해 우리 술 다양화 및 고급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술 산업진흥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 촉진을 위해 전통주 기반 조성 및 품질 고급화, 우리 술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서기관 조규표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림수산물 분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의 농림수산물 생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품산업 분야는 식생활소비 패턴이 외식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규모는 2010년 약 5.1조달러로 IT 시장(3.5조) 및 자동차 시장(1.6조)의 2~3배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인구증가 및 신흥개발국 성장에 따라 2020년에는 6.4조달러로 성장이 예상되고, 이 중 아태지역이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Datamonitor, '11)

한편으로 국내 식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R&D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마케팅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업원 50인 미만인 업체가 약 85%를 차지하고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30~65%(국가과학기술위원회), 매출액 대비 R&D 투자규모는 0.57% 수준으로 선진국(1.6~2.6%)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 약 232만㎡의 부지에 식품기업과 식품연구소 등이 집적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식품연구소, 식품 관련 대학, 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적효과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35억원(국비 1,371, 지방비 622, 민자 3,542)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2만㎡의 부지에 3대 핵심 R&D센터 등 6개 H/W를 구축하고 R&D와 인력양성 등 10대 기업지원 SW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이루어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를 전북 익산(왕궁면 일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 사업시행은 LH 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7.15)

2009년에는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09.11)와 지자체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3대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를 거치고, 2010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1.25)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 산단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중앙·지자체·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식

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의 국내외 식품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담당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11.2)하였으며, 2012년 3월 26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정책실 직속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신설하였다.

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LH 공사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요청(11.12)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2013년 하반기 중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2014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6개 기업지원시설 등에 대한 건축계획을 2013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관 운영을 통해 총 62개 기업체·연구소 등과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5년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 완공 목표에 맞춰 기업지원시설 구축 및 기업투자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세계적 연구소의 유치가 필수적인 바, 투자유치 타깃기업과 연구소를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IT 등이 접목되고 정주·교통여건이 우수한 미래형 식품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 LH 공사,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6. 식생활 교육 추진

■ 소비정책과 사무관 김진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이 증가,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 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 연간 20조원, 처리비용 약 8천억원(2008년)

* 비만 등 성인병 치료비 지급액 : 1조 8천억원(2007년)

이에 2008년 12월 수립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3대 추진전략인 '안전 농식품 공급'의 세부 추진과제로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하였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09.4)되고 공포('09.5)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7-2〉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 내용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식생활 교육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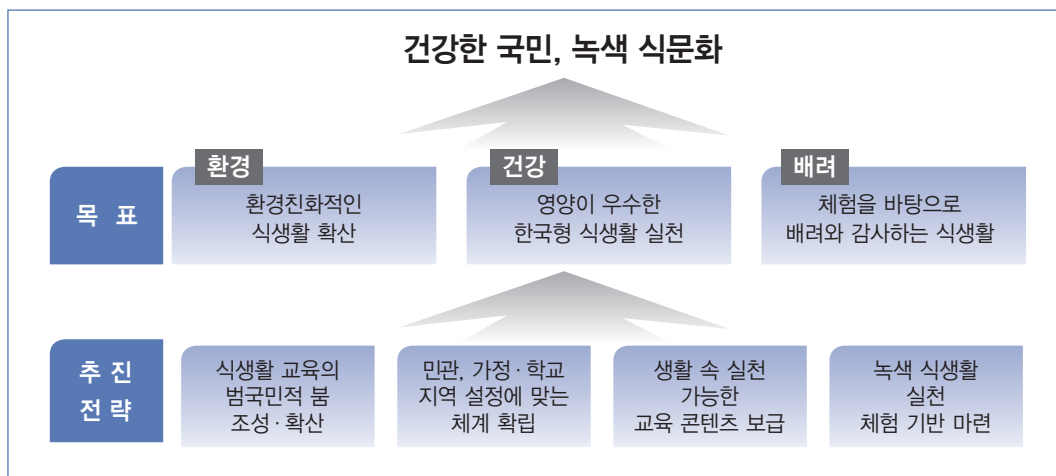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 민간위원 공동)
-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장)

- **식생활 조사·연구**
 -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건립 및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지원, 식생활 교육 참여자(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 제공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10.2)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및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10.4.2) 심의를 거쳐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실천방안, 농어업인과 소비자 교류촉진, 체험활동 활성화, 재원조달 등을 포함하는 ‘5개년(10~14)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10.4)하였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2-7-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목표, 추진전략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올바른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식생활 교육 다큐멘터리(KBS 과학카페 4부작) 및 공익캠페인(지상파·케이블 TV, 라디오 등) 전개, 홍보물(리플릿, 포스터)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가정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문제점 인식 및 개선 의지를 유도하는 등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아 단계 식생활 교재·교구 개발, 초·중·고등학생 교육교재 보급(18만부) 및 가정식생활 수첩(2010년부터 매년 100만권씩 300만권)을 제작·보급하는 등 활용 가능한 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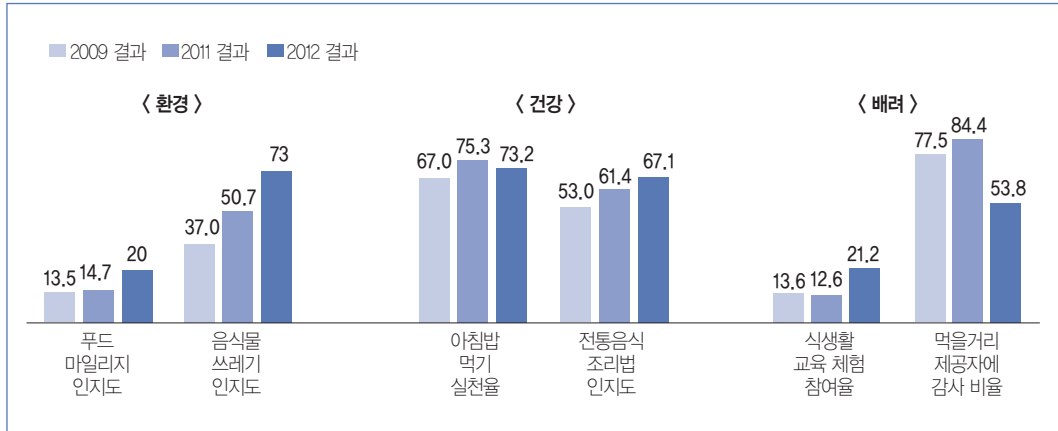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녹색 식생활 및 전통음식 체험을 위해 방과후 교실('10~'12 321개 학교, 78백명)과 농어촌 체험('10~'12 404개 학교, 50천명)을 지원하였으며, 체험 중심의 식생활교육박람회를 매년 개최(2011년 7월, 2012년 6월 2회)하여 38천명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바른 식생활 범국민 체험 확산을 도모하였다. 한편 학교 교사,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체험교육을 실시('11~'12 15백명)하여 식생활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 및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은 농림수산물부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0~'14)’은 ‘환경’, ‘건강’, ‘배려’를 핵심가치로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의 개념을 재정립, 기존 영양적 균형 중심의 식생활 교육에서 환경과 배려까지 고려하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문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녹색 식생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녹색 식생활 인지도 및 실천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녹색 식생활 가치의 범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7-2〉 2012 녹색 식생활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2년 이후에는 교육·체험기회 확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강화, 식생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하여, 지난 2년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민간 주도의 식생활 운동을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바른식생활 실천이 전 연령대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령·계층별 맞춤형 홍보 및 체험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7.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 식량정책과 서기관 전건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정체 혹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비는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쌀 재고량도 적정수준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쌀가공산업 육성을 추진, 쌀 수요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쌀 시장의 안정을 꾀하여, 주식인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쌀 소비 활성화와 관련, 초기에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건강·편의식 소비층 증가에 따라 밥 중심의 쌀 소비에서 고부가 쌀가공제품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시판되고 있는 쌀가공제품 중에서 「우수 쌀가공제품 Top 10」을 선정하여 가공업체의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쌀가공제품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방송, 신문 등 매체 홍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쌀 박물관을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우리 주식인 쌀의 중요성과 쌀 제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쌀가공산업 육성과 관련, 쌀가공업체의 경영개선과 시설개선 자금지원사업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구매자금 등을 용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쌀가공업체의 가공용 원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08년부터 재고미를 중심으로 정부관리 쌀을 할인하여 공급하였다. 한편 쌀가공업체의 정부양곡 의존성을 개선하고 생산제품에 적합한 원료 쌀 공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용 쌀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08년 269천톤에서 2012년 423천톤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쌀 생산량 4,224천톤의 10%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2011년 말 기준 쌀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약 3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1.11)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2년 5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후 쌀산업이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쌀가공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은 이벤트 중심의 단기적인 홍보는 지양하고, 쌀가공제품에 대한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능성 홍보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수출진흥팀 사무관 정미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식품 수출은 FTA 등 글로벌 개방화 환경에서 우리 농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로 유통될 물량을 해외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출로 국내 유통량이 감소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가소득 지지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은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농림업 생산액 증가에도 기여한다. 또한 수출을 통해 국제 수준의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 HACCP, ISO, GAP 등 안전성과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낙후된 국내 농식품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농식품 수출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신선농산물 수출은 휴대폰 수출에 비해 1.9배, 가공식품은 1.8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의 경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휴대폰 수출에 비해 각각 1.3배, 2.5배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2010년 농식품 수출확대지원 정

책의 고용효과는 27,256명으로 분석되었다. 용자사업의 10억원당 생산유발효과는 18.54억~19.08 억원으로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촉진사업 34.87억~ 35.54억원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용자사업 에 비해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촉진사업이 여타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고용 측면에서 도 더 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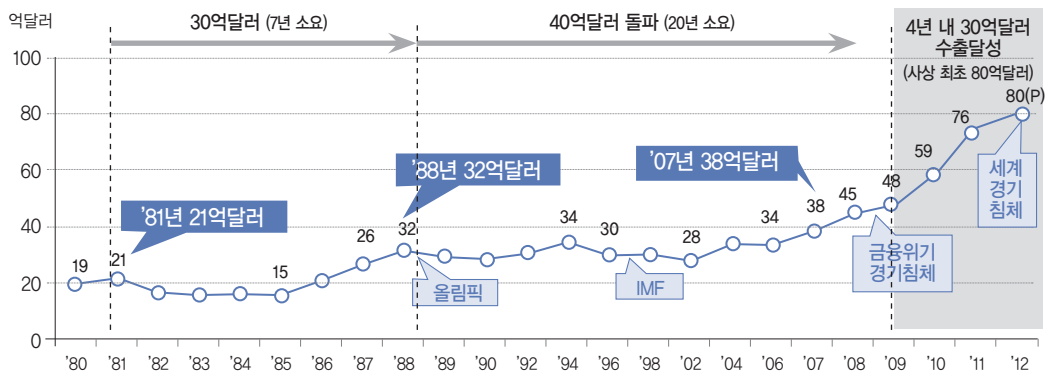
그 밖에도 식문화 전파를 통한 국가 위상 및 품격 제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복, 식량안보 및 환경 유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8,006.1백만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어 국가 전체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가운데 이루어 낸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식품은 2011년 대비 6.3% 증가한 1,079.4백만달러, 가공식품은 4.5% 증가한 4,565.4백만달러, 수산물식품은 2.3% 증가한 2,361.3백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간 1억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비스킷이 추가되어 13품목으로 늘어났 으며, 특히 켈런 · 참치와 김 · 라면은 각각 6억달러와 2억달러를 최초로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림 2-7-3〉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 농식품 수출액 : ('80) 19억달러 ... ('07) 38 → ('08) 45 → ('10) 58.8 → ('11) 77 → ('12) 80

〈표 2-7-3〉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연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A)	2012(B)	증감률(B/A)
농림축산물 합계	2,851.5	3,415.8	3,394.8	3,759.3	4,496.5	4,809.3	5,880.0	7,691.4	8,006.2	4.1
· 신선농림축산물	522.4	608.2	535.5	597.1	675.0	739.3	873.9	1,015.6	1,079.4	6.3
· 가공농림축산물	1,057.3	1,613.3	1,768.9	1,934.7	2,373.2	2,558.8	3,207.9	4,367.4	4,565.4	4.5
· 수 산 식 품	1,271.8	1,194.3	1,090.4	1,227.5	1,448.3	1,511.2	1,798.2	2,308.4	2,361.4	2.3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ASEAN(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EU(15.6%), 미국(10.7%) 등 FTA 체결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해까지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중국(△7.4), 홍콩(△2.7), 대만(△2.8) 등 중화권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미국과 EU의 수출 증가는 FTA 체결로 주력 품목인 김, 라면, 음료 등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ASEAN의 경우는 한류의 영향으로 라면, 음료, 김 등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화권은 주력 품목인 인삼의 재고 증가로 인한 수출 감소가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 5.9%(11개국)를 차지했던 1억달러 이상 수출국가는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등이 추가된 총 14개국으로 전체 수출대상국(194개국) 대비 7.2%로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국 대비 주요국 수출비중은 84.4%로 전년(85.3%) 대비 감소하였으며, 최대 수출국가인 일본의 시장점유율도 전년(30.9%) 대비 1.1% 감소(29.8%)하여 점진적인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2-7-4〉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일 본	중 국	미 국	러시아	홍 콩	대 만	ASEAN	E U
2012년 수출액(백만달러)	2,389.0	1,278.5	664.0	259.0	297.2	253.8	1,192.8	419.6
국 가 별 비 중 (%)	(29.8)	(16.0)	(8.3)	(3.2)	(3.7)	(3.2)	(14.9)	(5.2)
전년 대비 증가율 (%)	0.6	△7.4	10.7	6.7	△2.7	△2.8	15.6	15.6
5년 평균 증가율 (%)	13.5	24.1	10.3	△3.1	14.6	19.2	27.5	14.3

* 1억달러 이상 수출국 :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태국(2007년 8개) +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2012년 14개)

농식품부는 2008년 「12년 농식품 100억불 수출 추진대책」에 따라 농식품 수출을 뒷받침할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수출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2012년에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농식품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가 소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29개 수출 전략품목을 지정하였다.

〈표 2-7-5〉 29개 수출 전략품목

구 분	품 목
신 선 식 품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가 공 식 품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수 산 식 품	해삼, 굴, 김, 전복, 넙치, 참치,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중요하다. 국제박람회 참석은 권역별 대표 박람회 참가와 더불어 유망권역, 벤더 발굴, 미개척시장 등 전략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로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종합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40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 지원 135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판촉행사와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를 개최(2회)해 한국 농식품의 대량수출체계 구축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재외 공관 연계 홍보와 미디어 광고, 소비자체험 마케팅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 품목별로 표준물류비의 1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기본물류비 지원대상을 전략품목 중심의 차등지원(전략품목 10%, 일반품목 8%)으로 개편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단일부류 수출실적 25만달러 이상(기존 20만달러 이상)인 업체로 강화하여 그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DDA 협상 등에 따른 수출물류비 감축에 대비하였다.

인센티브는 지원비율을 표준물류비 범위 내(12%→10%)로 축소하는 대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전체 품목에 대한 수출비중이 5% 미만 국가에 수출 시 지원하던 신시장개척 인센티브를 전략

품목에 대해 기존 주력수출국을 제외한 국가(2개국)로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7%를 지원토록 개선하여 전략품목의 전략시장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다.

수출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등록 지원,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 물류효율화 컨설팅, 수출안전정보 통합 DB 구축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존의 수출보험, 안전지킴이,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 선도유지제사업 등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을 확대하였다.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980년부터 운영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업체와 유망 품목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시자금을 증액(100억원 → 120억원)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체별 배정 최고한도를 200억원 이내로 신설 운영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현재 한국 농식품 수출은 일본, 미국 등 기존 시장에서 신규 시장으로 다변화되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 시장은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거리인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교포 중심 시장) 등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4%(¹²)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등의 위기에 취약하고, 이들 시장에서 한국 업체 간 과당경쟁 발생, 현지 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미국의 현지 시장 진출, 러시아·EU·중동 등 적극적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기존의 신선농산물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가공식품까지 패러다임을 확장하였다. 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상위품목도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출물류비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대상에 식품업체들도 포함시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애로해소팀을 운영하여 관련 업체 및 관계기관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품목 육성을 위해 수출 전략품목 29개를 선정하여 물류비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하는 등 전략품목 집중육성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식품 수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재민 · 정찬민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¹¹⁾ 육성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¹²⁾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9년 4월에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 세계화 5대 전략」¹³⁾을 마련하여 국내외로 나눠 9대 중점과제¹⁴⁾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의 국내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식 세계화 전략 수

11) 한(韓)스타일(HanStyle)이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 음악(국악) 등의 전통문화에 담겨 있는 한국적 양식을 일컫는다.

12) 세계 5대 음식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태국을 일컬으며, 한식은 ethnicfood 중 20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미국 NRA, 2002.)

13) 5대 전략 : ①인프라 구축 ②R&D 확대 ③인력양성 ④기업투자 활성화 ⑤식문화 홍보

14) 9대 중점과제 : (국내) ①법·제도 마련 등 한식 산업기반 구축 ②한식 요리명장 양성 ③스타 한식당 육성 ④한식 체험 기회 확대 (해외) ⑤한식 세계화 R&D 확대 ⑥국산 식재료 공급 활성화 ⑦한식 이미지 제고 ⑧한식 문화 알리기 ⑨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

립을 위해 전문가·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한식 산업화 세계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2009년 4월 7일 한식 세계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범부처적, 민간 참여적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 세계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2010년 3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식재단을 설립하는 등 한식 세계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한식 세계화는 현재 초기 실행 단계로서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 등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2년까지 뉴욕, LA, 동경, 오사카, 상해, 연변, 홍콩, 파리, 런던, 애틀랜타, 시드니, 오클랜드 등 해외 주요 도시에 12개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결성하고, 한식 홍보행사, 종사자 교육, 한식당 맛지도 제작, 홈페이지 구축, 메뉴판 교체 및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였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 여러 국제행사 시 한식 오·만찬 제공, 한식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으며, 한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그 결과를 한식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시험 연구를 수행하였고,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홍보를 통한 한식의 이미지 개선 및 한식 저변 확대를 위해 유럽, 일본, 미국 등지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에 ‘한식 스태프 양성과정’(3개소 61명), ‘향토음식 전문가과정’(2개소 41명) 및 ‘북한음식 전문가과정’(1개소 36명) 등 단기 심화과정을 운영하였고, 학교교육시스템을 활용한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4개교와 고교 1개교를 ‘한식조리 특성화학교’로 지정하였으며, 해외 한식당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13개 도시, 2,094명)도 실시하였다.


지속적 성장 추세인 국내 외식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식산업진흥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6개월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외식산업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식산업진흥을 위한 육성시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부의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 활동에 맞추어 언론 등에서도 한식 세계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한식 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11월 국내 여론조사 결과 국민 92%가 한식 세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80%가 실현 가능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국민적 관심을 얻었다. 외국인들의 한식 선호도 역시 가시적으로 상승하였다.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한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 9%였던 한식 선호도가 2011년 41%, 2012년에는 55%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최고 미식축제인 '마드리드 퓨전 2012'에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주빈국 행사를 주관하는 등 한식의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었다. 아시아 지역 특급호텔 레스토랑 중 홍콩 하버 그랜드호텔('11.1), 베이징 르네상스 호텔('11.9), 상해 메리어트 호텔('11.10), 홍콩 샹그릴라·카오룽 호텔('12.1)에는 한식이 고정메뉴로 입점되었고, 해외에서 미술랭 스타 한식당 5개소(미국 2개소, 일본 3개소)가 한식당 사상 최초로 탄생하는 등 한식이 '파인다이닝'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한식의 세계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내 한식 기업의 해외진출 및 농식품 수출도 증가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한식 기업의 경우 2008년 27개 업체 109개 점포에서 2010년 10월 기준 30개 업체 172개 점포로, 2011년 37개 업체 210개 점포로, 2012년 41개 업체 234개 점포로 증가하였다. 농식품 수출액도 2008년 45억달러에서 2010년 59억달러, 2011년 77억달러, 2012년 8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유망 시장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세부시장별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여 성과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도시별 주기적 시장 분석 및 한식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고, 현지 사업체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 요구도가 높은 내용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상품성 제고, 기업 애로기술 등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벤트성 홍보보다는 핵심 지역 위주의 전략홍보를 추진하여 한식 세계화의 기반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한식 세계화사업 추진기관이 3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초래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민간이 가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도 한식재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의 한식 세계화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전략 및 추진방식 등 한식 세계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3년은 외식산업진흥법과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근거로 다양한 외식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력, 정보·통계 측면의 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외식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경영주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 외식업경기지수, 국내 외식 트렌드,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등 정보·통계 제공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교육, 경영 개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외식업 지구'를 육성하여 많은 외식업 지구의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수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강도를 낮추고 우리 농식품의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외식업체에 우수 식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외식 식재료 전문몰'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 농촌정책과 사무관 신지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고령화, 과소화되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04.12)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으로 복지·교육·생활인프라 등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여전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여건의 개선이 미흡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였다.

〈표 2-8-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

구 분	도 시	농 어 촌
약국 비율('11)	91%(19,189개소, 시지역)	9.0%(1,890, 군지역)
보육시설 설치 비율('12)	80.1%(34,050개소)	19.9%(8,477개소)
상수도 보급률('11)	99.0%(도시지역)	58.8%(면지역)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의 최소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0~'14) 기본계획 수립('09.12)으로 제도의 도입·운용 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10.7)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11.1)을 거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2-8-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부 문	항 목	세 부 내 용
주 거 (5)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공동 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 통 (3)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부 문	항 목	세 부 내 용
교육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3)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 (5)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5)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3)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통신 (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8개 분야(①주거 ②교통 ③교육 ④보건의료 ⑤복지 ⑥응급 ⑦문화여가 ⑧정보통신) 31개 항목을 44개 세부기준으로 나누고 51개 지표로 통계 DB를 구축하여, 농어촌 139개 시·군 단위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12.8)하였다.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항목별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하수도 보급률, 경찰서비스, 읍·면내 의약품 구입, 구급차 30분 내 도착 등에서 달성비율이 높았고, 마을별 월 1회 순회방문, 방범용 CCTV 설치, 인도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의 항목은 달성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북부·남부, 충청 북부, 광역시 인근은 달성 정도가 높으나, 백두대간 지역인 강원, 경북, 경남은 상대적으로 달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군과 도농통합시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부문에서 도농통합시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문화, 응급, 복지, 보건의료, 교육 부문은 군과 도농통합시 간의 서비스기준 이행 정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본격적 시행(11.1)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기준과 정책수요 증가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농어촌지역의 치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 부문, '경찰 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대해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개최(12.10)하여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12.12)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12.12)한 서비스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세부 내용 및 목표치」 고시를 개정하여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따라 9개 분야 32개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공공서비스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 농어촌영향평가 운용

농촌정책과 사무관 신지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 도시와 같은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계절제 근무, 경제활동인력의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 농어촌 여건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어촌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면서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결정(09.12)되었고, 이후 농어촌영향평가로 제도명을 변경하여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위한 마련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11.7).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어촌영향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자체평가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대상 정책을 선정·평가하는 것으로 9개 부처 및 9개 도에서 소관 정책에 대해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농어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전문평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인 평생교육진흥정책(교육과학기술부)과 응급의료정책(보건복지부)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KREI, '12.12)하였다. 평생학습정책은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공공·민간 자원의 부족, 농어촌 평생학습대상의 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집중 분석하였으며,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참

여 확대를 위해 ①농어촌에 적합한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②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 실시 ③대상자별 특성화된 평생교육사업 실시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응급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와 소수의 정책 수혜자, 응급의료기관의 영세성 등의 관점에서 집중 분석하였으며,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①지역주민의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일차 반응자 역할 강화 ②구급차 업그레이드, 응급구조사 1급 및 간호사 구급차 동승 등 전문응급서비스 강화 ③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료진과의 연계 ④농어촌 인 지적 관점에서의 자료 확보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어촌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립·추진 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품질 향상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영향평가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도농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에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3. 농어촌 재능기부 활성화

▮ 농어촌정책과 사무관 이정석

◆ 추진 배경 및 개요

도시 중심의 산업화로 인한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어촌 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 중인 1975년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1천 791만명으로 총인구의 53.3%를 차지했으나, 1990년에는 1천 110만명으로 총인구의 27.1%로 낮아졌고, 2010년엔 약 876만명으로 총인구의 18.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5.6%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에는 3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의 다양한 재능

기부를 실시해 농어촌 공동체의 활력 창출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8월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를 구축하고 농어촌 재능기부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어촌 재능기부는 ‘스마일재능뱅크’를 기반으로 재능기부자와 재능이 필요한 농어촌마을을 자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능기부 콜센터(1577-7820)를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재능기부자와 농어촌마을 간 재능기부를 연결해 주는 등,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직능·사회봉사단체와 기업, 대학생 동아리를 대상으로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역량을 농어촌 재능기부로 연계시켜 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39개 단체와 기업체, 대학교 동아리를 재능기부 공모사업자로 선정하여 230개 마을에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표 2-8-3 참조) 재능기부 분야는 장수사진 촬영과 이·미용 봉사부터, 마을 소독·방역, 벽화 그리기, 한방진료, SNS 교육, 농작물 재배지도, 마을 사업 아이템 발굴 등 다양하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에 큰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2011년부터 각종 시상을 통해 격려해 오고 있다.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대상에서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인 윤충열 원광대 교수 등 개인 14명과 서울아산병원 등 4개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2012년도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 수기공모전에는 개인 부문 91편과 단체 부문 44편이 출품되어 이 중 개인과 단체를 각각 10점씩 선정하여 수상하기도 하였다.

〈표 2-8-3〉 2012년 농어촌 재능기부 공모사업 추진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참여 기관·단체	재능분야	참여 연인원	수혜마을
	개	개	명	개
계	39	145	5,112	230
직능·사회봉사단체	22	87	2,959	177
대학교(동아리 포함)	12	48	2,031	23
기업체	5	10	122	30

주: 재능 분야란 농어촌 재능기부 분야를 지역개발, 농림어업, 복지·교육·문화, 경영·마케팅의 4가지로 대별하고 이에 따른 70여개 소분야(예: 의료, 장수사진, 집수리, 홈페이지 제작 등)에서 각 기관·단체별로 수행되는 분야를 합산한 숫자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일재능뱅크 구축 이후 17개월 만인 2012년 말 현재 농어촌 재능기부 신청자는 3만 879명이 고, 재능을 요청한 마을은 1,259개 마을에 달한다. 이 중 1,072개 마을에 대해 집 고쳐 주기, 의료봉사, 방과후 수업, 장수사진 찍어 주기,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이 이루어졌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어촌 재능기부는 농어촌에 부족한 전문인력 및 열악한 복지·문화 분야에 대해 민간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즉 사회간접자본을 동원하여 농어촌마을 발전과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재능기부를 통해 도시민이 귀농·귀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농어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 저명인사가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봉사단체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재능기부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농어촌 재능기부 캠페인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성병화

◆ 추진 배경 및 개요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다. 또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 감

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율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주민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표 2-8-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 지 원 율	18%	28%	28%	28%	28%	28%	28%	28%
월 평 균 지 원 세 대	603천세대	521천세대	504천세대	484천세대	457천세대	435천세대	413천세대	402천세대
지 원 예 산 (전년대비 증감)	666억 (95.8% ↑)	1,339억 (68.4% ↑)	1,431억 (6.9% ↑)	1,559억 (8.9% ↑)	1,559억 (-)	1,626억 (4.3% ↑)	1,718억 (5.7% ↑)	1,676억 (2.4%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 연금보험료 지원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2012년 현재 월평균 266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내실화하였다.

〈표 2-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1995.7~ 2002.12	2003.1~ 2004.6	2004.7~ 2005.12	2006	2007	2008	2009	2010~2012
기 준 등 급 (기준소득 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440천원)	13등급 (480천원)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730천원	790천원
지 원 금 액 (월 / 원)	2,200~ 4,400	4,400~ 7,700	8,8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2-8-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93	271	399	502	605	673	731	793	888	940	984	924

❖ 평가 및 향후 계획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는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한편,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성병화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UR 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림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1994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용자를 위해 정부는 매년 용자 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용자한다. 상환은 졸업 후 2년 후부터(2011년부터 거치기간 연장 1년→2년) 1학기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직전 학기의 성적을 반영하여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정부가 355억원을 출연하여 33,693명을 대상으로 925억원(상환금 채용자액 포함)을 지원하였다.

〈표 2-8-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 분	출연금	용자현황	
		인원수	금액(재용자액 포함)
'94	8,000	1,724	1,712
'95	22,000	19,177	19,089
'96	20,000	19,301	19,252
'97	12,400	19,936	19,849
'98	15,100	19,563	19,396
'99	17,300	20,123	19,579
'00	30,550	20,650	20,476
'01	18,000	18,017	25,023
'02	15,000	15,911	23,764
'03	4,000	19,649	36,698
'04	2,100	26,424	60,652
'05	12,733	25,206	63,702
'06	48,288	24,964	67,664
'07	44,097	26,333	76,942
'08	41,260	26,721	83,843
'09	47,500	28,962	92,916
'10	50,521	31,093	101,216
'11	60,482	33,273	110,295
'12	35,507	33,693	92,496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업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6.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강봉규

❖ 추진 배경 및 개요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층의 농어업인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어촌 고령화로 사고 및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어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영농·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들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마을회관 등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6개소(2개소는 이동식 놀이교실)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우수한 보육교사들을 유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1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2년에는 약 43천명의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는 농어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52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69세, 5ha 미만, 2009년은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0년에는 5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함으로써 조건을 완화하였고, 2012년도에는 15천 농가에 63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고령가구,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10천 농가에 8억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2-8-8〉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단위: 천호, 백만원)

연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2008	28	5,792	13	4,732	16	1,060
2009	31	5,992	12	4,732	19	1,260
2010	33	6,520	13	5,460	20	1,060
2011	28	6,520	14	5,460	14	1,060
2012	25	6,300	15	5,460	10	840

◆ 평가 및 향후 계획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보육 수요는 있으나 적정수의 아동 확보가 어려워 민간의 보육시설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원 내용을 개선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 농어촌공동아이 돌봄센터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별근무수당도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 지원단가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 확대

▮ 재해보험팀 사무관 김신재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할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인의 사고와 질병은 농가의 생활불안정 및 빈곤층 전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신체사고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지원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1996년부터 도입하였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보상수준 확대 및 상품 개선

2012년에는 농업인안전보험 사망 시 보상수준을 최고 80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주요 상품 개선 사항으로는 일(열)사병 사망 기본계약을 신설하고,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유사한 장제비 지원 특약을 운용하여 농작업 재해 이외에 일반 사망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전의 개별약정 계약방식에서 2009년부터는 개별 및 단체계약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단체일괄 가입 시 일선영업점 및 농업인 모두에게 물적·시간적 비용 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게 하였다.

❖ 사업 홍보 강화 및 국고 지원 확대 등으로 보험가입 농업인 증가

농민신문 및 지역 언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농협의 조합원 총회 등 행사 중에 보험 상품을 적극 알려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국고 지원은 2011년 360억원에서 0.5% 하락한 358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가입률은 2011년 53.7%에서 0.5% 상승한 54.2%로 나타났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인안전보험은 1996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이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까지 4,017억원의 장해·사망 보험금 및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재해농업인 또는 유족의 생계비 일정부분을 보전하고, 농작업 재해사고 이후 농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농업인을 보호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8-9〉 농업인 안전보험 추진실적

(단위: 천건, 억원)

구분	합계	2005 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량 (계약건수)	12,037	6,658	658	742	764	791	804	817	803
지급보험금	4,017	1,345	201	284	367	403	497	446	4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생명보험(주)

한편 농업인은 재해·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0~'14)'에 따라 2014년까지 안전보험 보상수준을 100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수준 상향 등으로 가입률을 60% 수준으로 높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8. 농지연금 활성화

■ 농지와 사무관 이창학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지연금제도 도입이 결정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08.12.29)을 통해 농지연금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였다.

* 65세 이상 농촌인구비중 : ('90) 11.6% → ('00) 21.7 → ('10) 31.8(전국 11.3%)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며 소유농지 총면적이 30,000㎡ 이하인 농업인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1년 1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이 본격 시행되었다. 2년 동안 농지연금에 2,202건이 가입하여, 매월 평균 81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25억원의 연금이 지급되었다.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6%를 차지했다.

〈표 2-8-10〉 농지연금 추진실적

가입 인원(건)	평균 연령(세)	평균 월연금액(만원)	담보농지	
			평균면적(㎡)	평균가격(백만원)
2,202	74	81	4,380	13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2012년 농지연금 가입(누계) 목표가 2,089건이었으나, 지속적 홍보 등으로 2,202건이 가입하여 5.4%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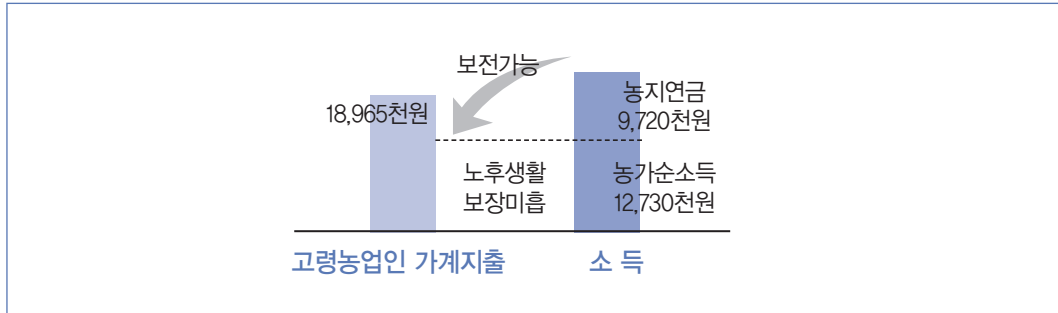
◆ 농지연금 가입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 면제
-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 공제

*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간 14만원 감면 혜택받음

그리고 연금 지급을 통하여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부족자금(가계지출·농가순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8-1〉



* 고령농가 가계지출 18.9백만원(11년 70세 이상), 농가순소득 12.7백만원, 연간 연금지급 9.7백만원

정부는 금년 농지연금의 인지도 제고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신문, 방송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현장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이장회의를 활용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방문을 통한 고객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2012년 11월 농지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입만족도는 69%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추천 의향 역시 67%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높은 호응을 도출하였다. 2013년에는 3,094건을 대상으로 237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고령농업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설·추석 명절 집중홍보,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도록 담보농지 평가방법(감정평가 도입)·가입비 현황·채무액에 부과하는 이자율 인하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1. 농어촌 종합개발

▣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기환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위한 신(新)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정책방향

-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추진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신(新)지역발전정책 주요내용

[기본방향]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추진전략]

- 기초생활권 개발 : 마을 단위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광역경제권 추진 : 5+2광역경제권 설정
- 초광역권 개발 : 대외 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

초광역권은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내륙벨트 등 5개 권역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은 16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광역권으로 개발하게 되며,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기초생활권은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금으로 지원)은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28개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접경도서지역 15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표 2-8-1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구 분	해당 시·군
경 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합천군, 창원시(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첫째, 소도읍 육성을 포함하는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어촌종합개발을 포함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셋째, 전원마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 넷째,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 기계화정작로, 지표수보강, 소규모용수, 개발촉진지구,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신활력지역을 포함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내용 측면으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표 2-8-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

구 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역량 강화 지원가능 *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경관 개선으로 분류 * 소득사업은 지양 ○ 지원조건(4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2013년부터 면 단위는 70억원 	〈통합된 사업〉 · 소도읍 육성사업 ·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중심 - 지역소득 증대 지원가능 ○ 지원조건(5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 * 2013년부터는 25~50억원 	〈통합된 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산촌생태마을 조성 ·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신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 	〈통합된 사업〉 · 전원마을조성사업
	기존마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원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 시 지방비 부담) 	〈통합된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비(음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 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어촌체험시설,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 농색농촌체험마을사업 · 어촌체험마을사업 · 살기좋은도시 만들기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의 농업생산 지원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마을공동소득창출 및 문화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소득 창출, 마을공동문화 조성 ○ 지원조건(2년, 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 소득창출 5억원, 문화조성 2억원 	〈통합된 사업〉 · 없음 * 2013년부터 신규시범사업

〈표 2-8-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 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 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 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시군의 사업지원 경비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 증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 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2012년에는 120개 시·군, 1,114개 내역사업에 9,304억원을 지원하여 32,622명의 신규유입효과를 얻는 등 성과가 있었다.

〈표 2-8-14〉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	2012
계	931,198	930,447
세종	-	2,559
경기	44,751	38,506
강원	53,428	67,551
충북	83,090	76,583
충남	119,739	114,485
전북	114,211	112,492
전남	196,664	204,380
경북	115,397	160,130
경남	142,820	133,415
제주	21,098	20,34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예산설명서

◆ 평가 및 향후 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 대상 선정 및 투자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마을개발사업의 통합적 지원과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지구에 있어 지역의 역량에 비해 과도한 사업비가 투자되거나, 상향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 지구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신규 사업성 검토 시 지역역량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지역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인성학교’를 도입해 사업 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GIS를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과거 지역개발사업의 DB를 구축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추진되는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지역개발과 서기관 이재식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등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조정예 의해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에는 총 8,000동(사업비 4,000억원)의 농어촌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용자 지원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용자하였다.

〈표 2-8-1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1	2012
지원 물량 (세대)	6,000	7,000	8,000	8,000
세대당 용자한도액	40	40	50	50
용자재원	240,000	280,000	400,000	400,000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8종을 개발·보급하였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잠재적인 수요현황을 검토하여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안전까지 고려한 농어촌 생활형 주택으로 개발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여건 및 농어촌경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물량 중 30%를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에게 특별 배정할 계획하고,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거문화 정착 및 농어촌 미래주택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3. 농어촌 뉴타운 조성

지역개발과 서기관 박종훈

◆ 추진 배경 및 개요

현재 우리 농어촌 산업은 승계농업인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젊은이들의 전입이 없으면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 농업 중심의 농어촌사회가 해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창업후계농 육성을 추진 중이나 지역연고와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정착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또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자는 많으나 경제적 여건, 친교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아 도시거주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연두업무계획 보고 시 농어업 인력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의 젊은 인력 등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양성할 수 있도록 주거·자녀교육·맞춤형 영농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실무 작업단을 구성, 내부 토론회, 지자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기본방침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5개소를 조성키로 하였다. 2008년 10월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1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현지실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09년 1월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세부설계 및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대상은 기숙형 고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의료·문화·복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개소당 75~200세대 규모의 전원형 단독주택 또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형태로 분양 또는 임대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조건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농가소득 15백만원)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이 예상되는 25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 귀농인 등이다.

〈표 2-8-16〉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규모

(단위: 세대)

구 분	계	충북 단양	전북 장수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전남 화순
사업규모	650	75	75	100	200	200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5개 지구 650세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지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의하여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공동주차장 등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설에 대해 국고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한다.

〈표 2-8-17〉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국고 보조율

(단위: %)

구 분	계	보 조		국고용자
		국비	지방비	
마을기반시설	100	70	30	-
임대주택	100	40	-	60
분양주택	100	-	-	100

* 표준사업비 한도 내 지원

2010년까지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입주자 모집·선정 및 주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농어촌 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20,817백만원의 보조금 및 융자 예산을 투입하여 5개 지구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완료 및 단양·장성 2개 지구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2011년에는 22,220백만원, 2012년에는 2,322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중 3지구(고창, 화순, 장성)는 입주하였고, 2지구(단양, 장수)는 마무리 공사 중으로 2013년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국민소득 증대 및 농어촌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웰빙 추구로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 전체 인구의 15.2%)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귀농·귀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의 귀농 정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 과밀화 및 실업 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어촌 뉴타운 53개소 조성 시 약 6,300세대 20천 명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위주의 고령·영세 농어업인 중심의 농촌인력구조는 2·3차산업 융복합화를 이룰 수 있는 젊은 농업경영주로의 세대교체가 가능해진다.

향후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한 후 지자체, 지역개발 전문가, 귀농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 추진 여부 및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4.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

▮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많은 재원을 농촌지역에 투입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리더, 전문가, 시군 담당 공무원 등 일부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도농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촌마을을 마을마다 특색이 살아 있는 색깔 있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자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이 추진되게 되었으며, 그 내용 중 하나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이다.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은 마을 발전을 주도할 마을리더, 현장활동가 등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주민 주도 마을발전 계획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도시민의 재능기부 및 공동체회사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 고령자 확대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색깔 있는 마을 육성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란 주민 주도로 유·무형의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 마을을 정비하여 농촌마을을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거주·체험·여가·치유의 공간으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계획화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인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마을의 특성에 맞는 현장포럼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농촌 현장활동가를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색깔 있는 마을 육성 등 농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는 정보교류,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농촌현장포럼 등을 지원하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색깔 있는 마을을 핵심자원에 따라 생활기반형, 농업형, 유통·가공형, 도농교류형, 생활만족형 5가지 형태의 유형 및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선도 단계 4가지 발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2년 말 현재 3,010개의 색깔 있는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까지 5,000개의 마을을 발굴·육성한 후 전체 농촌마을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표 2-8-18〉 2012년 색깔 있는 마을 선정 현황

(단위: 개)

계	세종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010	1	5	13	8	7	3	27	30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5	233	368	334	491	497	427	30

◆ 농촌현장포럼 추진

농촌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마을의 발전계획이나 마을에서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참여형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더욱 확산할 예정이다.

◆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 및 관리

농촌 현장활동가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서, 마을 만들기 업무 관련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장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까지 600여명의 현장활동가를 육성하였고, 2013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고급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현장 밀착형 전문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색깔 있는 마을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별로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구축한 중간지원조직이며, 정보교류,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농촌현장포럼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2012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모델 연구와 더불어 강원대, 공주대 2개소를 시범운영하여 모델을 정립하였다. 2013년에는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7년까지 5,000개의 색깔 있는 마을을 육성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전체 농촌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선정된 색깔 있는 마을을 발전 단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마을별 맞춤형 육성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농촌현장포럼 추진, 현장활동가 교육 같은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단위의 지원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 농촌산업과 사무관 송현주·유재중

◆ 추진 배경 및 개요

생활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 주 5일 수업 시행,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체험·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 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 중심의 체험관

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농어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 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어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다.

◆ 추진 성과

도시방문객들이 농어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어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 분야 조성을 지원(마을당 3억원)하였다. 2012년까지 656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614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교육생 역량수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1개 교육과정에 4,012명을 교육하였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관리, 도시민 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12년에는 352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자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에 49개 마을(2011년 61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농어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심(일산 KINTEX)에서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 83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정주정보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은 도시와 농어촌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어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하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12년에는 9,627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어촌 일손돕기 등 739억원의 교류성적을 창출하였다.

다양한 농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어촌소득 증대 등 농어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1사1촌 운동 확산 등으로 농어촌체험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가소득 증대 등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어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어촌체험관광 등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어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사업 등급제를 2013년에 도입하여 100개소를 시범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계속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 마을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13년 4,230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농어촌마을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자문 지원시스템을 개선한 종합컨설팅 자문 및 세무자문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다.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 운동,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어촌생활·체험기 공모,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6. 향토자원 발굴 등 6차산업화 추진

농촌산업과 사무관 방도혁·이훈구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회계개편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사업 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

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13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과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당 3년 이내에 총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매년 30개소씩을 신규로 착수, 개소당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H/W 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8-19〉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사업량(개소)	139	19	30	30	30	30	30	* 목표: 2013까지 200
예산(억원)	1,607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438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선정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는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2,356억원, 2011년 2,435억원, 2012년 2031억원의 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

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향토식품·특산물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H/W 분야와 S/W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8-2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실적

구분 연도	계	농수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농수산물제조· 가공지원	체험· 전시지원	농어촌체험· 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지원
2010	2,356억원	1,035	396	10	392	523
2011	2,435	848	501	13	547	526
2012	2,031	557	545	38	429	462

◆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3년까지 200개의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0개소씩 신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 수립 단계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 종전의 13개 개별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아직 기존 사업의 물리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사업대상을 성격에 따라 ①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②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④체험·전시 지원 ⑤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⑥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6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내용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단편적, 1회성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구조를 보다 고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이 6차산업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개편안을 마련하고, 향토음식·힐링·이벤트·문화 등으로 외연

을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자원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지역별 6차산업화 우수 사례 성공요인을 분석한 사례집 발간 및 6차산업 종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7.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촌산업과 사무관 이훈구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공단지 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2-8-21〉 부처별 지원 현황

부 처 명	지원내용	관련법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 토 교 통 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 경 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정 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

화 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신규 사업 14개소, 계속사업 27개소, 개·보수 69개소 등 110개소에 462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2년 말 444개소를 지정하여 376개소를 조성(완공)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2년 말 6,20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475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39천여명, 생산액 48조 9,591억원(업체 평균 89.46억원), 연간 수출액 116억 20백만달러(업체평균 212만달러) 등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 목표도 조만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가 신규단지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노후단지의 기능 향상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신규 조성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에 한하여 신규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2017년까지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개발보다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하고, 지역특화단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8.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이행은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IT, BT, NT 등 기술 간 융합뿐 아니라 타 산업과 IT산업의 융합, 사회 인프라에 IT 접목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복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도 ICT융복합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도농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부는 농림축산종합정보망(Okdab.com)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농업 지식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화 소외 계층인 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정보화교육 및 지식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ICT융복합 활성화로 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산업 분야 ICT융복합은 농식품 분야의 생산·유통·소비 등 가치사슬(value-chain)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산업에 적용 가능한 USN, RFID, LED 등을 이용한 ICT융합 기술개발 R&D가 추진되었고, 시범사업을 통한 요소 기술의 검증으로 분야별 기술의 꾸준한 진전이 이루어져 현장 확산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부는 2010년부터 농식품 ICT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8-22〉 ICT융복합 사업유형별 주요 내용과 사례

유형	주요 내용	사례 및 적용 기술
생 산 정 밀	 시설원에 환경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싱기반 시설물 제어 및 성장환경 관리 * 환경센서 : 온·습도, CO2, pH, LED, IR * 시설센서 : 정전센서, 창문, 차양, 송풍기 · 센싱기반 시설물 제어 및 성장환경 관리 * 환경센서 : 온·습도, CO2, pH, LED, IR * 시설센서 : 정전센서, 창문, 차양, 송풍기
	 지능형 축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싱기반 축사환경 제어 및 사양·질병관리 * 환경 및 시설센서 : 온·습도, 암모니아, CCTV 등 * Web 기반 cloud 서비스 · 센싱기반 축사환경 제어 및 사양·질병관리 * 환경 및 시설센서 : 온·습도, 암모니아, CCTV 등 * Web 기반 cloud 서비스
유 통 지 능	 산지유통센터 ERP/S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센터 경영 및 생산·가공·유통관리 * ERP(입고-선별-가공-포장-저장-출하), SCM(수발주), RFID, PDA · 유통센터 경영 및 생산·가공·유통관리 * ERP(입고-선별-가공-포장-저장-출하), SCM(수발주), RFID, PDA
소 비 안 전	 이력추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유통량 파악 · 생산/가공/유통 이력정보 수집 * RFID기반 이력추적관리(Farm2Table) ·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유통량 파악 · 생산/가공/유통 이력정보 수집 * RFID기반 이력추적관리(Farm2Table)

그 성과로는 우선 시설하우스 및 양돈장을 중심으로 ICT융복합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최적 생장 및 사육환경이 조성되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의 효과를 가져온 것을 들 수 있다. 경남의 파프리카, 전남의 딸기 등 품목을 대상으로 온습도·CO2 등의 센싱과 모니터링, 측창·양액·관수의 원격제어, 축적DB 활용을 통한 최적의 생산환경 시스템 구축 및 활용으로 노동력 20% 절감과 생산성 30% 향상을 가져왔다. 전북 장수의 양돈 사양관리의 경우는 온습도·CO2 등의 센싱과 모니터링, 급이기·음수의 자동제어, 생산·출하·이력의 경영관리를 통해 17%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이력관리를 통한 소비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하였다. 전북 완주의 로컬푸드 경우 로컬푸드 및 꾸러미 생산·유통·판매관리 정보시스템 구축·활용으로 20%의 관리비 절감을 가져왔다. 경남 거창에서는 친환경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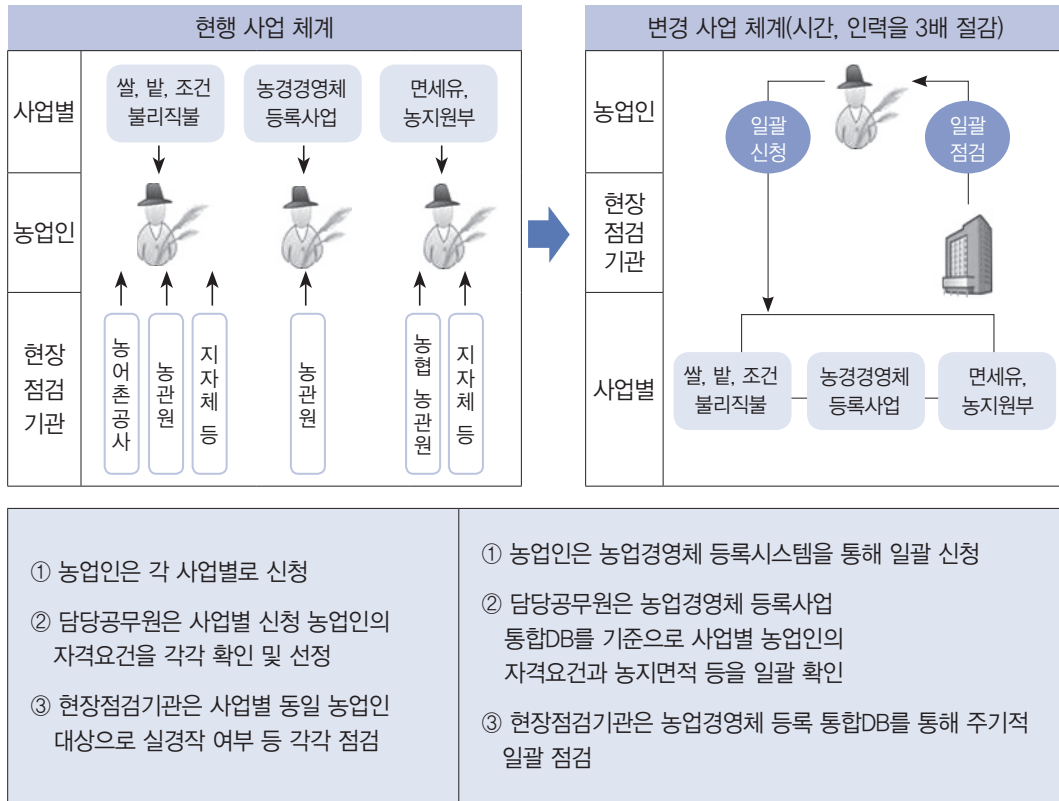
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로 인건비 20% 감소 및 소득 20% 향상의 효과를 보였다.

❖ 농림축산식품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맞춤형 농정 구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도입된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친 도 상연습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영체 등록 제도와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는 등 농림축산식품 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은 농업경영체와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정보를 정비하여 통합DB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농림축산사업의 대상자 자격확인, 사후검증 등 사업관리 에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보조·융자금 전달체계를 개선하 여 중복·편중지원을 차단하고, 각종 보조·융자사업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경영체별 수혜 가능한 사업 및 자격여부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그림 2-8-2〉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향




◆ 농업정보이용활성화로 정보격차 완화

2012년도 농업인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은 64.8%로 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201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정보서비스, 지식서비스 및 경영정보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부에서는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 단계별 정보 제공, 품목별 커뮤니티 활성화 등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보화교육 등 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의 측면에서는 농식품 지식기부 등으로 TED형 교육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선도 농업인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체 정보화의 측면에서는 농가경영장부의 보급 확대 및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S/W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지속적인 농업·농촌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CT융복합의 R&D 및 실증 단계에서 나아가 확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농식품 ICT융복합 산업의 선순환 구조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과홍보 및 확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 통합관리망은 2013년 시범적으로 통합DB를 구축·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16년까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통합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은 종합정보 서비스 환경 구축 및 핵심 콘텐츠 육성으로 농식품 정보서비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최신 ICT동향 등 기술 습득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로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과거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 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국고 2조 4,871억원을 투입하여 122,9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하였다.

〈표 2-8-23〉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2년까지		2013년 계획		2014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 (천 ha)	169.6	122.9	72.5	2.2	73.8	44.5
사업비(억원, 국고)	37,632	24,781	65.9	631	67.5	12,2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 평가 및 향후 계획

그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2. 밭 기반 정비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며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국고 1조 8,116억원을 투입하여 97.5천ha를 착수하였다.

〈표 2-8-24〉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2년까지		2013년 계획		2014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 (천 ha)	110	97.5	88.6	3.7	92.0	8.8
사업비(억원, 국고)	20,563	18,116	88.1	692	91.5	1,75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 평가 및 향후 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과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 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

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 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자율편성)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2년까지 국고 2조 263억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 km 중 24.6천km를 완료하였다.

〈표 2-8-2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2년까지		2013년 계획		2014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 (천 ha)	35	24.6	70.3	0.9	72.9	9.5
사업비(억원, 국고)	29,689	20,263	68.3	739	70.9	8,68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 평가 및 향후 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추진하며, 농업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간척지농업과 사무관 김현수, 농업기반과 사무관 조래청

❖ 추진 배경 및 개요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르며,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국고 3조 9,687억원을 투입하여 157.7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및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가된 강우량 등이 반영된 배수개선 설계 기준을 개정 및 시행(12.4)하여 선제적 방제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2-8-2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2년까지		2013년 계획		2014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232.5	157.7	67.8	3.2	69.2	71.6
사업비(억원, 국고)	75,610	39,687	52.5	3,000	56.5	32,92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재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등 2,869지구(국가관리 241지구, 지방관리 2,628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총 1,608지구(국가 174, 지방 1,434)를 완료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기후변화와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우 패턴 분석과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을 조사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배수개선사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여 96개(신규 24개 지구 포함) 지구의 사업을 시행하고, 방조제개보수사업에 560억원을 지원하여 120개(신규 36개 지구 포함)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5. 수리시설 개보수

■ 농업기반과 사무관 조래청

◆ 추진 배경 및 개요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 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용수누수가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2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계	69,568	17,505	7,614	18,114	2,713	23,622
30년 이상	40,165	16,632	2,971	14,975	2,413	3,174
30년 미만	29,403	873	4,643	3,139	300	20,44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12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3,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390지구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96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0.4천km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2-8-28〉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원, 지구)

구 분	총계획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이후	
사업비	149,323	55,571	3,700	90,052	
사업량	수원공	5,842	2,344	96	3,402
	수로정비	21.6천km	6.3천km	0.4천km	14.9천km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기반과 서기관 한준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등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용수공급기반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 중인 지구는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960천ha로 수리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772천ha(80.4%)이고, 수리시설이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수리불안전답(천수답) 면적은 188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38천ha(56.0%)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8-29〉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연 도	단 위	2000	2003	2006	2011
논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960
수 리 답(B)	천ha	880	878	859	772
	(B/A)%	76.6	77.9	79.2	80.4
수리안전답(C)	천ha	421	440	478	538
	(C/A)%	36.6	39.0	44.1	56.0
수리불안전답(D)	천ha	269	249	225	188
	(D/A)%	23.4	22.1	20.8	19.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2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71개 지구(30천ha)에 2,100억원을 투입하여 6개 지구 2.1천ha를 준공하였고, 2013년에는 81개 지구(28천ha)에 2,450억원을 투입하여 9개 지구 3.0천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2-8-3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2까지	2013 계획	2014 이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90~’30)	사업량(천ha)	136.4	83.7	3.0	49.7
	추진율(%)	100	61.4	63.6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35개 지구(1.0천ha)에 163억원(국고 113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하여 14개 지구 0.2천ha를 준공하였고, 2013년에는 36개 지구(0.9천ha)에 202억원(국고 137억원, 지방비 65억원)을 투입하여 16개 지구 0.3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31〉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2까지	2013 계획	2014 이후
소 규모 (’03~계속)	사업량(천ha)	11.0	2.5	0.3	8.2
	추진율(%)	100	22.7	25.5	

❖ 지표수 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81개 지구(9.0천ha)에 698억원(국고 580억원, 지방비 118억원)을 투입하여 8개 지구 0.6천ha를 준공하였고, 2013년에는 74개 지구(6.9천ha)에 752억원(국고 619억원, 지방비 133억원)을 투입하여 6개 지구 0.2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32〉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2까지	2013 계획	2014 이후
지표수 보강 (’95~계속)	사업량(천ha)	31.8	30.4	0.2	1.2
	추진율(%)	100	95.6	96.2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80%가량 설치되어 안정영농기반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은 56%에 불과하고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20% 정도여서 수리안전담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 수요 충족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서 농촌경관 조성 및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홍수와 가뭄의 발생이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뭄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

■ 간척지농업과 사무관 김춘기 · 박재수 · 강경만

◆ 추진 배경 및 개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단일 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계(水系)단위의 종합개발방식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1970년대부터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사업을 금강(錦江) 등과 같은 대단위 수계(水系) 내에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국가사업을 위탁·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2-8-33〉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 중 지구 개발유형

구분	지구명	개발유형	재원
육지부 (4)	금강Ⅱ, 미호천Ⅱ 홍보, 영산강Ⅳ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농특회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옹,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옹, 새만금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지관리기금

◆ 추진 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추진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총 24지구 306천ha를 실시하여 2012년까지 16지구 166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Ⅱ 지구 등 8지구 140천ha를 시행 중에 있다.

시행 중인 사업지구에 2012년까지 총 6조 2,086억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3,661ha, 경지

정리 11,255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8,895ha를 조성하여 한해·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1977~1988년까지 미호천 인근 12천ha 용수공급을 위해 백곡·원남·광혜·금왕·맹동 등 5개 저수지를 축조한 미호천 I 지구에 이어, 청주·청원·천안 일원 4천ha의 농경지에 용수 공급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착수한 미호천 II 지구사업을 완료하였다.

2011년까지 청원도수로, 남계·청원양수장, 청주시 무심천 내 청주보 및 동·서부공구 내 경지정리 1,417ha 등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관개면적 857ha, 저수용량 759만톤에 달하는 오창저수지를 마지막으로 준공함으로써, 23년에 걸친 미호천 II 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의 농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2010년 5월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다.

이후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 차원에서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4공구(768ha)에 유리온실, 친환경축산단지, 말조련단지 및 종자연구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코팜랜드(경기도 주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에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부설계, 재원부담 및 역할,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2010년 외곽시설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한 개발방향 및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된 개발여건 등을 반영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2011년 3월)하였으며, 방조제 내측 토지를 농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에 착공한 방수제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역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시도휴게시설 개발사업 등 방조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고군산군도 등 주변 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2-8-3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 도	시 군			
계 (17지구)			166,097		4,649,714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70 ~ '76	16,823
평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70 ~ '77	37,657
영산강(Ⅰ)	전 남	나주, 담양	34,500	'72 ~ '79	81,238
경주	경 북	경 주	1,140	'74 ~ '77	4,916
계화도	전 북	부 안	2,467	'74 ~ '79	12,521
창녕	경 남	창 녕	2,269	'75 ~ '81	17,358
임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75 ~ '83	45,807
남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77 ~ '85	61,903
낙동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78 ~ '84	23,029
미호천(Ⅰ)	충 북	음성, 진천	11,554	'77 ~ '89	104,871
논산	충 남	논산, 공주	9,938	'78 ~ '90	94,035
금강(Ⅰ)	전 북	서천, 군산	하구둑	'83 ~ '90	101,000
삼교천	충 남	아산, 당진	24,574	'75 ~ '94	235,546
대호	충 남	서산, 당진	7,419	'80 ~ '96	185,630
영산강(Ⅱ)	전 남	목포, 나주	20,700	'76 ~ '98	354,472
미호천(Ⅱ)	충 북	청원, 청주	4,430	'89 ~ '12	323,900
새만금 (외곽시설)	전 북	군산, 김제, 부안	방조제	'91 ~ '11	2,949,008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에는 새만금 및 금강Ⅱ 등 시행 중 8지구에 국고(농특회계) 750억원과 농지관리기금 3,082억원 등 총 3,832억원을 투입하여 홍보지구 배수개선 165ha, 금강Ⅱ 지구 경지재정리 527ha, 화옹지구 방수제 11.8km 등을 부분 준공할 계획이며, 금강Ⅱ 지구 경지재정리 633ha 및 화옹지구 4공구 에코팜랜드(768ha)에 대한 세부설계를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8-35〉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지구 별	위 치		개 발 면적(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 (8지구)	5개 시도	20개 시·군	140,438	'89 ~ '20	7,389,733
금 강 II	충남·전북	서천·완주·부여· 군산·익산·김제	43,000	'89 ~ '14	823,900
홍 보	충남	홍성·보령	8,100	'91 ~ '16	483,252
영 산 강 IV	전남	무안·신안·함평·영광	16,730	'01 ~ '15	793,955
영산강 III-1	전남	영암·해남·강진	13,160	'95 ~ '15	616,509
영산강 III-2	전남	해남	7,840	'97 ~ '14	419,937
화 응	경기	화성	6,212	'91 ~ '16	877,317
시 화	경기	안산·화성	4,396	'98 ~ '16	425,002
새 만 금 (내부개발)	전북	부안·김제·군산	41,000	'09 ~ '20	2,949,861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은 새만금위원회('11.3)에서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방수제공사는 2015년, 농지조성은 대규모 농업회사가 입주하는 1개 공구(1,513ha)를 2013년 착공 2017년까지 완공하여 조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농업용지(6개 공구 7,057ha)는 세부설계를 거쳐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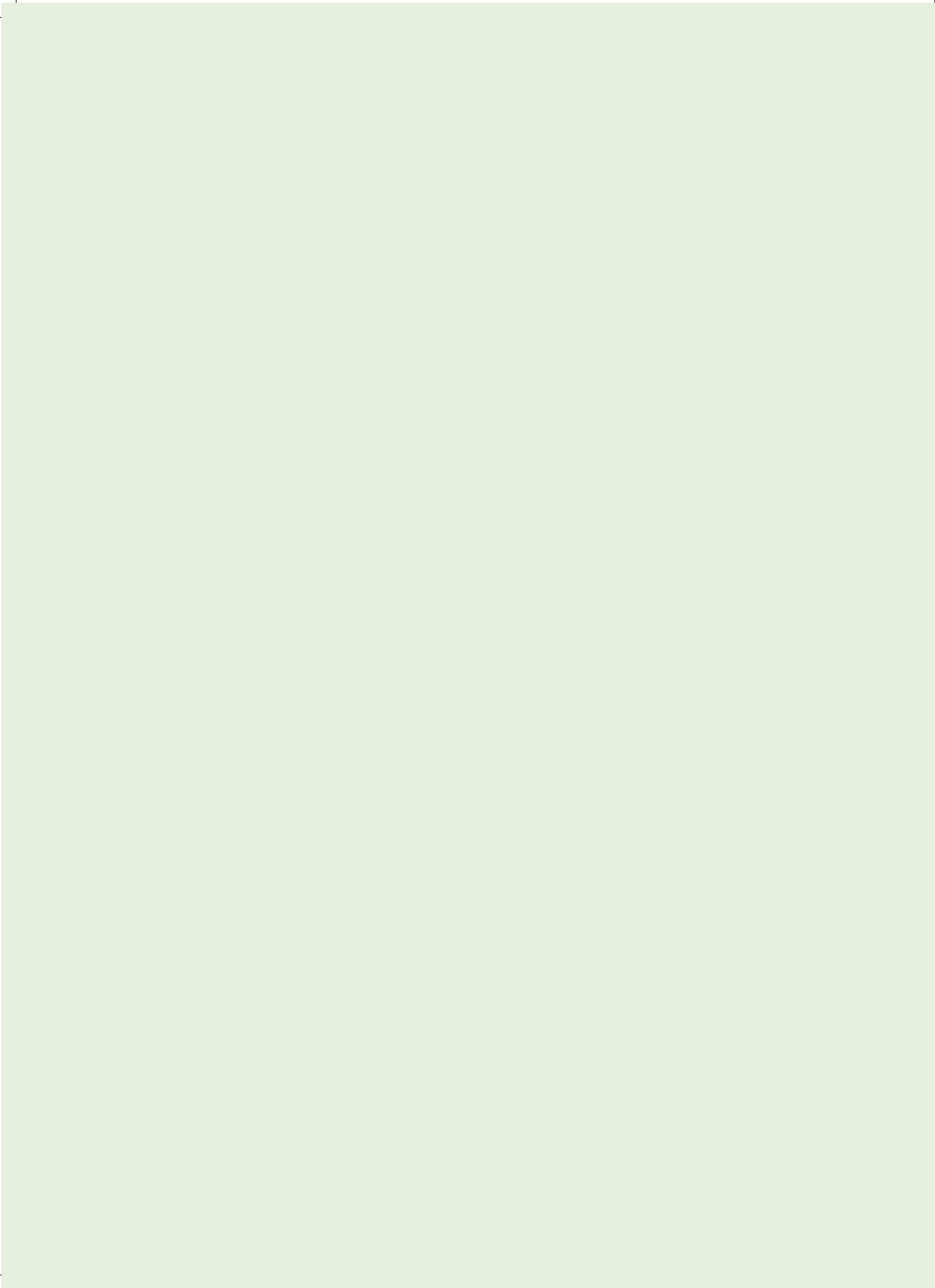
아울러 사업계획 중인 신시도휴게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세부실시설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3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신시-야미구간 개발사업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3편

2012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2장 국내·국제 수산물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1. 어가인구

■ 수산정책과 사무관 지정훈

2012년 말 현재 전국의 어가는 61,493호로 2011년도의 63,251호보다 1,758호(2.8%)가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 역시 153,106명으로 2011년도의 159,299명보다 6,193명(3.9%)이 감소하였다.

〈표 3-1-1〉 어가호수와 인구

(단위 : 호, 명,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어 가 호 수	71,046	69,379	65,775	63,251	61,493	97.2
어 가 인 구	192,341	183,710	171,204	159,299	153,106	96.1
여 성 인 구 (구 성 비)	96,485 (50.2)	92,136 (50.2)	85,529 (50.0)	80,829 (50.7)	77,789 (50.8)	96.2 -
호당평균어가인구	2.71	2.65	2.60	2.51	2.49	99.2

자료 :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2012년 어업종사자는 2011년도에 비해 3.6% 감소된 100,173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52,482명(52.4%), 여자가 47,691명(47.6%)이며,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48.1%, 50대가 33.1%, 40대가 13.5%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이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2〉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총 사 자		118,879	115,532	107,163	103,903	100,173	97.0
성 별	남 자	63,037 (53.0)	60,790 (52.6)	57,224 (53.3)	54,856 (52.8)	52,482 (52.4)	95.9 -
	여 자	55,843 (47.0)	54,742 (47.4)	49,939 (46.7)	49,047 (47.2)	47,691 (47.6)	98.2 -
연 령	30세 미만	1,964 (1.7)	2,068 (1.8)	1,857 (1.7)	1,534 (1.5)	1,235 (1.2)	82.6 -
	30~39세	7,010 (5.9)	6,120 (5.3)	5,973 (5.6)	4,595 (4.4)	4,076 (4.1)	76.9 -
	40~49세	23,630 (19.9)	19,689 (17.0)	18,817 (17.6)	15,796 (15.2)	13,558 (13.5)	83.9 -
	50~59세	38,506 (32.4)	37,901 (32.8)	34,765 (32.4)	35,346 (34.0)	33,107 (33.1)	101.7 -
	60세 이상	47,769 (40.2)	49,753 (43.1)	45,751 (42.7)	46,632 (44.9)	48,197 (48.1)	101.9 -

자료: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3〉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호,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71,046	69,379	71,046	69,379	61,493	97.2
전 업	20,938 (29.5)	20,923 (30.2)	20,938 (29.4)	20,923 (30.5)	18,572 (30.2)	101.5
겸 업	50,062 (70.5)	48,455 (69.8)	50,062 (70.6)	48,455 (69.5)	42,920 (69.8)	97.6

자료: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4〉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총 어업가구	71,046	69,379	65,775	63,251	61,493	97.2
어선 사용가구	32,481 (45.7)	30,569 (44.1)	19,327 (29.4)	17,903 (28.3)	26,642 (43.3)	96.8
어선비 사용가구	16,464 (23.2)	16,218 (23.4)	29,062 (44.2)	27,533 (43.5)	18,046 (29.4)	100.8
양식 어업가구	22,101 (31.1)	22,592 (32.5)	17,386 (26.4)	17,815 (28.2)	16,805 (27.3)	94.3

자료 :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2. 어업 총생산

■ 어업정책과 사무관 고경만

2012년도 어업 총 생산량은 3,183천톤으로 전년 3,256천톤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어업 총 생산액은 4.7% 감소한 7조 6,890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1-5〉 어업 생산량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2,514	2,714	3,363	3,112	3,256	3,183	△73	△2.2
연근해	1,189	1,097	1,286	1,134	1,235	1,091	△144	△11.6
양 식	653	1,041	1,382	1,355	1,478	1,489	11	0.7
내수면	21	24	29	31	32	28	△4	△12.5
원 양	651	552	666	592	511	575	64	12.5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3-1-6〉 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1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0,664	50,493	63,550	74,257	80,729	76,890	△3,839	△4.7
연근해	23,295	27,060	32,297	39,117	44,441	39,510	△4,931	△11.1
양 식	6,839	13,484	15,225	18,156	17,842	17,593	△249	△1.4
내수면	1,234	1,757	2,753	3,338	3,775	3,233	△542	△14.3
원 양	9,257	8,192	13,274	13,645	14,670	16,554	1,883	12.8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3-1-7〉 어업 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2011	2012(P)	증감률(%)
국내총생산(GDP)	1,235,161	1,272,460	3.0
국내총부가가치(GVA)	1,113,488	1,145,971	2.9
농림어업	29,788	30,248	1.5
어업	3,346	3,519	5.2
어업 GDP 구성비	0.4	2.4	-
어업 GVA 구성비	2.7	2.6	-

자료 : 한국은행

3. 어선 등록 현황

■ 어업정책과 사무관 윤영호

2012년 어선 등록 현황은 75,031척에 610,005톤으로 2011년 말에 비하여 척수는 598척(0.8%)이 감소하였고, 톤수는 3,378톤(0.6%)이 증가하였다. 전체 어선 중 동력어선은 72,922척으로 97.2%, 톤수는 607,887톤으로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별 척수는 연근해어선이 63.9%, 양식어선이 24.5%, 내수면어선이 3.9%, 원양어선이 0.5%, 기타가 7.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3-1-8〉 어선 등록 현황

(단위: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척 수		95,890	90,735	76,974	75,629	75,031	99.2
	- 동 력		89,294	87,554	74,669	73,427	72,922	99.3
	- 무동력		6,596	3,181	2,305	2,202	2,109	95.8
	톤 수		923,099	700,810	600,622	606,627	610,005	100.6
	- 동 력		917,963	697,956	598,365	604,414	607,887	100.6
	- 무동력		5,136	2,854	2,257	2,213	2,117	95.7
연 근 해	척 수		68,629	64,579	50,757	49,488	47,955	96.9
	톤 수		397,868	322,811	249,694	248,233	234,702	94.5
양 식	척 수		20,359	18,244	17,594	17,737	18,389	103.7
	톤 수		28,516	27,131	32,845	35,155	41,302	117.5
내 수 면	척 수		3,664	4,164	2,973	2,860	2,937	102.7
	톤 수		2,874	3,518	2,149	1,714	1,863	108.7
원 양	척 수		597	493	379	377	349	92.6
	톤 수		349,420	257,614	199,859	200,316	195,073	97.4
기 타	척 수		2,641	3,255	5,271	5,167	5,401	104.5
	톤 수		144,421	89,736	116,074	121,210	137,063	113.1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선질(船質)별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 어선척수의 86.0%, 목선이 11.5%, 강선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수에 있어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 톤수의 33.5%, 목선이 2.4%, 강선이 63.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9〉 선질별 어선 등록 현황

(단위: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척 수		95,890	90,735	76,974	75,629	75,031	99.2
	톤 수		923,099	700,810	600,622	606,627	610,005	100.6
목 선	척 수		40,057	22,281	11,788	10,115	8,646	85.5
	톤 수		112,413	49,697	18,849	16,546	14,688	88.8
강 선	척 수		3,442	2,417	1,865	1,843	1,795	97.4
	톤 수		656,194	444,687	386,117	390,204	389,841	99.9
합성수지선 (FRP선)	척 수		52,378	65,831	63,279	63,628	64,545	101.4
	톤 수		154,425	205,754	194,954	199,177	204,571	102.7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6.5%로서,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11.4%, 5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은 1.0%, 100톤 이상 200톤 미만 어선은 0.3%, 20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0〉 톤급별 어선 등록 현황

(단위: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척 수		95,890	90,735	76,974	75,629	75,031
톤 수			923,099	700,810	600,622	606,627	610,005	100.6
1톤 미만	척 수		37,542	30,962	24,454	22,627	21,295	94.1
	톤 수		23,620	20,069	16,331	15,169	14,413	95.0
1~5톤 미만	척 수		44,794	47,253	42,957	43,213	43,634	101.0
	톤 수		107,263	111,344	98,768	98,968	99,721	100.8
5~50톤 미만	척 수		10,797	10,607	8,032	8,249	8,573	103.9
	톤 수		138,130	123,424	96,234	98,102	100,877	102.8
50~100톤 미만	척 수		1,584	1,024	778	791	785	99.2
	톤 수		120,489	75,783	56,877	57,787	57,375	99.3
100~200톤 미만	척 수		518	346	263	265	260	98.1
	톤 수		73,551	50,640	38,853	38,849	38,106	98.1
200톤 이상	척 수		655	543	490	484	484	100.0
	톤 수		460,046	319,550	293,559	297,752	299,510	100.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4. 이용어장

◆ 연근해어장

■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수산업법」상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의 해역범위는 동해 - 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60년대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리어장'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어장'까지 조업어장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일 3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6년 5월 이후 17차례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 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연근해수역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한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 정부와 협상한 결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동 협정을 정식 발효시키게 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EEZ 내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 입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이 각각 EEZ로 편입되어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일 간의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담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주변 수역이 완전히 EEZ 어업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도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원양어장

■ 원양산업과 서기관 이규선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시협조업 진출을 시발로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1977년부터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장이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유자망조업이 중지되었으며,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이 전면 철수하였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으로 공해조업도 해역 단위 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강화 및 다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2012년 말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등 14개 설립되었고,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가 신설 중에 있는 등 공해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양식어장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조규동

우리나라 해면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의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에서 1970년대에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전복 등 고소득 어패류 양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참돔, 조피볼락, 굴, 홍합, 꼬막, 전복, 김, 미역, 톳, 우렁쉥이, 새우, 해삼 등 50여 종이며, 최근 해삼 등 새로운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기타 수산동물의 면허가 증가하는 추세다.

〈표 3-1-11〉 품목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 대비 증 감 률
합 계	132,416	136,083	139,871	139,223	139,811	137,971	△1.3
어 류	1,962 (1.5)	1,988 (1.5)	1,965 (1.4)	1,880 (1.3)	1,774 (1.3)	1,739 (1.3)	△2.0
패 류	49,261 (37.2)	49,169 (36.1)	49,538 (35.4)	49,721 (35.7)	49,848 (35.7)	49,591 (35.9)	△0.5
해 조 류	76,183 (57.5)	79,504 (58.4)	81,601 (58.3)	81,255 (58.4)	81,837 (58.5)	79,247 (57.4)	△3.2
기 타 수 산 동 물	5,010 (3.8)	5,422 (4.0)	6,767 (4.8)	6,367 (4.6)	6,352 (4.5)	7,393 (5.4)	16.4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013년

2012년 말 현재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 13.8만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 어업은 1.3천ha이다.

〈표 3-1-12〉 종류별 · 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 대비 증 감 률
합 계	1,735	1,641	1,382	1,419	1,388	1,264	△8.9
육상수조식양식 (어류 · 패류 등)	276 (15.9)	271 (16.5)	261 (18.9)	258 (18.2)	290 (20.9)	297 (23.5)	2.4
축제식양식 (어류 · 새우 등)	1,459 (84.1)	1,370 (83.5)	1,121 (81.1)	1,161 (81.8)	1,099 (79.2)	967 (76.5)	△12.0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해양수산부 여촌양식정책과, 2013년

201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적조,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상승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면의 개발 제한, 수출용 패류의 지정해역 및 그 인근해역에 대해 어장개발 관리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양식어업의 발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관측을 통하여 적정하게 수급관리를 하였으며, 그동안 수급 불균형 등으로 신규 개발을 제한해 왔던 8개 품종(김, 어류, 전복, 굴, 우렁챙이, 미더덕, 홍합, 미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수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 개발을 전격 허용하였다. 또 민감품목(김, 굴(수하식), 미더덕, 홍합) 신규 개발 시에는 기존 어장의 10%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였다.

5. 어업 경영체

◆ 연안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양정규

2012년 말 현재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188,942개로서 2011년도의 201,937개보다 12,995개가 감소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각각 54,866건 및 6,327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 566건과 97건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어선 감척사업 추진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을어업(면허어업)은 3,309건으로 전년에 비해 417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어업인 소득을 위한 지자체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적극적 행정을 통한 면허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어업 중 어선어업 경영체 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신규 어업허가 억제정책과 1994년부터 추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신고어업은 총 123,920건으로 전년 대비 12,743건(전년 대비 9.3%)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어업자원량 감소 및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맨손어업 신고건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안어업은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소규모 어업으로 겸업에 의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 어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FTA 체결에 따른 영향으로 그 소득 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의한 어업자원변동 및 수산자원 회복 정도 등 어업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 대책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13〉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건수,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150,111	150,365	178,219	193,296	195,545	201,937	188,942	93.6
허가	소 계	83,334	79,202	73,798	68,287	64,631	61,856	61,193	98.9
	연안어업	75,723	71,756	66,660	61,388	58,091	55,432	54,866	99.0
	구획어업	7,611	7,446	7,138	6,899	6,540	6,424	6,327	98.5
면허	소 계	3,279	3,390	3,437	3,556	3,594	3,418	3,829	112.0
	마을어업	2,726	2,835	2,897	3,020	3,058	2,892	3,309	114.4
	정치망어업	553	555	540	536	536	526	520	98.9
신고	소 계	63,498	67,773	100,984	121,453	127,320	136,663	123,920	90.7
	맨손어업	57,561	61,631	94,768	114,557	120,200	129,447	117,006	90.4
	나잠어업	5,900	6,090	6,144	6,825	6,952	7,013	6,724	95.9
	투망어업	37	52	72	71	168	203	190	93.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근해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근해어업 경영체는 2012년에 3,238개로서, 전년도 3,280개보다 1.3% 감소(42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의 전면 억제, 2003년 및 2007년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업허가를 관리하고 있어 허가처분에 큰 변동은 없었다.

업종별 경영체를 보면 근해붕수망 5.3%, 근해안강망이 1.7% 증가하였고, 근해연승 4.9%, 근해자망이 2.7% 감소하였다.

〈표 3-1-14〉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건, %)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3,957	3,404	3,276	3,280	3,238	△1.3
대형기저		92	82	81	83	82	△1.2
중형기저		94	90	90	90	91	1.1
근해트롤		99	89	91	90	91	1.1
근해선망		79	74	72	72	72	0.0
근해채낚기		896	720	699	699	702	0.4
기선권현망		80	78	77	77	77	0.0
근해자망		838	736	707	714	695	△2.7
근해안강망		259	247	238	236	240	1.7
잠수기		235	236	236	236	236	0.0
근해통발		389	331	310	309	304	△1.6
근해형망		129	101	94	85	84	△1.2
근해연승		709	575	536	548	521	△4.9
근해붕수망		53	40	40	38	40	5.3
근해자리돔들망		5	5	5	3	3	0.0

자료: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양식어업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조규동

최근 중규모(1ha 이상 3ha 미만)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가수가 크게 줄고 3ha 이상 대규모 양식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 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15〉 소유자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건, %)

연도	구분	합계	1ha 미만	1~3ha	3~6ha	3~10ha	10ha 이상
2005	합계	28,184	14,388	7,091	3,220	1,444	1,441
	(%)	(100.0)	(51.1)	(25.2)	(11.4)	(5.1)	(5.1)
2010	합계	22,016	10,506	5,250	2,810	1,249	2,201
	(%)	(100.0)	(47.7)	(23.8)	(12.8)	(5.7)	(10.0)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1년

2012년 말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9,755건이며 품종별로는 굴 1,225(12.6%), 전복 1,102(11.3%), 새고막 981(10.1%), 김 820(8.3%), 피조개 765(7.8%), 바지락 615건, 어류 502건, 다시마 562건, 우렁쉥이·복합양식 기타 3,183건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은 총 3,495건으로 해상종묘생산어업이 812건, 육상양식어업 1,224건(육상·수조식양식 938건, 축제식양식 286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459건이다.

〈표 3-1-16〉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개소)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9,352	9,555	9,709	9,735	9,795	9,755	△40
김	948	960	939	911	903	820	△83
굴	1,182	1,211	1,247	1,245	1,220	1,225	5
피 조 개	857	848	832	803	775	765	△10
새 고 막	850	862	875	915	946	981	35
바 지 락	633	606	602	602	637	615	△22
미 역	455	451	432	435	474	506	32
어 류	560	553	568	549	528	502	△26
우 령 쉥 이	494	506	521	463	456	483	27
기 타	3,373	3,558	3,693	3,812	3,856	3,858	2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013년

품종별 경영 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양식은 개인과 협업 경영체가 주로 경영하고 있다.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의 경우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경영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한다. 반면에 어류와 전복·진주 조개·우렁쉥이·새우·가리비 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1-17〉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ha,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131,439	136,083	139,867	141,015	139,811	137,971	98.7
어촌계 및 수협	108,242	111,800	115,166	116,550	115,943	115,363	99.5
개인 및 협업	23,197	24,283	24,701	24,465	23,868	22,608	94.7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013년

향후 WTO-DDA, FTA 체결에 따른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규모 개인 양식업을 대규모 양식으로 유도하고, 기존의 저가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 경영체에 대하여는 고부가가치의 품종 양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원양어업

■ 원양산업과 서기관 이규선

원양어업 경영체는 1957년 제동산업의 지남호가 인도양에 진출한 이래 매년 증가하여 1995년 185개사에 이르렀으나, 원양어장의 급격한 축소 등 조업환경의 악화로 2012년에는 1995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79개사로 감소하였다. 이 중 어선을 1~2척만 보유한 영세업체가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대부분 해외트롤어업 등 기타 업종이며 11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참치연승 업종이다. 원양어선도 1990년 810척을 정점으로 2012년 현재 344척으로 감소되었으며 이 중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참치어선이 179척(52%), 트롤어선이 97척(28%)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역별로 보면 태평양수역에 197척, 대서양수역에 129척, 인도양수역에 16척이 진출하고 있다.

〈표 3-1-18〉 원양업체 및 조업척수

(단위: 개, 척)

구분 \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체 수	36	82	157	139	112	109	110	106	95	90	88	79
선박 수	278	750	810	535	410	392	387	380	362	353	359	34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2012년

우리나라 원양업체 및 어선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

제2절 어가 경제

1. 어가소득

■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주성

2012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7,381천원으로 전년(38,623천원)에 비해 3.2%(1,242천원) 감소하였다. 어업소득은 4.4% 감소하였고, 어업외 소득은 0.1% 감소하였으며,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52.3%로 전년에 비해 1.1% 감소하였다.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120.5%, 도시가계 소득의 69.3% 수준이다.

〈표 3-1-19〉 어가소득

(단위: 천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어 가 소 득	31,176	33,945	35,696	38,623	37,381	-3.2
경 상 소 득	26,344	30,213	31,729	35,119	34,171	-2.7
어 업 소 득	13,801	16,220	16,607	20,432	19,539	-4.4
어업외 소득	10,120	11,136	11,931	11,377	11,360	-0.1
이 전 소 득	2,423	2,857	3,191	3,309	3,272	-1.1
비경상소득	4,831	3,732	3,968	3,504	3,210	-8.4
농 가 소 득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2.9
도시가계소득	46,737	46,664	48,092	50,983	53,908	5.7

자료: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20〉 어업소득

(단위: 천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어 업 소 득	13,801	16,220	16,607	20,432	19,539	-4.4
어업총수입	33,457	35,350	37,682	45,875	45,228	-1.4
어업경영비	19,656	19,130	21,075	25,443	25,689	1

주: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자료: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21〉 어업외 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어업외 소득	10,120	11,136	11,931	11,377	11,360	-0.1
겸업소득	4,860	5,189	5,755	5,951	5,441	-8.6
사업외 소득	5,260	5,946	6,176	5,426	5,920	9.1

자료 :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2. 어가 가계지출

■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주성

2012년도 어가 가계지출은 29,16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5%(737천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비지출이 22,943천원으로 전년(23,524천원)에 비해 2.5%(581천원) 감소하였고, 비소비지출이 6,226천원으로 전년(6,382천원)에 비해 2.4%(156천원) 감소하였다.

〈표 3-1-22〉 가계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가계지출	25,405	27,065	28,700	29,906	29,169	-2.5
소비지출	20,051	20,656	21,982	23,524	22,943	-2.5
비소비지출	5,354	6,409	6,719	6,382	6,226	-2.4

자료 :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3. 어가자산

■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주성

2012년 말 현재 어가의 평균자산은 297,669천원으로 전년(287,650천원)에 비해 3.5%(10,019천원)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은 1.8%(3,435천원) 증가하였고, 유동자산은 7.1%(6,584천원) 증가하였다.

〈표 3-1-23〉 어가자산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어 가 자 산	221,066	257,095	258,872	287,650	297,669	3.5
고정자산 ¹⁾ (구성비)	161,720 (73.2)	186,102 (72.4)	178,364 (68.9)	195,232 (67.9)	198,667	1.8
유동자산 ²⁾ (구성비)	59,346 (26.8)	70,992 (27.6)	80,508 (31.1)	92,418 (32.1)	99,002	7.1

자료 :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4. 어가부채

■ 수산정책과 사무관 지정훈

2012년 말 어가부채는 가구당 39,518천원으로 전년(37,862천원)에 비해 4.4%(1,656천원) 증가하였다. 어업용 부채는 8.3%(1,546천원) 증가하였으며, 어업용 이외 부채도 0.6%(110천원) 증가하였다.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43.3%로 전년(45.1%)에 비해 감소(1.8%)되었다. ↶

〈표 3-1-24〉 어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어 가 부 채(A)	33,587	35,864	35,640	37,862	39,518	104.4
어업용부채 (구성비)	18,207 (54.2)	19,038 (53.1)	18,277 (51.3)	18,631 (49.2)	20,177 (51.1)	108.3
어업용이외부채 (구성비)	15,380 (45.8)	16,826 (46.9)	17,363 (48.7)	19,231 (50.8)	19,341 (48.9)	100.6
당좌자산(B)	52,782	63,648	73,560	83,867	90,976	108.5
단기상환능력[(A/B)×100]	63.6	56.3	48.5	45.1	43.3	-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자료 : 통계청, 2012 어업기본통계조사

1)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수산물, 사용 중인 어업용자재 등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제2장 국내·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1. 생산동향

■ 어업정책과 사무관 고경만

2012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2011년(3,256천톤)보다 2.2%(73천톤) 감소한 3,183천톤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업은 기상악화(고수온, 태풍, 한파)의 영향으로 멸치,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어군이 분산되고 어로활동이 부진하여 전년에 비해 어획실적이 11.6% 감소한 반면, 천해양식어업은 김·다시마 등 해조류의 양식작황 호조로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0.7% 증가하였고,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다랑어류 어획 호조로 12.5%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금액은 전년(8조 729억원)보다 4.7% 감소한 7조 6,8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근해어업의 어획 부진 등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에 따라 생산금액도 동반하여 감소한 것이다.

〈표 3-2-1〉 어업별 생산 현황

(단위: 천톤, 억원)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증감(2012/2011)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합	계	3,112	74,257	3,256	80,729	3,183	76,890	△2.2	△4.7
연	근	1,133	39,117	1,235	44,441	1,091	39,510	△11.6	△11.1
양	식	1,355	18,156	1,478	17,842	1,489	17,593	0.7	△1.4
내	수	31	3,338	32	3,775	28	3,233	△12.5	△14.3
원	양	592	13,645	511	14,671	575	16,554	12.5	12.8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연근해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기상악화(태풍, 가뭄, 폭염, 한파 등)에 따른 어로활동 부진으로 2012년도 연근해어업(일반 해면 어업) 생산량은 1,091천톤을 기록, 2011년도(1,235천톤)보다 11.7% 감소하였으며, 생산금액도 3조 9,510억원으로 전년(4조 4,441억원)보다 11.1% 감소하였다.

부류별로 보면 연체동물이 207천톤으로 전년(197천톤)에 비해 5.1%, 갑각류가 105천톤으로 전년(102천톤)에 비해 2.9%(3천톤) 증가하였다. 반면 어류가 704천톤으로 전년(843천톤)에 비해 16.5%, 해조류는 10천톤으로 전년(15천톤)에 비해 33.33%(5천톤), 패류는 58천톤으로 전년(72천톤)에 비해 19.4%가 각각 감소하였다.

〈표 3-2-2〉 부류별 생산 현황

(단위: 천톤)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 (2012/2011)
		합	계	1,286	1,227	1,134	1,235
어	류	878	796	736	843	704	△16.5
패	류	82	90	80	72	58	△19.4
갑	각	88	100	108	102	105	2.9
연	체	216	223	188	197	207	5.1
해	조	14	11	13	15	10	△33.3
기타	수산물	8	7	8	7	6	△24.3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주요 어종별로 보면 청어(28천톤, 19.5%), 삼치류(33천톤, 13.9%), 붉은대게(37천톤, 13.7%), 오징어(181천톤, 5.7%)는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멸치(222천톤, 24.2%), 고등어(128천톤, 14.7%), 전갱이류(31천톤, 27.4%), 참조기(37천톤, 37.8%)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

(단위: 천톤)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 (2012/2011)
멸치류	261.5	203.7	249.6	292.7	222.0	△24.2
고등어류	190.5	175.3	94.3	138.7	128.5	△14.7
갈치	72.3	85.5	59.2	33.1	32.5	△1.8
강달이류	11.0	12.1	5.0	14.0	7.8	△44.3
전갱이류	22.8	22.1	19.3	42.9	31.1	△27.4
참조기	33.2	34.0	31.9	59.2	36.8	△37.8
삼치류	40.8	36.8	35.8	29.3	33.4	13.9
청어	45.5	37.5	25.0	23.4	28.0	19.5
오징어류	186.2	189.2	159.1	171.6	181.4	5.7
문어	11.8	15.4	10.8	10.4	10.1	△2.9
붉은대게	28.3	30.0	30.7	32.5	37.0	13.7
젓새우	14.9	18.9	18.9	20.7	20.2	△2.4
꽃게	17.8	33.2	33.2	26.6	26.9	1.1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40톤급 어선을 이용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hook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정어리·전갱이·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근해어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종의 하나이다.

선망어업은 2005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한 달간의 자체휴어기를 2009년에도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2010년에 급감했던 고등어류의 생산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

으나, 2012년엔 전년(219,109톤)에 비해 19.2% 감소한 177,050톤을 생산하였다.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되며, 제주근해와 서해중부해역에서 주로 갈치·가자미·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이다.

특히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은 삼치의 어획량이 전년(14,796톤)에 비해 124%(19,005톤)로 증가하였으며, 멸치 어획량은 전년(12,128톤)에 비해 4%(4,874톤), 참조기는 전년(6,551톤)에 비해 27%(1,766톤) 생산함으로써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2012년 전체 생산량은 전년(72,268톤)에 비해 9.9% 감소한 65,870톤을 기록하였다.

❖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가자미·도루묵·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에서 가자미·아귀·강달이·새우·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 어업의 어획량은 2004년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저인망의 경우 전년에 급격히 증가한 멸치(11,772톤) 어획량이 2012년에도 같은 수준의 어획량(10,631톤)을 보였다. 2012년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생산량은 도루묵, 갈치, 삼치 등의 어획량 증가로 전년(45,482톤)보다 6.7% 증가한 48,517톤을 기록하였다.

❖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오징어·갈치·복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주 어획대상이 되고 있는 오징어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여기를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 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

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퇴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 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 잠정조치수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의 2012년 오징어 생산량은 46,701톤으로 전년(41,346톤)보다 13.3% 증가하였으며, 갈치의 생산량은 1,218톤으로 전년(1,566톤)에 비해 22.2%(348톤) 감소하여 전체 생산량은 전년(45,073톤)보다 9.7% 증가한 49,443톤을 기록하였다.

❖ 연근해안강망어업

연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조기·멸치·병어·아귀·꽃게·젓새우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생산량은 기상악화(태풍, 가뭄, 폭염, 한파 등)에 따른 어로활동 부진으로 전년(79,293톤)보다 25.1% 감소한 59,364톤을 기록하였다.

❖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 2척을 비롯하여 어탐선·가공선·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루어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량이 해황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2년 생산량은 전년(154,055톤)보다 13.2% 감소한 132,776톤이었다.

❖ 연근해자망어업

연근해자망어업은 동·서·남해에서 조기·멸치·가자미·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조기는 서해남부해역에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어장이 형성되면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2년 생산량은 강달이류, 멸치, 참조기, 꽃게의 어획 부진으로 전년(138,937톤)보다 9.7% 감소한 125,401톤을 기록하였다.

❖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60~140톤급 어선으로 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갈치·병어·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가자미·도루묵·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중형트롤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쥐치의 대량어획으로 호황을 이루다 이후 대상 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어선감축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해구 트롤어업은 처음엔 새우트롤어업으로 번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다가 최근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이 되고 있는 오징어의 2012년 어획량은 114,986톤으로 전년(107,584톤)보다 6.7% 증가하였으며, 2012년 전체 생산량은 118,667톤으로 전년(118,443톤)보다 2.2% 소폭 증가하였다.

❖ 연근해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근해장어통발, 연근해통발(어류·게류·고등류), 근해문어단지로 구분된다.

근해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봉장어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 자원 감소 및 어장 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

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12년 생산량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2008년 이전의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해통발 중 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하여 왔으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어,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 어업과 경쟁 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2012년에는 80,270톤을 생산하여 전년(73,021톤)보다 9.9% 증가하였다.

◆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은 갈치·옥돔·아귀·복어·가자미·장어·불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그물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방식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갈치, 붕장어 등의 어획량 감소로 전년(16,696톤)보다 9.2% 감소한 15,329톤을 생산하였다.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톤,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1,284,890	1,226,966	1,133,721	1,235,489	1,091,034	△11.7
대 형 선 망	234,525	241,052	160,409	219,109	177,050	△19.2
대형기선저인망	65,159	63,737	64,327	72,268	65,870	△9.9
중 형 기 저	34,979	36,922	40,844	45,482	48,517	6.7
근 해 채 낚 기	61,343	60,478	46,147	45,073	49,443	9.7
안 강 망	76,278	74,197	78,492	79,293	59,364	△25.1
권 현 망	150,394	116,464	157,720	154,055	132,776	△13.2
자 망	117,473	135,038	131,451	138,937	125,401	△9.7
근 해 트 롤	106,219	119,578	99,620	118,443	118,667	2.2
통 발 어 업	68,727	70,930	72,437	73,021	80,270	9.9
연 승 어 업	24,510	16,614	15,277	16,696	15,329	△9.2
마을·구획어업	100,664	82,237	76,445	85,103	65,937	△22.5
기 타	244,619	209,719	189,367	188,009	152,410	△18.9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3. 양식어업

■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장묘인

양식수산물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도 천해양식어업은 수온하강에 따른 동사 피해 방지를 위한 양식 어류 출하 증가, 김류 등 해조류 양식작황 호조 및 전복 먹이용 다시마 양식시설 면적 확대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0.8% 늘어난 1,489천톤으로 나타났다.

품종별 생산량은 김류가 350천톤(2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역류(340천톤), 다시마류(309천톤), 굴류(285천톤), 홍합류(61천톤), 넙치류(39천톤), 조피볼락(23천톤)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 현황

(단위: 톤, %)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385,804	1,381,003	1,313,355	1,355,000	1,477,546	1,488,950	0.8
어류	소 계	97,663	99,006	109,516	80,110	72,449	76,308	5.3
	넙 치	41,171	46,432	54,674	40,925	40,805	39,371	△3.5
	조피볼락	35,564	32,992	33,020	20,918	17,338	23,085	33.1
	기 타	20,928	19,582	21,822	18,267	14,306	13,852	△3.2
패류	소 계	478,646	343,704	326,544	355,699	389,159	370,074	△4.9
	굴	321,276	249,976	240,911	267,776	281,022	284,856	1.4
	홍 합	98,121	67,442	55,035	54,440	70,554	61,310	△13.1
	바 지 락	18,819	15,541	17,905	23,430	25,862	12,623	△51.2
	전 복	4,350	5,146	6,207	6,228	6,779	6,564	△3.2
	피 조 개	3,015	1,903	1,714	1,560	2,110	1,872	△11.3
	기 타	37,415	3,696	4,772	2,265	2,832	2,849	0.6
해조류	소 계	792,953	921,024	858,659	901,672	992,283	1,022,326	3.0
	미 역	309,049	381,076	309,155	393,616	393,724	339,924	△13.7
	다 시 마	250,049	285,221	306,183	241,322	246,701	308,601	25.1
	김	210,956	224,242	211,444	235,534	316,729	349,827	10.4
	기 타	22,851	30,485	31,877	31,200	35,129	23,974	△31.8
기타 수산동물 ¹⁾	계	16,542	17,269	18,636	17,519	23,655	20,242	△14.4

주 : 1) 기타 수산동물은 우렁쉥이, 오만둥이, 미더덕, 흰다리새우 등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12년

4. 내수면어업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민병주

2012년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전년도 32천톤에 비해 12.8%가 감소한 28천톤이었다. 이 중 어로어업 생산량이 10천톤 수준으로 전체의 36.3%, 양식어업 생산량은 18천톤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뱀장어 품종은 종묘 채포량이 감소함에 따라 어업 생산량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29,180	30,071	30,982	32,270	28,131	△4,139	△12.8
[어로어업]		11,098	11,707	10,256	10,283	10,221	△62	△0.6
가	물 치	46	42	50	77	68	△9	△11.7
메	기	232	218	88	97	149	52	53.6
미	꾸 라 지	0	0	3	19	14	△5	△26.3
뱀	장 어	96	145	119	72	106	34	47.2
붕	어	2,447	2,561	2,655	2,710	2,694	△16	△0.6
잉	어	1,379	1,777	1,802	1,775	1,897	122	6.9
피	라 미	113	156	227	249	292	43	17.3
패	류(재첩 등)	1,068	1,393	1,510	1,774	1,275	△499	△28.1
기	타	5,717	5,415	3,802	3,510	3,726	216	6.2
[양식어업]		18,082	18,364	20,726	21,987	17,910	△4,077	△18.5
가	물 치	187	259	233	282	260	△22	△7.8
민	물 돔	388	336	251	220	184	△36	△16.4
뱀	장 어	6,480	6,621	7,902	7,185	4,259	△2,926	△40.7
잉	어	492	224	200	142	78	△64	△45.1
향	어	1,028	929	1,169	1,434	1,737	303	21.1
송	어 류	2,780	2,737	2,652	3,014	3,066	52	1.7
기	타	6,727	7,258	8,319	9,710	8,326	△1,384	△14.3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12년

5. 원양어업

원양정책과 사무관 박영호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1990년 선박 보유척수 810척, 생산량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연안국 및 국제기구의 조업 규제 등이 강화돼 조업선 및 생산량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2012년 원양어업 생산은 575천톤으로 전년도 511천톤에 비해 12.7%가 증가하였다. 어종별로는 참치류 생산량이 305천톤, 원양오징어는 82천톤, 명태 39천톤, 꽁치 14천톤을 생산하였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참치의 경우 어장 환경 변동에 따른 가다랑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이며, 오징어는 세계 최대 어장인 포클랜드 수역에서 지속되는 어획 부진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명태는 100%, 꽁치 85%, 오징어는 31%를 원양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 현황

(단위 : 톤, %)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666,182	611,950	592,116	510,624	575,308	113%
참치류		286,889	327,181	319,712	251,093	305,335	122%
명태		27,980	38,996	46,794	48,793	39,025	80%
오징어		181,780	84,652	65,416	70,130	81,526	116%
꽁치		29,591	22,001	21,360	18,068	13,961	77%
기타		139,942	139,120	138,834	122,540	135,461	11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 원양산업통계연보, 2013년

제2절 국내 수산물 수출·수입

1. 수출

통상무역협력과 서기관 이병웅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까지 15억달러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후 국내의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에 12억달러로 감소한 이래 2008년까지 11억~14억달러 내외의 정체를 보여 왔으나, 2012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23억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다. 2012년에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참치, 오징어, 김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기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물량은 22천톤 증가(3%)하였고, 금액도 54백만달러 증가(2%)하였다. 2012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수산물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은 0.4%로 전년과 동일하다.

〈표 3-2-8〉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총 수출		361,200	466,383	556,514	547,870	△1.5
수산물 (구성비)		1,511 (0.4)	1,798 (0.4)	2,308 (0.4)	2,362 (0.4)	2.3 (0.4)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 품목별 수출 현황

2012년도 활어 수출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넙치, 붕장어 등의 수출 호조세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82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신선냉장품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복, 바지락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1년 대비 12.5% 증가한 250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또한 수출 주력 품목인 냉동품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59%를 차지하고 있

으며, 가공용 수출품목인 오징어, 눈다랑어 등의 수출실적이 감소를 보임에 따라 2011년 대비 2.6% 감소한 1,400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표 3-2-9〉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톤, 천달러, %)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2/2011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92,045	1,798,162	686,930	2,308,155	708,638	2,362,050	3.2	2.3
활	어	6,471	85,641	5,948	78,357	5,722	81,579	△3.8	4.1
신선·냉장		30,129	192,678	25,348	221,909	28,239	249,750	11.4	12.6
냉	동	608,826	1,074,204	492,229	1,437,191	519,322	1,399,867	5.5	△2.6
기	타	146,619	445,639	163,404	570,697	155,354	630,856	△4.9	10.5

자료 : 해양수산부, 2012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 국가별 수출 현황

2012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42.0%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2위의 수출대상국가로 부상하였다. 또한 태국은 전년도에 비하여 수출이 다소 증가(50.4%)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태국, 미국, 대만, 이집트 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주 수출국인 일본,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144개국이며, 국별 비중은 일본 42.0%, 중국 15.7%, 태국 11.0%, 미국 8.0%, 뉴질랜드 3.0% 등으로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10〉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1,511,230	1,798,162	2,308,155	2,362,050	2.3
일	본	734,134	859,483	993,537	981,683	△1.2
중	국	128,885	142,166	464,819	372,257	△19.9
태	국	145,711	231,223	173,433	260,783	50.4
미	국	127,733	126,824	180,852	191,004	5.6
뉴	질	70,461	71,915	92,707	72,663	△21.6
베	트	41,437	55,491	61,453	54,465	△11.4
스	페	18,208	22,314	54,767	39,488	△27.9
대	만	12,963	27,980	26,515	28,506	7.51
홍	콩	23,231	34,331	31,295	28,418	△9.19
이	집	4,666	6,203	11,851	25,946	118.9
캐	나	11,818	15,383	17,199	24,949	45.06
이	탈	1,353	5,831	15,036	22,919	52.43
에	과	13,551	9,284	6,203	21,181	241.48
나	이	22,407	32,009	15,824	20,602	30.2
기	타	154,672	157,725	162,664	217,186	33.5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2008년부터 소금이 수산물로 분류됨)

〈표 3-2-11〉 주요 어종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1,511,230	1,798,162	2,308,155	2,362,050	2.3
참	치	314,373	374,354	393,668	603,419	53.3
	김	81,507	105,197	161,495	231,039	43.1
	오징어	108,052	114,762	181,034	119,636	△33.9
	고등어	38,097	27,364	48,879	71,579	46.4
	붕장어	39,382	42,105	55,264	70,325	27.3
	넙치	53,486	78,845	79,372	69,023	△13.0
	명태	14,387	29,595	47,332	59,821	26.4
	게살	41,986	43,054	54,172	58,699	8.4
	전복	33,751	36,820	52,351	58,248	11.3
	굴	42,247	66,057	81,689	55,843	△31.6
	삼치	45,361	54,635	67,667	53,717	△20.6
	어란	6,956	14,427	45,863	52,647	14.8
	이빨고기	23,437	28,505	46,651	40,596	△13.0
	바지락	34,763	42,960	37,989	39,366	3.6
	미역	16,811	19,039	40,765	36,494	△10.5
	대구	4,670	25,621	53,052	36,235	△31.7
	돔	17,551	20,242	27,258	35,884	31.6
	캐비아	24,526	30,397	32,040	33,264	3.8
	전갱이	21,117	24,825	23,076	27,805	20.5
	툰	28,904	29,622	31,886	27,165	△14.8
	기타	519,866	589,736	746,652	581,245	△22.2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 수입

■ 원양정책과 사무관 이병웅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국내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 증가, 1997년도 수입자유화의 영향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도를 기점으로 수산물이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된 이래 최근 7년간 연평균 182백만달러씩

수입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2년에는 국내 경기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5.18%(217백만달러) 감소한 3,975백만달러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다. 국가 전체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 점유율은 큰 변화 없이 1%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12〉 수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총 수입	323,084	425,212	524,413	519,584	△0.9
수산물 (구성비)	2,895 (0.9)	3,458 (0.8)	4,192 (0.8)	3,975 (0.8)	△5.2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 품목별 수입 현황

수산물 수입의 약 62%를 점유하는 냉동품은 2012년도엔 전년 대비 6.7% 감소한 2,473백만달러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활어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256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신선·냉장 수산물도 7.3%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수입 감소세를 보였다.

제품유형별 수입액 점유율을 보면 냉동품(62%), 기타수산물, 조제품(10%), 신선·냉장(8%), 활어(6%), 건조(3%) 등의 순이다.

〈표 3-2-13〉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2,895,495	3,458,400	4,191,944	3,974,627	△5.2
활 어	171,377	250,683	268,571	255,847	△4.7
신선·냉장	284,904	302,771	336,996	312,394	△7.3
냉 동	1,788,739	2,084,306	2,651,802	2,473,246	△6.7
기 타	650,475	820,640	934,574	933,139	△0.2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 국가별 수입 현황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27.2%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러시아, 베트남, 미국 순이다. 2012년도 국가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베트남, 미국, 태국, 대만, 페루에서 수입액이 각각 5.0%, 14.2%, 6.7%, 2.5%, 9.0% 증가한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으로 31.2% 감소하였다.

〈표 3-2-14〉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2,895,495	3,458,400	4,191,944	3,974,627	△5.2
중	국	854,256	1,096,264	1,250,436	1,082,620	△13.4
러	시	435,537	495,267	662,758	654,125	△1.3
일	본	195,063	226,204	168,543	116,003	△31.2
베	트	305,151	376,338	482,607	506,886	5.0
미	국	123,453	126,179	155,412	177,421	14.2
태	국	85,141	100,957	135,111	144,216	6.7
대	만	88,136	96,041	128,598	131,795	2.5
칠	레	81,407	76,957	142,581	110,864	△22.2
캐	나	47,045	52,950	67,852	63,021	△7.1
노	르	69,571	97,108	138,833	114,402	△17.6
페	루	40,259	41,514	71,556	78,030	9.0
인	도	67,470	63,970	69,815	69,902	0.1
인	도	32,693	48,581	44,924	46,055	2.5
필	리	15,222	17,430	19,561	20,976	7.2
영	국	18,227	18,937	23,309	27,703	18.9
기	타	436,864	493,703	630,048	630,608	0.1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국가별 수입액 점유율은 중국(27.2%)에 이어, 러시아 16.5%, 베트남 12.8%, 미국 4.5%, 태국 3.6%로 상위 5개국의 수입액 합계가 약 64.6%를 기록했다. 전년도의 64.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3-2-15〉 어종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합	계	2,895,495	3,458,400	4,191,944	3,974,627	△5.2
명	태	330,383	416,233	397,926	367,879	△7.6
새	우	188,273	217,184	271,530	278,917	2.7
조	기	110,780	150,927	162,631	126,745	△22.1
갈	치	98,202	107,986	110,641	107,349	△3.0
오	징 어	62,822	90,063	142,476	164,992	15.8
꽃	게	54,269	45,626	36,436	44,644	22.5
낙	지	118,480	154,129	194,527	174,911	△10.1
어	란	63,429	67,606	112,544	124,239	10.4
아	귀	57,597	82,664	100,045	66,294	△33.7
새	우 살	94,293	106,037	141,224	152,879	8.3
참	치	111,307	89,278	139,500	165,970	19.0
	돔	50,008	46,800	48,309	55,135	14.1
연	어	67,317	68,917	122,583	98,621	△19.5
문	어	9,339	9,556	11,111	25,734	131.6
	계	41,791	40,384	43,516	38,075	△12.5
캐	비 아	14,934	19,003	19,521	19,741	1.1
고	등 어	45,431	72,910	124,561	62,549	△49.8
공	치	46,198	46,178	62,678	62,102	△0.9
쥐	치	41,912	42,168	57,419	51,298	△10.7
대	계	29,702	23,213	41,951	60,805	44.9
기	타	1,259,028	1,600,863	1,850,815	1,725,748	△6.8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수산정책과 사무관 정기원

1. 수 급

2011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동향은 수입 감소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1.0% 감소한 5,918천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3,813천톤을 소비하였고, 1,466천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639톤은 2012년도 재고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연근해어업에서 1,235천톤, 천해양식어업 1,476천톤, 원양어업에서 511천톤 등 3,256천톤이 생산되었다. 국내 소비는 5.2% 증가했으며, 공급 부족분은 수입 2,059천톤과 전년도 재고량 603천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3-2-16〉 수산물 수급 동향

(단위: 천톤,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 급	생 산	2,714	3,032	3,275	3,360	3,182	3,111	3,256
	수 입	2,557	2,646	2,604	2,135	2,186	2,339	2,059
	전 년 재 고	531	512	575	618	567	528	603
합 계		5,802	6,190	6,454	6,113	5,935	5,978	5,918
수 요	국 내 소 비	4,169	4,568	4,625	4,280	4,071	3,624	3,813
	수 출	1,121	1,047	1,211	1,266	1,336	1,751	1,466
	차 년 이 월	512	575	618	567	528	603	63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 소 비

2011년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3.5kg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 현황

(단위 : kg/연간, %)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48.9	49.5	56.6	56.5	54.9	49.8	51.3	53.5
어	패 류	41.1	39.9	43.5	42.1	39.1	35.4	36.6	37.8
해	조 류	7.8	9.6	13.0	14.4	15.8	14.4	14.7	15.7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12)'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 현황

(단위 : g/1인당 1일, %)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46.66	45.43	48.14	48.46	46.71	46.46	47.32	49.23
축	산 물	26.61	26.29	27.39	28.59	28.30	29.94	30.17	31.11
어	패 류 (점유율)	20.05 (43.0)	19.14 (42.1)	20.75 (43.1)	19.86 (41.0)	18.41 (39.4)	16.52 (35.6)	17.15 (36.2)	18.12 (36.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12)'

3. 가 격


2012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어업의 조업 순조로 전반적으로 호조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갈치, 오징어, 미역 등의 생산량 감소로 수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미역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13.7% 감소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7.2% 상승하였다.

〈표 3-2-19〉 수산식품 소비자 물가 동향

(단위 : %)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소 비 자 물 가	83.8	86.1	88.1	90.3	94.5	97.1	100.0	104.0	106.3
수	산 식품 소비자 물가	74.6	75.7	76.2	76.3	80.5	89.9	100.0	108.5	111.2
신	선 어 개 류	74.2	76.2	77.1	75.8	80.0	88.3	100.0	108.7	110.5
해	조 류	76.8	78.5	81.0	83.5	91.8	97.9	100.0	107.1	124.7

주 : 기준연도(2010년) 대비 등락률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자료

2012년도 수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 중 명태, 고등어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오징어, 갈치의 경우 생산 부진 및 소비 확대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 폭이 커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1. 어황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강수경

◆ 해역별

2012년 1/4분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1~2℃ 낮은 수온이 지속되었으나,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나타난 고수온 현상(특히 서해와 동해)으로 멸치 등 몇몇 어류의 분포, 회유경로가 변경되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태풍에 의한 혼합현상으로 표층수온이 다시 낮아졌다.

해역별로 어황을 살펴보면 남해에서는 대형선망과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다. 봄철에는 저수온 현상에 의해 남해회유한 고등어 등의 난류성 어류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밀도 높은 어장을 형성하면서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으나,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대형해파리의 출현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여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가을 이후에는 서해와 제주해역에서 고등어의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평년 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멸치어업은 멸치유자망의 경우 평년비 부진하였으나, 기선권현망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형트롤은 살오징어, 갈치 및 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하였으며, 특히 남해하는 오징어를 어획하여 어획 비율이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유자망, 저인망어업이 참조기, 갈치,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다소 부진하였다.

동해의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상반기에는 전년 및 평년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하반기에 어획이 부진하여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하였다. 봄철 북상하는 꽁치를 대상으로 하는 꽁치유자망어업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은 가자미류, 도루묵, 대구, 청어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웠다.

◆ 어종별

고등어는 겨울~초봄 동안 저수온 현상에 의해 남하한 어군이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밀집하여 높은 어획이 보고되었으나, 여름철 이후 대형해파리의 출현 및 태풍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여 어획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가을 이후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멸치의 어획량은 남해동부해역 및 동해남부해역으로의 내유량 증가로 평년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최대 어획을 기록하였던 전년(2011년)도 어획량 29만톤에 비해 24% 감소한 22만톤을 기록하였다. 참다랑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주로 남해동부 및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어획되었으며, 평년비 118% 수준이었다. 말쥐치의 어획량은 2009년 가을부터 증가하여 2010년까지 높은 어획량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2012년은 어획이 부진하였다.

갈치의 경우 전반적으로 어획이 부진하였다. 갈치는 성어의 자원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미성어의 어획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자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기는 제주도 서방 및 서해남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비 부진하였으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살오징어는 1/4분기에는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동부해역에서 조업한 트롤어업에 의해 어획이 높게 나타났다. 이후 5~6월에는 북상회유를 시작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중부연안~울릉도 간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7~10월에는 동해 전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다. 8월 이후 본격적인 어기가 시작되면서 강원 연안에서 어장 밀도가 다소 높아져, 오징어채낚기의 어획은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오징어의 어획은 해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울릉도 해역의 어획은 전년비 매우 낮은 반면, 경북 해역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도루묵은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및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명태는 여전히 자원량이 낮아 향후 어획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원동향

❖ 연근해 어업자원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서영일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 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TAC 대상어종을 비롯하여 연근해 주요 40개 어종에 대해 생물학적 조사, 어획동향분석 및 자원상태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근해 자원상태는 1990년대 초에 비해 2012년에는 과잉노력상태였으며, 현재 어획노력량은 적정수준(1)의 1.5, 자원상태는 0.6으로 추정되어 어획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종별 자원수준(최근 10년간 자원상태)은 낮은 수준 15종, 중간 수준 18종, 높은 수준 7종이었으며, 자원동향(최근 5년간 자원변동)은 감소경향 16종, 평형상태 13종, 증가경향 11종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도 TAC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 보면 고등어, 살오징어, 도루묵, 꽃게, 키조개, 붉은대게, 소라는 중간 수준, 대게, 참홍어, 개조개, 전갱이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20〉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 평가

구분	기준	어종
자원 수준	낮음(15)	갈치, 전갱이류, 봉장어, 병어류, 복어류, 대게, 강달이, 참홍어, 전어, 개조개, 오분자기, 콩치, 쥐치류, 정어리, 명태
	중간(18)	고등어, 참조기, 삼치류, 눈볼대, 망치고등어, 보구치, 살오징어, 도루묵, 꽃게, 키조개, 낙지, 대구, 문치가자미, 붉은대게, 소라, 옥돔, 갯장어, 민어
	높음(7)	가오리류, 참다랑어, 대문어, 멸치류, 아귀류, 청어, 기름가자미
자원 동향	감소(16)	전갱이류, 병어류, 복어류, 망치고등어, 보구치, 참홍어, 낙지, 개조개, 소라, 옥돔, 오분자기, 갈치, 쥐치류, 정어리, 명태, 살오징어
	평형(13)	참조기, 삼치류, 봉장어, 눈볼대, 갯장어, 콩치, 대게, 강달이, 키조개, 전어, 민어, 문치가자미, 기름가자미
	증가(11)	고등어, 가오리류, 참다랑어, 대문어, 도루묵, 꽃게, 아귀류, 대구, 붉은대게, 멸치류, 청어

❖ 원양 어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최석관

원양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국제 지역수산기구가 규정한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원양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공동 자원평가를 통해 해역별 어업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각 해역별(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주요 다랑어류에 대한 자원상태를 살펴보면 눈다랑어는 모든 해역에서 남획된 상태는 아니지만 태평양해역에서 과도어획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황다랑어도 모든 해역에서 남획된 상태는 아니지만 대서양해역에서 남획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역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다랑어는 모든 해역에서 안전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칠레전갱이는 2012년의 어획수준 및 75% 수준으로 어획한다면 산란자원량 및 어획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저층어업 관련 어종(돛돔, 빛금눈돔 등)의 자원상태는 아주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 및 추정되고 있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까지 국제옵서버 38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12년에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11명이 총 18척 18회 승선 조사하였으며, 대상 어업은 남빙양 저연승 2회 및 트롤 1회, 인도양 저연승 2회 및 트롤 2회, 남동대서양 트롤 1회, 남서대서양 저연승 1회 및 트롤 3회, 오징어채낚기 어장조사 1회, 대서양 다랑어연승 2회, 인도양 다랑어연승 3회이었다. 국제옵서버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여 어업대상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 연안어장의 오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김영숙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면허면적은 총 139,811ha로서, 이 중 어류와 패류, 해조류, 그리고 우렁챙이 양식어장이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생산 수산물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최근 들어 양식산업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식생물의 성장 둔화와 원인 불명의 폐사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상해황의 발생과 양식어장의 자가오염 및 육상기인 오염원 증가 등에 의한 양식환경의 변동에 기인한다.

표 3-2-21과 3-2-22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의 양식어장별 해수의 오염현황을 연도별('09~'12)로 평가하여 나타내고 있다. 양식어장 해수 중 생태기반 수질평가 지수 값(WQI)을 8월 표층 값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 어장의 해양환경(수질) 상태를 산정하였으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표층수의 연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여 어장의 해수 유기오염 상태를 평가하였다.

〈표 3-2-21〉 우리나라 연안의 어장별, 연도별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분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WQI ≤ 33	69.6%(16/23)	57.1%(12/21)	66.7%(16/24)	74.4%(29/39)
34 ≤ WQI ≤ 44	21.7%(5/23)	14.3%(3/21)	20.8%(5/24)	20.5%(8/39)
47 ≤ WQI	8.7%(2/23)	28.6%(6/21)	12.5%(3/24)	5.1%(2/39)

〈표 3-2-22〉 우리나라 연안의 어장별, 연도별 해수의 유기오염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0 ≤ COD ≤ 1	39.1% (9/23)	47.6% (10/21)	58.3% (14/24)	51.3% (20/39)
1 < COD ≤ 2	56.5% (13/23)	42.9% (9/21)	41.7% (10/24)	28.2% (11/39)
2 < COD ≤ 4	4.4% (1/23)	9.5% (2/21)	0.0% (0/24)	20.5% (8/39)

※ COD의 단위는 mg/L, ()의 단위는 어장수를 나타냄.

2012년의 WQI는 33 이하인 ' 좋음'~'아주 좋음' 상태가 전체의 74.4%, 34~44인 '보통' 상태가 20.5%, 27 이상인 '나쁨'~'아주 나쁨' 상태가 5.1%를 차지하였다. 2011년 대비, ' 좋음' 이상의 상태는 7.7% 증가하였으며, '나쁨' 이하의 상태는 7.4% 감소하였다. COD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구 해역별 수질기준에 준하여 평가한 결과, 51.3%가 1 mg/L 이하인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1~2 mg/L

인 보통 상태는 28.2%로 나타났다. 2 mg/L 이상인 20.5%는 오염된 상태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유기오염 상태가 양호한 어장은 7% 감소하였으며, 불량한 어장은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적조 발생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한창훈

2012년 적조 발생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008년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이 남해에 광범위하게 고밀도로 발생한 것과 여름철 남해에 국한되어 발생하던 적조가 9월 초순 서해안으로 확산된 것, 그리고 여름에 국한되어 있던 적조가 가을인 10월에 남해안에서 재발생한 것이다.

여름철 남해에 광범위하게 적조가 발생한 것은 짧은 장마로 인한 적은 강수량, 일사량 증가, 고수온 등의 적조 호적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해안 적조 발생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해 남해안 적조가 서해로 유입되고 퇴적물에 있던 휴면포자가 교반에 의해 발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남해안에 가을 적조가 발생한 것은 태풍 산바에 의한 해수교반으로 영양염이 공급되고 일조량이 다른 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2012년 적조는 짧은 장마에 의한 일조량 증가와 태풍에 의한 확산 및 가을 적조의 발생 등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적조 발생에 따른 예보발령은 주의보 13회, 경보 4회였으며, 발생기간은 75일(7.27~10.24)로 남해안에서 7월부터 9월, 그리고 10월에 2차례에 걸쳐 65일간 발생되었으며, 서해에서 9월에 10일간 짧게 발생한 후 소멸하였다(표 3-2-23).

〈표 3-2-23〉 2012년도 적조 특보 발령 현황 및 적조 생물수

특보 종류	발령 날짜	발령지역	적조생물수 (개체/ml)	비 고
주의보(1)	7.30	남해 미조면~거제 일운면	40~1,510	
주의보(2)	8.3	남해 서측종단~남해 미조면	80~3,900	
주의보(3)	8.4	여수 돌산읍~남해군 서측종단	50~4,800	
주의보(4)	8.5	여수 화정면~거제 일운면	50~4,800	
주의보(5)	8.10	고흥 도화면~여수 개도	50~4,800	
주의보(6)	8.11	고흥 도화면~여수 화정면	10~4,800	
주의보(7)	8.18	완도 군외면~고금면	80~5,780	
주의보(8)	8.31	완도 고금면~남해 남면	80~5,780	
주의보(9)	8.31	통영 사랑도~한산면 추봉도	80~5,780	
경보(1)	8. 7	남해 서면~남해 남면	30~11,000	
경보(2)	8.11	여수 개도~남해 서면	10~4,800	
경보(3)	8.12	완도 고금면~여수 개도	20~4,800	
경보(4)	8.18	통영 사랑도~한산면	80~5,780	
주의보대체	8.31	고금면 상정리~남해군 남면	45~100	대체발령
주의보해제	9.5	완도 군외면~장흥 노력도	0~50	부분해제
주의보해제	9.6	전 해역(45일 지속)	0	전 해역 해제
주의보(1)	9.10	태안군 남면~보령시 원산도	120~480	
주의보해제	9.19	전 해역(9일 지속)	0	전 해역 해제
주의보(1)	10.5	여주시 개도~통영시 산양읍	1,110~8,500	
주의보(2)	10.5	여주시 개도~통영시 산양읍	1,110~8,500	
주의보(3)	10.7	고흥군 도화면~통영시 산양읍	50~12,000	
주의보해제	10.24	전 해역(19일 지속)	0	전 해역 해제

❖ 해파리의 대량 출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한창훈

2012년도 해파리 발생 특징은 중국 기원의 강독성 해파리로 분류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의 대량 유입과 전국 연안으로의 빠른 확산,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독성해파리(커튼원양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등)로 인한 쓰임사고 증가이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최초 5월 동중국해 북부 이어도 남단 해역에서 2011년 대비 7배인 4.2 개체/10000m²의 고밀도로 출현한 이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남해로 유입되었다. 8월에는 북상하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해 해파리들이 서해 및 동해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전 연안에서 대량 분포하게 되었다. 2012년 노무라입깃해파리의 평균 출현량은 약 2 개체/10000m²로 2004년 이후 네 번째로 높게 출현하였다(표 3-2-24).

해파리로 인한 쓰임사고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부산시 7개 해수욕장에서 2008년 123건에서 2012년 1,317건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또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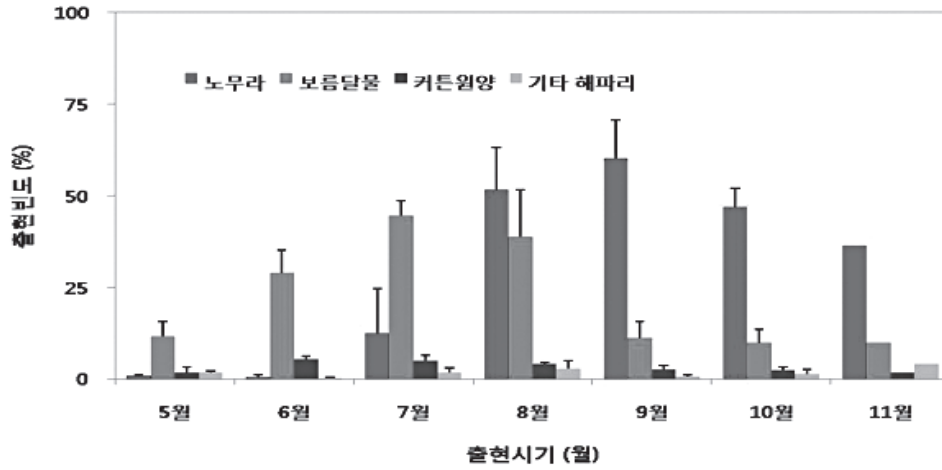
연안에서의 종별 해파리 출현빈도(%)는 국내 자생종인 보름달물해파리의 경우 5월부터 증가하여 9월에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외래유입종인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이보다 늦은 7월부터 증가하여 11월까지도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 외에 커튼원양해파리와 기타 해파리(작은부레관해파리, 라스톤입방해파리 등)은 조사 기간 내내 각각 0.5~5.3%, 0.2~4.0%의 낮은 출현빈도를 나타냈다(그림 3-2-1).

2012년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인한 경보는 주의보 4회, 경계경보 1회가 발령되었다. 이 중 노무라입깃해파리로 인한 경보는 총 3회로(경계경보 1회, 주의보 2회)로 전남, 경상남북도 전 해역에 걸쳐 발령되었다. ↻

〈표 3-2-24〉 동중국해·서해·남해 근해에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연도별 출현량(개체/10000m²)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현량	< 1	72	17	46	< 1	44	< 1	< 1	2

〈그림 3-2-1〉 2012년도 5~11월의 해파리 출현상황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최국일

1. 세계 수산물 생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10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168,893천톤으로, 2009년도의 162,847천톤보다 6,046천톤(3.7%)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보다 26% 증가한 63,492천톤을 생산,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Indonesia)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11,603천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India)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9,348천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페루, 러시아, 미얀마, 칠레, 대한민국 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도의 3,200천톤보다 76천톤(2.4%)이 감소한 3,124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1.8%를 점유하며 세계 12위를 차지하였다.

〈표 3-2-25〉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단위 : 천톤, %)

순 위	국 가	2008	2009	2010	2010/2009
1	중 국	57,826	50,472	63,492	126
2	인도네시아	8,794	9,798	11,603	118
3	인 도	7,583	7,845	9,348	119
4	일 본	5,541	5,194	5,292	102
5	필 리 핀	4,968	5,079	5,158	102
6	베 트 남	4,584	4,833	5,128	106
7	미 국	4,855	4,710	4,874	103
8	페 루	7,419	6,964	4,354	63
9	러 시 아	3,510	3,950	4,197	106
10	미 안 마	3,169	3,545	3,913	110
11	칠 레	4,809	3,703	3,762	102
12	대 한 민 국	3,351	3,200	3,124	98
세계 총 생산량		159,113	162,847	168,893	104
비 율	한국 / 세계	2.1	2.0	1.8	

자료 : FAO yearbook 2010 : World fisheries production, by capture and aquaculture, by country (2010)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세계 어업과 양식 총 생산량(해조류 제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억4,850만톤에 달하였다. 어업생산이 2001년 이후로 9천만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양식생산은 6.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3,460만톤, 2010년에는 5,990만톤을 기록하였다. 2010년 양식생산액은 1,194억달러로 추산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멸치류이나 전년 대비 39%가 감소했다(2009년 690만톤, 2010년 420톤). 그다음으로 많이 어획된 어종은 알래스카 명태, 가다랑어, 대서양 청어, 고등어 순이다. 대서양 대구는 주요 조업종들 중 10위를 차지했는데, 이 순위는 1998년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대구목(대구, 남방대구, 해덕)은 지난 3년간 어획량이 200만톤 정도 감소하면서 크게 감소 추세를 나타냈는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주요 상업종으로 조업되는 어종 중 다랑어와 새우는 생산량이 안정적이며, 생산량의 변화가 큰 두족류는 2009년에 감소한 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세계 총 어업생산량은 약 1.1% 감소하였으며, 이는 멸치류의 어업생산량이 270만톤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멸치류를 제외한 다른 해면 종들은 생산량이 90만톤 증가했으며, 2010년 내수면 어업 총 생산량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나온 통계치가 근사치이긴 하지만 1,120만톤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양식업은 1980년대 10.8%, 1990년대 9.5%로 연평균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엔 6.3%로 완화된 성장률을 보였다.

2010년 세계 양식생산물 중 내수면 어류는 56.4%(3,370만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동물이 23.6%(1,420만톤), 갑각류 9.6%(570만톤), 회유성어류 6.0%(360만톤), 해면 어류는 3.1%(180만톤), 기타 수생동물이 1.4%(814,3천톤)를 차지했다. 잉어류는 전체 양식생산량 중 40.5%를 차지했다. 단일 종으로는 초어(Grass carp)가 430만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흰다리새우는 113억 달러로 가장 높은 생산액을 차지했다.

2010년 해조류 등 수산식물의 생산은 1,990만톤으로, 이 중 1,900만톤(95.5%)이 양식으로 생산되었으며, 2010년 양식 조류 중 다시마(Japanese kelp)가 510만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자료 : FAO yearbook 2010 : OVERVIEW – MAJOR TRAND AND ISSUES

2. 세계 수산물 교역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10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109,374백만달러로 2009년도 수출액 95,961백만달러에 비해 13.9%가 증가하였다. 나라별 수출 추이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29% 증가한 13,254백만달러로 1위, 노르웨이가 8,819백만달러로 2위, 태국이 7,127백만달러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349백만달러보다 18% 증가한 1,597백만달러로 22위에 머물렀다.

〈표 3-2-26〉 세계 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2008	2009	2010	2010/2009
1	중 국	10,114	10,246	13,254	129
2	노 르 웨 이	6,937	7,073	8,819	125
3	태 국	6,532	6,236	7,127	114
4	베 트 남	4,550	4,301	5,108	119
5	미 국	4,463	4,145	4,661	112
6	덴 마 크	4,601	3,981	4,183	105
7	캐 나 다	3,706	3,240	3,847	119
8	네 덜 란 드	3,394	3,138	3,557	113
9	칠 레	3,930	3,606	3,401	94
10	스 페 인	3,465	3,143	3,310	105
:					
22	대 한 민 국	1,287	1,349	1,597	118
총 수출량		101,897	95,961	109,374	114
비율	한국 / 세 계	1.3	1.4	1.5	

자료 : FAO yearbook 2010 : International trade in fishery commodities by principal importers and exporters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111,313백만달러로서 전년에 비하여 11.6%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15,496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1위, 일본이 14,891백만달러로 2위, 스페인이 6,512백만달러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2,693백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3,191백만달러로 18% 증가하여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

〈표 3-2-27〉 세계 수산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2008	2009	2010	2010/2009
1	미 국	14,952	13,858	15,496	112
2	일 본	14,947	13,258	14,891	112
3	스 페 인	7,101	5,908	6,512	110
4	중 국	5,143	4,976	6,157	124
5	프 랑 스	5,836	5,579	5,975	107
6	이 탈 리 아	5,453	5,060	5,419	107
7	독 일	4,502	4,571	5,026	110
8	영 국	4,222	3,594	3,714	103
9	스 웨 덴	2,531	2,765	3,317	120
10	대 한 민 국	2,928	2,693	3,191	118
	기 타 국	40,189	37,583	41,615	110
	총 수입량	108,033	99,694	111,313	112
비율	한 국 / 세 계	2.6	2.6	2.7	

자료 : FAO yearbook 2010 : International trade in fishery commodities by principal importers and exporters



제4편 2012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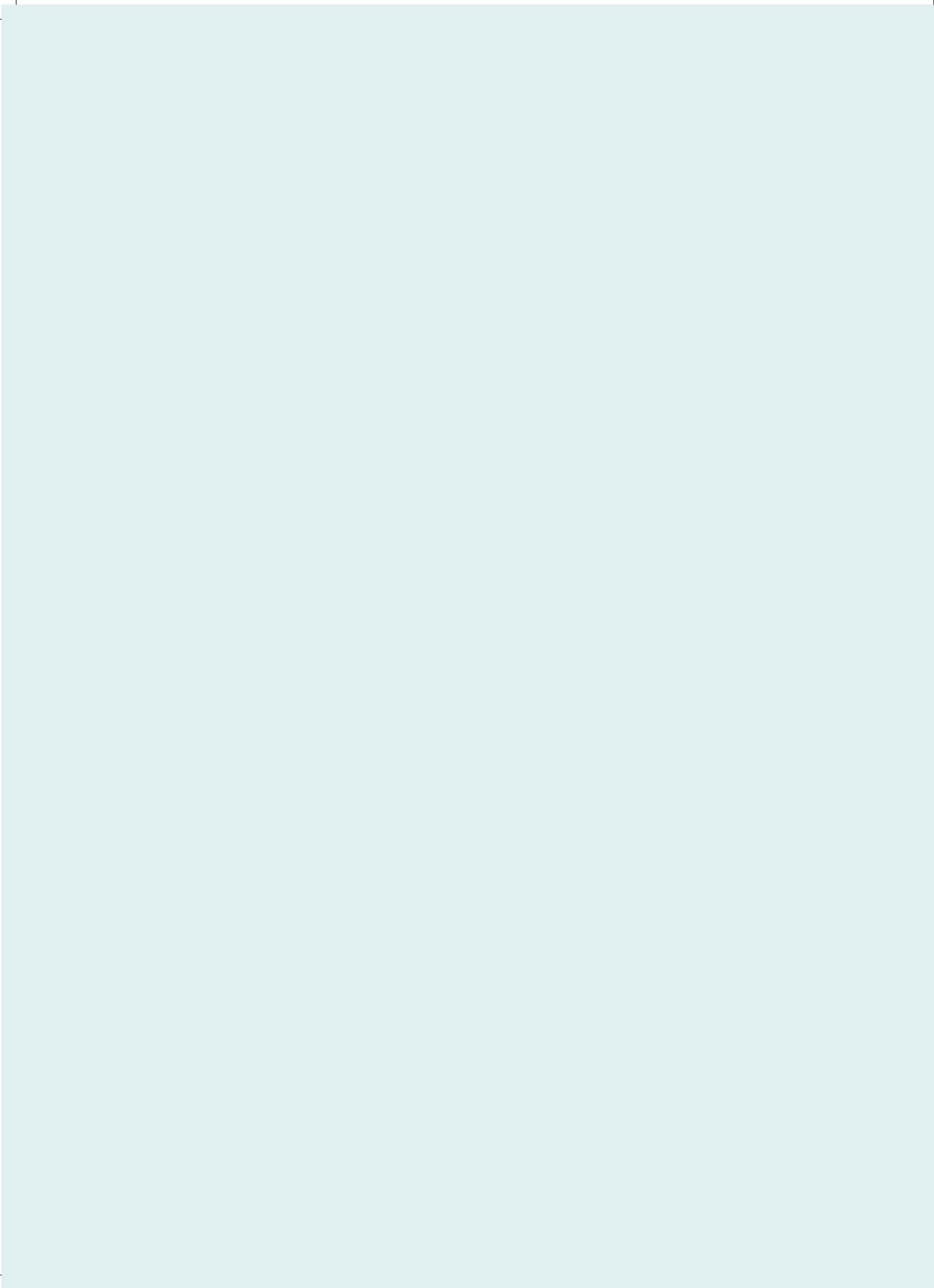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4장 어가경영안정·소득증대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제1장 총론

수산정책과 사무관 지정훈

◆ 서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물국으로 도약하며,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1996년 11월)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1998년 11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 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 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쿼터를 점차 줄여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 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11월 출범한 WTO-DDA 협상에서는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대폭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17% 수준인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도 DDA 협상 결과 약 6%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호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와 맞물려 수산물 관세는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및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2년 리우(Rio)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선진국 중심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규정한 교토 프로토콜이 발효된 2005년 이후에는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제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산화탄소를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로 간주하는 등 온실가스에 대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론의 여지없이 확실한 환경문제로 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업 중 어선어업은 산업 특성상 유류 소비가 많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적으로도 그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 오염의 심화,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그동안의 자원 관리 노력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감소세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다소 회복 추세에 있다. 수산자원량은 지난 1984년 920만톤에서 2004년 767만톤까지 줄었다가 2009년 831만톤, 2010년 835만톤, 2012년 860만톤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어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며,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증감 등 어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출현과 갯녹음 발생, 고수온 피해 등은 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참다랑어 등 고가의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은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 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 친환경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이력제' 확대, 낚시산업 활성화, 어업허가 관리시스템 개선, 자원관리형 감척 및 어업선진화 시행기반 구축, 중국 불법 어업 근절 노력,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

OECD, FAO에 의하면 2011~2020년 세계 수산물 가격은 자원 고갈, 사료값 상승 및 양식 적지 부족 등으로 2001~2010년 대비 명목가격이 35% 상승하는 등 Fishflation을 경고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이 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 수급관리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한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수산물 소비량 증가 속도가 생산량 증대보다 빨라 수산물 자급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급률을 2015년 78%, 2020년에는 83%까지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여부도 식량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을 포함하는 '수산 자주율' 지표를 도입하여 2015년 84%, 2020년에는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수산 자급률 표시 방법은 식량 자급률의 대표지표로 활용되는 중량(물량) 기준 자급률을 도입하였고, 부류별(어류, 패류, 해조류) 지표와 업종별(연근해어업, 양식, 원양어업)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낚시산업 · 서비스 선진화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통한 낚시산업 활성화 추진

수산업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낚시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 5일제 확대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 · 레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 레저활동인 낚시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낚시인구는 1995년 325만명에서 2010년 652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2년 3월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2016년까지 782억원을 투자하여 낚시산업 · 서비스의 선진화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낚시인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쾌적한 낚시공간 확대, 민간 주도의 낚시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미래 세대도 즐길 수 있는 낚시환경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이 있다. 이번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낚시산업이 발전하고 쾌적한 낚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더 많은 낚시인이 낚시공간을 찾음으로써 어촌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업허가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온 어업허가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이 2012년 7월 발

표되었다. 1953년 도입된 어업허가제도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1994년 어선감척사업 이후 특권화, 이권화되는 추세다. 특히 어업허가증을 위·변조하는 등 어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어업을 하는 자가 오히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고 그와 동시에 IC카드가 부착된 첨단 전자허가증을 발급하며, 상습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영구퇴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53천여척의 어선에 발급된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 및 갱신하여 왔고, 일일이 종이로 허가증을 발급하여 허가 갱신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었다. 동시 어업허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어업인에게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동시 허가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어업허가 일제 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허가증은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관리형 감척 및 어업선진화 시행기반 구축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공포됨에 따라 연근해 분야의 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었다. 1994년 이후 추진된 어선감척이 어업인 희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의 참여가 저조한 점 등 감척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원남획형 어업 및 수산관계법령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 정부 직권으로 감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원관리형 감척에 불응할 경우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업시행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감척 지원금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다.

◆ 중국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한·중 고위급 회담 개최

2012년 10월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2013년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② 중국어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③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중국어선을 감축하여 2013년도 한·중 양국어선이 모두 6만톤, 1,600척으로 등량·등척(等量·等隻)을 실현하게 되었다. 불법 어업과 관련하여 엄중 위반 행위 어선 단속·처벌 강화, 양국 단속기관 간 핫라인 구축 및 단속공무원 교차 승선 확대 등 불법 조업 예방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정선명령 불응 등 도주선박의 구체적인 채증자료를 제공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집단으로 폭력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의 처벌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수산고위급회담에서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상호 입장을 조율하여 공동대응하고, 한국산 조미김 통관규정 완화 등 수산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 수산연구소 내에 수산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및 서해 유해생물 공동조사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 후, 정부 차원에서 수산연구기관의 연구협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선진화위원회 활동 추진

시장개방 등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협·대학·연구기관·수산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9월 26일 출범하여 12월 26일까지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12월에 정부에 건의하였다. 수협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은 i)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조직으로 전환 ii) 신용사업 부문은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여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기능 정상화 iii)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확대 및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경제사업 부문은 위판·공판 중심에서 유통·판매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판매사업 인프라를 확충하며, 신용사업 부문은 2014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향후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되, 수협은행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리하고 수협법상 특수은행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문을 토대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 조세특례, 은행법 등 관련 운영특례, 예산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어업인의 날 부활

39년 만에 ‘어업인의 날’을 부활하여 매년 4월 1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어업인의 날은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제정되었으나 1973년 ‘권농의 날’과 통합되었고, 1996년 ‘농어업인의 날(11월 11일)’로 변경되었다가 구 해양수산부 출범 후 1997년 ‘바다의 날(5월 31일)’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 왔다. 2012년 3월 30일 개최된 ‘제1회 어업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여 훈장 2, 산업포장 3,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9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산업의 위상 정립과 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5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 자원관리과 사무관 주두만 · 김덕균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대내외 수산업 여건은 동북아 EEZ 체제 개편에 의한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전통적인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자원남획으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과잉어획,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나, 꾸준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원회복사업 노력에 힘입어 2002년을 저점으로 수산자원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과잉어획이 계속될 경우 회복세가 둔화되고 수산자원의 감소도 우려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적정생산 가능량을 추정하고 회복 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자원 조성, 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로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 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방자치단체·어업인·학계 등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회복 대상 자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별 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적계획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고 수산자원회복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2009.4.22, 시행일 2010.4.23) 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0.4.23)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5.31)을 제정하였다.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 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특),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참홍어(서해),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등 3개 어종을 추가, 2008년에는 말쥐치(남해), 기름가자미(동해), 개조개(남해) 등 3종, 2009년에는 갯장어(남해), 갈치(남해) 등 2종을 추가했으며, 2012년에는 고등어, 대문어(동해), 옥돔(제주) 등 총 15종으로 대상 어종을 확대하였다.

한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제시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해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발전·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 어획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 여건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 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다. 2012년도 TAC사업은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참홍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409천톤의 TAC를 정하여 12개 업종에 약 866여 척(통), 100개 어촌계가 참여하였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배분량의 할당은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서 어선별로 할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판매장소를 121개소로 확대하였고, 고등어, 전갱이 등에 대해 자원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변동에 적극 대응하며, TAC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시도에는 TAC 경영개선자금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하여 TAC제도의 정착 및 어업인의 참여의식이 고취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 4-2-1〉 2012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톤)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	비고
합 계		408,900	
대 형 선 망	고 등 어	135,000	
	전 갱 이	17,300	
근 해 통 발	붉 은 대 게	38,000	
근해통발·근해자망	대 계	1,500	
잠 수 기 어 업	개 조 개	2,310	
	키 조 개	6,400	
마 을 어 업	제 주 소 라	1,300	
연근해자망 및 통발	꽃 계	14,900	
근해채낚기·대형선망 대형트롤·동해구트롤	오 징 어	189,000	
동해구기저·동해구트롤	도 루 목	2,990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	참 흥 어	200	

◆ 바다목장 조성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완공되었고, 2001년도 추진한 여수 바다목장은 2010년까지 총 307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에 완공되었다. 2013년까지 3개소(울진, 태안, 제주)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관광·레저를 접목한 해역별 테마형 바다목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이 시작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

개소에 대하여 2011년에는 174억원, 2012년 161억원, 2013년 2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조성되는 동해와 제주 바다목장은 2010년부터 체험관 건립, 수중해양 공원, 바다체험장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연안 시·군·구 68개소 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50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2011년까지) 20개소, 2단계(2012~2020년까지) 30개소 등 총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2012년 26개소에서 2013년 보령, 울릉, 당진, 강원 고성 4개소가 신규 사업지로 추가되어 총 30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 바다숲 조성

2009년도부터는 갯녹음(백화) 현상이 발생한 동해안과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복원함은 물론, 탄소 저감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조류를 녹색성장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연안암반에 무절석회조류 등이 번식하여 해조류가 서식하지 못하거나 생장을 저하시키는 갯녹음 발생 면적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연안 마을어장 암반지역 35,000ha에 대하여 갯녹음 발생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04년 6,954ha였던 갯녹음 발생 면적이 2010년에는 14,317ha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갯녹음이 진행되면 수산생물의 서식 기반 붕괴로 어업생산성이 감소하고, 어장의 황폐화가 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자 2012년까지 38개소에 1,946ha를 조성하였고, 2030년까지 35천ha의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 4-2-2〉 바다숲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추진실적					2013	2030까지
	계	2009	2010	2011	2012		
면 적(ha)	1,946	121	250	715	860	1,337	35,000
사업비(억원)	538	100	150	129	159	198	2,374

❖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71년부터

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건설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 보전과 기능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사업비 42,811백만원을 투입하여 약 3,182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약 204,372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 상태 확인 및 폐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와 인공어초 시설가능구역의 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2-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단위: ha)

구 분	1971~2011	2012	누 계
합 계	213,637	3,182	216,819
부 산	2,834	64	2,898
인 천	11,264	276	11,540
울 산	2,458	4	2,462
경 기	5,304	180	5,484
강 원	23,270	204	23,474
충 남	17,871	352	18,223
전 북	15,197	368	15,565
전 남	43,485	244	43,729
경 북	23,344	192	23,536
경 남	36,837	478	37,315
제 주	31,773	820	32,593

◆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종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였으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꾀해 2009년부터 56종(해면 43종, 내수면 13종)으로 품종을 확대 시행하여, 2012년도는 61종(해수면 46종, 내수면 15종)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산종묘방류 총사업비의 10%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방류 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 유무 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 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1단계('07~'09/넙치 등 4종)로 실시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 결과 넙치 2.61배, 전복 2.97배, 볼락 3.8배, 다슬기 1.6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단계는 2010~2012년까지 감성돔, 강도다리, 꽃게, 해삼을 대상으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종묘방류효과조사 및 대상 품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주요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 전문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은 전문성이 강화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출범(2012.1)하였으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연구·개발·보급 등의 기능을 더욱 체계화시킨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 유어산업 육성(자원관리과)

■ 자원환경과 사무관 홍근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 선용 기회 확대로 국민들의 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적 레저산업인 낚시 역시 그 향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약 573만명(민물낚시 378

만명, 바다낙시 195만명)으로 추정되는 낙시인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어업인들의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적 산업으로서 낙시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4-2-4〉 국내 낙시 인구 현황

(단위: 천명)

구분	계	1년에 한두 번	1년에 서너 번	1년에 대여섯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남 자	4,393	1,403	833	1,096	700	281	80
여 자	1,343	741	249	215	87	31	20

자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낙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년)

낙시산업의 중요성 확대와 더불어 낙시산업으로 인한 위험 관리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낙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낙시로 인한 어획량 역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여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쓰다 남은 납추,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낙시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다 꾸준히 낙시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4-2-5〉 낙시 행위에 의한 조획량(추정)

(단위: 천MT, %)

구분	추정인구수(천 명) [A]	평균출조횟수/년 [B]	총출조횟수(천회) [C]	1회당조획량(kg) [D]	조획량(톤) [E]
잠재낙시인구	3,222	3.5	11,277	2.2	24,809
일반낙시인구	2,097	25	52,425		115,335
전문낙시인구	411	100	41,100		90,420
총 낙 시 인 구	5,730	128.5	104,802		230,564

자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낙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년)

◆ 추진 내용 및 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낙시 및 낙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낙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낙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낙시를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연계하고자 「낙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제정·시행(12.9.10)되었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낙시제한기준의 설정

낙시인구가 늘어나고 낙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잡을 수 없는 시기나 크기 등을 제한하였다.

◆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낙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낙시도구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낙시인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낙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의 도입

무분별한 낙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낙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낙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제도 도입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인의 안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낙시 및 낙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낙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낙시 관리 및 육성법(’12.9.10 시행)」)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13)하여 낙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3. 내수면 산업 육성

■ 양식산업과 사무관 민병주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양식수산물의 양식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HACCP)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 남획과 수질오염, 골재 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어류가 멸종 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낙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활동의 공간으로서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 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업화 및 휴식공간으로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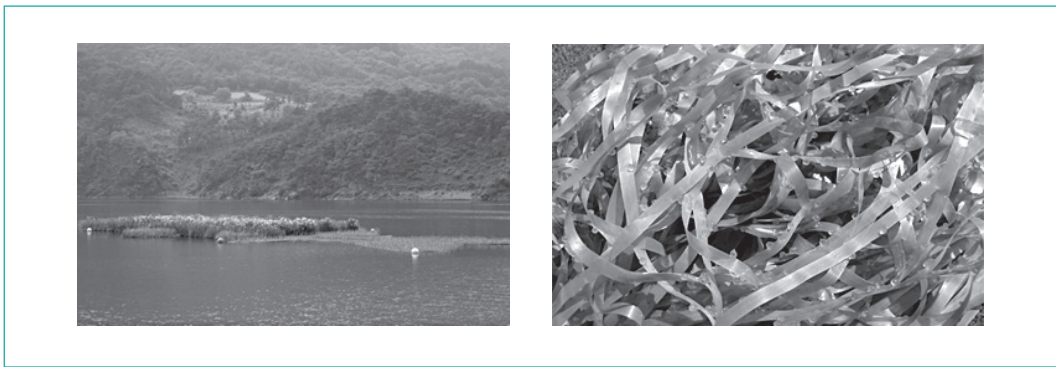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으로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청정자원생태장 조성 지원, 국가 어도종합시스템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어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 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2012년에 4개도 12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 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괴산군 칠성면 사읍리(괴산댐)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 청정자원생태장 조성 지원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교육이 가능한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경상남도 거창군에 토속어 및 관상어를 이용한 전시·체험시설 등을 건립하였다. 이는 수산자원의 중요성 제고와 자연학습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어도종합시스템 구축

하천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보(洑), 댐과 같은 수리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은어, 연어, 뱀장어 등

주요한 내수면 수산자원이 이동 및 산란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유용 가치가 높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복원을 위하여 어류 생태통로(어도, 魚道)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개정(12.5.23) 및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뱀장어와 은어 소상이 활발한 충남 보령 대천천과 경남 산청 덕천강에 각각 2개소의 어도를 설치하였다.

〈그림 4-2-2〉 대천천(보령)과 덕천강(산청)의 어도 설치 현장



보령 대천천 어도 설치 현황

산청 덕천강 어도 설치 현황

◆ 평가 및 향후 계획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이어져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향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대국민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내수면 생태목장을 조성하는 등 내수면어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도는 개선하여 어업인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유통가공과 사무관 강거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바람을 타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소비도 증가하여 조리가 간편하고 편리한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고급화·다양화된 건강 지향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품질의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으로서 수산물 가공업계의 경영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WTO-DDA 체제 출범 및 FTA 확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양한 수산가공품의 공급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의 보급 및 현대화를 통하여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국내 수산물 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자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56개소, 147억원)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수산물처리저장시설(7개소, 65억원) 및 수산물공동가공시설(2개소, 47억원) 등 총 65개소에 대해 국고 259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 소비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도 총 7개소에 168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표 4-2-6〉 2012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단위: 억원)

지역	사업개요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이후
합계	9개소	1,522	9,734	8,759	14,360	16,750	34,847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09~'10)		500	1,150	-	-	-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08~'11)	1,522	3,250	1,000	5,350	-	-
여수	수산물종합센터('09~'13)	-	1,984	2,000	2,000	5,000	3,516
영광	염산항화도바다매체타워('09~'13)	-	500	1,000	1,000	1,500	1,000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09~'12)	-	500	1,000	1,000	2,450	-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10~'15)	-	-	250	1,760	1,000	4,490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12~'14)	-	-	-	-	300	9,450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	-	-	-	250	4,500	7,750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09~'15)	-	3,000	2,359	3,000	2,000	8,641

그리고 우수한 수산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을 10개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 말 기준 친환경 수산물을 17,128톤 출하함으로써 식품 안전성과 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다.

〈표 4-2-7〉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출하 실적

구 분	인증 및 출하 실적		
	2011년	2012년	증(Δ)감
인 증 건 수 (건)	47	62	15
인 증 업 체 (개 소)	37	53	16
인 증 품 목 (개)	7	9	2
출 하 실 적 (톤)	19,232	17,128	Δ2,104

* 인증 대상품목(15개):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굴, 홍합, 전복, 흰다리새우,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조미김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성별고꼬막, 완도전복, 기장미역, 장흥키조개, 완도넙치 등 15개 품목이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4-2-8〉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012년 말 기준)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명칭	등록자
제1호	2009. 2. 25	보성벌교꼬막	보성벌교꼬막영어조합법인
제2호	20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제3호	20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제4호	20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제5호	20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6호	20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7호	20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제8호	2010. 8. 20	완도김	완도김영어조합법인
제9호	2010. 8. 20	완도넙치	완도넙치영어조합법인
제10호	2011. 1. 18	장흥김	(사)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
제11호	2011. 5. 13	장흥매생이	(사)정남진장흥매생이생산자협의회
제12호	2012. 2. 28	여수굴	여수굴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제13호	2012. 8. 27	남원미꾸라지	(사)남원추어산업협의회
제14호	2012. 8. 27	고흥미역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협회
제15호	2012. 8. 27	고흥다시마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협회

아울러 인증마크의 혼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2012년 1월 1일부터 인증 표지를 사각형의 도장 모양 표지(logo)로 단일화하였으며, 등록 및 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산물가공업을 「식품산업진흥법」 등을 개정하여 2012년 7월 22일부터 신고제로 일원화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개발, 우수 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의 확대 및 수산물 지리적표시품의 발굴 등 수산물 인증·표시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 수산물 수출 진흥

통상무역협력과 서기관 이병웅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제적으로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아시아권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어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수산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보면 WTO 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 체결 등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 수산물 소비 증가 등의 여건하에 놓여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는 수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625억원을 투·융자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340억원을 저리로 151개 업체에 융자하여 1,018백만달러의 우수 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9회, 로드쇼 3회, 판촉전 1회를 개최


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계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계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 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 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 광고 등을 위하여 4.4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56대의 기기 구입비 3.5억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 계획을 수립, 2009~2013년까지 1,421억원을 투자 목표로 2012년에는 토목공사비 등 240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 Import Quota)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쿼터 미소진분 재분배,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소진 등 통상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물 수출은 수산물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추진 및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반영 등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2.3% 증가한 23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2년 농림수산물 총수출은 80.1억달러이며, 이 중 수산식품 수출은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금액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3년부터는 중화권·ASEAN 등 급증하는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 자원관리과 사무관 김도순

◆ 추진 배경 및 개요

연안생태계 및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1975년부터 경남·전남·충남 등 10개만 (21개 시·군) 3,230km²(육지부 368, 해면부 2,526, 내수면 336)에 해면과 인접한 육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후 38여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2006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2012년 말 현재 육지부 중 71%인 895 km²를 해제하였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완화, 국가·지자체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표 4-2-9〉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현황(2012년)

(단위: km²)

구 분	계	해수면			내수면
		계	육 지	해 면	
지 정	4,185	3,849	1,263	2,585	336
조정 후(%)	3,230(77%)	2,894(75%)	368(29%)	2,526(98%)	336(100%)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존 개발 위주의 정책 방향에서 환경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규제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 자원관리과 사무관 신동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때 어업인의 경쟁적 조업과 함께,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 회복에 한계가 있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이 곤란한 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장과 자원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시범사업 당시 63개소였으며,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시행 11년차인 2012년 참여공동체수가 989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 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심화 단계로 도약하였다.

〈표 4-2-10〉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단위: 개소,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동체(개소)	659	758	863	932	989
마을어업	341	391	438	465	490
양식어업	78	80	85	89	96
어선어업	115	135	156	175	183
복합어업	102	124	143	153	165
내수면어업	23	28	41	50	55
참여어업인(명)	50,728	56,100	60,902	63,860	66,410

❖ 추진 내용 및 성과

❖ 육성사업비 지원

2012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우수 공동체 선정결과 183개소에 23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육성사업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율관리어업 분쟁 조정

자율관리어업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 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여 2012년까지 29건의 분쟁을 해결, 자율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규 공동체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의 지도·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의 민간컨설턴트(17명)를 위촉하여 공동체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동체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유통·가공·관광 등 전문 분야의 컨설턴트(20명)로 하여금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 다각적 교육·홍보활동 전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차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2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국지도자협의회 활동(2회), 지방수산사무소 중심의 지역단위 현장집합 교육, 우수 공동체 견학 및 미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 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 선진국(이탈리아, 태국, 중국)의 어촌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매달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발행과 전문지 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근 3개년('09~'11)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9년 1,189백만원, 2010년 1,226백만원, 2011년 1,277백만원으로 소득이 매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산자원 회복에 따른 어획량 증가, 일정 크기 이상 채포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및 공동판매 등을 통해 어가소득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다 낚시터, 체험어장 운영 및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축제 행사 등 어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어업 외 소득도 증대되었다.

〈표 4-2-11〉 2012년까지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억원)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		932	25	43	20	32	82	17	82	44	271	91	177	48
육성사업	지원수	1,222	31	45	30	39	137	22	95	84	329	131	203	76
	사업비	1,452.9	33.4	53.2	30.3	47.9	152.5	15.8	136.1	106.8	398.6	168.1	234.1	76.1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책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참여 어업인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분쟁도 조정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숙 단계에 들어서 자율관리어업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마을어업공동체 중심으로 어업인의 약 50%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선어업이나 복합어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 참여율을 전체 어촌계의 60% 수준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 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 사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다.

3.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정상화

■ 수산정책과 사무관 하두식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협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선 수협이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305억원의 무이자융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부실 규모('00 기준 △3,860억원)에 비해 과소한 자금 지원과 수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부실이 증가('01 기준 △5,370억원)하는 등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일선수협의 부실 원인과 규모 등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체 97개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실사('02.11~'03.4)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61개 조합을 예비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중 자체 회생 의지를 보인 10개 조합과 상호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전남서부수협을 제외한 50개 조합에 대해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47개 조합과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후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3개 조합에는 통폐합을 위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부실 수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조합의 추가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6973호, '03.9.3)을 제정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6,820억원(경영개선자금 3,483억원, 구조개선자금 3,337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경영정상화 대상 61개 조합 중 41개 조합이 정상화(순자본비율 0% 이상)되었다.

그리고 순자본비율은 2009년 말 흑자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2.8%를 달성하였으며, 미처리결손금도 2002년 8,419억원이었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11년부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2012년에는 1,152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달성하였다.

〈표 4-2-12〉 일선수협 순자본비율 및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02	2005	2010	2011	2012
순자본비율	△6.3	△2.3	2.0	2.6	2.8
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8,419	△6,284	△405	804	1,152

자료 : 수협중앙회

또한 2012년에 28개 적기시정조치 수협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위판금액 증가, 부실채권 회수 등으로 경영이 개선되어 경기남부, 고흥군, 군산시, 서남구기저, 영덕북부, 울릉군 수협 등 6개 조합이 권고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상승하였으며, 강원고성, 해남군 수협은 요구조합에서 권고조합으로, 장흥군수협은 명령조합에서 요구조합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추자도수협은 조기 재고자산(33억원)의 손실처리에 따라 권고조합에서 요구조합으로 하락하였으며, 경북어류수협은 구매미수금 건전성 악화(3억원 손실)로 요구조합에서 명령조합으로, 서산수협은 대출금 건전성 악화(68억원 대손상각)로 정상조합에서 권고조합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협 경영정상화를 통해 순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미처리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등 일선수협의 경영 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부실수협이 감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실 및 부실 우려 수협에 대해 경영 상태에 따른 실질적 이행목표를 부여하고 상시 경영 지도를 강화할 경우 일선수협이 조기에 경영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부실수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상조합의 경영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실 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어업정책과 사무관 최경삼

◆ 추진 배경 및 개요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 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조 5,816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7,922척을 감척한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어선세력은 어업자원량에 비해 15% 정도 과도한 실정에 있다.

수산동식물의 주 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감척사업으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5,582억원을 투입하여 연안어선 15,305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3,792억원을 투입하여 1,309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 1,308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국제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어업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인 반면, 감소세에 있던 어업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1994년 이후 적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연근해어선척수 : ('00) 68,629척 → ('12) 47,955척으로 30.1% 감소

* 자원량(만톤) : ('90)835 → ('94)801 → ('00)768 → ('05)783 → ('11)860 → ('12)860

* 어획량(만톤) : ('90)154 → ('94)149 → ('00)119 → ('05)110 → ('11)124 → ('12)109

척당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17.3M/T이었으나 2012년에는 22.7M/T로 31.2% 증가하였으며, 척당 어로수입은 2000년도 3,39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8,240만원을 기록, 243%로 대폭 증가하였다.

* 척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척당 생산량 : ('00) 17.3M/T → ('12) 22.7M/T

• 척당 어로수입 : ('00) 33.9백만원 → ('12) 82.4백만원

◆ 평가 및 향후 계획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5,816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7,922척을 감척하였으며, 감척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척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어선세력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연근해어선을 지속적으로 감척해 가는 한편,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정감척을 통해 어업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11.7.26)에 따라 어선감척, 어업종류의 통합·변경, 어선현대화사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4-3-1〉 감척 필요 어선 척수

(단위: 척)

구분	어선척수(2012년 잠정)	적정어선척수	과다 어선척수	
			건수	비율(%)
합계	45,853	39,903	5,950	14.9
연안어업	43,011	37,562	5,449	14.5
근해어업	2,842	2,341	501	21.4

* 연구용역 : 연안어선('10. 군산대), 근해어선('07. 전남대), 구획어업(2,397척) 및 어장관리선(17,737척)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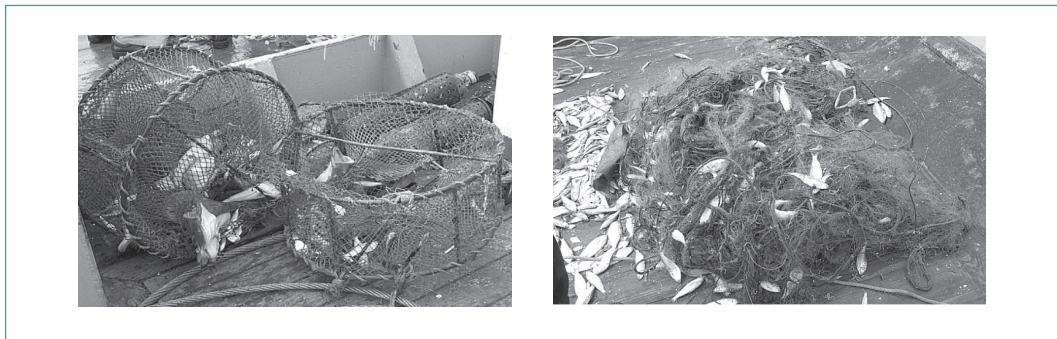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 어업정책과 사무관 고경만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선척수는 48천여척이다. 이 중 자망·통발어업의 어선척수는 전체 어선의 40%인 20천여척으로 연중 조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14,000여톤의 어구를 소비하고 있다. 자망·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 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구 유실률이 매우 높다.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서 수산생물의 서식장 및 산란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3-1〉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이에 페어구·페어망에 의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에서 수백 년 후에 분해되는 나일론 재질의 어구 대신 수중에서 빨리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를 개발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기존 나일론어구 대신에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어구가 가격의 일부를 지원(국비 70%, 지방비 30%)해 주는 것으로,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어업인들의 친환경 의식 제고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표준단가와 나일론어구 표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기존 나일론어구 가격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게자망 어선 150척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43억원을 지원하여 대게자망, 붕장어 통발 어선 등 350척으로 생분해성어구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사업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켰으며, 어구의 성능 검사 및 인증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어업인 참여율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대상어종별 생분해성어구 13종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어획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어구와 어획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 억원, 척)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투자계획	20	43	39	40	43	43
생분해성어구 사용 척수	150	212	252	263	347	350

◆ 평가 및 향후 계획

생분해성어구의 어획성능은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어구와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년 정도 지나면 해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어장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보호 및 유령어업 발생 저감으로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여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수중에서 완전 분해되므로 폐어구 수거 및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방사, 편망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제망업계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정책과 사무관 양정규 · 이세오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어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및 어린고기 보호, 혼획 저감장치 개발 등 어종별 관리방식에 의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해역별 해양환경특성에 적합한 연안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비 탄소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실태 파악 및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는 정치망, 낚장망, 연안개량안강망, 기선권현망, 통발, 자망, 근해형망 등 혼획 어업실태조사와 해역별·업종별 혼획, 치어포획, 어획물 해상투기 실태조사,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방안, 국제어업 정책동향 등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조사를 토대로 자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지리적 어장환경과 특성이 다양하고 지역여건과 해역특성에 따라

어구와 어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제도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효율적 관리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안·구획·마을·정치망 어업을 대상으로 지역 및 해양환경 특성에 맞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 이후 어업분쟁 및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이양을 통해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하고자 전문기관, 지자체,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0년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면밀한 연구검토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수산업법 제89조에 근거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안건으로 상정(10, 12)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도 형성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최종 제도개선안이 완성되면 어업제도개선협의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심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본격화되어, 선진국은 1990년대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협약하고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이 높은 10개국에 포함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받아 2013~2017년까지 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탄소배출 실태를 2010년부터 조사하며 이행 준비에 도입하여 2013년까지 어업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은 2012년까지 연구조사를 추진하여 치어·혼획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어구·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안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관련 업체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어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및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 2013~2017년까지 탄소배출 실태파악 및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4.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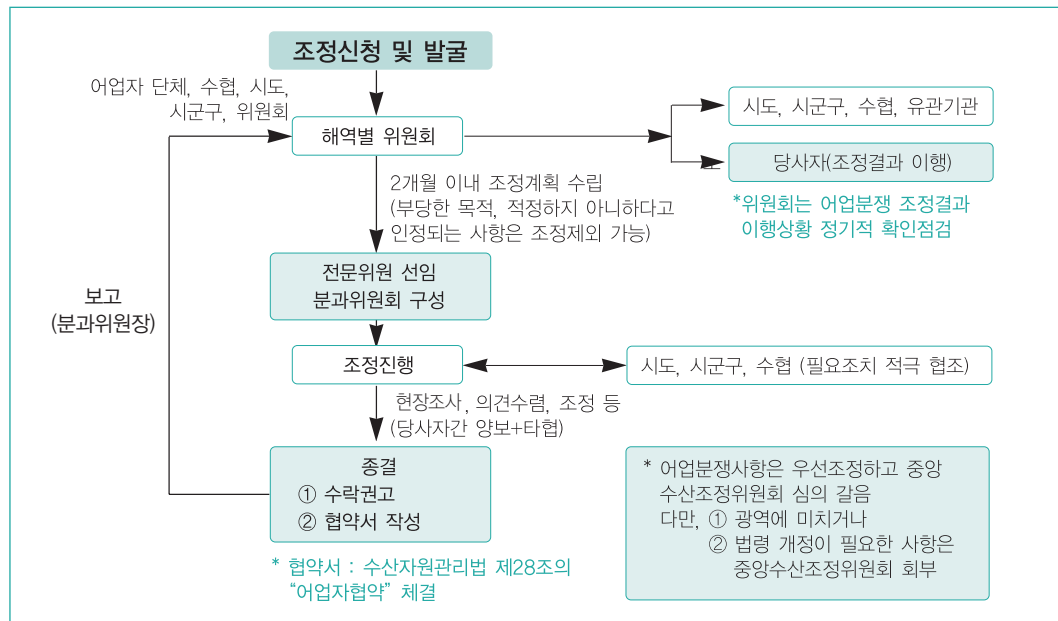
어업정책과 사무관 양정규

◆ 추진 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업 41개 업종 5만여척의 어선이 한정된 어장에서 어업경쟁으로 업종 간,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조정위원회’는 그 분쟁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어 해역별 어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 동·서해어업관리단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동해 '09.10.13, 서해 '09.11.3 제정 '13.10.11)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그림 4-3-2〉 분쟁조정 절차



2009년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2년까지 2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분과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이해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해 16건은 조정 완료, 2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나머지 9건은 계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다.


◆ 효율적인 분쟁조정 노력 경주

조정 중인 분쟁안건의 조정방향 설정 및 Know-how 공유를 위한 협의회 개최, 본 위원회, 분과 위원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충남지역 멸치 조업 분쟁조정' 및 '권현망 울산연안 자율 조업금지구역 관련 어업조정' 과제에 대해 분쟁조정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11개 시도 담당공무원, 수협,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현장교육 실시 및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출범 초기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홍보 및 분쟁조정 안건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은 해역별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어업분쟁은 어업자 간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조정결과를 담보할 권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내실화를 통해 효과적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2절 어업질서 확립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 지도교섭과 사무관 장귀표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자원의 감소와 유가 및 어가 상승 등으로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남획, 선형·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어업 단속시스템을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불법 어업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어업인 및 업종 간 어장 확보와 이용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선형·어구의 개조 및 변형조업으로 불법 어업 및 조업 갈등의 형태가 복잡·다양화되어, 불법 어업 단속건수는 2009년 3,394건, 2010년 3,221건, 2011년 3,293건, 2012년 2,833건으로 나타났다.

〈표 4-3-3〉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척)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합	계	3,394	3,221	3,293	2,833
어업관리단		875	610	818	847
해경청		1,471	1,871	1,685	1,189
지자체		1,045	740	790	797

그리고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일 간은 조업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 한·중 간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EEZ 입어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3-4〉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 어업 단속 현황

(단위: 척)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432	381	370	534	467
영 해 침 범	12	27	31	28	32
특정금지구역침범	32	34	52	21	34
무 허 가	76	91	91	170	119
조업조건위반	312	229	196	315	282

◆ 추진 내용 및 성과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어패류 산란기와 성육기인 5, 10월에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어업과 민원을 야기하는 불법 어업에 대하여 9~12월 기간 중 '자원남획형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불법 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일선 지자체 및 수협에 배포하고, 방송매체(라디오)와 다수의 어업인, 수산단체 및 상대적으로 광고비용이 저렴한 수산전문지·잡지 등을 통하여 불법 어업 예방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어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단속을 강화하고,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불법 조업 방지를 촉구함은 물론, 어업교섭 시 조업조건 강화 등 제도적 대응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불법 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결과,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대표적 불법 어업인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구초과부설, 공조조업 등은 감소한 반면, 무허가 및 허가어선의 불법 어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어업인 간·업종 간 조업분쟁,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와 생계형 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EEZ 수역 내의 우리 어선에 대한 일 측 대응이 강화되고, 우리 EEZ 수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합정을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EEZ어업법」 개정(12.5)을 통해 무허가 조업어선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중전 1억원)의 벌금 부과와 함께 어구, 어획물을 압수토록 하여 불법 어업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토록 하였다. 더불어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소형 어업지도선 1척을 1,000톤급으로 대체 건조하고, 위치발신구명조끼와 헬멧 등 개인 보호장비 12종을 보강하여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 지도교섭과 서기관 전갈권

◆ 추진 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 어업 단속 및 우리 EEZ 내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하여 1966년부터 1999년까지 517억원을 투입, 20척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나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 및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관할수역이 영해에서 EEZ까지 광역화되면서 관할수역은 88천km²에서 361천km²로 4.1배, 활동거리는 1,143마일에서 1,952마일로 809마일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0척 수준에서 38척까지 국가 어업지도선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2002~2003년에 감척된 트롤어선 5척(139척)을 인수하여 55억원을 투입, 국가 어업지도선으로 개조하여 활용하였다. 또 2002~2006년까지 730억원을 투입하여 500톤급 8척 확충, 2007~2008

년 113억원 투입, 500톤급 노후지도선 1척 대체, 2009년 국립수산물과학원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지도선으로 전환하여 34척까지 증척하였다.

2012년에는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어업지도선 대체를 위하여 200억원을 투입, 1,58톤급 1척을 준공하고 1,149톤급 1척을 착공하였으며, 2013년에는 198억원을 투입 1,149톤급 1척을 준공하고 1,470톤급 1척을 착공하여 어업지도선 안전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2년 국가어업지도선은 100~2,000톤급 34척으로 지속적으로 노후 대체와 신규 확충을 추진하여 EEZ 해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EZ 해역관리를 위해서는 EEZ 수역 24척, 중간수역 12척, 제주도 주변 수역 2척 총 38척이 필요하나 선령 25년 이상 노후어업지도선 대체가 우선 시급하고 중국어선 지도단속과 관련, 대형화 건조가 필요하므로 2015년까지 노후 대체 및 대형화 건조를 완료 후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3년에 1척을 대체하고 2013년에 1척, 2014년에 1척, 2015년에 1척을 500톤 이하에서 1,000톤 급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며,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1척씩 신규 건조하여 2019년까지 38척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 지도교섭과 사무관 장귀표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연근해어장에서 이용경쟁이 심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 어업으로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며, 자원의 감소, 유가 및 어가 상승 등으로 업종 간 · 지역 간 조업경쟁과 자원남획, 선형 · 어구 변형, 어업분쟁이 유발되는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불법 어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어업인의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를 위해 2007년 8월 14일 불법 어업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신고대상이 소형기저 및 공조조업으로 한정되어 신고실적 등이 저조하고 허가어선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 신고대상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어선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하여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고, 매년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준법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어업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허가어선의 불법 어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710여척)된 어선을 전국 일제단속 기간 중에 참여토록 하고, 활동실적에 따른 개별적인 포상 기회도 마련하였다.

한편 불법 어업이 없는 우수 어촌계·단체를 선정(최우수, 우수, 모범 등급으로 구분)하여 포상함으로써 어촌사회에 준법의식을 장려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자원회복 및 선진적 어업질서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4-3-5〉 2012년도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 선정 현황

구 분	어촌계(단체)	대표자	선정결과
제주(1)	서귀동어촌계(서귀포시)	한정기	최우수
경남(1)	법동어촌계(거제시)	임행섭	우수

선정기준 : 시도지사 추천 → 현장실사 → 심의·의결 → 선정

◆ 평가 및 향후 계획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시행,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의 불법 어업 합동단속 자율적 참여,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 포상 등을 통한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어업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활용 및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 포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어업질서 확립방안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 지도교섭과 서기관 전갈권

◆ 추진 배경 및 개요

기관사고 등 설비 관련 해난사고는 2011년 518척에서 2012년 454척으로 12.6% 감소하였다. 2012년 해난사고 원인은 운항과실이 224척(4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215건(47.4%), 어망감김 90건(19.8%), 충돌 52건(11.4%)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 연근해어선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점검 생활화, 해황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기상특보 방송 강화,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조업 교육 내실화를 위해 50백만원을 투입하여 12,532여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범실시하고, 조업 중 해상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400백만원을 투입, 상시착용 구명조끼 5,527개를 보급하였다. 또한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위치발신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가칭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지속적인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난사고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2013년에도 ‘2013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에 따라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을 통하여 어선 해난사고 감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표 4-3-6〉 어선사고 원인별 현황

연도	구분	계	기상 악화	선박불량				운항과실				
				소계	기관 고장	조타기, 스크류	기타	소계	어망, 로프감김	운항 부주의	원인미상	기타
2011		518척 (64명)	14 (2)	289 (-)	239 (-)	27 (-)	23 (-)	215 (62)	80 (-)	105 (19)	- (-)	30 (43)
2012		454척 (44명)	10 (4)	250 (3)	202 (1)	35 (-)	13 (3)	194 (37)	90 (-)	68 (13)	3 (2)	33 (22)

주: ()는 인명피해

〈표 4-3-7〉 어선사고 종류별 현황

연도	구분	계	표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전복	침수
2011		518척 (64명)	349 (-)	89 (17)	22 (2)	20 (-)	9 (24)	16 (19)	13 (2)
2012		454척 (44명)	327 (1)	52 (13)	19 (2)	130 (3)	11 (12)	15 (10)	17 (3)

주: ()는 인명피해

제4장 어가경영안정·소득증대

제1절 어가 소득 증대

1. 직접피해보전제도

수산정책과 사무관 서민정

◆ 직접피해보전제도 도입개요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 협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9건(46개국)의 FTA가 발효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주요 통상 정책으로 FTA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 부문 FTA 협상은 수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 또는 양허유예’ 원칙을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한·EFTA FTA, 한·ASEAN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수산물이 양허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수산업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의 국내 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2천억원의 FTA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동 법에 의해 FTA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소득보전직불사업은 칠레산 과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폐업지원사업은 피해 품목

농가들의 작목 전환에 따른 생산증가, 공급과잉, 가격하락 현상을 방지하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 1,6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대상 품목은 세 가지 과수(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에 대해서 사전지정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수산 분야 지원품목은 없었다.

2012년 3월 발표된 한·미 FTA는 명태, 민어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유예 및 장기 양허일정에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15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양허안이 통과되었으며, 우리나라 수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FTA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산 부문의 피해에 대응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및 보완하였으며, 수산 부문에 1조 300억원의 투자·융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회에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1.7.21)하여 FTA 이행에 대응하여 수산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향후 10년 동안 농수산 부문에 21조 1천억원(수산 7천억원, 농업 20조 4천억원)을 지원하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으로 직접피해보전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수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 분야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 2월 한·미 FTA 추가 협상 및 2011년 한·EU FTA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기존 대책을 보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수산 분야 직접피해보전 분야에 81억원, 경쟁력 강화 분야에 1,166억원의 추가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한 2012년 1월 한·미 FTA 국회비준에 앞서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08년 이후 10년간 수산업 분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총 지원 규모는 1조 301억원으로 직접피해보전 분야 845억원(8.2%), 경쟁력 강화 부문 9,456억원(91.8%)으로 구성되었다.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으로 직접피해보전 부문의 대상 품목 확대, 발동요건 완화, 피해보전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어업인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수산직불제 도입 등 소득보전 기능이 강화되었다.

◆ 직접피해보전제도 개편 방향

직접피해보전 부문의 사업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로 구성되며, 수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수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정부가 직접 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득 감소를 일정 부분 보전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수산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서는 기존 대책(2004년 한·칠레 FTA 보완대책으로 도입)에 비해 대상 품목 확대, 발동요건 완화, 보전 비율 상향 조정 등의 개선을 통해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였다. 대상 품목은 사전지정방식에서 해당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발동요건은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의 '80% 하락'에서 '90% 하락'으로 완화하였다. 보전 비율은 기준가격(조수입)과의 차액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급한도는 추가 보완대책('12.1)을 수립하면서 신설하였는데,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천 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 시행 기간은 기존의 한·칠레 FTA 발효 후 7년('04.4~'10.3)에서 한·EU FTA 발효 후 10년('11.7~'16.6)으로 연장되었다.

〈표 4-4-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개편 내용

구 분	기존 제도(2004년 도입)	2007년 대책	종합대책
대상품목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수산물 없음	사후지정(모든 품목)	
발동기준	가격이 80% 이하로 하락	80% 이하	90% 이하
보전비율	차액의 80%	85%	90%
시행기간	'10. 12. 31 종료	7년 ('17. 12. 31까지)	10년 ('21. 6. 30까지)

❖ 폐업지원제

폐업지원제도는 FTA의 이행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과 어구·어선의 잔존가치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어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폐업 어가에는 재취업 시기까지 안정된 생활기반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폐업지원제도의 발동기준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4차례의 정부대책 발표 중 폐업지원금의 산정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다. 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사전지정방식에서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품목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수산업에서는 어선·어구를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며, 3개년 수입금 외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를 함께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시행 기간은 폐업지원제의 경우 2008년 12월에 종료되었으나 2007년 대책을 수립하면서 폐업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한·EU FTA 발효 후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표 4-4-2〉 폐업지원제 개편 내용

구분	기존 제도(2004년 도입)	2007년 대책	종합대책
대상품목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수산물 없음	사후지정(모든 품목)	
지급액	3개년분 순수입	3개년분 순수익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추가 지급	
시행기간	'08. 12. 31 종료	5년('16. 6. 30까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업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어촌지역의 정주민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어,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위축이 조건불리지역의 지역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여 어촌 지역 주민의 이탈을 막고 수산업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시행하였다. 본 사업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27,000가구에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 간 3년 평균 어업 소득차액 98만원의 50%인 49만원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2012년에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13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었다.

2.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 수산정책과 사무관 변혜중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업 경영자금 중 영어자금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어업경영을 지원하는 대표적 수산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수산발전기금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수산 분야의 유일한 기금으로 2001년 7월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영어자금의 총 운영 규모는 1조 9,050억원으로, 이 중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7,194억원, 원양어업 분야에 946억원이 공급되었다. 수산발전기금은 4,225억원이 공급되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쓰나미와 원전사고에 의해 수산업 생산이 축소되었으나 어업 수산업 경영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다.

〈표 4-4-3〉 연도별 어업별 생산액 동향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2/'11)
합	계	52,859	57,518	63,451	69,243	74,256	80,728	76,890	▽4.7
연근해어업		27,513	29,391	32,223	36,404	39,117	44,441	39,510	▽11.1
천 해 양 식		14,432	15,995	15,201	18,463	18,156	17,842	17,593	△1.3
원 양 어 업		8,910	9,901	13,274	11,638	13,645	14,670	16,554	12.8
내수면어업		2,004	2,231	2,753	2,738	3,338	3,775	3,233	▽14.3

자료: 통계청

◆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

전체 공급자금 1조 9,050억원 중 1,000억원은 어선조난, 흉어, 재해,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였다. 특히 한파 및 저수온 피해, 태풍 덴빈·볼라벤 등 피해어업인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51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982억원, 수협중앙회의 신용자금에서 11,087억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에서 2,981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기에 대한 연체 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4-4-4〉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요액	41,299	41,685	44,223	46,837	49,221	62,352
	공급액 (공급률)	15,050 (37)	15,050 (36)	19,050 (43)	19,050 (41)	19,050 (38.7)	19,050 (30.5)
연근해	소요액	36,364	36,668	39,210	40,973	42,654	56,003
	공급액	14,250	14,250	17,850	17,850	17,850	17,864
	공급률	(39)	(39)	(46)	(44)	41.8	62.1
원양	소요액	4,935	5,017	5,013	5,864	6,036	6,349
	공급액	800	800	1,200	1,200	1,200	1,100
	공급률	(16)	(16)	(24)	(21)	19.9	17.3
재원별	재정자금	5,636	5,636	5,636	5,525	5,525	4,982
	수협자금	4,433	4,433	8,433	9,544	10,044	11,087
	상호금융	4,981	4,981	4,981	3,981	3,481	2,98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수산발전기금의 조달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 장기 용자사업의 거치 기간 종료로 정기상환 용자원금이 일부 회수되면서 용자원금 회수액이 증가하고 법정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체 수입이 확대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면서 여유자금 회수액이 축소 편성되었다. 또한 정부 내부 수입(정부출연금)은 폐업지원금, 소득보전직불금,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FTA 피해 지원을 위해 150억원 편성되었다.

기금운용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5,170억원으로 용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 추진, 수산물가격 안정, 자원관리형어업육성 및 어업경영지원, 품목

별 경쟁력 강화 및 직접피해 지원, 유통가공시설 개선, 산지 및 소비지유통 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등 수산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4-4-5〉 2012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계획(A)	'12실적(B)	증 감	달성률(B/A)
• 융자사업비	508,019	516,988	8,969	101.8
– 어업경영자금지원	63,750	63,750	–	100.0
–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19,400	29,451	10,051	179.6
– 수산물가격안정(융자)	256,943	256,943	–	100.0
– 유통·가공시설	25,176	25,176	–	100.0
– 수산물유통자금지원	142,750	141,668	△1,082	99.2
• 경상사업비	64,236	56,058	△8,178	87.3
– 해양환경개선	15,692	15,563	△129	99.2
– 수산물가격안정	28,044	27,836	△208	99.3
–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	12,500	12,659	159	101.3
– 직접피해지원	8,000	–	△8,000	0.0
• 기금운영비	1,458	1,378	△80	94.5
• 기금간거래	3,588	2,924	△664	81.5
• 여유자금운용	101,667	101,633	△34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	56,784	49,036	△7,748	86.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4,883	52,597	7,714	117.2
합 계	678,968	678,981	13	100.0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정책은 WTO-DDA 협상,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어업경영을 통한 어가소득 향상 및 정책자금 연체율 감소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 부담은 감소하고, 정책자금을 통한 수산사업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수산업 경영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3. 수산직불제 도입

■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주성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1년 기준으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수는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하며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의 경우 어업의 전진기지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전, 국경감시, 해난구조 등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의 유지와 확산을 위해 적절한 어촌 인구의 정주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위하여 2012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다.

2012년도 현재 수산 분야는 FTA 피해보전직불, FTA 폐업지원금, 어선원 및 어선보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금 성격의 기타 직불성사업이며, 순직불제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유일하지만, 농업 분야는 WTO 출범 이후 1997년부터 경영이양, 쌀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4-4-6〉 직불제(순직불제) 사업별 현황

구분	직불제	2011(억원)	2012(억원)
농업부문 (1조 16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6,195	6,181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7,993	620
	경영이양 직접지불	623	65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79	50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387	436
	경관보전 직접지불	139	76
	FTA피해보전 직불	250	600
	FTA폐업지원	300	300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	10	14
	밭 농업직불	-	624
수산부문 (960억원)	FTA피해보전 직불	15	30
	FTA폐업지원	50	50
	어선원 및 어선보험	677	72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55	85
	친환경어구보급	50	5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	18


❖ 추진 내용 및 성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 또는 육지로부터 8km 미만 떨어진 섬 지역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며, 직불금의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바닷가 청소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처음 도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의 64개 어촌계(5개 시도, 6개 시·군), 1,360어가(어가당 49만원)를 대상으로 총 592백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2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육지생활 중심권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대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13년도에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육지로부터 50km → 30km 이상 떨어진 섬)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어업경영체의 소득 파악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어업경영체등록제를 실시하여 2014년부터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8km 이상 떨어진 2만3천 어가로 점차 확대하는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어가경영안정 지원

1. 어업보험 내실화

■ 소득복지과 서기관 김봉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발생 시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2003년 3월 19일 제정(법률 제6866호)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도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37,426명의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10,360척에 대하여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59,592백만원 및 누적결손금에 대한 출연금 13,109백만원(총 72,7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4-4-7〉 어선원 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척, 백만원,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어선원보험료								
- 인원	36,846	35,815	37,116	37,283	34,899	36,112	37,426	104%
- 보조액	8,573	9,829	11,968	15,612	21,491	21,100	25,146	119%
어선보험료								
- 척 수	5,015	5,397	5,704	6,518	7,233	8,494	10,360	122%
- 보조액	2,007	2,615	3,897	6,002	9,139	12,285	13,618	111%
위탁운영사업비								
- 보조액	7,420	7,683	10,675	12,153	18,145	17,093	20,828	122%

자료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가입률 제고 추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홍보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 안내장 30,000부와 만화 안내장 6,000부,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시행 안내장 5,000부, 홍보 포스터 1,000장, 플래카드 250개, 홍보용 동영상 5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선원보험 법령요약서 4,000부, 휴향 환급제도 안내를 위한 안내서 12,0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어업 무선방송을 통한 보험가입 독려 방송 연중 실시, 수산전문지 광고 게재 및 정책보험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소형어선 보험 가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5톤 미만 어선원보험, 20톤 미만 어선보험을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캠페인을 실시('12.3~8)하였다.

❖ 어선사고 예방 및 현장 서비스 강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지정선박수리소 197개소, 지정병원 508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관 무상점검 서비스(1,939척)를 실시하였다.

❖ 어업인 지원 및 제도개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2012년 어선원보험의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어선원의 기초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강화하였다.

사고율 과다로 2006년부터 제한한 선외기 어선의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보험료 현실화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2012년 2월 20일부터 재허용하였다.

5톤 미만 소형어선의 가입률 제고 등을 위하여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2012년 3월 30일부터 실시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에 따라 보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 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에 따라 과거 3개년간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된 요율 조정요인(용역결과 어선보험 전체 평균 2% 인상)을 반영하여 손해율이 높은 5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2% 인상, 손해율이 낮은 50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동결하여 일부 톤급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수지균형 유지 방안의 일환으로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계약에 대해 코리안리(주)와 특약(50% 비례 재보험)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위험분산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에는 정책보험 도입 10차년도로서 가입 증대, 체납보험료 감축 등 정책보험사업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여 대어업인 지원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 국정과제인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증대 캠페인을 통한 보험사업 확대, 체납보험료 감축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여 재해율이 높은 어업의 재해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5톤 미만 어선의 조업 및 고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 소득복지과 서기관 김봉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자연재해 및 질병(재해에 기인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2008년 7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최근 태풍, 집중호우, 이상기후, 질병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양식어가의 보험가입건수 및 보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대상품목 확대

2008년 7월 '넙치' 1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연차적 대상 품목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넙치(본 사업),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시범사업) 1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 재해 및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2012년에는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였고, 보장범위 확대, 대어업인 보험가입 홍보 강화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전년 8.2% 대비 3.9P 증가한 12.1%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대상 재해에 이상

조류 피해를 신규로 포함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2년에는 자연재해 특히 태풍 볼라벤, 산바 등의 영향으로 36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다. 한편 보험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본 사업인 넙치에 한하고 김(시범사업)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상 재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험상품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4-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넙	치	21.1	32.9	43.1
전	복	3.9	11.3	15.5
조	피	-	2.8	12.9
	블	-	0.2	5.4
	락	-	0.2	0.2
참	돔	-	-	16.8
돌	돔	-	-	9.2
감	성	-	-	5.4
농	어	-	-	13.6
쥐	치	-	-	4.6
기	타	-	-	4.2
	블	-	-	4.2
	락	-	-	4.2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실

3.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 지원총괄팀 사무관 신만철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의 예인줄 절단으로 3천톤급 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이 밀리면서 대산항으로 입항 대기 중이던 유조선(Hebei Spirit호)과 충돌해 12,547kl(10,900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3개도(충남, 전남·북의 11개 시·군)에 걸쳐 대규모 유류오염 피해를 발생시켰다. 구체적 사고 경위는 2009년도 연차보고서에 수록한 바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 등 피해민을 위해 우리 부는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 유류오염 피해어장의 환경개선 및 복원사업

우리 부에서는 2009년 7월 유류오염 피해어장에 대한 어장환경개선 및 복원을 위한 「어장환경복원계획(2010~2019년 3,821억원)」을 수립하고, 수산생물 서식환경개선사업(신규 사업, 1,577억원) 및 어장생산력 증진사업(기존 사업, 2,244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산생물 서식환경개선사업 626억원, 어장생산력 증진사업 701억원 등 총 1,327억원을 투입하였다.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으로는 연구용역 및 홍보 등에 우리 부에서 57억원을 직접 집행하여 어장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어장환경개선 효과 등 21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피해지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569억원을 배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마을어장 및 조업어장 등 피해어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어업인 재기 및 지역숙원사업으로 갯벌참굴 시범사업 및 종묘발생장 ‘썩’ 제거사업을 실시하였다.

어장생산력 증진사업으로는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 제공을 위한 해중립 및 인공어초 조성에 304억원, 해역 특성에 맞는 바다목장 조성에 250억원, 자원증강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에 147억원을 투입하였다.

◆ 선주 책임제한채권 신고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해 선박 규모별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선주 책임제한 채권'은 2012년 현재 총 127,471건 4조2,272억원이 채권관리 소관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고되었다.

◆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배·보상 청구 및 사정 동향

IOPC 92 Fund는 2011년 10월 제53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액을 최대 2,826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IOPC Fund 서울사무소인 허베이스피리트센터(HSC)에 접수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청구액은 2조7,752억원으로 IOPC 92 Fund의 피해 추정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민의 대부분이 2009년 5월 8일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주 책임제한채권' 신고를 마치고 난 다음, 국제기금 측에 손해 배·보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09년 상반기까지 국제기금 측에 대한 손해 배·보상 청구가 저조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2년 말 현재 28,959건이 청구되었으며, 국제기금 측은 이 중 99.8%인 28,908건을 사정하였다.

〈표 4-4-9〉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12년 기준)

(단위: 건, 억원)

구 분	청 구		사 정		인 정			지 급		
	건 수(A)	금 액	건 수(B)	사정비율(B/A)	건 수(C)	금 액	인정비율(C/B)	건 수	금 액	
합 계	28,959 (128,400명)	2,775,284	28,908 (128,349명)	99.8%	4,780 (57,014명)	184,464	16.5%	4,405 (32,285명)	176,363	
관광분야	10,699	246,446	10,697	99.9%	2,589	32,445	24.2%	2,480	31,769	
방제비용	304	393,206	263	86.5%	222	99,372	84.4%	209	97,237	
수산 분야	소계	10,892 (110,333명)	1,605,362	10,890 (110,331명)	99.9%	1,597 (53,831명)	48,060	14.7%	1,410 (29,290명)	45,168
	포획 어업	1,251 (100,692명)	999,029	1,249 (100,690명)	99.8%	290 (52,524명)	21,554	23.2%	208 (28,088명)	19,847
	양식	9,641	606,333	9,641	100.0%	1,307	26,506	13.6%	1,202	25,321
기 타	7,064	530,270	7,058	99.9%	372	4,587	5.3%	306	2,189	

◆ 기타 피해지역 지원사항

우리 부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축산발전기금 및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10년 지역경제 활성화 지구력 승마대회'에 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 바다 낚시대회'를 개최(특별 적립금 0.7억원)하는 등 피해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 참여

우리 부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위해 한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2012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차례의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IOPC Fund 제56차 집행위원회(10.15~10.19)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맨손어업과 같은 소액다수 청구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방안 및 증빙자료 부족 시 관련 분야의 경제적 모델 적용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제기금 보상매뉴얼 개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서울사무소와 정례회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피해 배·보상 업무를 위해 국제기금 측은 서울사무소(HSC)를 개설하고, 피해 배·보상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의 해소와 의견 교환을 위해 한국 정부 측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7월에 첫 회의를 했으며 양측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재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총 4회(2011년에도 5회)의 회의를 통해 우리 부는 신속한 사정 촉구 및 보령 도서지역 피해산정 개시일 확대조정 결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 국제기금 측과 협의하고 설명하는 등 양측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 부는 2012년에도 모든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해양오염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어장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우리 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실시하고, IOPC Fund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피해어업인 배·보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유류오염 피해지역 지원사업

우리 부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장환경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에 반영토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우리 부의 「어장환경복원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94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투입하여,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951억원) 및 어장생산력 증진사업(1,543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으로는 어장환경 정밀조사 및 정책연구, 마을 및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갯벌참굴을 비롯한 고소득 생산기반 조성 등이 있으며, 어장생산력 증진사업으로는 바다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조성사업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 유류오염사고로 훼손된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자연적인 생물 다양성을 지닌 건강한 어장으로 복원해 나갈 예정이다.

◆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우리 부는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오염영향을 평가하고 피해어장의 신속한 복원을 위하여 3개년에 걸쳐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1차년도인 2008년에 5억원의 예산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서해연안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태안 인근의 주요 양식장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및 복원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해인 2010년에는 7억원으로 환경조사, 갯벌 생태조사, 태안어장 수산자원 밀도 변동조사 및 굴·바지락에 대한 양식품종별 복원시험사업을 실시하였다.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유류오염 영향에 대한 정밀조사 및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1차 지역경제 활성화 26개 사업 중 우리 부 소관 사업은 3개로 2008~2010년까지 428억원을 투입하여 각각 충남지역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400억원, 홍성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 7.5억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20억원을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지원하였다.

2011년 11월 제6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확정된 27개

사업 중 우리 부 소관은 20개로 2011~2016년까지 3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양식장(해삼, 전복, 바지락) 조성 등 9개 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하여 양식장 조성, 방과제 보강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다.

향후 우리 부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가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촌체험마을,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체감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측과의 협의 추진

우리 부는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보상 주체인 IOPC Fund 측과 각종 회의를 통해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으며 2013년도에도 4월, 10월에 개최 예정인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신속한 보상을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피해어업인 대표 등과 피해 배·보상 활동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모든 피해 배·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업인을 위한 역할에 노력할 것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국제기금 사무국과 집행위원회 주요 이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어업인의 정당한 배·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신속한 피해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1. 어업후계인력 육성

■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 추진 배경 및 개요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 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산업경영자는 시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서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수산에 대한 기술지도, 경영기술 및 교육 등 각종 수산 관계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3% 장기저리(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로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사업 계획과 신용도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는 5천만원, 전업경영인은 7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981년부터 2012년까지 20,621명에게 총 5,629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4-5-1〉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11년 까지		2012년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0,621	562,890	19,575	520,211	864	42,679
일반후계자(1981년부터)	17,118	364,799	16,498	339,455	620	25,344
전업경영인(1992년부터)	3,285	177,376	3,068	162,741	217	14,635
선도경영인(1995년부터)	218	20,715	191	18,015	27	2,7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행정통계자료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2012년도에 864명에게 4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업인 후계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업경영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높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어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창업자 금지원 2억원과 주택구입비 4천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3명에게 210억원을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 어업후계인력 확충을 위해 전업경영인의 경우, 대상연령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집행대상사업을 당초 양식어업, 어선어업, 가공 분야에서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지속적인 어촌지역 유입을 위하여 귀어·귀촌에 대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화·개방화로 수산업의 위축과 함께 어촌사회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양질의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한계에 직면, 2008년부터 어촌을 선도해 나갈 정예인력 구축방안의 하나로 수산계 고등학교(전국 10개교)에 특성화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도 수산전문 진입인력 양성 및 전문계 고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에 취업·창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공통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훈련,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등) 12억원, 학교자체프로그램(현장체험, 해외연수, 수상레저프로그램 등) 8억원을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별 추진이 어려운 해기사양성과정인 종합승선실습을 통해 5급 항해사 및 기관사를 양성하여 인력난으로 어려운 연근해 및 원양업계의 항해사 및 기관사로 취업·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을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훈련,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등)으로 확대 개발·지원할 계획이며, 수산계 고교 학생 중 수산 분야 정착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발,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업과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승선예비역 제도 확대, 산업체별 취업설명회를 통한 취업 알선 및 마이스터고 선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인력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어촌어항과 사무관 남우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어촌의 국내외 여건 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빠른 어촌인구의 고령화는 어촌의 활력 저하와 어촌지역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어촌의 기능적 변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제 어촌은 어업생산 활동의 전초기지 차원을 넘어 어촌관광, 해양레저, 휴양·정주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차원의 어촌모델 개발이 조기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어촌 개발리더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촌주민에게 어촌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지역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하여 「어촌지역리더 육성과 지원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촌개발리더의 육성실태 및 문제점, 국내외 지역리더 육성 사례와 시사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어촌개발리더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부터 지역개발리더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낙후된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리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조직인 어촌사랑 주부모임을 활성화시켜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인력개발센터에 ‘어촌관광사업 지도자과정’,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무장’ 및 ‘여성어업인지도자 양성’의 4개 전문인력 양성반을 개설하여 지역 어업인 및 어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어촌지역개발리더사업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단지의 어촌계장, 어촌계사무장, 어촌계운영위원 등 어촌 지역의 개발을 선도할 핵심적 리더에 대한 전문능력을 강화·육성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에서 약 40명을 선발, 학습단위별로 4개 세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 세부교육 프로그램 구성 : 리더동기화, 실천리더, 혁신리더, 리더양성워크숍

❖ 여성어업인육성사업

‘어촌사랑 주부모임 전국연합회’는 1989년 제1회 한일 어촌부인 생활체험 발표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2월에 강화 등 5개 수협을 ‘시범 부인부’로 결성하였다. 2004년에는 ‘수협부녀회’가 ‘어촌사랑 주부모임’으로 변경되는 등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어촌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

그리고 2011년 7월 6일 어촌사랑 주부모임 창립총회를 경주에서 개최하여 27개 수협 4,6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적인 조직으로 태어났다. 향후 여성어업인에 대한 사회·문화 등 교육을 강화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권의 신장 및 역량 강화에 힘을 계획이다.

❖ 어촌관광사업 지도자과정

어촌계장, 이장, 어촌관광리더·가이드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관리트렌드 변화, 어촌관광자원 조성, 상품화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고객관리 및 갈등관리 등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촌종합개발사업과정

어촌계장, 어촌계임직원 공무원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권역별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교류를 도모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사업추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어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육성을 위하여 연간 7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으로서의 기본소양 함양 및 전문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사무장의 역할, 홍보 마케팅 전략,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 여성어업인지도자 양성과정

어촌지역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역할 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하여 2009년부터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 리더양성워크숍을 매년 2회, 8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촌지역 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증대시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개발 모델을 도출하여 어촌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고 어촌개발과 관련된 시설운영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어촌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어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제2절 살기 좋은 어촌 개발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소득복지과 사무관 신선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4년 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 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4)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5-2〉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요

구 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	농식품부 (수협 위탁)	2004년~ 계속	-	연근해 어선원 등	국비20% ~70%	어선주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자체	1994년~ 계속	8,801억 원	230개권역	국비80%, 70%, 5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자체	2006년~ 계속	-	전국 항,포구 2,298개소	국비80%, 지방비20%	인양기 설치
양식어장정화사업	지자체	1986년~ 계속	-	약 51만 ha	국비80%, 지방비20%	연안 양식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 등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지자체 등	2006년~ 계속	-	어촌지역 정보화수준 100%	국비100%	원격영상시스템 정비 및 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 계속	-	134개소	국비80%, 70%, 50%	관광안내소,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어항 관광개발	지자체	2004년~ 계속	-	계속사업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해안공원 조성, 수산물판매장, 해안산책로 등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 분야 7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 사업은 2012년도 어선원보험에 37,426명이 가입하여 전년(36,112명)보다 3.6% 상향 달성하였다. 또 어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양식어장 정화 사업, 디지털 어촌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더불어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부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다.

〈표 4-5-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별 성과(2012년)

사업명	성과지표	2012년 목표	실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 험 가 입 률	14.5%	16.1%
어 촌 종 합 개 발 사 업	사업완료 진척도	81.7%	81.7%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설 치 대 수	116대	116대
양 식 어 장 정 화 사 업	사업추진 진척도	6,420ha	6,990ha
디 지 털 어 촌 구 축 사 업	어업인 정보화교육	1,120명	658명
어 촌 체 험 마 을 조 성	사업완료 진척도	72.4%	72.4%
어 촌 어 항 관 광 개 발 사 업	개 소 수 (누 계)	30개소	30개소

◆ 평가 및 향후 계획

그동안 수산 분야 7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별로 지속적인 사업비 확대 투자와 더불어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 어촌어항과 사무관 남우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 어촌은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인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차원 및 잘사는 어촌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 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4〉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년~ 계속	8,801억 원	230개권역	국고보조80%, 70%, 5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 특수상황지역 80%, 일반농산어촌지역 70%, 도시활력증진지역 50%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801억원 중 2012년까지 7,276억원(국고지원 4,321억원)을 투자하여 188개 권역은 완공하고 24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82%) 중에 있다.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업량	174(160)	174(160)	184(170)	190(173)	206(181)	208(188)	22(42)
	사업비	562,061	38,789	25,831	26,457	39,484	35,019	152,419

* 사업량 : 착수기준 누계, ()내는 사업완료 권역수

사업 지원 규모를 보면 1단계 사업 160개 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개 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 권역당 최대 50억원까지 증액하여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기반시설이 가능토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촌종합개발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이면서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

업으로 그동안 어촌지역의 소득 증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편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새롭게 수립되는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4~2018)'에 따라 '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생산과 휴양·관광산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화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 어촌어항과 서기관 정동기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민들의 소득 증가 및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에게는 어업 외 소득 증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국내 관광수요를 어촌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휴양·관광 등의 어촌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의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6〉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민간보조 (어촌어항협회 등)	2005년 ~계속	- 억원	어촌체험마을 134개소, 어촌계 1,982개소, 자매결연체결 1,200개소	민간보조 국비100%, 지자체 국비 50%	홍보, 사무장 채용 및 컨설팅 지원 등

◆ 추진 내용 및 성과

바다와 어촌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도시와 어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우수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컨설팅 제공, 도시-어촌교류축진 및 어촌전통문화재현(체험)행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

원하였다. 더불어 바다와 어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오프라인 및 대중화된 방송매체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체험객 안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홍보 등 어촌체험마을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 1인1촌 컨설팅 추진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관광 마인드 제고 및 갈등요인 해소, 마을에 적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1인1촌 컨설팅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어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2010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에게 품질 높은 시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마을, 발전가능마을, 미흡마을로 구분하여 마을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 여타 마을에 전파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마을에는 추가 사업비(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명품 어촌체험마을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경우 체험객 수에 있어 2011년 1,158천명에서 2012년 1,349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체험소득도 2011년 237억원에서 2012년 317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5-7〉 2011~2012년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현황

(단위 : 백만원, 천명)

구분	2011	2012	증(△)감('12-'11)	비율
체험운영 수	90	90	-	-
방문객	5,913	6,179	266	4.5
이용객	1,158	1,349	191	16.5
직접소득 ¹⁾	23,694	31,697	8,003	33.8
간접소득 ²⁾	36,268	36,492	224	0.6

주 : 1) 직접소득은 체험이용료, 민박, 식사, 수산물 판매에 한정

2) 간접소득은 어촌체험프로그램 이외의 일반 관광객에 의한 소득

◆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2012년에는 바다콘서트 등 축제 지원, 해안선 자전거 여행 개최, 도시지역 어촌체험놀이관 운영, 이달의 어촌 포스터 제작,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농산어촌체험마을 박람회 홍보관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어촌관광 수요 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로 국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프로그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추진,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촌을 찾도록 시행 중인 어촌관광 소프트웨어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점 발굴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어촌관광을 Boom-up할 방침이다.

4. 어항시설 확충

■ 어촌어항과 사무관 배길중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하여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8〉 어항 지정 현황

(2012년 12월 말 기준)

구분		항 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고
법정항	국가어항	109	해양수산부장관	국비 100%	
	지방어항	285	시도지사	국비 80% 지방비 20%	
	어촌정주어항	595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비법정항	소규모항	1,306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육지 548개항 도서 761개항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추진 내용 및 성과

◆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총사업비 52,452억원 중 2012년까지 총사업비의 59.4%에 해당하는 31,142억원을 투입하여 99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90.8%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32개 항에 1,680억원을 투입하여 그중 강원 궁촌, 경남 호두항 등 5개항을 완공하였다.

〈표 4-5-9〉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109	3	5	2	1	14	8	6	31	14	19	6
완공항	99	2	5	2	-	14	7	5	28	14	16	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지방어항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2년 말 현재 285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1972~1994년까지 일반회계, 1995~2004년까지 농특

회계, 2005~2009년까지 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40개 항에 673억원(국비 481억원, 지방비 192억원)을 투입하여 7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5개 항 중 171개 항이 완공(완공률 60%)되었다.

〈표 4-5-10〉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 현황

(단위: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285	13	15	4	5	14	29	12	91	23	61	18
완공항	171	9	10	4	4	9	22	4	45	15	43	6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2년 현재 595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5-11〉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단위: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595	5	31	9	11	24	20	14	84	9	342	46
완공항	148	1	10	7	7	9	-	-	-	-	114	-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바, 2012년도에는 이들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어항 32개 항에 1,680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어항 40개 항에 673억원(지방비 192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어항시설 투자 방향은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완공 시기를 단축하고 재해 방지와 소득 창출형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5. 어촌·어항 관광개발

어촌어항과 사무관 남우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의 발달,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WTO- DDA, FTA 진전과 어장 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촌지원방안강구 및 어업 외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 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을 관광 자원화를 통해 어업 외 소득 증대로 연결시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표 4-5-12〉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 계속	-	134개소	국비80%, 70%, 50%	마을안내소, 샤워장, 진입로, 화장실 등
어촌어항 관광개발	지자체	2004년~ 계속	-	계속사업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해안공원 조성, 수산물판매장, 해안산책로 등

* 특수상황지역 80%, 일반농산어촌지역 70%, 도시활력증진지역 50%

◆ 추진 내용 및 성과

◆ 어촌체험마을조성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 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체험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134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경북 경주 연동 등 전국 115개소에 747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주도의 참여식 관광으로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표 4-5-13〉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년까지	115	2	5	-	9	10	-	11	7	34	10	18	9
2013년 계획	7	1	-	1	-	1	1	-	-	1	-	2	-
해제	-18		-2	-	-1	-3	-	-3		-5	-2		-2
장래조성계획	30	0	1	0	3	2	1	6	0	8	2	3	4
계	134	3	4	1	11	10	2	14	7	38	10	23	11

〈표 4-5-14〉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사업별		목표	2008년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년 이후
어촌체험 마을조성	사업량	134	95	7	3	3	7	34
	사업비	52,942	31,905	2,150	1,250	500	1,930	13,277

* 국비기준

◆ 어촌어항관광개발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 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관광형, 어촌관광단지형 등으로 2005년부터 투자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30개소에 사업을 착수하여 17개소를 완료하였다. 동 사업은 2010년부터 광특회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4-5-15〉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사업별		목표	2008년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년 이후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량	계속사업	18(4)	18(7)	20(10)	25(14)	30(17)	계속사업
	사업비	계속사업	27,954	35,588	41,932	49,122	57,598	계속사업

* 사업량: 누계기준, ()는 완료누계, 사업비: 국비 누계기준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어촌어항관광개발을 통해 어민들의 어업 외 소득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적정 수요인 134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함과 더불어 마을별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으로 운영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은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등 연안지역별 맞춤형으로 어촌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어업 외 소득 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어촌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6.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어촌어항과 사무관 배길중

❖ 추진 배경 및 개요

기존의 어항은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의 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우리의 어촌은 WTO-DDA, FTA 협상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및 보조금 제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어촌 지원 방안 강구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어촌소득으로 연계할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어업 외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여건이 구비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관광 대중화를 위해 '가고 싶은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우선 어촌관광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2004년)을 수립하고 다기능어항 13개 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항을 수산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및 어항기능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제공,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 대처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대포, 격포 등 13개소의 다기능어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437억원을 투자하여 11개 항을 완공하고 2개 항을 지원 중에 있다.

〈표 4-5-16〉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목표	2009년까지	2010	2011	2012	2013	2014년 이후
사업량	13	5(9)	2(5)	1(4)	3(1)	(2)	2
사업비	261,773	153,059	40,421	28,552	22,653	7,400	9,688

* ()은 계속사업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계획)

구분	어촌·어항복합공간형	다기능종합어항형
개념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기존어항 + 관광기능
대상지역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배후에 어촌이 없어 연계가 곤란한 국가·지방어항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소('04.12.15 선정) - 어유정항(인천 강화군) - 정자항(울산 북구) - 강릉항(강원 강릉) - 마량항(전남 강진) - 양포항(경북 포항) - 맥전포항(경북 고성) - 모슬포항(제주 남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소('04.10.25 선정) - 대변항(부산 기장) - 대포항(강원 속초) - 흥원항(충남 서천) - 국동항(전남 여수) - 격포항(전북 부안) - 지세포항(경남 거제)
사업기간	2004~2013(10개년)	2004~2013(10개년)
사업비	(항당) 100억원	(항당) 500억원(민자 200억원 포함)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다기능어항개발은 기존의 국가어항개발과 달리 정부투자 이외에 민간투자 부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부투자 부문도 기본시설 외에 친수공간 및 조정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 되어 있다.

2006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국가어항건설사업에 대한 심층평가(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1998년 이후 수산업기반시설 위주의 국가어항개발이 어촌계 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기능어항개발이라는 어항개발방식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다기능어항개발의 추진 방향 결정을 위해 2013년 2월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KMI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어촌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담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김종모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 향상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생산량은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장에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5년 시작된 주요 수산물 생산 60개 해역에 대한 등급설정을 위한 위생조사·평가가 마무리되고, 주요 생산해역 등급화 고시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HACCP 적용을 추진하여 2012년까지 4개 품목 21개소에서 등록이 이루어졌다.

〈표 4-6-1〉 양식장 HACCP 등록 현황

(단위: 개소)

품 목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계	21	3	2	2	7	7
넙 치	6	3	1	1	-	1
뱀 장 어	3	-	-	-	1	2
송 어	9	-	1	1	6	1
자 라	3	-	-	-	-	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2년

또한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전 품목으로 시행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 현재 20개 품목(굴, 넙치,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전복, 굴비, 갈치, 옥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 꽃게, 새우, 꼴뚜기, 고등어, 삼치, 꼬막)에 대해 참여어를 포함, 4,42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 4-6-2〉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현황(2012년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생 산	가 공
참여업체	4,427	4,309	11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2년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물 이력제의 홍보활동 강화로 참여율이 제고되고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생산,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인식변화가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이력제 인지도는 35.5%로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력제 홍보관 설치, 시식회 개최 등 정책 홍보 강화와 스마트폰 등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현장에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산물 이력제 저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양식장 HACCP 보급사업은 HACCP 등록과 등록업체 매출과의 비연계성, 등록에 따른 복잡한 서류 작성 문제 등으로 사업수요 신청이 낮은 편이므로 수요 증대를 위해 관련 생산자 및 업계

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HACCP 등록에 따른 사업자 매출 증대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 육·해상기인 오염원의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지정해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후보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여 위생기준에 적합한 해역은 지정해역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수출·수입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김종모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물 수입의 자유화로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되는 저질·위해 수산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수산물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여 우리 측 수출 수산물의 통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우리 측 수출 패류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한 바 있고, 일본에서는 쿠도아층이 검출된다는 이유로 수출 활넉치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측 수출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방사능에 대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은 매건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태평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근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 오염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중국, EU 등 수출 상대 국가의 우리나라 수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에 대응하여 위생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대미 패류 수출 재개를 위하여 우리 부,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주변 가두리 양식장에 화장실 설치 등 육·해상 오염원 관리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해역이용자의 의식전환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수출 패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미국으로 패류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신종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액체질량분석기 등 29종 67대의 최신 정밀분석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수산물 정밀검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기오염·항생물질·어류질병 등 14개 분야 55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정밀분석 검사원 간의 신뢰성 오차범위 축소와 표준화 유지를 위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서는 중금속 항생물질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정기숙련도 향상시험을 실시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앞으로는 마비성패류독소나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식품사고 위험성이 상시 예상되는 패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패류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출 및 내수용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여 원양산 및 연근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방사능 안전관리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동시에 위생약정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불법 유통, 위장수입 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수입수산물 부정통관을 방지하며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통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수출·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서승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생물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생동물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시행(08.12.22)되었고, 이에 따른 수산동식물 검역 대상이 종전의 이식용에서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확대되는 등 국경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인천, 부산, 통영, 강릉 등 주요 수산물 수입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각 검역검사소에 유전자분석장비 등 31종 191대의 최신 검역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취득하여 수산물 분석기관으로서의 대외 신뢰도 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국경검역 업무의 조기 정착을 위해 TV, 인터넷과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180명의 수산생물검역관을 확보하고 국경검역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 자동분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수산동물 국경검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2012년 바이러스 13종, 기생충 4종, 진균 2종, 세균 1종에 대해 총 5만 6천여건의 수출입 검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미등재 수산생물전염병 등 수입위험분석 대상 질병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랑스, 영국 등 OIE 표준시험실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수산물 검역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관세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민원신청부터 검역결과 통보까지 온라인화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하는 등 보다 빠른 민원행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확대 및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질병분석 결과 대외 신뢰도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연수프

로그래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검역을 위해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분석실 기능 정립과 인력 보강을 통해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선진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수산동물 검역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4. 친환경양식 생산

■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성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 생태계 기반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면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이 쇠퇴하고 외해의 대규모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내만 중심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한 새로운 양식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외해양식어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2005년부터)와 경상남도(2006년부터), 전라남도(2007년부터), 강원도(2008년부터), 경상북도(2009년부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총 5개소 시험어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친환경 고부가가치 외해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외해양식어업 9개소(참다랑어 5개소, 일반어류 4개소)를 개발하고 참치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만들었다.

한편 친환경양식산업의 육성 및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2012년도에 44,260백만원(농특회계 23,840, 에특회계 16,860, 수발기금 3,560)을 지원하였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지원 8,040백만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지원 15,100백만원, 지하해수 조사사업 등 700백만원이며, 에특회계는 친환경에너지보급 지원에 16,860백만원, 수발기금은 수협사료시설 지원에 3,56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윈-윈 전략으로 내만은 일반어류,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을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써 WTO-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도에는 친환경양식 생산을 위한 배합사료 지원, 친환경양식기반구축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16,900백만원을 투입하고, 수산종자산업 구축을 위한 종자개발에 5,90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 양식어장 환경 개선

■ 양식산업과 서기관 안치국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입지적인 특징은 어장 설치·관리의 용이성, 태풍 등의 자연재해 예방성, 풍부한 먹이생물 등에 의해 주로 반폐쇄성만을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특정 해역에서는 육상기인 오염원과 양식어장 자가오염부하량 증대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WTO-DDA 체제 출범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을 위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86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등을 대상으로 43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입하여 6,990ha에 대해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 연안 양식해역의 어장환경 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양식어장의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연차별·지역별로 전국적인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주관으로 동해안(천수만, 가로림만, 울산만)의 바지락·재첩 등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하천부하량, 물리환경, 수질환경, 퇴적물환경, 미량금속, 먹이물질 양식생물 생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안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부표(스티로폼)는 값싼 저밀도 제품이 대부분으로 태풍·파도에 쉽게 파손되고 쓰레기 수거도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여,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등 8개 연안 시도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75억원(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을 투입하여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제품(고밀도 등) 110만개를 양식어장에 교체·보급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폐각 12만여톤의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25억원(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을 투입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양식어장 환경개선 정책은 어업인의 어장청소 등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보전 및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하절기 지속적인 적조와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피해예방 및 최소화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농림수산물부는 어장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연안환경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장관리의 근거법인 「어장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제2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1.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유통가공과 사무관 김학조

◆ 추진 배경 및 개요

위판장과 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유통채널이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과 함께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구매력이 강한 대형유통업체 등은 산지와 직거래·자체 물류센터 보유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는 마케팅 교섭력에서 우월한 소비자가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어 산지는 가격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FTA 등 대외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산지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산지의 마케팅 교섭력을 높여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이에 정부는 생산자 중심의 신(新)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지에서는 지역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지에서는 소비자 분산물류센터에서 산지의 다양한 상품을 집적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소비지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2년에 FPC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강원 속초수협과 제주 한림수협을 FPC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같은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과 맞물려 생산자단체가 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물확보자금, 마케팅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위생관리와 관련해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한 위생시설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였다.

한편 그간 난항을 거듭해 온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은 2012년 4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 및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실시설계 적격심의 등을 거쳐 2012년 12월 착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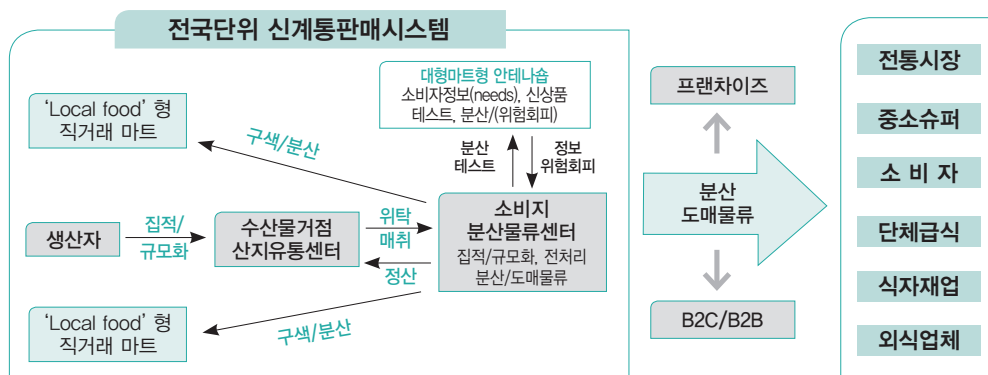
〈그림 4-6-1〉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후 조감도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에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도모,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와 관련하여 2012년 신규 선정된 FPC 사업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4-6-2〉 생산자 중심의 신(新)유통체계



또한 산지 위판장 위생수준 제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수산물 규격화 등 수산물 위생·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특성을 반영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산지-소비지로 이어지는 물류위생시스템 구축을 통한 먹거리 안전 확보 및 수산물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한편 2012년 12월 착공한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은 2015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HACCP, 콜드체인시스템 등을 구축할 것이다.

2.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 수산정책과 사무관 정기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주 생산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수매하여, 성수기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으로 원활한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는 냉동고등어·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5개 품목 7,457톤을 수매하였다. 전년도에 가격상승으로 수매하지 못하였던 냉동갈치는 275톤을 수매계획에 따라 100% 수매하였으며, 냉동고등어, 냉동명태는 각각 85%, 102% 수매하여 물가대책에 활용하는 등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수매금액은 생산량 부족 등으로 산지가격이 상승한 명태와 갈치는 계획 대비 금액이 증가하였고, 고등어와 오징어의 경우는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수매금액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수매예산의 99%를 집행하였다.

〈표 4-6-3〉 2012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계 획 (A)		실 적 (B)		대비 (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7,507	24,263	7,457	24,055	99.3	99.1
냉동 고등어	852	3,633	728	3,471	85.4	95.5
냉동 오징어	2,123	8,435	2,113	8,399	99.5	99.6
냉 동 명 태	3,977	5,664	4,061	5,662	102.1	100.0
냉 동 갈 치	275	3,759	275	3,757	100.0	99.9
냉 동 조 기	280	2,772	280	2,766	100.0	99.8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 평가 및 향후 계획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의 상승 기조 속에서도 설·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 비축물량을 방출해 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2012년은 전년보다 정부비축 예산이 증가(61억원, 33%)함에 따라 비축물량도 증가하였고, 방출시기, 방출방법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방출방법 측면에서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직접판매 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방출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최근 5년 중 가장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앞으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용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 방출시기 조정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민간 가격안정사업

■ 수산정책과 사무관 정기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정부비축사업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저장 또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단체)에게 수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수산물 주 생산시기에 적극 구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필요한 시기에 이를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는 민간 가격안정사업으로 1,229억원을 지원하여 오징어·명태·조기·갈치·김 등 301천톤을 수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원료수매 지원사업에 1,131억원을 지원하여 253천톤을 수매하였고, 가공수매 지원사업에 98억원을 지원하여 48천톤을 수매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지 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판장과 소비지에서 수산물의 집하·분산역을 담당하는 수산부류 도매시장에서의 출하주에게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한 위·공판장출하촉진자금 712억원과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262억원 등 총 974억원을 지원하여 총 1,313천톤(위판장 거래량 919천톤, 도매시장거래량 394천톤)의 수산물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민간 가격안정사업은 정부비축사업의 물가안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설·추석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중 정부비축물량과 함께 민간보유물량의 방출은 물가대책 수단으로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매 및 방출을 민간자율에 맡김에 따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수매 및 방출이 용이하지 않아 그 효과 측면에서 일부 보완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산물 수매지원사업의 산지가격 안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고, 소비자물가 안정기능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금리 부여, 새로운 소비지 가격안정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

4.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장묘인

❖ 추진 배경 및 개요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정부 주도적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도부터 수산업 관측 및 자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 및 가격, 유통, 수출입, 해외 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자조금 사업은 수산물 수급 동향을 고려한 적정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수산물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업관측사업은 양식수산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7개 품목(김, 미역, 광어, 우럭, 전복, 송어, 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업관측 내용을 보면 시설, 입식(채묘), 양성, 출하, 사료, 소비, 수출입 등의 물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측정보는 관측월보를 연간 14만부 발간하여 어업인, 유통인, 소비자에게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어업동향도 연간 1만부를 제작·배포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여 왔다.

그리고 생산자 5개 단체(김, 전복, 넙치, 송어, 자라)에 자조금을 지원하여 자율적 출하조절과 홍보활동, 품질향상 및 관측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의 시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꾀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총 3,781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편 양식수산물의 적정량 수급조절을 위해 면허구역을 이탈하거나 초과한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 항공영상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김, 어류, 전복 양식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였고, 보다 정확한 양식시설 판독을 위해 2011년부터는 항공영상 관측을 도입하여 판독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정비 목표를 세워 불법 시설을 철거하는 등 자율적인 정비노력이 돋보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업계의 자율적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시장개척, 소비촉진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수산업관측 및 자조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은 주요 양식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수산물 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 중장기 수산물 수급전망모형 구축, 수산물 수출입 관측 및 해외 동향조사를 강화하여 관측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자조금사업 참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고 이를 위해 전년도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등 자조금사업 집행·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수산업관측 및 자조금 지원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높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 주도의 시장 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제1절 국제협상 강화

1. WTO-DDA 수산 분야 협상대응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하소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서비스 등 9개 협상 분야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6년 협상 중단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큰 입장 차로 인해 쉽지 않은 진행과정을 거쳐 왔다.

2008년 7월에는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의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미국의 면화보조금 및 분야별 자유화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대립이 계속되어 결국 실패하였다.

2008년 12월 DDA 협상 진전을 목적으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에 대한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주요 개도국들(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간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 11월 DDA 출범 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도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규범 협상 분야의 의장은 어선건조, 어항시설, 면세유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장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장안에 대하여 미국·호주·뉴질랜드·칠레 등 수산자원 보호 주장국들은 의장안을 적극 지지하였고, 중국·인도 중심의 개도국들은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공해어업 보조금을 허용하는 등의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를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일본·대만·EU 등은 의장안의 기본 골격에 반대하고 금지보조금의 광범위함을 지적하며 축소를 주장했다. 이에 의장은 의장안 초안을 일단 유보하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9년도에는 6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어 의장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2010년부터는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도국 특별대우, 유류보조, 공해어업보조금 금지, 소규모 어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장안에 대응하여 면세유 등 운영비, 항만인프라 지원, 가격보조, 소득보조 등을 금지보조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2010년 9월에 제출하였다.

마침내 Lamy WTO 사무총장은 2011년 4월까지 새로운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강도 높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결국 규범의장은 수정협정문안 대신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수산물 관세

수산물 관세감축은 공산품 관세감축과 같이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 분야에서 논의된다. NAMA의 주요 쟁점은 크게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및 분야별 무세화이다.

관세감축공식은 흔히 스위스공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세감축 계수 이하로 최종관세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08년 12월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 신축성 적용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선진국 계수 8을 적용할 경우 최종관세는 8% 이하로 떨어진다. 개도국은 관세 인하 신축성(관세감축폭의 50%만 적용 또는 관세감축 면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수 20을 사용할 경우 제일 높은 수준의 신축성이 부여되고 계수 25를 사용하면 신축성을 사용할 수 없다. 개도국 신축성은 또한 특정 HS chapter에서 일정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신축성 제한요건(ACC : Anti-Concentration) 적용을 받는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보석, 화학약품, 수산물 등 14개 분야가 제안되었다. 수산물 무세화는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태국, 중국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은 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분야별 제안국 주도의 양자협약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반 이후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강조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이에 자발적 참여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NAMA 협상의 주요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NAMA 협상에 공세적으로 임해야 하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수산물을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향후 일부 민감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상의 신축성이 주어져야 하고, 이에 대해 상대국의 이의제기 시 양자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수산물 무세화(sectoral) 협상은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여 참여 불가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FTA 수산 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 통상무역협력과 신범준 사무관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2년 6월 한·콜롬비아 FTA 타결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거나 이미 발효한 나라는 칠

레, 아세안, EU 등 47개국이다(12. 12 현재). 한·미 FTA는 추가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3월 15일 발효하였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수산강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는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 상호 입장 차이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중국과는 20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협상개시를 위한 정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5월 2일 공식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2년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FTA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권 형성을 위한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는 동시에, 동일어종을 공유하고 있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는 수산물 수출이 많은 수산강국이라는 특성이 있다.

한·중 FTA는 5월 협상개시 선언 후 4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모델리티 협상을 진행해 나갔으나, 양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3월 양국 간 정상회담 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한·베트남 FTA는 지난 8월 양국 통상장관회담 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9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원칙에 합의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FTA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과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성 있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어려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등 예외적 조치 확보에 역점을 두어 FTA 협상에 임하고 있다.

FTA는 또한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은 우리 수산물 수출 시장의 42%(2012년 기준)를 점유하는 데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수입쿼터(IQ) 및 과도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진하는 등, 우리 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3.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인철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며,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참치어획에 가장 중요한 어장을 갖고 있는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나우루협정당사국) 8개국(파푸아 뉴기니,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나우루, 솔로몬 아일랜드, 투발루, 팔라우)이 OPEC과 같은 국제적인 자원카르텔 구축을 위한 ‘코로르선언(Koror Declaration)’을 채택(10.2.25, 팔라우)하여 PNA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는 조업권 부여 제외 및 향후 중서부 태평양 내 조업척수 감축 시 우선 감축대상임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적으로 자국 자원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 연안국과 조업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요 어장 확보를 위하여 PNA 국가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이를 위해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의 안정적인 이행을 통해 적정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업수역 등 조업조건 개선에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3국 간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인 러시아, 중서부태평양 도서국, 서부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수산 당국자를 초청, 수산과학·기술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아울러,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 분야에 특화된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태평양 도서국 및 서부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1,000백만원 상당의 물자를 공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참치어업의 주요 어장인 중서부태평양 도서국의 경제협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PNA 8개국과의 경제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여 양·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참치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 해양대기청과의 해양수산물과학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양식기술 및 해양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1년까지의 연안국 협력사업은 연안국 요청 위주로 진행하여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계를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자원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안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2년에는 수산 ODA 기본 계획을 수립, 물자공여 사업 대상 품목 및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물자지원 중심에서 포럼/워크숍 개최, 연안국 주민 대상 교육훈련 등으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해양수산 ODA사업은 수원국 경제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굴하는 등 성과창출 및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최국일, 원양산업과 사무관 정충모·방중화

◆ 추진 배경 및 개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1994년 11월),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채택(발효 2001년 12월) 및 1995년 FAO의 ‘책임 수산업 규범 채택’ 등으로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 각국의 책임 있는 어업 이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상업 어종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1/105)」는 해산(海山) 등에서 행해지는 공해상 저층어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FAO 및 각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는 각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FAO는 2008년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Guideline)을 발간했으며, 각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로 해산 등에서의 저층어업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09년 유엔은 2006년 결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엔총회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4/72)」를 통해 FAO 지침에 근거한 보다 강력하고 조속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였다. 2009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011년 유엔 차원의 결의 이행평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저층어업 규제 이외에도 상어 등 부수 어획종 보호,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멸종위기 생물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전 세계의 참치자원은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등 5개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참치기구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참치는 고가 상업어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남획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며, 어획 쿼터량 축소, 어업세력 감소 등 참치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어업질서에 대응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조업 보장과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수산물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 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 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인도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연승 및 트롤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채택된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 참치어종, 특히 전갱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8월에 설립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에 가입하였다. 또한 북서태평양의 저층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 중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 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주요 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국제수산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은 물론, 해외 어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국제수산기구 연례회의 및 과학회의를 국내에서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참석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어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유엔, OECD, FAO 등 수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와 관련해서는 FAO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2008)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2010, 부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수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켰고, 동 회의를 계기로 한·FAO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11년 2월, 한국과 FAO는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도국 공동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FAO 산하 아·태 수산위원회(APFIC) 의장으로서 제72차 APFIC 집행이사회(2009, 서울), 제3차 지역자문포럼 및 제31차 총회(2010, 제주)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역내 능력배양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ECD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 부의장국으로서 수산자원 회복, 기후변화, 양식 부문 등 주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OECD 기후변화 워크숍(2010, 부산)을 개최해 향후 수산 부문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 양식 워크숍을 개최, 지속 가능한 양식업에 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표 4-7-1>와 같다.

〈표 4-7-1〉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 현황

(2013년 10월 기준)

번호	기구명	본부(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	FAO 수산위원회	로 마 (1965. 5)	1965. 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 리(1961. 9)	1996. 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C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 12	일본, 미국 등 88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 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이용
6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 애 틀 (1995.12)	1995. 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 나 다 (1979. 1)	1993. 12	캐나다, 러시아 등 12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 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4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 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5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 곡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 페 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48개국	대서양 다랑어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 이 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4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 주 (1994. 5)	2001. 10	일본, 호주 등 6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1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미크로네시아 (2004. 6)	2004. 10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15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야 (1950.3)	2005. 12	미국, 일본 등 16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16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밴 쿠 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7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2011. 4	앙골라 등 6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8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 곡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미가입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약정(SIOFA)	미정/설립준비	미가입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21	북태평양수산위원회 (NPFC)	일본(임)	설립준비	러시아, 일본, 미국 등 6개국	북서태평양 저층생태계 관리 등
22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PRFMO)	뉴질랜드 (2012. 8)	2012.4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	비참치 어종 관리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5. 한·일 어업협정

지도교섭과 사무관 문성필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경쟁적으로 선포하면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EEZ로 확대되었다. 한·일 양국은 1996년 각각 자국의 EEZ를 선포하였으나, 한·일 양국의 관련 수역인 동·남해 및 제주 남부수역의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양국의 EEZ가 중첩되고 EEZ 기점에 관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EEZ 경계 획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과 1998년 15차례의 회의를 거쳐 양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약 35해리 이내의 EEZ를 설정하고, 나머지 수역은 2개의 중간수역으로 하여 EEZ 경계 획정이 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성격의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98.11)·발효('99.1)하였고, 매년 다음 연도의 상대국 EEZ에서의 입어 규모, 조업조건 등에 관해 협의·결정하는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한·일 양국은 2012년 10월 29일 한국에서 「제1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를 87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한·일 양국의 어업협상은 보통 1월에 시작하여 2월에 마무리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제1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상호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참여한 대립 끝에 13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거쳐 2012년 10월 29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전까지 한·일 양국의 어업인들은 조업 손실이 없도록 잠정조업방식으로 5회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입어 규모

2012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60,000톤, 총 입어척수는 870척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69톤/척)하게 유지하여 기존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우리의 연승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등을 비롯한 주력업종의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제안하였으나, 우리 측은 새로운 조업규제의 추가 도입에 강력 반대하여 일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우리 어업인들이 일본 EEZ 수역에서 유리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대부분 반영하여 타결하였다. 어업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어기의 한·일 양국 어선의 총 입어척수는 870척, 총 어획할당량은 60,000톤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 ▲현재의 어기인 3월 1일~2월 말을 2013년부터 7월 1일~6월 30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협상진행 도모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을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소폭 증대(40톤)하여 연승업계의 실익 제고 ▲2012년 어기부터 한·일 양국은 ‘한·일 조업규제검토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에 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EEZ 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13년도 어획할당과 관련한 어종의 어획동향자료, 자원 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2012년 중에 개최하고, 양국 어선 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 내 어선사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2년도 한·일 양국 EEZ 내 총 어획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15,901톤으로 할당량 대비 26.5%, 일본은 9,559톤으로 할당량 대비 15.9%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1.7배 더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척수는 우리나라가 552척으로 허가척수 대비 63%, 일본은 94척으로 허가척수 대비 10.8%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5.9배 더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이 다양한 업종에 의해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2〉 2012년 한·일 EEZ 입어실적 비교(총괄)

구분	합 의 사 항		실 적		대 비(%)	
	할당량(A)	입어척수(B)	어획량(C)	조업척수(D)	C/A	D/B
한 국 (a)	60,000톤	870척	15,901톤	552척	26.5	63
일 본 (b)	60,000톤	870척	9,559톤	94척	15.9	10.8
대 비 %(a/b)	100	100	166.3	587	-	-

자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종별 조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등어류, 꽁치, 살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어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어류가 약 7,891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82.6%를 차지하였다.

〈표 4-7-3〉 2012년 한·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단위: 톤)

구분	계	꽁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붕장어	기 타
한국(A) (%)	15,901 (100)	794 (5.0)	695 (4.4)	7,044 (44.3)	2,312 (14.5)	562 (3.5)	21 (0.1)	1,579 (9.9)	380 (2.4)	2,514 (15.8)
일본(B) (%)	9,559 (100)	-	472.6 (4.9)	7,891 (82.6)	131 (1.4)	-	0.5 (0.0)	0.8 (0.0)	8 (0.1)	1,055.1 (11.0)
A - B	6,342	794	222.4	-847	2,181	561	20.5	1,578.2	372	1,458.9

자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또한 어종별 어획할당량에 대한 소진실적에서도 우리 측은 고등어류, 살오징어, 갈치, 가자미류 등 여러 종을 어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 측은 주어종인 고등어류가 23.7%에 그쳤다.

〈표 4-7-4〉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단위: 톤)

구분	계	꽁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기 타
할당(A)	60,000	7,000	3,500	23,385	8,750	1,150	220	2,120	13,875
어획(B)	15,901	794	695	7,044	2,312	562	21	1,579	2,894
B/A(%)	26.5	11.3	19.9	30.1	26.4	48.9	9.5	74.5	20.9

자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표 4-7-5〉 일본어선의 우리 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단위: 톤)

구분	계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돔	갈치	붕장어	기타
할당(A)	60,000	3,000	37,814	3,150	40	78	10	50	15,858
어획(B)	9,559	472.6	7,891	131	-	0.5	0.8	8	1055.1
B/A(%)	15.9	7.9	13.2	0.2	-	0.0	0.0	0.0	1.8

자료: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2년도 입어 규모인 어획할당량 60,000톤, 총 허가척수 870척은 한·일 어업협상 이래 처음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우리 측 제안으로 한·일 양국의 조업규제검토협의회를 설치하여 그간 부과된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예정인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일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측은 매년 자국 어업인과의 조업분쟁, 자국수역의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연승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등 주력업종의 조업조건을 강화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원활하고 경제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한·중 어업협정

■ 지도교섭과 서기관 김학기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중 어업협정은 1992년 8월 한·중 간 외교관계가 수립됨을 계기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12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19차례의 양국 정부 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을 거쳐 1998년 11월 11일 가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이 가서명 이후 1999년 3월 중국의 양자강 주변 수역을 연중 조업금지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우리 어선이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국내적으로는 한·중 어업협정 조기발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조기발효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정부에서는 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자강 보호수역 문제를 어업의 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권을 협정발효 이후 2년간 확보하는 내용을 받아들여 2000년 8월 3일 정식서명하였다.

정식서명 이후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호 입어 규모와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측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1년 4월 5일 양국 수산당국 차관급 회담에서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와 업종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하고,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2001년 6월 30일 한·중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로 한·일 어업협정(1999년 1월 발효)과 중·일 어업협정(2000년 6월 발효)에 이어 한·중, 한·일, 중·일 3개국 간의 양자 간 어업협정이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동북아에 형성되었다.

〈표 4-7-6〉 한·중·일 어업협정 개요

구분	어업협정 가서명	어업협정 정식서명	어업협정 발효	협정 유효기간	협정 효력상실
한·중	1998. 11. 11	2000. 8. 3	2001. 6. 30	5년	1년 전 서면통보
한·일	1998. 10. 9	1998. 11. 28	1999. 1. 22	3년	통지 후 6개월 이후
중·일	1997. 11	1997. 11. 11	2000. 6. 1	5년	6개월 전 서면통보

◆ 관련 통계자료 확보 및 어업실태 파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입어교섭 추진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도에는 조업실태 전수조사('99.4~11), 어

업무선국 조업위치보고 자료D/B화('99.4~'00.10), 수협 위판 및 어획량 분석조사('99.1~6) 등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중국 측 수역 조업실태 및 전 어업인에 대한 입어희망 조사 실시('00.2~4), 어업인 검증작업('00.5~7) 등을 거쳐서 입어교섭(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에서의 정확한 조업실태 파악과 중국 통계의 검증을 위하여 중국 어업 실태 현지조사 실시('99.10),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주요 항구 내 긴급피항 척수조사('99), 어업지도 선 및 해경 경비정을 통한 일일 관측('99.7) 및 위성영상사진 판독 실시('00.2)는 물론,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으로부터 매일 중국어선의 동태파악을 실시('00.3)하였다.

◆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우리 어업인 피해 방지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연근해에서 이뤄진 중국어선의 무질서한 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문제가 대두되었고, 양국 어업인 간 빈번한 조업분쟁 발생 등 우리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이러한 문제와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중국어선 조업척수 감축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확보로 우리 어선 조업활동 지원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인한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우리 수역에서 무차별하게 남획하였던 중국어선의 조업척수를 협정 전 12,000여척에서 2013년 입어척수를 1,600척으로 대폭 감축시키고 조업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해특정해역 등에서의 중국어선 조업금지 및 중·일 잠정조치수역 상부수역의 현행조업유지수역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EEZ 경계 획정 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우리 어선의 어획 증대 및 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리 EEZ 자원관리방안 마련 및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우리 EEZ 내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중국 측에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을 계속 촉구하여 2010년 선망어업에서 어획하는 고등어에 대해 어종별 어획할당제를 시범실시한 데 이어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오징어에 대한 어종별 할당제 실시를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조사를 각자 실시하되, 양국은 상호 전문가를 계속 파견하여 자원조사 실시상황을 상호 교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조업, 영해침범조업, 폭력저항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단속·정선명령 위반어선에 대해 30일간 어업정지 처분, 자망어업의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제도 실시, 지도선 교차승선 확대 등 조업질서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 조업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EEZ에서의 수산자원 보호, 중국어선들과의 조업질서 확립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우리 측 단속기관의 점검 시 일부 중국어선의 집단·폭력적 저항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 EEZ 내 중국어선의 조업실적에 비해 중국 EEZ 내 우리 어선의 조업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조업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 어업 근절방안 및 한·중 간 입어 불균형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산하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며,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실시 추진 및 어업 지도단속실무협의를 통해 공동 단속 등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표 4-7-7〉 양국 간 수산협력약정 체결 현황

국 가 별	체결 부처	체결(발효)	비 고
합 계			6개국
노 르 웨 이	수산부	'02. 1.24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등
베 트 남	수산부	'02. 4.23	양국 EEZ 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농축수산식품처	'03. 9.1	수산·양식 기술의 공동개발 등
알 제 리	수산어로자원부	'07. 10.22	수산·양식업의 공동개발 등
브 라 질	수산양식부	'10. 6	수산 분야 전문가 교환 등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7. 한·러 어업협정

원양산업과 사무관 조성남

◆ 추진 배경 및 개요

1970년대부터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해 오던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은 1989년 미국의 상업적 어업활동 중단 방침에 따라 새로운 어장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1991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91.10 발효)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은 러시아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의 조업 형태는 정부 간 협력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최대 34척까지 조업하였으나 2001년부터 민간쿼터 배정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였고, 이마저 2003년 없어짐에 따라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합작사업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조업하고, 국적선은 5~7척 정도만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업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민의 수산물 불법 어획 및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협정 체결을 요구하여, 2009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IUU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 지역 수산 분야 투자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배정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인프라, 노동력, 세금, 과실송금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러시아수역 안정적인 어획쿼터 확보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정발효 초기에는 정부쿼터와 민간쿼터로 구분하여 정부쿼터는 어종교환과 상업쿼터로 분류되고, 민간쿼터는 직접어로, 공동어로, 합작사업으로 나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1992년의 경우 명태, 대구저연승, 게통발 등 3개 업종에서 정부 또는 민간협력에 의해 약 109천톤이 어획되었고, 이와 별도로 오희츠크 공해에서 약 206천톤이 어획되어 총 315천톤 정도의 어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호츠크 공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993년 4월 25일부터 조업을 자제하였고, 개통발어선은 러시아연방 대륙붕법 공포(95.11.30)에 따라 러시아수역에서 통발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해도에서 조업하던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이 1999년 모두 철수함에 따라 러시아수역은 우리나라 명태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유일한 어장이 되었다.

정부 간 협력에 의한 명태쿼터(상업쿼터)는 1993년 150천톤으로 최고 물량을 확보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20천톤까지 감소하였으나, 러시아 측과 IUU어업 방지협정 체결 및 이행,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 분야 투자 추진 등 적극적인 수산협력으로 명태쿼터는 다시 증가하여 2011년 50천톤까지 확대되었다가, 2012년에는 40천톤 수준을 확보하였다.

민간쿼터에 의한 명태조업 방법 중 직접어로는 매년 19천톤~164천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러시아가 2001년부터 불법 어획 및 교역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옥션)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종료되었다. 공동어로는 매년 17~58천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200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합작사업은 협정체결 초기부터 1~2개 업체가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협력에 의한 직접조업 및 공동어로가 불가능해진 어선들이 합작 형태로 협력방법을 전환하여 2012년 현재 14개사 25척이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표 4-7-8〉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단위: 천톤)

구분 \ 연도	1992	2001	2002	2004	2007	2009	2011	2012
계	187	200	25	20	21	39	50	40
정부쿼터	100	35	25	20	21	39	50	40
민간쿼터	87	165	-	-	-	-	-	-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 추진

러시아는 제7차('97)부터 제11차('01) 한·러 어업위원회까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정보 등의 자료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우리나라는 동 자료를 2003년 1/4분기부터 러시아 측에 꾸준히 제공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러시아수역 명태 민간조업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특별쿼터 배정을 요청(02.5)한 데 대하여 러시아 측은 이 문제는 러시아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 협력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200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2004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제13차(03)부터 제17차(07)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양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협의하였으며, 제18차 한·러 어업위원회(08)에서 양측은 2009년 1/4분기 중에 동 협정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의 세부내용을 협의한 후 2009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 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으로 러시아산 불법 수산물이 러시아 선박에 의해 한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불법 교역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 교역이 아직 남아 있고, 특히 게 불법 교역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2012년 7월 24일부터 게 수입 신고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제도를 시행하였고, 2012년 11월 15일부터는 러시아산 계류 수입 시 러시아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없이는 국내에 통관되지 못하도록 계류의 불법 교역을 원천 차단하였다.

◆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 분야 투자활성화 추진

우리나라는 2003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3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한·러 수산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러시아 측이 한국에 명태쿼터를 향후 10년간 매년 5만톤씩 제공할 경우 한국 측은 매년 5백만달러씩 10년간 러시아 극동에 냉동창고·가공공장 건설 등의 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2008년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수역 명태 쿼터를 과거(4만톤)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과 한·러 수산물 불법 수출 방지협정의 조기체결을 희망하면서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09)에서 양측은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물

가공공장, 어선 건조 및 수리소 투자진출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합의하였다.

2010년 12월 명태업계(북양트롤위원회)와 러시아 Ecarma社 간 수산물 냉동창고 및 수산가공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였고, 30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할린에 1,0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2년 2월 준공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러시아 EEZ는 우리 명태어선의 유일한 조업어장이므로 안정적인 조업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2월 IUU어업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010년 7월부터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통합고시를 제정·고시하였으나,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 동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정부 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11.11)에서 2012년도 명태쿼터 40,001톤을 비롯하여 꽁지 7,500톤, 오징어 8,000톤, 대구 4,450톤, 기타 2,016톤 등 총 61,967톤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등 한·러 간 수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IUU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러시아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8.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배은정

◆ 추진 내용 및 성과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입어하여 조업하는 데 대해 우리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수

산당국은 서해 평화정착 및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졌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정부에서는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그동안 남북 당국 간 추진키로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된 실정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05.6)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5.7)에서 남북수산물실무회담 개최 문제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수산물실무협의회(05.7)에서 ①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②서해상 제3국 불법 조업 통제 협력 ③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협력사업 추진 ④우량품종개발 및 수산 분야 기술교류 추진 ⑤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6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북한의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남북 국방장관급회담(07.11) 및 제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07.12)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현재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서해평화특별지대추진위원회(07.12)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동어로 실시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07.12)에서는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①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협력 ②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개발·양식 분야 협력 ③수산물 유통 분야 협력을 재차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해수역 입어는 2008년 중에 실시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4-7-9〉 남북 수산협력사업 주요 추진 경과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2005. 6. 24 ~ 6. 24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합의
2005. 7. 9 ~ 7. 12	제10차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남북수산실무협의회(7.25~27)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005. 7. 25 ~ 7. 27	제1차 남북수산 협력실무협의회	서해상 공동어로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 및 합의서 채택
2006. 3. 2 ~ 3. 3	제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주장하여 서해공동어로 및 바다목장 사업 등이 논의되지 못함
2006. 3. 15	남북수산실무 회담 개최제의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수산 실무회담(실무접촉포함)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군사회담과 서해공동어로의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2006. 5. 16 ~ 5. 18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군사회담과 동일하게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공동어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이 결렬
2006. 6. 3 ~ 6. 6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개최 지연
2007. 2. 27 ~ 3. 2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으며, 남북은 4.18~21까지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추위를 개최하기로 합의
2007. 5. 8 ~ 5. 10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서해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고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함
2007. 7. 24 ~ 7. 26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별다른 합의 도출 없이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NLL기준으로 동일 면적에서 시범적 설정 주장 • 북측은 NLL이남 수역에 설정 주장
2007. 10. 2 ~ 10. 4	제2차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경제협력사업 적극 활성화 등 2007남북정상선언문 채택
2007. 12. 4 ~ 12. 6	제1차 남북경제 협력공동위원회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 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
2007. 12. 14 ~ 12. 15	제1차 남북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2008년 중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협력을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합의
2007. 12. 28 ~ 12. 29	제1차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공동어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어로구역 설정에 따라 추진, 공동어로 실시방안 및 수산협력방안의 협의를 위해 2008년 상반기 공동어로협력분과위 개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그러나 2008년 들어 3월부터 북측의 당국 간 대화와 협력 거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핵실험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해 중 추진기로 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채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수산협력사업도 중단된 채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북한산 수산물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중국 현지 실태조사 및 위장반입 차단 점검 등 범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남북 수산협력사업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등 남북관계라는 업무 특수성을 가지고 추진돼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 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될 경우에는 호혜적인 남북 수산협력사업으로서 2007년에 합의한 수산협력사업 중 ‘우리 어선의 동해북측수역 입어’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 상호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산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 남북 수산협력방안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는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남북 수산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2절 해외 수산자원 개발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영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 증가,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조업 경쟁의 심화, 자원을 보유한 연안국과 국제수산물기구의 규제 강화 등 원양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해외 수산물 생산량은 2012년에 57만톤으로 2011년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금액과 수출금액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선척수 등과 같은 우리 원양 선단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인프라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자국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세계 각국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수산기업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수직 계열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여 세계 수산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도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현대화와 해외 수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원양산업을 태동한 이후 최초로 원양산업 전반에 대한 총조사를 완료하였다. 해외를 무대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통계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총조사 결과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양산업을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 수출 증진을 위하여 노후한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주력업종인 참치 선망어선 4척의 대체 건조사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트롤어선 1척에 대해 선상 설비 현대화사업도 추진하였다

어업 외에도 양식,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자원이 풍부한 연안국의 수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1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 진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투자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개 국가의 투자여건(수산업 정책, 법령, 산업동향, 투자환경) 등을 조사·제공하였다. 원양산업 거점 국가의 교민을 임명한 명예수산물관 8명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9년부터 시작한 해외 수산 투자기업 지원사업은 중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작은 실정이며, 용자 조건이 광물, 농업 등 타 해외자원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용자 조건을 개선하고 조사사업에 보조금도 지급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 성과를 감안하여 예산의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부터 국제수산협력원을 한국수산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국제 수산협상 전문가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또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하며,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향후 5년간 원양산업의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원양산업과 사무관 조성남

❖ 추진 배경 및 개요

해외어장 개발은 원양어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동안 연구기관 및 원양업체 등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해외어장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1994년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어장은 날로 좁아져 새로운 어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의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1957년 지남호에 의해 인도양 다랑어 연승어업 시험조업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해외어장 개발의 효시이며, 동 시험조업의 성공이 본격적인 해외어장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사모아, 인도양 등 다랑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캄차카, 러시아수역, 베링공해, 북해도 등 명태어장 개발, 뉴질랜드, 포클랜드, 페루, 북태평양 오징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콩치어장 개발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3년 「해외어장 개발 장기 정책방향 연구」를 실시하여 해외어장 개발 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러시아 및 일본수역에서 주로 조업해 온 콩치붕수망어선의 조업쿼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대두되자 2002년 북태평양 서경어장에 대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국의 조업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어장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 바 있다. 2003년에는 남태평양 동부공해 전갱어어장을 개발하여 상업적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북태평양 중부 돔어장 개발, 2006년 FAO 47해구의 이빨고기어장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는 FAO 41해구에서 오징어 어획을 목적으로 두 척의 선박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7-10〉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단위: 억원)

조사기간	조사선	업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예산
2001~2002	과학원(탐구1호)	트 롤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18
2002. 8~10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부공해	공 치	3
2003. 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동부공해	공 치	4
2003. 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경어장	공 치	3
2003. 8~12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남태평양 중부공해	전갱이	24
2004. 6~9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북태평양 중부공해	돔	29
2005. 7~10	상업어선 7척	채낚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24
2005. 8~10	상업어선 1척	채낚기	NAFO 동부	오징어	4
2006. 4~6	상업어선 2척	근해통발	마셜수역	장어류	8
2006. 12~2007. 5	상업어선 2척	연 승	47해구 공해	메 로	10
2007. 9~2008. 2	상업어선 3척	참치연승	미드웨이	참 치	9
2007. 7~8	상업어선 2척	트 롤	중부베링	명 태	6
2008. 8~12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	6.5
2008. 9~11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6.5
2009. 7~9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	4.3
2009. 6~9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3.2
2009. 8~11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체르네	7
2010. 8~12	상업어선 1척	트 롤	SAEFO	전갱이류	4
2010. 3~2011. 2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이빨고기	5.2
2010. 3~6	상업어선 1척	트 롤	기니아 EEZ	돔류	4.8
2011. 10~11	상업어선 15척	붕수망	북태평양 공해	공치	8
2011. 10~11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7해구	금빛눈돔	1.1
2011. 6~8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41 · 47해구	오징어	4
2012. 9~11	상업어선 2척	채낚기	FAO 41	오징어	8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8개 수역(205억원 투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8개 수역에서 상업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1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으로 매년 콩치, 전갱이 등 22,000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매년 260억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또한 공해상에서의 꾸준한 조업실적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 연안국과의 입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정상윤

◆ 추진 배경 및 개요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업체의 경영 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어업의 출어경비 일부를 영어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로, 항만 제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용자금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20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원양어업 출어자금 운용 규모를 보면 2012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2,680억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억원, 영어자금 1,200억원)을 지원, 원양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해외어장에서 지속적인 조

업과 주요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원양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양업체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2013년에는 2,5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 원양산업과 서기관 이규선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참치 원양어선 179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은 163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91%에 이르고 있다.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 참치어업으로 주로 횡감용 및 가공용 참치를 연간 30만여톤 생산하여, 참치류가 1990년 이후 매년 3억달러 정도 일본시장에 수출되어 전체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위와 같이 원양어업 중 경쟁력이 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도와 2006년, 2009년도에 선망어선 1척씩 총 3척을 건조하였고, 2010~2011년도에는 선망어선 2척을 건조하였다. 또한 2011년까지 총 7척의 참치 연승어선의 중고선 도입자금도 융자 지원하였고, 2012년 현재 선망어선 4척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참치선망어선 4척의 2차년도 자금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3년 12월 일 인쇄

2013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해양수산물부 수산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18

해양수산물부 (044)200-5428

디자인 및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